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연구

연구수행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문용린(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공동연구원: 문미희(공주대학교 입학사정관실)

보조연구원: 전종희(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장희선(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영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김호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요약

인권의식 함양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인권교육 대상자를 선별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만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표와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일은 아직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인권 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진단·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권교육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경찰, 군인,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노인, 정신장애인)를 합하여, 총 9개 공공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개발과정으로는 각 9개 분야별로 중요하고도 심각한 인권 쟁점 및 침해 사례 조사, 인권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인권 주제 및 사례 선정, 선정된 인권 주제 및 사례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인지에 관해 각 분야 실무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작성할 문항 내용 결정, 문항을 작성하여 타당도, 신뢰도, 문항의 양호도 분석을 거쳐 최종 검사 확정,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의 빈도 및 비율 산출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2008년 8월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2008년 9~12월, 총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본격적으로 검사를 개발하기에 앞서서 먼저, 9개 공공분야에서의 주요 인권내용 및 인권침해 사례를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문항화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문헌을 통해 찾은 각 분야별 인권침해 사례들을 정리하여 각 분야별 인권교육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중요도 및 심각도의 수준을 매기고, 각 사례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후 전문가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각 분야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질문지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 질문지를 가지고 각 분야별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직급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인터뷰 후, 전문가 1차 자문 및 실무자 인터뷰의 내용을 반영하여 11월 둘째 주에 인권교육 평가도구 문항 초본을 만들었다. 9개 각 분야별로 최종문항 수의 1.2배~1.5배수의 문항을 작성하여 전문가 2차 자문을 거쳐서 각 분야별 특수문항을 40개로 추려내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 각 분야별로 특수문항 40개, 그리고 모든 분야에 공통문항 10개를 확정하였다.

이후, 중간보고회 시 몇몇 인권교육전문가들이 공통문항의 수를 더 늘리고, 각 분야별 특수문항을 좀 더 다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인권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3차 자문을 받았고, 공통문항 20개, 특수문항 40문항을 완성하였다.

전문가 3차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고, 1박 2일 교육을 위한 완성형 버전 검사는 공통문항 20개, 특수문항 40개, 그리고 2시간 단기 교육을 위한 간편형 버전 검사는 공통문항 10개, 특수문항 20개로 작성하였다. 같은 주에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에 참여한 6개 공공분야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각 분야별 연구 대상의 표집 수는 사정상 사후검사에 불참한 몇 명을 제외하고, 경찰 26명, 노인 18명, 시설 아동 14명, 일반 행정공무원 12명, 정신장애인 분야 12명, 시설 장애인 분야 28명, 총 118명이었다.

그 후, 완성형 및 간편형 버전 검사 각각에 대한 채점 및 문항구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검사결과를 채점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각 분야별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한 채점표 및 문항 구성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6개의 분야에 대해 실시한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와 동시에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동시에, 검사 실시 및 진행에 관한 팁을 제공하는 검사 매뉴얼을 제작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수정, 보완한 보고서 제출에 이어서 최종 보고회가 개최되

었고, 최종 보고회 때 나온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개발된 인권교육 평가도구의 평가요소는 인권교육의 목표인 인권에 대한 지식, 인권 옹호적 가치 및 태도, 인권옹호 행동 기술이다. 그러나 인권옹호 행동 기술은 인권 문제에 부딪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인권교육 평가도구에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권 옹호적 가치/태도 요소만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평가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 평가도구에서는 9개 공공분야에 공통되는 인권 이슈를 사용하여 공통문항을 제작하였고, 각 분야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인권이슈를 사용하여 분야별 특수문항을 구성하였다. 공통문항의 이슈에는 법 앞의 평등, 연고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성적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인격존중, 소수의 권리, 사생활 보호, 알 권리, 인간의 존엄성이 해당된다.

교사 분야의 경우에는 완성형 검사의 경우, 총 11개의 이슈에 대해 각 사례를 구성하여 문항화하였다. 교사 분야의 이슈로는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차별금지, 교육에 대한 권리, 학생 자치와 참여권,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유,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접근권, 건강권,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를 들 수 있다.

군인 분야는 완성형 검사는 총 11개의 이슈, 간편형 검사의 경우에는 총 9개의 이슈에서 도출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이 분야의 이슈로는 인격적 존엄 및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 사적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 유지 권리, 통신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사소청권, 의견건의권, 고충처리권, 일과 휴식의 권리, 의료권, 의식주 및 환경권이 해당된다.

노인 분야는 완성형 검사의 경우 총 14개의 이슈, 간편형 검사는 총 12개

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례들을 도출하여 문항화하였다. 노인 분야의 이슈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양 및 급식서비스, 위생 및 청결서비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 사생활 보호, 동료 노인들에게 존중받을 권리, 신체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 통신, 소통의 자유, 알 권리, 의복서비스, 노동권 및 재산권, 정치적 자유권, 종교적 자유권, 문화 생활권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정신장애인 분야는 완성형 검사는 총 16개의 이슈, 간편형 검사는 총 12개의 이슈를 중심으로 각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이슈로는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신체적 안전, 적절한 식생활 보장,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사생활 보호, 통신 및 의사소통의 자유, 외출의 자유,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알 권리, 적절한 의복, 여가 및 문화생활권이 있다.

시설 아동 분야는 완성형 검사의 경우 총 19개의 이슈, 그리고 간편형 검사의 경우 18개의 이슈를 도출하여 문항화하였다. 이 분야의 이슈들은 크게 7가지 상위 권리, 즉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자유권, 참정권, 사후관리, 기타의 권리 속에 속해 있고, 주로 식생활, 주생활, 의료/위생, 별, 특별한 아동보호, 귀가 문제, 의사소통문제, 교육권, 친구관계, 문화적 권리, 사생활 침해, 경제권, 숙소선택권, 종교의 자유, 생활수칙, 시설운영 참여, 부모와 관계 형성, 퇴소 후 자립, 성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시설 장애인 분야의 경우, 완성형, 간편형 검사 모두 총 13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의 이슈로는 입소 자기 결정권, 의사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선택권, 교육권, 참정권, 가족권, 경제권 및 노동권, 치료받을 권리, 의식주 생활의 권리, 인간 존엄성,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침해가 있다.

경찰 분야는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모두 7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의 이슈로는 신체훼손 및 언어폭력, 제한사항, 형평성, 검문, 동행 및 연행, 개인정보보호 및 수색, 진료가 있다.

교정공무원 분야의 문항 구성은 완성형과 간편형 검사 모두 7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의 이슈로는 신체훼손, 안전권, 진료, 제한 및 검열,

환경, 개인정보노출 및 사생활 보호, 형평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는 완성형 검사와 간편형 검사 모두 7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이슈로는 사생활, 인사, 채용, 노동, 복지, 성차별, 기타가 있다.

본 평가도구의 활용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각 분야의 인권교육 참여자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특정 분야 종사자로서의 개인 차원 및 그 개인이 속한 집단차원에서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각 분야별 교육 참가자들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보다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본 검사 도구는 해당 분야의 향후 인권교육의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도구 개발의 목표대로 도구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교육자료 및 교육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교육자들마다 교수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권교육 관련 표준적인 교육자료 및 교육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본 인권교육 평가도구는 세계적으로 인권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사례는 없고,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평가도구가 초기의 시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본 평가도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활용가치에 주목하되, 또한 향후에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후속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목 차

| | |
|--------------------------------|----|
| I. 연구개요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2. 연구내용 및 범위 | 4 |
| 1) 연구내용 | 4 |
| 2) 연구범위 | 4 |
| 3. 연구방법 | 5 |
| 1) 연구대상 | 5 |
| 2) 연구과정 및 절차 | 6 |
| 4. 연구일정 | 11 |
| 5.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 14 |
| II. 이론적 배경 | 17 |
| 1. 공공분야에서의 인권교육 평가 | 17 |
| 1)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본질 | 17 |
| 2) 인권교육 평가의 의의 | 20 |
| 3) 선행연구 검토 | 20 |
| 2. 공공분야별 인권상황 실태 | 23 |
| 1) 교사 분야 인권상황 실태 | 23 |
| 2) 군인 분야 인권상황 실태 | 27 |
| 3) 노인 분야 인권상황 실태 | 31 |
| 4) 정신장애 분야 인권상황 실태 | 35 |
| 5) 시설 아동 분야 인권상황 실태 | 38 |
| 6) 시설 장애인 분야 인권상황 실태 | 41 |
| 7) 경찰 분야 인권상황 실태 | 45 |
| 8) 교정공무원 분야 인권상황 실태 | 48 |
| 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인권상황 실태 | 52 |
| 3. 공공분야에서의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 56 |
| 1) 교사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 56 |
| 2) 군인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 65 |

| | |
|--|------------|
| 3) 노인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 74 |
| 4) 정신장애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 85 |
| 5) 시설 아동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 92 |
| 6) 시설 장애인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 99 |
| 7) 경찰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 106 |
| 8) 교정공무원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 109 |
| 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 114 |
| | |
| III.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과정 및 방법 | 118 |
| 1. 인권교육 평가요소 및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연구모형 | 118 |
| 1) 인권에 관한 지식 획득 | 118 |
| 2)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 내면화 | 119 |
| 3) 인권옹호 행동 기술 개발 | 119 |
| 2.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과정 및 방법 | 122 |
| 1) 1차 전문가 자문내용 | 122 |
| 2) FGI(Focus Group Interview) 내용 | 153 |
| 3) 전문가 2차 자문 내용 | 179 |
| | |
| IV. 공공분야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의 실제 | 190 |
| 1. 검사 문항의 측정요소 및 최종 문항 | 190 |
| 1) 공통문항의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 | 190 |
| 2) 특수문항의 문항 구성표와 채점표 | 194 |
| 2. 타당도 | 225 |
| 1) 구인타당도 | 225 |
| 3. 신뢰도 | 233 |
| 1) 내적일관성 신뢰도 | 233 |
| 4. 시범적 평가(pilot test) | 240 |
| 1) 노인 분야 | 241 |
| 2) 정신장애인 분야 | 246 |
| 3) 시설 아동 분야 | 251 |
| 4) 경찰 공무원 분야 | 254 |
| 5)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 259 |
| 6) 시설 장애인 분야 | 262 |

| | |
|--|------------|
| 7) 소결 | 267 |
| V. 공공분야 인권교육 평가도구의 활용방법 및 제언 | 270 |
| 참고문헌 | 272 |
| [부록 1] 전문가 1차 자문 양식 | 278 |
| [부록 2] FGI 질문지 | 279 |
| [부록 3] FGI 연구참여 동의서 | 281 |
| [부록 4] 전문가 1차 자문 및 FGI 결과 정리표 | 282 |
| [부록 5] 전문가 2차 자문 양식 | 283 |
| [부록 6] 공통문항 및 분야별 특수문항 | 284 |
| [부록 7] 각 분야별(6개) 피교육자 사전, 사후 평가 평균, 변화유형 | 407 |
| [부록 8] 검사 매뉴얼 | 426 |

표 목차

| | |
|--|-----|
| 〈표 I-1〉 본 연구의 전체 일정 | 13 |
| 〈표 III-1〉 인권교육 평가요소(교사 분야의 예시) | 120 |
| 〈표 III-2〉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 | 152 |
| 〈표 IV-1〉 공통문항(완성형)의 문항 구성표 | 191 |
| 〈표 IV-2〉 공통문항(간편형)의 문항 구성표 | 192 |
| 〈표 IV-3〉 공통문항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193 |
| 〈표 IV-4〉 교사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194 |
| 〈표 IV-5〉 교사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196 |
| 〈표 IV-6〉 교사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197 |
| 〈표 IV-7〉 군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198 |
| 〈표 IV-8〉 군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199 |
| 〈표 IV-9〉 군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200 |
| 〈표 IV-10〉 노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01 |
| 〈표 IV-11〉 노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02 |
| 〈표 IV-12〉 노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203 |
| 〈표 IV-13〉 정신장애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04 |
| 〈표 IV-14〉 정신장애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06 |
| 〈표 IV-15〉 정신장애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207 |
| 〈표 IV-16〉 시설 아동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08 |
| 〈표 IV-17〉 시설 아동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09 |
| 〈표 IV-18〉 시설 아동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211 |
| 〈표 IV-19〉 시설 장애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12 |
| 〈표 IV-20〉 시설 장애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13 |
| 〈표 IV-21〉 시설 장애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214 |
| 〈표 IV-22〉 경찰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15 |
| 〈표 IV-23〉 경찰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16 |
| 〈표 IV-24〉 경찰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217 |
| 〈표 IV-25〉 교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18 |
| 〈표 IV-26〉 교정공무원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20 |

| | |
|--|-----|
| <표 IV-27> 교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220 |
| <표 IV-28>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21 |
| <표 IV-2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223 |
| <표 IV-30>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224 |
| <표 IV-31>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노인 분야) | 226 |
| <표 IV-32>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정신장애인 분야) | 228 |
| <표 IV-33>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시설 아동 분야) | 229 |
| <표 IV-34>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경찰 분야) | 230 |
| <표 IV-35>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 230 |
| <표 IV-36>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시설 장애인 분야) | 231 |
| <표 IV-37> 내적 일관성 신뢰도 (노인 분야) | 234 |
| <표 IV-38> 내적 일관성 신뢰도 (정신장애인 분야) | 235 |
| <표 IV-39> 내적 일관성 신뢰도 (시설 아동 분야) | 236 |
| <표 IV-40>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경찰 분야) | 237 |
| <표 IV-41> 검사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 238 |
| <표 IV-42> 내적 일관성 신뢰도 (시설 장애인 분야) | 239 |
| <표 IV-43> 노인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 평균(사례수=18) | 241 |
| <표 IV-44> 노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243 |
| <표 IV-45> 정신장애인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 (사례수=20) | 246 |
| <표 IV-46> 정신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248 |
| <표 IV-47> 시설 아동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 (사례수=14) | 251 |
| <표 IV-48> 시설 아동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253 |
| <표 IV-49> 경찰 공무원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 평가 평균 (사례 수=26) | 255 |
| <표 IV-50> 경찰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256 |
| <표 IV-51>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 (사례수=12) | 259 |
| <표 IV-52>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260 |
| <표 IV-53> 시설 장애인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사 례수=12) | 262 |
| <표 IV-54> 시설 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264 |

| | |
|-----------------------------------|-----|
| <표> 공통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285 |
| <표> 공통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287 |
| <표> 공통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289 |
| <표> 공통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290 |
| <표> 교사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291 |
| <표> 교사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295 |
| <표> 교사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299 |
| <표> 교사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301 |
| <표> 군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303 |
| <표> 군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307 |
| <표> 군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311 |
| <표> 군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313 |
| <표> 노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315 |
| <표> 노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319 |
| <표> 노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323 |
| <표> 노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325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327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331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335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337 |
| <표> 시설 아동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339 |
| <표> 시설 아동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343 |
| <표> 시설 아동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347 |
| <표> 시설 아동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349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351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355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359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361 |
| <표> 경찰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363 |
| <표> 경찰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367 |
| <표> 경찰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372 |
| <표> 경찰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375 |
| <표> 교정공무원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378 |
| <표> 교정공무원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383 |
| <표> 교정공무원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389 |

| | |
|---|-----|
| <표> 교정공무원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392 |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395 |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399 |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403 |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405 |
| <표> 노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1 | 407 |
| <표> 노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2 | 408 |
| <표> 노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인권 주제별) -1 | 409 |
| <표> 시설 아동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 410 |
| <표> 시설 아동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인권 주제별) | 411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1 | 412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2 | 413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인권 주제별)-1 | 414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인권 주제별)-2 | 415 |
| <표> 경찰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 416 |
| <표> 경찰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인권 주제별) | 417 |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 418 |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인권 주제별) | 419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1 | 420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2 | 422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인권 주제별) -1 | 424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인권 주제별) -2 | 425 |
| <표> 교사 분야의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27 |
| <표> 교사 분야의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28 |
| <표> 교사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430 |
| <표> 군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32 |
| <표> 군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33 |
| <표> 군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435 |
| <표> 노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37 |

| | |
|--|-----|
| <표> 노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38 |
| <표> 노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441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43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44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447 |
| <표> 시설 아동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49 |
| <표> 시설 아동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51 |
| <표> 시설 아동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454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56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57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460 |
| <표> 경찰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62 |
| <표> 경찰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63 |
| <표> 경찰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466 |
| <표> 교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68 |
| <표> 교정공무원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69 |
| <표> 교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472 |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74 |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475 |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478 |

그림 목차

| | |
|--|-----|
| <그림 I-1>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과정 | 6 |
| <그림 IV-1> 노인 분야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 | 245 |
| <그림 IV-2> 노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 245 |
| <그림 IV-3> 정신장애인 분야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 249 |
| <그림 IV-4> 정신장애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 250 |
| <그림 IV-5> 시설 아동 분야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 253 |
| <그림 IV-6> 시설 아동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 254 |
| <그림 IV-7> 경찰 분야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 | 257 |
| <그림 IV-8> 경찰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 258 |
| <그림 IV-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 261 |
| <그림 IV-10>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 262 |
| <그림 IV-11>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 266 |
| <그림 IV-12> 사후 평가에서 인권 침해 및 옹호비율의 상승 및 하락자 | 266 |

I.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인권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여러 행정 기관 및 교육 기관 등 공공분야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와 이의 제기가 있어왔다.

무엇보다도 공공분야는 일반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의 기능이 강조되는 분야이나, 시혜적 성격이 강해 자칫 행정 편의에 따라 수혜자들의 인권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사료된다. 특히, 이런 공공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사적 분야에 인권 강화를 실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게 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 공공분야에서 양성평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계도와 연수 및 연찬회의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는 소홀히 한 경향이 없지 않다. 특히, 현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보다는 일과성 연수 교육이나 전달 교육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실행하고, 또 이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거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인권 교육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진단·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권교육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 군인,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노인, 정신장애인)를 합하여, 총 9개 공공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인권의식 함양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인권교육 대상자를 선별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할만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표와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일은 아직 수행되지 못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인권교육자료실 참고).

지금까지 개발된 인권교육 평가도구로는 이선영(2006)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평가도구가 유일하다. 이선영은 인권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 유형과 평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인권의식 관련 측정도구로는 초·중·고·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는 인권감수성 검사(국가인권위원회, 2002a)와 인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Getz(1985)의 인권태도검사(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Inventory; ATHRI), 교사의 인권감수성을 측정한 문미희(2004)의 교사용 인권감수성 검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도구들은 인권감수성이나 태도 등 인권의식의 단편적인 부분들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이미 개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도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 도구의 개발은 평가 목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의 평가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권옹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은 인권옹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평가에서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의 교육목표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옹호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능력으로서의 인권의식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 평가도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권의식이 형성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인지적 영역의 지식과 정의적 영역의 가치·태도, 행동적 영역의 실천력 등이 어우러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권교육을 통한 통합적 인권의식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 가치·태도, 실천력 등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행동적 실천력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실제 행동을 관찰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두 요소인 지식과 가치·태도를 위주로 인권의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교육 내용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교재의 토픽이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료에 국한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필요를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 개념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학습자에 대한 학습평가는 인권의식에 대한 감수성, 인권보호에 대한 의지, 태도 등 행동발달 특성을 다루어야 하며, 학생평가는 지필시험과 같은 암기식 획일적 평가를 지양하고, 평소의 생활태도에 대한 관찰 기록 등을 참고로 인권에 대한 의식정도와 태도를 기술하도록 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3a).

그렇다면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부딪치는 주요 인권 관련 문제 상황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2003a)가 지적하였듯이, 인권 개념의 기초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의 습득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관련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단순히 인권내용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복잡한 현실 상황 속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분야 인권교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권내용에 대한 단순한 지식 이상으로, 각 분야별 종사자들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지를 예측해 줄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문항 속에 인권옹호 혹은 침해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압축하고, 그에 대해 찬성(강한 찬성, 약한 찬성) 혹은 반대(강한 반대, 약한 반대)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각 문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내용

경찰, 군인,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4개 종사자(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노인, 정신장애인), 총 9개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한다. 그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9개 분야별로 중요하고도 심각한 인권 쟁점 및 침해 사례를 조사한다.
- ② 인권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인권 주제 및 사례를 선정한다.
- ③ 선정된 인권 주제 및 사례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인지를 각 분야 실무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작성할 문항 내용을 결정한다.
- ④ 문항을 작성하여 타당도, 신뢰도, 문항의 양호도 분석을 거쳐 최종 검사를 확정하고,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의 빈도 및 비율을 산출한다.

2) 연구범위

(1) 평가요소

앞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교육 평가도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인지적 영역의 지식과 정의적 영역의 가치/태도에 한정하고, 행동적 요소는 실제 상황에서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평가도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2)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실시 및 채점이 간편한 체크리스트 검사 형태로 작성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모두 9개 공공분야, 즉 경찰, 군인, 교사,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시설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예비 검사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인권교육 양성과정에 참여한 각 분야의 실무종사자들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파일럿 테스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의 일정이 본 연구의 파일럿 테스트 실시 가능 일정과 맞지 않는 분야들이 있었다. 즉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의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연구진의 연구 일정과 맞지 않는 일정으로 교육이 진행된 분야에 대해서는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파일럿 테스트는 부득이하게 9개 분야 중 6개 분야, 즉 경찰, 일반 행정공무원, 노인, 시설 장애인, 정신장애인, 시설 아동 분야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각 분야별 연구 대상의 표집 수는 사정상 사후검사에 불참한 몇 명을 제외하고, 경찰 26명, 노인 18명, 시설 아동 14명, 일반 행정공무원 12명, 정신장애인 분야 12명, 시설 장애인 분야 28명 총 118명이었다. 각 분야별 파일럿 테스트 참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2) 연구과정 및 절차

본 연구는 9개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평가체계 및 기틀을 마련하고, 과거의 도구와는 다른 수준의 도구를 제작함으로써, 인권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고 체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 문항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연구진들은 각 분야별 인권침해 관련 각종 자료 및 문헌 조사 및 인터넷 검색, 9개 분야별 인권교육 전문가 자문(1, 2차), 9개 분야별 실무자 인터뷰(각 분야별 5~6인) 등의 과정을 통해 본 연구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검사의 개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 -1>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과정

이상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인권내용 및 인권침해사례 선별 과정에서는 여러 문헌 및 자료의 조사 및 검색을 통하여 각 분야별로 중요하다고 간주되고, 또한 쟁점이 되어온 각 분야별 주요 인권내용 및 대표적인 인권침해사례를 탐색,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분야 별

로 중요한 화두가 되는 이슈를 선정한 후, 각 이슈 별로 국제법상의 기준이나 법적 근거들과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분야별로 어떠한 내용이 담긴 문항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틀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한 내용을 가지고 인권위로부터 추천을 받은 각 분야별 인권교육 전문가들에게 1차 자문을 의뢰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진이 작성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의 중요도 및 심각도(상, 중, 하)를 확인하였다. 즉 각 인권침해 사례의 <중요도>와 <심각도>를 평정하여 인권교육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안과 심각한 사안을 파악함으로써, 현실에 가까운 문항을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중요도는 해당 사례가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례인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심각도는 빈번하지는 않더라도 그 파장이 큰 사례에 관해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진이 작성한 인권침해 발생 이유는 전문가들에게는 불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부탁할 때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자문위원들이 작성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해당 사례의 <중요도>, <심각도>를 상, 중, 하로 평정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더 많은 문항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권교육 전문가들에게 연구팀에서 정리한 쟁점사항을 제시하여 수정, 보완, 추가적으로 포함될 사항 등을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각 분야별 이슈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인권교육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사례들은 연구진들이 최대한으로 수집 가능한 수(개발할 문항수의 1.2배~1.5배수)를 가지고 인권교육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 사례별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이유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맥락에서 보다 의미 있고 정확성이 반영된 문항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각 분야별 인권교육 전문가 1차 자문 후 각 분야별 실무종사자 5~6인을 대상으로 실무자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실무

자 인터뷰 대상자는 각 분야별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실제로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침해 사례의 현실적합성 등에 대한 질문을 하여 본 검사 문항의 구체성 및 사실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인권교육전문가의 1차 자문 내용을 정리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를 만들고,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의 답변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무자 섭외를 할 때에는 나이, 직급, 소속, 연차, 지역 모두가 중요한 섭외 기준으로 고려되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 있는 여러 직급의 실무자를 섭외할 때에는 인권교육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섭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되, 각 분야별 사례 등에 대한 별도의 힌트를 주지 않고자 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 사례의 중요도, 심각도 등을 그대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각 분야별 전문가 검토 외에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자주 경험하는 인권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문항의 내용이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대상 집단 내 (Inter-group)에서의 직급별, 기능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그 분야와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여러 직급의 근무자(한 분야 당 5인 정도)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취득하고 도구제작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9개 분야의 인권교육전문가들에게 받은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각 사례의 주제의 현실성 및 중요도, 심각도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또한 각 사례와 관련하여 수정, 추가, 삭제할 부분은 없는지를 파악하여 중요한 인권 침해 사례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 문항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인권교육전문가들의 전문가적 견해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되, 실무자들의 견해를 비교, 대조하여 일치, 불일치하는 부분을 확인

하여 문항화하는 데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권교육전문가들과 실무자들 간의 견해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항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의도하는 답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술하고자 하였다. 문장 진술 시, 주어를 ‘나’로 하는 것, 혹은 어미를 ‘해야 한다’와 같은 당위적인 진술 및 일반적인 리커트(Likert) 진술 방식을 지양하고, ‘해도 된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진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문항의 선정을 위해 각 분야별로 그 내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예: 학생 인권의 경우, 두발 차별),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더 많은 문항 수로 구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즉 문항 수의 배치에 있어서 각 분야 별 하위영역의 수가 모두 동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심각한 사례들을 위주로 문항의 수를 구성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한다면, 각 분야별 하위영역의 수는 중요도와 심각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하위영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화(priority) 한 후 개별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이와 같이 할 때, 하위 영역의 수는 분야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각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를 고려하여 각 사례에 대한 전문가 혹은 실무자들의 평가를 어느 정도, 어떻게 문항 속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준은 전문가의 평가가 중요도 ‘중’, 심각도가 ‘중중’인 것부터 선택하였다. 그리고 만약 첫째 기준을 사용하여 사례 선별을 했는데, 사례가 작성해야 할 문항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셋째 기준 적용하고, 사례가 작성해야 할 문항수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둘째 기준을 적용한다. 둘째 기준으로는 실무자의 반 수 이상이 ‘상’, ‘중’에 응답한 사례를 선택하여 문항수를 축소시킨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준은 실무자의 반응 중 ‘상’, ‘중’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포함시켜 문항 수를 늘린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어느 사례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설정하였다.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기준을 거쳐 각 사례별로 골고루 문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도나 심각도의 적어도 하나에서 전문가 반응

이 ‘상’이면서 실무자 반응도 ‘상’에 반수 이상이 응답을 했을 경우에는 문항을 추가로 더 만들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2개를 기본으로 하고 문항수가 적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9개 공공분야에 대한 특수문항 40개와 9개 공공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문항 10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문항이 현실적인 맥락을 제대로,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응답자들에게 정답이 무엇인지가 쉽게 노출되지는 않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본 검사가 단기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사전/사후 검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지 개발 시 교육 참여자의 기억효과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의 문항의 순서 등을 조정해서 기억효과가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문항 보기의 진술을 ‘잘 모르겠다’ 혹은 ‘보통’과 같이 진술하는 경우, 애매모호한 응답을 초래하거나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강한 반대’, ‘약한 반대’, ‘약한 찬성’, ‘강한 찬성’으로 보기의 진술을 결정하였다.

이후, 확정된 문항에 대해 각 분야별 인권교육 전문가들로부터 2차 자문을 받았고, 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였는데, 중간보고회 시 공통문항을 현재의 10문항에서 20문항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수용하여 10개의 공통문항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였고, 공통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시 참여했던 2인의 인권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공통문항 및 특수문항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의 각 분야별 일정 등을 고려하여 6개의 분야, 즉 경찰, 일반 행정공무원,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분야의 교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검사 문항은 시설 장애인 분야(공통문항 10개, 특수문항 40개)를 제외하고는 파일럿 테스트 당시의 시간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공통문항 10개, 특수문항 35개로 재구성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하게 된 것은 시설 장애인 분야의 경우 중간보고회 이전에 파일

릿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나머지 5개 분야는 중간보고회 때 문항에 대한 논의 후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재수정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개인적인 일정상 파일럿 테스트 이전에 만나기가 불가능했던 1인의 인권교육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공통문항 등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구하였고, 그 의견이 본 연구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데 반영하면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와의 면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 실시 이후에 기존의 문항을 재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된 이유는 파일럿 테스트의 대상인 인권교육 참여대상자들을 섭외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섭외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각 분야의 파일럿 테스트 일정을 연구진의 진행 일정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파일럿 테스트 이후에도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차례의 내용 수정 및 추가의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검사 문항이 완성되었고, 채점 방법 및 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정리 작업이 뒤따라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문항은 완성형 검사(공통문항 20개, 각 분야별 특수문항 40개), 간편형 검사(공통문항 10개, 각 분야별 특수문항 20개)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채점표 및 문항구성표도 작성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분야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제작된 검사를 실무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연구일정

본 연구는 2008년 8월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2008년 9~12월, 총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본격적으로 검사를 개발하기에 앞서서 9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에 걸쳐서, 9개 공공분야에서의 주요 인권내용 및 인권침해 사례

를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서 각 분야별 인권 관련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9월 넷째 주~10월 첫째 주에 걸쳐서 문항화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문헌을 통해 찾은 각 분야별 인권침해 사례들을 정리하여 각 분야별 인권교육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중요도 및 심각도의 수준을 매기고, 각 사례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후 전문가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각 분야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질문지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 질문지를 가지고 10월 셋째 주~넷째 주에 걸쳐서 각 분야별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또 서로 다른 직급을 가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실무자 인터뷰 후, 전문가 1차 자문 및 실무자 인터뷰의 내용을 반영하여 11월 둘째 주에 인권교육 평가도구 문항 초본을 만들었다. 9개 각 분야별로 최종문항 수의 1.2배~1.5배수의 문항을 작성하여 전문가 2차 자문을 거쳐서 각 분야별 특수문항을 40개로 추려내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 각 분야별로 특수문항 40개, 그리고 모든 분야에 공통문항 10개를 확정하였다.

이후, 11월 둘째 주에 중간보고회 시 몇몇 인권교육전문가들이 공통문항의 수를 더 늘리고, 각 분야별 특수문항을 좀 더 다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11월 셋째 주에 인권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하여 3차 자문을 받았고, 공통문항 20개, 특수문항 40문항을 완성하였다.

확정된 문항을 가지고 그리고 11월 넷째 주에 전문가 3차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고, 1박 2일 교육을 위한 완성형 검사는 공통문항 20개, 특수문항 40개, 그리고 2시간 단기 교육을 위한 간편형 검사는 공통문항 10개, 특수문항 20개로 작성되었다. 같은 주에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의 일정에 따라 5개의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2월 첫째 주~둘째 주에는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각각에 대한 채점 및 문항구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검사결과를 채점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 각 분야별 사전, 사후 검사에 대한 체크표 및 문항 구성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5개의 분야에 대해 실시한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와 동시에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동시에, 검사 실시 및 진행에 관한 팁을 제공하는 검사 매뉴얼을 제작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12월 셋째 주에는 수정, 보완한 보고서 제출에 이어서 최종 보고회가 개최되었고, 최종 보고회 때 나온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다음의 표는 본 연구의 전체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표 I-1> 본 연구의 전체 일정

| | | (연구기간 : 2008 . 9 . - 2008 . 12 .) | | | | |
|-----|----|--|---|----|----|----|
| | | 연구내용 | 월 | | | |
| | | | 9 | 10 | 11 | 12 |
| 9월 | 1주 | 9개 공공분야 주요 인권내용 및 인권침해 사례 조사 | ↔ | | | |
| | 2주 | | ↔ | | | |
| | 3주 | 9개 공공분야별 주요 인권내용 및 인권침해 사례 관련 보고서 진술 | ↔ | | | |
| | 4주 | 9개 공공분야별 1차 자문 준비를 위한 내용 정리 | ↔ | | | |
| 10월 | 1주 | 9개 공공분야별 전문가 1차 자문 의뢰 | | ↔ | | |
| | 2주 | 전문가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한 실무자 인터뷰 질문지 준비 | | ↔ | | |
| | 3주 | 실무자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 ↔ | | |
| | 4주 | | | ↔ | | |
| | 5주 | 인권교육 평가도구 제작 및 전문가 2차 자문 의뢰 | | ↔ | | |
| 11월 | 1주 | (공통문항 10문항, 특수 문항 40문항) | | | ↔ | |
| | 2주 | 2차 자문 결과 반영 후 문항 확정 | | | ↔ | |
| | 3주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회 개최 | | | ↔ | |
| | 4주 | 전문가 3차 자문 및 최종 문항 확정 (완성형 버전: 공통문항 20문항, 특수문항 40문항) (간편형 버전: 공통문항 10문항, 특수문항 20문항) 파일럿 테스트 실시 | | | | ↔ |

| | | (연구기간 : 2008 . 9 . - 2008 . 12 .) | | | | | |
|-----|----|-----------------------------------|---|---|----|----|----|
| | | 연구내용 | 월 | 9 | 10 | 11 | 12 |
| 12월 | 1주 | |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지, 채점표, 문항구성표 작성 통계분석 및 보고서 최종 수정 검사 매뉴얼 작성 | | | | |
| | 2주 | | | | | | ↔ |
| | 3주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 보고회 개최 | | | | | ↔ |

5.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그동안 인권교육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각종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인권 교육을 실행해 왔으나,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 비해 인권교육의 효과성은 입증되지 못했고, 그와 더불어 인권교육의 결과물에 대한 관심도 대체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인권교육의 평가과정은 인권교육 참여자가 인권교육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과연 인권교육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검증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인권교육을 맡은 교수자의 강의내용 및 방법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교육 참여자에게 있어서 과연 인권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도 일과성 연수 교육의 형태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성과 평가나 피드백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교육 평가도구를 통해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인권교육 전,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과정을 통해 확인,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권 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이후에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의 방향 및 계획 수립을 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기존에는 실무자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등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와 검사 결과 간의 괴리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교육 참여자들의 '현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오던 검사 실시 패턴의 고리를 끊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현재의 자신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보기를 선택했을 때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문항을 진술함으로써 인권교육을 받는 이들의 실질적인 수준, 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인권교육 전, 후의 변화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평가도구는 인권교육의 효과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으며, 이것은 인권교육의 참여자인 개인 및 그러한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모두에게 함의를 주는 것이다. 본 평가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참여자 및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및 국민들에게도 인권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교육의 가시적 성과, 효과를 확인하여 공공분야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검사 도구는 1~2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총 9개의 공공분야, 즉 경찰, 군인,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 아동, 시설 장애인, 노인, 정신장애인)를 대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 문항 및 각 분야에 고유한 내용을 담은 특수문항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본 평가도구는 공통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질적인 각 분야의 참여자들을 모두 아울러서 평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인정되며, 그런 의미에서 국내·외 어디에서든 전무후무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검사 도구는 기존에 개발되었던 인권감수성 및 인권태도 검사들이 인권의식의 단편적인 부분들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여러 내용을 통합하면서도 보다 직접적으로 인권교육의 효과성

을 평가하는 도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공공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권옹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관해 측정하는 평가 도구는 인권옹호 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보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과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 검사 도구는 그와 같은 점을 충족하고자 애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 참여자는 검사에 응할 때 기본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특정 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특정 보기를 선택했을 때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보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검사 참여자의 실제 행동과 응답의 결과 및 패턴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필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어느 보기를 선택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모호하게 하되, 실제로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각 문항의 진술 시에 답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그 내용을 최대한 중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검사의 참여자들이 평소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구체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예측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검사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9개의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인권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근거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공공분야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실시자가 교육 참여자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강구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사 도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점들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므로, 본 검사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는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할 수 없었던 효과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공분야에서의 인권교육 평가

1)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본질

공공분야란 수익자가 일반대중이고, 공공재를 생산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적용될 수 없으며, 정부에서 소유하고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운영하는 공공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공공조직은 권위주의, 연구주의, 형식주의, 순응주의 등의 전통적인 조직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문화의 특성들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중수, 2007). 즉 전통적인 조직문화의 특성들은 수익자인 일반대중의 권리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침해하는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분야의 전통적인 조직문화 특성을 개선하여 일반대중의 유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장치는 제재의 방식이 아니라 공공분야 종사자들로 하여금 고객의 권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시키는 인권교육의 형태를 띠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해 알도록 하여 소극적으로는 인권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권교육은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것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다면, 공공분야의 인권 교육에서는 자신의 인권을 찾기 보다는 고객 대상의 인권보호에 더 비중을 두어 교육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분야 종사자들은 자신의 권리 주장 이전에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

면서 고객 또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다. 즉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군인 간부는 일반 병사의 인권을, 경찰은 일반 시민의 인권을, 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거주자의 인권을, 교정공무원은 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내용을 중요한 인권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는 차별화된다.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이란 아래에 제시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의 문화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2008a).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의 추구
-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 국가, 민족, 종교 및 언어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 관계의 증진
-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 대상들을 위하여 인권옹호적인 행동을 행사하는 기술, 그리고 그 대상들에 대하여 인권옹호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3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인권에 ‘대한(about)’ 교육은 공공분야 종사자와 관련된 대상자들의 인권에 대한 ‘지식(knowledge)’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다. 여기에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포함하여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조직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둘째, 인권을 ‘위한(for)’ 교육은 공공분야 종사와 관련된 대상자들의 권리와 그들에 의한 의무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술

(skill)’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 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은 공공분야 종사자와 관련된 대상자들을 존중받아야 할 인간 존재로 보고, 인간에 대한 존중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것의 ‘가치(value)’를 경험하는 것이다.

유럽의외 장관위원회가 85년 ‘학교에서의 인권에 관한 교수와 학습에 관한 권고’에 의하면, 인권교육의 지식, 기술 및 가치/태도의 형성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2008a). 이러한 내용을 공공분야 인권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인권에 대한 지식으로는 인권, 의무 및 책임의 주요 범주에 관한 지식, 인종주의와 성차별을 포함한 불의, 불평등 및 차별의 다양한 형태에 관한 지식, 역사적이며 또한 지속되고 있는 인권을 위한 투쟁 속의 인물, 운동 및 주요 사건에 관한 지식,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 선언 및 인권에 관한 조약 등의 지식을 포함한다.

둘째, 인권을 위한 기술은 지적기술, 특히 글로나 말로 표현하는 기술, 경청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는 능력, 판단과 관련된 기술, 대중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근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기술, 이것을 분석하여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하는 기술, 편향·편견·고정관념 및 차별에 대해 분별하는 기술, 사회적 기술, 특히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긍정적이고 비 억압적인 인간관계 형성하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 해결하기, 책임지기, 결정에 참여하기, 지역 및 국제수준에 존재하는 인권보장기구 이용에 대해 이해하기와 같은 기술을 포함한다.

셋째, 인권을 통한 가치 면에서는 ‘참여’의 장려를 강조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다양한 견해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토론될 수 있는 환경에서라야 인권의 ‘가치’가 수용되며, 인권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인권교육 평가의 의의

타일러(Tyler)에 의하면, 교육평가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수 학습을 실시한 이후에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교육평가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인권교육의 평가란 인권수업을 통하여 인권교육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평가의 목적은 평가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 평가는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인권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학습과 교육과정에 최대한 도움을 주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 평가는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의 정도 확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와 개선, 인권교육정책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기반 제공 등의 실제적인 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인권교육 평가를 실행하기 때문에 인권교육 평가의 기능 역시 다양할 수 있다. 첫째, 인권교육과정 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재 등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권교육 대상을 선발하거나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셋째, 인권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평가를 통해 인권교육 활동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권교육 평가의 역할은 인권교육 목적의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평가와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로는 첫째, 인권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한 이선영(2006)의 연구, 둘째, 인권태도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한 Getz(1985)의 연구, 셋째, 인권감수성을 측정한 국가인권위원회

(2002a)의 연구와 문미희(2004)의 연구가 있다.

첫째, 인권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한 이선영(2006)의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의 목표를 인권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의 함양으로 보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 가지 목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평가하는 인권 내용으로는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제3세대 인권, 생존권지식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에세이, 지필 질문지, 개념지도 작성법을 사용하였다. 기능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조사 후 계획하기, 관찰법, 역할극, 포트폴리오, 토론법, 토의법을 사용하였다. 태도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 참여행동 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선영(2006)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재량활동 시간에 실시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개발한 것으로서, 평가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권교육에 투입하여 효과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은 평가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방법들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2시간이나 1박 2일 동안 인권교육을 실시한 후 짧은 시간 동안 효과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둘째, Getz(1985)의 인권태도 검사(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Inventory; ATHRI)는 일반적인 인권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내지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는 미국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 기회의 평등, 생존 및 보건의 권리,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생활권 등의 인권 내용을 반영하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0문항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 인권내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문항은 반론의 여지가 있는 논쟁적 인권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는 이들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5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Getz(1985)의 인권태도 검사는 일반적인 인권 내용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이지, 특정 직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겪는 특수한 인권 주제를 다루는 검사는 아니다. 따라서 공공분야에서 중요하고도 심각하게 발생하는 인권 주제

에 대한 인권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2002a)는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와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세계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흔히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딜레마 내용을 구성하고, 인권감수성을 구성하는 하위척도로서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이라는 세 요소를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10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를 참고로 하여,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감원대상),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김씨의 구속),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장애인 학교),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진료자 명단), 환경권(공장 건립),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황 판사의 고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려씨의 임금), 사생활권(국가 의료정보센터 설립), 장애우의 신체의 자유권(의사의 고민), 노인의 행복추구권(가족회의)이라는 인권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문미희(2004)가 개발한 교직원 인권감수성 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2002a)의 인권감수성 검사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다만 내용면에서만 교직과 관련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검사는 학교 상황에서 쉽게 일어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권침해 사례를 나타내는 10개의 딜레마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다루는 인권내용은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이다. 이 검사는 문용린의 인권감수성 검사와 마찬가지로 인권감수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소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2002a)와 문미희(2004)가 개발한 인권감수성 검사는 인권 문제에 대한 감수성 내지 지각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지식, 기능, 가치/태도 등의 종합적인 인권교육 목표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된 인권교육 평가도구나 인권태도 및 인권감수성 측정도구는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목표를 평가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

는 도구가 없으므로,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평가해줄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공분야별 인권상황 실태

1) 교사 분야 인권상황 실태

교사 분야에서 다루는 인권 내용은 교사의 주 고객이 되는 학생의 인권을 교사가 옹호해주고 침해하지 않는지에 관한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란 초·중·등학교 재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권을 말한다. 학생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일반적 인권 이외에도, 학생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수한 인권이 존재한다. 이른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뜻하는 학습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로는 2007년 12월 14일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었다. 이 법 개정은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에 따로 학생의 인권이라고 규정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각종 기본권 또는 인권보장 내용 중 학생의 지위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교나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의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2002b), 국가인권위원회·울산대학교 법학연구센터(2008), 국가인권위원회(2007a) 등의 연구가 있다. 각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생 인권상황의 특징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2002b)의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의 학교생활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로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권과 관련해서 교사들은 입시와 학벌사회라는 제도적 조건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습내용과 교육방법을 결정하게 되고 성적 향상이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이라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치권과 관련해서는 명목상의 자치활동일 뿐,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치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생활보호를 학생인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두발, 복장 등)는 학생과 교사(혹은 학교당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생활을 중요한 인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밀학급에서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을 학생지도의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 성공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 가능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체벌에 관해서는 상당수의 교사들이 교육수단으로서 최선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체벌에 의존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체벌을 인권침해라기보다는 교육의 수단으로 여겼다. 적법절차 및 징계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은 학생들 자신이 징계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가 교사들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징계규정 자체가 학생선도라는 합목적성을 지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절차적 정의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의 학생참여와 관련해서 교사들은 주요한 학사운영의 의결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울산대학교 법학연구센터(2008)가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은 8%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으나, 학부모 80%와 교사 51%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대답이 더 많았다. 학생인권법 안에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 한 가지를 고르라는 질문에는 학생은 69%가 두발 자유화를, 학부모는 77%가 체벌 금지를, 교사는 46%가 학생회의 법제화를 들어, 각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권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본교에서 가장 침해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인권 분야로는 학생 중 50%와 학부모의 57%는 두발 규제를, 교사는 40%가 체벌을 지적했고, 타 학교보다 앞서가는 인권 분야로는 학생은 39%가 학생회 의견 반영을, 학부모 중 57%와 교사의 57%는 두발자유화를 들었다. 학교에서의 학생 개인 인권에 대한 체감은 학생은 50%가 가끔 침해당한다고, 학부모는 53%가 보통이라고, 교사는 43%가 존중받는 편이라고 대답하여, 학생들은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이 더 높았다.

어디에서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학생의 67%와 학부모 60%는 학교라고 대답한 반면, 교사는 46%가 기타라고 응답하여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대해 교사들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학생의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가에 대해서도 학생 중 69%, 학부모 중 53%는 교사라고 답한 반면, 교사는 57%가 기타라고 응답하여, 이 점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과는 달리,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두발 상태에 대해서는 학생은 67%가 더 자유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학부모 중 83%와 교사의 63%는 너무 길다고 응답했다. 교복에 대해서는 학생 중 50%와 교사의 60%는 지금보다 자유스러웠으면 한다고 답했으나, 학부모는 57%가 꼭 입혀야 한다

고 답했다.

학교 수업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학생들은 44%가 모른다고 답했고, 학부모는 80%가 없다고 답한 반면, 교사는 80%가 있다고 답하여 학생 및 학부모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로는 학생은 학생회를 통한 제안,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제안이라고 응답한 반면, 교사는 97%가 평소 학교생활에서 학생의견 존중하기라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인권 신장과 교사의 교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생 중 39%와 학부모의 63%는 상충관계라고 답한 반면, 교사는 60%가 상생관계라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2007a)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교생활규칙, 체벌, 건강권, 교사와 학생의 인권인식 차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56%가 어렵듯이 알고 있다고 응답,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응답이 48%), 학교생활규칙의 비민주적 제·개정 절차와 개정 규칙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36%만 학급회 및 학생회와 협의한다고 응답했고, 의견수렴 방법을 잘 모른다는 학생도 18%로 나타났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 의견개진은 매우 저조하여 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과반수가 언제 학교생활규칙이 개정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학교생활규칙들에 대한 준수 정도를 질문한 결과, 모든 영역을 막론하고 대부분 학생들은 절대 다수가 해당 규칙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응답하거나, 그런 규칙이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복장, 두발, 학생회 입후보자 성적제한 규정 등을 인권침해로 인식했다.

체벌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또는 교사들이 가장 많이 가하는 처벌은 훈계 혹은 잔소리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84%는 처벌을 받기 전에 충분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해, 왜 처벌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48%의 학생이 점심시간 내내 식사시간으로 사용가능하다고 답했지만, 학급, 학년별로 제한

한다는 응답도 이와 비슷하여,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점심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코드 검사에 대해서는 59%의 학생이 인권침해라고 응답했으며, 낡은 시설 문제, 냉난방 문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교사와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학생들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합리적인 징계절차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고, 교사들은 두발, 복장,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한 반응을 보였다. 학생 인권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학급당 인원수 과다를 들고, 학교 내 청소년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대책으로 학급당 인원수 감축을 주장했지만, 학생들은 제도마련, 학교 규칙의 자율적 제정,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제기하여, 교사와 학생 간에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인권실태 조사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대체로 학생들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과는 달리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그들이 학생인권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식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군인 분야 인권상황 실태

군인 분야의 장병 인권이란 ‘장병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2008a)이다. 장병 인권에는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전형적인 자유권(인간의 존엄, 평등권, 신체의 자유, 형벌 불소급,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과 사회권 내지 청구권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전에 관한 권리,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전형적인 자유권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2008a).

이러한 장병 인권 개념은 장병 기본권 개념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장병 기본권이란 학문적으로 헌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장되는 장병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므로, 비록 학문적으로 전형적인 장병 인권 범주에는 포함시킬 수 없더라도 헌법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예컨대, 정치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국가가 장병에게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2008a).

그 동안 군에서는 전보다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2006a)에 의하면, 고충처리제도 개선사례로서 화장실에 신고 전화기 설치, 대표병사 제도 및 병사자치위원회 설치를 들고 있으며, 사생활의 자유 보장 사례로는 각종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기 계발 여건 조성, 도서관 설치를, 친인권적 부대문화 형성사례로는 병 상호간 관등성명 폐지, 소수자 보호 문화 조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군대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2001년에서 200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현황을 살펴보면(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2008a), 2001년에는 58건, 2002년에는 52건, 2003년에는 73건, 2004년에는 60건, 2005년에는 65건, 2006년에는 64건, 2007년에는 80건으로, 총 452건의 진정사건인 것으로 나타나, 1년에 진정하는 사건의 수가 50-80건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정의 내용을 보면, 사인규명에 관한 것이 115건, 가혹행위에 관한 것이 88건, 의료권에 관한 것이 32건, 복무일반에 관한 것이 55건, 군교도소에 관한 것이 31건, 기타 군사와 관련된 것이 131건으로서, 그동안 사인규명과 가혹행위에 관한 진정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도별 추이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사인규명에 관한 진정은 크게 줄어든 반면, 가혹행위와 의료권, 복무일반에 관한 진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권 주제별로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2006b).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구

타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비율은 2002년(60%대)보다 2005년(10% 이내)에는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나, 언어폭력은 2004년(약 60%)보다 2005년에는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약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어폭력 문제가 아직도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목격한 후 바로 조치, 신고, 보고한다’는 응답은 10% 내외였으나, ‘일상적이기에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5%-43%, ‘못 본 척 하거나 참는다’는 응답이 약 40%-70% 가량으로 나타나, 신고나 보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로는 ‘보고, 신고해도 소용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약 20%-30%)과 ‘부당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약 16%-23%)이 가장 많았고, ‘보복이 걱정되어서’, ‘군기를 위해서’, 또는 ‘관행이므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약 10%-17%로 나타났다.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에 대한 병사와 간부 간의 인권의식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사는 ‘선임병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서’라고 대답했고, 간부는 ‘부대생활 부적응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병의 20%, 간부의 10%가 군기차원에서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병사는 고참병의 각성을, 간부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의식주 환경과 관련해서는 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병사가 56% 정도 되었으며,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맛이 없고 음식 재료의 질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피복과 보급품 지급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반응은 약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반 생활 중 불편한 점으로는 냉난방 시설의 부실과 사생활 보장이 되지 않는 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의료권과 관련해서는 의료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78%로 나타났다고, 의료권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나, 의료접근권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플 때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선임병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료, 처방, 치료 상의 문제점으로는 ‘정확성 문제’, ‘처방된 약의 품질 및 치료의 질 문

제'를 들었다.

권리의식 및 소원수리제도와 관련해서는, '군대에서 병사의 인권은 군대의 특성상 어느 정도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52%였고, '군대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인권문제에 동일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45%를 나타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다'는 응답(36%)보다 '없다'(64%)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나, 병사들의 권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소원수리제도를 이용하는 빈도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62%)이 '이용한다'(37%)는 대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원수리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기타(36%)와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30%)이 많은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해도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과 휴식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과거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일과 휴식 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휴무일에도 업무를 강요하며,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불필요한 사역에 동원된 경험이나 각종 공휴일에 사역에 동원된 경험에 대해서는 현역의 경우에는 '없다'는 반응이 더 많았으나, 예비역의 경우에는 '있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자유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높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자유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부대 내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는 곳으로는 PX 등 편의 시설과 기타 화장실, 연병장 등인 것으로 드러나,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군기 위반사고와 관련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형사 입건된 사고 수를 보면, 2003년에는 육군 156건, 해군 23건, 공군 13건(합계 192건)이고, 2004년에는 육군 184건, 해군 23건, 공군 10건(합계 217건), 2005년에는 육군 285건, 해군 18건, 공군 10건(합계 31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2008a).

간부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10% 이상이 자신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병사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도(5%)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업무강요와 사생활 침해가 일어난다고 답했으며, 그 경우에 60% 이상이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인권침해가 병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12%의 간부들은 자녀의 군복무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해, 간부의 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인권에 대한 간부의 인식으로는 간부의 50%가 병 인권수준이 양호하다고 인식했고, 70%가 소속부대의 인권수준이 양호하다고 인식했다. 징병제와 병간의 문제가 인권침해 원이라고 인식했고, 인권침해를 하는 이유를 부적응과 지시 불이행 때문이라고 인식했으며, 병사 인권에 대한 노력이 오히려 사고를 부추긴다고 응답했다. 간부의 35%가 지휘권과 인권이 상충된다고 인식했고, 50% 이상의 간부는 선임병사를 통해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군 인권현황에 대해서는 현역은 약 16%, 예비역은 약 42%, 장교는 약 5%, 부 사관은 약 4%가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아 장교나 부사관 보다는 현역 병사들이, 현역보다는 예비역들이 군 인권현황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2006a)는 장병들이 침해당하는 빈도수가 높은 인권항목으로서, 열악한 복무여건, 언어폭력, 인격모독, 병사의 사병화, 성폭력, 사적 체재, 임의적 징계 또는 처벌, 부당한 양정 및 양형, 군 사법기관의 인권침해, 신상명세 공개, 편지공개, 특정 종교 강요 및 종교생활 미보장, 부대배치 차별, 포상휴가 차별, 고충처리 과정의 어려움, 의료권, 일과 휴식의 권리, 봉급 문제를 들고 있다.

3) 노인 분야 인권상황 실태

국가인권위원회(2002c)의 연구용역사업보고서인 『무료 및 실비 노인요

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에서는 노인 요양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유권의 하위영역으로는 신체의 자유권(강제노동, 강제 격리),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시설 입소나 전원 결정에의 노인 참여, 입소 시 시설 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거주 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개인 정보 유출, 통신 수단에의 접근성,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 해소를 위한 공식적 절차 사용),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수입 및 재산의 사용, 개인물건을 가져올 권리, 시설의 각종 활동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결정권, 시설의 종교 활동 참여여부 결정권)이 포함된다.

사회권의 하위영역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식사 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 깨끗한 의복과 침구류 제공, 목욕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 충분한 수발 서비스 제공, 충분한 상담 서비스 제공, 투명한 시설 운영을 통한 서비스 수준 유지), 정서적 지원(노인의 자긍심 유지를 위한 언어표현,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신체 중요 부위를 가리고 옷을 벗기고 입힘, 노인들 간의 통합), 방임(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 자기 방임(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인의 거부)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2c)의 연구용역사업보고서인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과 면담과 시설 방문을 통해 요양시설에서의 거주노인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조사하였다. 전국의 11개 요양시설에서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판별조사)과 인터뷰를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시설 입소 이후 현재의 종교와 시설 입소이전의 종교,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여부를 물었을 때, 입소 전후의 종교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68.2%, 변화가 있는 경우가 31.8%로 시설 입소 후에 자의이든 타의이든 종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행사 참여여부의 강제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대해 강요가 아니라는 답변이 54.9%, 강요가 있었다는 답변이 35.9%로 나타났다.

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는 강제 노역과 관련하여 주방일이나 부업 등을 강요받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3.6%가 강요를 받고 있고, 3.9%가 목격했다고 답변했다. 요양시설의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강제노역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소수의 노인들은 원치 않는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노인들이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6.0%가 시설 직원으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적이 있으며, 9.0%가 다른 노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노인들 간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를 경험한 노인이 17%, 목격한 노인은 39.6%로 나타나 시설에서의 노인들 간의 폭력은 직원에 의한 폭력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중에도 사소한 다툼 외에도 동료 노인들로부터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노인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활동에 대한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시설 거주 노인들의 경로 연금이나 교통비 지급 등 수입에 대한 관리에 있어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대답이 13.5%, 본인의 요청으로 시설에서 관리해주는 경우가 8.3%,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69.6%, 기타 해당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관리하는 등의 경우가 8.6%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많은 경우에는 시설 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찾아서 본인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 횡령이나 부적절한 관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의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인이 아플 경우 간호사 또는 직원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경우는 84.1%,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노인은 15.9%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상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상담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노인이 26.4%, 그렇지 않은 노인이 73.6%로 대다수의 노인들은 정기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주노인 중 상당수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더라도 와상상태이거나 거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계적인 상담을 하기에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 기인한다.

목욕 서비스와 관련하여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동의 없이 옷을 벗겨 수치스러운 적이 있냐는 질문에 4.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11.2%는 목격했다고 대답했다. 이는 요양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 옷을 벗기거나 갈아입힐 때 가려주거나 물어보는 등의 배려가 다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하루에 한 번도 직원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26.6%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23.1%가 목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종교 강요, 강제노역, 재정권(수입), 직원에 의한 폭행, 노인간 폭행, 간호조치, 상담, 목욕 시 배려 방임 등의 요소들 중에서 인권침해 빈도를 비교해 볼 때,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노인 간의 폭언, 폭행과 종교에의 강요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노인에 대한 방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국가인권위원회(2002c)에서 실시한 인터뷰 사례에서 추가로 확인된 인권 실태는 다음과 같다.

입소와 전원과 관련해서는 무료시설의 경우 행정 관서를 찾아가서 입소를 요청하거나 연고자가 입소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의 시설 입소에는 노인의 참여가 이루어지지만 입소할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비시설의 경우, 가족의 요청에 의해 입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설에서의 빠른 적응을 위해 노인으로부터 시설 입소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입소 시 시설 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소 시 무료시설 노인들은 거의 가져올 만한 물건들이 없고, 실비시설의 경우에도 개인 물건 소지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요양시설에서는 개인물건을 가져올 권리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통신수단에의 접근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시설 거주노인 중 다수는 연락을 긴밀히 주고받을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과의 밀접한 접촉은 빈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식생활과 관련해서는 식사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식사서비스의 개별화가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식사의 양과 질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는 있으나, 공동생활에서 노인 개인의 기호에 따른 식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가 안 되는 노인을 위해 죽은 잘 제공되고 있으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노인에 대한 특별식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에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는 선택권 박탈과 옷을 공유하는 경우였다. 개인 돈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옷을 선택할 수 없고, 세탁서비스를 받는 경우 옷의 소유주가 구분되지 않아서 공유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거주면적과 외부공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주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사생활 확보가 어려운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신체적인 능력의 저하를 예방하고 저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적절한 신체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적절한 활동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자유로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언어 표현과 관련해서 노인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을 보호하는 직원들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지만 보호를 받는 노인에게 비해 젊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직원 중 친근감을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는 경우가 있고 실제 노인들은 그런 반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4) 정신장애 분야 인권상황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정신요양협회(2007)의 『사회복지분야(정신요양시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연수교재』의 내용에 따라 정신장애 분야 인권상황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이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며, 치료 이후에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 목표를 목적으로 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 하며,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고, 가능한 한 자유로운 입원환경이 보장되며, 타인과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경우 질병이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사회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며, 스스로에게 병식이 결여된 경우가 많아서 입·퇴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치료과정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절히 치료하고 보호한다는 이유나 그들의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진정내용에 대한 2006년 6월말 통계에 의하면 전체 진정내용(1126건) 중에서 입원문제가 24.5%로 가장 높았고, 가혹행위가 17.7%로 다음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치료문제가 15.8, 퇴원이 15.4, 사생활 침해가 11.6%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생활 문제는 9.1%, 환자권리침해는 2.4%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자발적 입원제도이다. 현행 정신보건법의 대표적인 비자발적 입원제도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정신보건법 제24조)는 오로지 보호의무자와 정신과 전문의의 결정에 따라서 비자발적 입원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 장애인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7.7%에 불과하고, 나머지 92.3%의 환자들은 보호의무자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환자일 정도로 입원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국가인권위원회·한국정신요양협회, 2007).

2003년 인권실태에 대한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03b)에서도 환자들은

자신의 입원 과정이 강제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답한 경우보다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입원 과정에서도 응답자 134명 중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는 22명, 환자의 동의하에 입원한 경우는 6명인 반면, 경찰, 병원차, 수감, 신고, 폭력 등 입원과정에 강제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자는 84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였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의입원을 하는 경우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입원과정에서 강제성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히 나타난다.

입원일수가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평균 160일(국립 102일, 사립 271일), 정신요양시설 2630일로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가 56.2%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약 25일), 영국(52일), 프랑스(35.7일), 이탈리아(13.4일)에서의 평균 입원일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계속입원심사의 경우 2004년에는 약 76,000건 중에서 74,000건이 계속 입원되어 2.2%만 퇴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79,181건 중 2,113건에 대해 퇴원명령이 내려져 2.7%만이 퇴원하였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에서의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입원 및 입소 중인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삶 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국가인권위원회·한국정신요양협회, 2007).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례 중 하나는 부당한 강박이다. 2007년 **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100여 시간 연속 강박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보도된 바 있다.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강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신보건법은 격리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제46조) 강박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 동의 없는 강박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인 <격리 및 강박 지침>(2003)에 따라 관행적으로 강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국가인권위원회·한국정신요양협회, 2007).

2003년에 실시된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3b)의 결과를 볼 때,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환자들의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만족72.7%, 불만족 24/5%), 침상 및 생활공간의 만족도(만족 39.8%, 보통21.1%, 불만족 17.7%),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 만족도(만족 79.7%, 불만족 15.6%). 위생 및 세면 시설 만족도(만족 83.1%, 불만족 14.4%), 침구나 환의 및 의복생활(만족 84.4%, 불만족 11.1%) 등으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면회 만족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만족 71.8%, 불만족 16.8%), 면회의 원활성과 사생활 보장 차원에서 불만을 가진 경우가 있었으며 시설의 개입 없는 독립적인 면회보장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수단인 통신권 사용에 대해서는 통신권의 제한, 외부와의 통신 과정에 시설의 개입이 있는 것 등으로 인해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만족 58.2%, 불만족 24.8%).

노동권 및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강제노역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관리상의 이유로 환자 본인이 아니라 직원이나 사무실에서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로 입출금이 행해지고는 있으나 환자들이 그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지를 통한 수당관리 평균점수가 다른 부분에 비해 낮은 수치로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이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시설 아동 분야 인권상황 실태

시설 아동 분야의 인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국가인권위의 인권실태조사 연구와 각종 연구보고서를 참고로 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문헌 조사를 해본 결과, 아동보호 시설의 생활환경이 일반가정에 비해 열악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정서적 불안정, 애정 결핍 등으로 학업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정숙, 1999; 하승민, 2002). 또 시설퇴소 후 자립지원 부족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었다. 특히, 아동권

리협약에 의한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중 특히 참여권 보장이 취약하고 시설의 아동권리보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이용교 외, 2005).

시설보호아동의 주요 인권문제는 현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 퇴소 과정에서의 아동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의식주 등 시설 내 생활환경의 열악함,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된 환경과 낙인,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학대, 성폭력, 폭행, 강제노력, 학대, 종교 강요 등의 인권침해, 권리구제수단과 의사표현기회의 부족 등의 인권침해 상황 등이 있을 수 있다.

입, 퇴소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을 때 보호조치의 하나로 아동을 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시설입소 여부와 시설선택의 과정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입, 퇴소 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의나 불만, 권리 침해 시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시설수용 이후 문제를 호소하거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 사업법은 생활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문제를 가진 이용자에 대한 보호수단도 결여되어 있어 유명무실하다.

매년 수백 명에서 1천명 이상 발생하는 미아는 발견 후 경찰서에서 지역의 아동복지시설로 인계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신고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아동을 인계받은 시설은 아동의 사진 등 발견 당시의 특징을 인터넷에 즉시 공개해 가족을 찾도록 해야 하지만 미인가 시설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정부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아동을 잃은 부모가 전국의 시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입소 아동들을 확인하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정부 등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미아를 기

아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에게 시설 아동의 정보 공개마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김은숙 외, 2004). 최근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을 수용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고 수용하는데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시설의 의식주 및 시설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생활환경에 대해 대규모 법인시설 아동은 25%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함철호 외, 1997), 아동보호시설의 대부분에서 방 하나를 5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시립시설의 경우, 1970년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 건물이나 병원과 같은 형태의 복도형으로 길게 늘어진 방 하나에 20명 이상의 아동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아동 대부분이 개인용 컴퓨터와 책상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전화기 등의 통신수단의 사용조차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수용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보편적인 주거환경이 아닌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분리적 환경에 따른 낙인, 위축감, 사회성 결여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대전의 시설실태 조사결과, 시설의 지리적 위치는 15.4%가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주택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생활아동이 지역의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유로운 출입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시설수용 아동에게는 정서적인 박탈감, 사회성의 부족, 학습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한 교육권의 침해, 개인정보 보호 상의 문제 등이 있다. 입양과 가정위탁이 더욱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의료적 방치, 정신 병원에의 장기수용, 교육권의 침해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나 이 역시 실태 파악이 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시설 내 성폭력과 폭행, 학대 등은 OO복지재단, OO복지재단, OO복지원, OO사 등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시설 내 인권침해가 구조적이고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 시설의 종사자가 부족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아동은 적절한 지원과 정서적 유대를 맺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미신고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장 1인 또는 원장 가족과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만 운영되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시설 장애인 분야 인권상황 실태

시설 장애인 분야의 장애인 인권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일환으로 양성화된 조건부신고 장애인 생활시설 22곳에 대한 실태조사(남구현 외 2005)와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의 현황과 대안’(백은령, 임성만, 2006) 연구 등 각종 보고서와 문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정리해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인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06c).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 퇴소에 관해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의 자유부터 제약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 ‘장애로 인하여’(30.0%), ‘가족 내 부담되기 싫어서’(19.2%),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10.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만큼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살아갈 만한 적절한 지원체계가 없어서 시설로 입소했다는 말이다. 또한 시설입소 결정을 본인이 했다는 응답(22.1%)보다는 ‘강제적으로 들어왔다’(18.0%), ‘주변사람 강요로 들어왔다’(35.0%)는 응답이 훨씬 더 높았다. 결국,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생존권 보장의 출발은 의식주 보장 및 의료,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먼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식생활 보장이라 함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식단 및 간식에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실태 결과자료에 따르면, ‘식사 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33.3%만이 그렇다고 대답해(남구현 외, 2005), 개인의 기호와 상관없이 식단이 정해지는 것으로 선택권이 제한적이었다. 장애인의 주거생활 보장도 열악한 숙소환경이나 관리만을 위한 주거환경인 곳도 있다. 일상적으로 사람이 기거하기는 하나 개인 사물함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런 가구 하나 없는 방이나, 신변처리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방바닥과 사방 벽면이 타일로 만들

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한 방 안에 몇 십 명씩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는 대형 숙소 등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2005).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남구현 외(2005)의 조사에서는 ‘정기적 건강검진과 아플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았다’는 응답이 17.6%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보장구 소유 및 사용 실태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가 있는 경우는 절반에 달하며, 시설 내 전동휠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들이 시설에서의 생활과정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1999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한 ‘한국 장애인 인권백서’에서는 각종 사회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설 내에서는 전체 중 22.9%가 장애인을 순종시키기 위해 식사를 제한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실무자들의 면담결과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존엄성은 시설을 찾아오는 봉사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권 현장에서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장애인 시설인 경우, 개별 휴대폰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높아지고 정보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부 시설의 경우 공중전화도 없고, 생활인 숙소에도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1대뿐이고 그마저도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c).

또한 폭행과 학대와 관련하여, 시설은 언론매체에서 인권유린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극히 일부분의 시설에서만 폭행과 학대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남구현 외, 2005), 직접 폭력이나 폭행을 당한 이용자가 32.8%에 이르고 있고, 직, 간접적으로 폭행상황을 목격한 경우도 9.8%이다. 한편, 많은 폭력의 형태는 신체적 폭력, 폭언, 굶김 순이었다. 또한 장애인의 폭력 형태 중 ‘성폭력’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자기방어력과 대처능력이 미흡한 장애인들은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에 대해 취약한 상태이다. 여러 사태를 보더라도 장애인들의 성폭행 사례와 그 문제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남구현 외, 2005).

장애인 시설에서의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집단생활하는 생활시설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이유로 개인의 사적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은 용인될 수는 없다. 일부시설에서 일괄적인 머리보양을 하여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생활인의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입금되고 있으나 통장 소유자인 당사자의 개별적 욕구나 의사에 의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통장의 입출금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개인 물품의 소유와 관리의 경우 개인 사생활 공간이 거의 없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기를 돌볼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사례도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b). 특히, 개인의 신분증에 대한 자기관리와 관련하여 미신고시설 생활인의 경우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18%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시설에서 보관하는 것이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종교계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헌법상 종교의 자유만을 주장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이 이제는 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사유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 문제에 있어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종교적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의 가족권은 그들의 원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 원가족과의 교류, 장애인 스스로 결혼과 출산 및 육아를 통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가족권이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만

나지 말라고 하거나, ‘가족모임 자체가 없어서’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도 있고, ‘가족이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례도 있다. 이에 장애인권리협은 일반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장애가족의 인식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생활시설의 경우 특수학교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적절히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시설이나 미신고 시설의 경우 연령과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5년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 입소 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응답이 82.4%에 이르렀으며, 초·중·고 정규교육은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6%, 직업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불과 4.2%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권과 경제권에 관해서는 대부분 인가된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직업 활동을 통한 임금수입에 있어 개별통장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교육과 관리방법을 시설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들은 아무런 직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심할 경우 강제노역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남구현 외(2005)의 조건부 신고시설 생활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 활동이 없는 장애인이 73.2%에 이르고 있었다. 또 어떤 형태의 직업 활동이건 이를 통해 임금을 받고 자유롭게 관리한다는 응답은 3.4%에 지나지 않았고, 심지어 임금이 없다는 경우도 69%에 이르렀다. 개인 통장의 일정 금액이 결연후원금이나 작업 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으나, 당사자의 욕구나 의사에 따라 사용되지 않고 있고 자신의 통장의 수입, 지출내역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조건부 신고시설 생활인의 경제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제한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5a)의 미신고 시설 생활인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된 일정, 후보자 신상, 공약사항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123명 중 40.8%가 어떤 정보도 얻지 못했으며, 30.6%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대략의 정보를 얻는다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들의 선거 참여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었다.

7) 경찰 분야 인권상황 실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가의 의무는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실현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의무에서 경찰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 인권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입법적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7c). 다양한 범죄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경찰의 의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인권실현의 의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의무이다. 경찰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의무에 대해 관심이 멀었으나 최근 지역사회경찰활동 등을 통해 주민의 경찰활동과정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찰 내부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지금까지 경찰은 인권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2007c)에 따르면, 경찰은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자문·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 예로 경찰청 수사국 내에 설치된 인권보호센터와 2005년에 신설된 인권수호위원회, 시민인권보호단을 들 수 있다. 또한 2005월에 시행된 ‘1004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2005년 10월에는 ‘인권보호 직무규칙’이 개정되었다.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전체 경찰관서에 대한 인권진단이 실시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인권경찰비전’ 선포, 인권마라톤대회 개최, 인권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 유치인,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시책의 확대, 경찰관 평가에서의 가산점제 폐지,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불구속 수사비율의 증가 등 인권시책이 증가하고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유치장 설계기준을 개정(폐쇄형화장실 의무화 등)하였고, 보호유치실 신설, 외국인방 운영 등 유치환경을 개선하여 유치인의 인

권을 높이려 하였다. 또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2006년 12월에 전국단위로 설치하였다.

과거에는 경찰에게 있어서 인권의 문제는 수사상의 어려움을 불러오는 문제적 요인이라는 의식이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c). 그 이유는 첫째, 법절차에 따르면 수사가 더 난해해질 수 있어 인권보다는 사건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구금과 자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사의 특성상 강제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둘째, 피해자를 수사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이들을 일률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 셋째, 사건관계인의 신분노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보호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실상 유죄인이 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넷째, 판결 전까지는 유치인을 무죄인으로 취급해야 함에도 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 내부의 인권인식이 성장한 지금도 이러한 인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수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사례는 내사·불심검문·고소 고발사건 접수 등의 수사관의 범죄발견 활동, 수사의 필요성·수사의 상당성·수사 등의 실행과 관련된 수사의 조건, 즉 미란다수사·영장 없는 압수수사·체포 등의 강제수사이다(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경찰청, 2008c).

내사는 수사절차를 개시하기 전 범죄혐의의 유무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절차 중의 하나이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피내사자를 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한 후 내사종결처분이나 입건유예처분으로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내사단계에서는 강제처분을 당연한 내사 수단으로 여기고 법률에 없다는 이유로 피내사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려 한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불심검문은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으로 언제든 착수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거동불심자에 한해 검문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모든 통행자에게 일괄적으로 검문을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도로교

통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검문, 범죄예방목적의 경계검문, 긴급수배검문은 수사규정에 따라 허용한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고소·고발사건은 접수가 되는 순간 범죄여부와 관련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대상이며,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담이 큰 경우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경우 형식상의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고소고발장을 진정으로 격하하여 내사사건으로 취급하는 등 그 처리방식을 변경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기관의 재량으로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일정한 조건이 만족된 수사이다. 이러한 수사의 조건 중의 하나가 수사의 필요성이다. 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며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 혐의의 인지와 소송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인지부분이 주관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자의적 개시가 발발할 수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혐의가 주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수사의 상당성이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수사의 수단이 목적에 상단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의자의 인권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의 문제는 수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예가 범죄현장 활동이다. 범죄현장은 증거의 집합소로써 현장보존이 중요한데 반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구호활동과 증거물 훼손이라는 문제가 상충하는 장소이다. 증거의 보호냐 피해자·목격자 인권의 보호냐의 문제에서 시민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수사에 집중하다 보면 인권이 위면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과학수사의 경우 과학적 증거의 채취와 검사로 얻은 물적 증거가 사건해결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지만 증거를 얻는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탐문수사는 범인 이외의 3자로부터 범인을 발견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자 행하는 수사기법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수사기법 중의 하나이지만 주거침입의 문제, 용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누설로 인한 사생활 침해 시

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가장 높은 수사유형이 피의자 신문이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일어났다. 현재 현행법에는 피의자의 다양한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만 출석요구의 방식이나 진술거부권의 고지절차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계구사용의 문제, 신문 시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영상녹화제도도 녹화 전에 피의자에게 녹화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신문의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하지만, 몰래하거나 참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화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외에 변호인의 신문과정에서의 참여가 거부되는 등의 침해사례가 보인다.

체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영장 없이도 사인에 의한 체포가 가능하지만 긴급체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법관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사관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압수·수색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지만 긴급한 수사일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압수수색은 신체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지만 주거의 평온 등을 해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사상 도주방지와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치장이라고 할지라도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피의자의 심리적 초조감 등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교정공무원 분야 인권상황 실태

구금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며 원인(유발요인)도 각기 다르다(국가인권위원회, 2003c). 구금시설은 외부와의 단절, 통제와 감시라는 시설 특징상 징벌, 물리력행사, 차별대우, 적절한 처우의

부재, 예산부족과 과밀수용 등의 열악한 환경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난다. 그로 인해, 법집행의 강제력이 가장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곳이며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장소로 거론되기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d). 실제로, 2001년 11월부터 2008년 8월 사이의 인권침해 관련 접수 현황을 보면 구금시설 내에서의 접수현황은 전체 기관 중 가장 높은 11,186건으로 최저인 입법기관 관련 접수현황(25건)에 비해 400배가 넘는 진정이 접수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c). 물론, 사건의 원인과 결과, 전후사정을 접수된 진정의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인권침해의 사실여부를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인권과 관련된 구금시설의 현실적 상황이 타기관보다 열악한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근원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크게 인간과 시설의 문제에 기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3c)는 인권침해의 유형별 원인을 ① 수용자와 교도관,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의 갈등, ② 교도관의 잘못된 관행 등 인권의식의 미비, ③ 불법, 탈법적 관행, ④ 법무부의 부적절한 지침이나 훈령, ⑤ 법령의 인권보장의 미흡성의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자료에 따르면, 교도관의 계구사용의 남용과 과도한 징벌의 부과가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 외에 외부교통, 진료제한, 차별, 권리구제의 어려움 등이 침해사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수용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존재한다.

인권침해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수용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그 헌법적 기본권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그 제한원리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권보장과 교정처우가 개념적으로 구별되지 않은 채로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교정처우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이호중, 2003)는 사실도 돌아봐야 한다. 이호중은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교정처우로 다루어지는 일상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에 기초를 둔과 동시에 수용자의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한 교정처우와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수용자의 기본권보장은 법적으로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했

다.

수용자는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 객체이다. 이들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불법·부당한 처벌로부터의 자유권, 신앙·사상·양심의 자유, 외부와의 교통권, 처우 받을 권리 및 거부할 권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들이 누려야할 권리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권리에 맞는 의무도 가지고 있다. 구금 등에 대한 수인의무, 교정처우를 받을 의무, 긴급석방 시 출석의무, 청소·정돈 등 청결의무, 교정목적상 또는 공공영조물이용관계의 질서유지상 작위나 부작위명령과 강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조승래, 2006).

전준형(2005)은 인권침해의 원인이 구금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칭한 교도소의 명칭은 교정시설이지만, 이것을 보는 입장에 따라 감옥이나 교정시설의 형태로 그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는 구금시설이 수용자를 치료하고 교화시켜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노력보다는 처벌, 사회로부터의 추방과 관리를 위한 통제적 시스템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수용자를 일반인과는 다른 범죄자, 죄수로 구분하는 양태로 본질적으로 인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는 인간으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논쟁거리였던 많은 문제들도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다. 구금시설 내에 진정함이 설치되고, 진정서를 교정공무원이 열람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면전 진정 시 청취감사를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제31조)은 외부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용자들이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한 방안이 되었다(이호중, 2006). 이런 노력으로 공무원의 욕설과 반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부터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 사슬과 가축수갑의 폐지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생겼다. 또한 수용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다양한 구제제도가 존재한다. ombudsman제도, 재소자불평처리위원회, 중재, 시민전문위원, 청원제도, 면접제도, 사법적 통제, 소송 등의 사법적, 비사법적 권리구제 제도가 만들어졌고 시행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고지의무, 순회점검과 시찰, 청원, 소장면담, 행정심판, 감

사원의 심사청구와 직무감찰제도에 의한 구제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정 등을 통한 권리구제 등 수용자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현존하고 있다(조승래, 2006).

그러나 제도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여전히 과밀수용, 냉난방시설의 미비, 위생·의료상의 문제가 있고 비인격적 대우, 수용자 사이의 부정,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문제시되고 있다(남재성, 2007).

이런 이유들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그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영역별로 살펴보는 것도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 구금시설 내의 인권문제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주 거론되는 문제들은 크게 대여섯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진다(국가인권위원회, 2002e). 이것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과의 인터뷰 중 발견한 수용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침해의 최대의 쟁점은 시설 내의 좁은 공간과 의료시설이었다. 이런 인권침해 쟁점들을 종합하면 첫째, 의료 인력의 부족과 의료시설과 장비의 열악함에 의한 침해이다. 소수의 의료진이 다수의 수용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약제의 공급, 구급 시 즉각적인 진료의 제공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번째는 열악한 환경이다. 공간에 맞지 않는 인원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로 시설과 예산 부족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세 번째는 물리력 사용이다. 시설관리자는 수용자에 대한 물리력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다. 이들 관리자들은 계구의 사용, 강제력 행사, 무기 사용이 허가된 관리집단이다. 문제는 권리의 남용에 있다. 주어진 권리가 폐쇄된 공간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단순한 통제인가 질서유지인가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네 번째는 징벌이다. 징벌의 부과 역시 관리자들의 법적 권리 중의 하나이다. 수용자의 건강, 잘못의 경중을 고려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징벌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것 또한 남용되면 인권침해의 전형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외부교통과 권리구제 수단으로 수용자는 기본적으로

로 장소이전의 자유가 박탈되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교제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외부와의 교류를 위한 서신발송, 도서·신문 반입, 텔레비전 시청에 관해 규정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집필, 변호인 접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권리도 보호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위생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문제가 대두된다.

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인권상황 실태

행정은 공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운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 관료제에서의 조직 및 공무원 활동을 일컫는다. 곧,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사람이나 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효율성’, ‘경제성’을 강조하게 된다.

반면,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효율성이나 경제성과 ‘인권보호’와의 균형적 시각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강조하는 행정은 과연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가?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국정 목표 실현’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곧, 행정의 궁극적인 과제가 ‘국정 목표의 실현’인데, 그 국정 목표에 바로 인권 보호와 실행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국정 목표를 가장 간단하면서도 뚜렷하게 보여주는 헌법에 잘 나타나 있다. 한 마디로, 국민의 안위를 지켜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며 임무이다. 특히, 헌법 제 10조는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인간으로서 편히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할 때 궁극적인 국정 목표는 국민들의 공공복리 증대를 지향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미명 하에 개인의 삶을 무시하고 구속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공복리가 될 수 없다. 행정의 1차적인 임무가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정과 ‘인권 실천’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효율적인 행정 운용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상벌을 준다.

행정과 ‘인권 실천’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효율적인 행정 운용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상벌을 준다. 그러나 행정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인권중시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이 많이 있다. 인간 평등을 전제로 하는 인권보호의 기본정신은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실천 등이 행정의 중심적 척도가 되기를 강조한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다른 의미의 소수자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행정의 효율성과 인권 실천 향상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우선, 행정의 임무가 국정 목표의 달성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정 목표의 핵심내용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면, 그에 부합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거나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인식의 문제이다. 국가의 임무를 ‘경제성장 우선주의’ 입장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다. 국정 목표가 국가 번영과 이익이라면서 개인의 권익을 무시하거나 희생해도 좋다고 보면 개인의 보호와 권익 신장을 위한 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경험의 문제이다. 오랫동안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개인의 권익을 무시해온 국가 중심의 통치 경험 탓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힘들다. 세계사적으로 인권 의식이나 민권 사상이 확산될 시기에 우리

는 식민지 지배나 독재 통치체제 하에 있었다. 이러한 역사 과정에서 국가 기관의 행정 운용은 국민의 기본 인권을 무시하고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인식과 경험은 서로 얽혀 있는 문제였다.

모든 정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인권과 무관한 정책은 있을 수 없지만, 정책의 성격에 따라 인권의 관련성 정도가 크게 다르다.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하여도 국가 정책이 인권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인권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human rights oriented thinking)이다. 만약 인권 관점에서 생각하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인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의 고객은 국민이다.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인식은 널리 확산되어 있다. 더 나아가 요즘에는 고객의 요구에 어떻게 맞춤 서비스를 잘하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인간으로서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공무원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이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고 다양해짐에 따라 공무원의 대민 관계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은 다수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소수의 요구를 소홀히 다루거나 심지어 무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일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집단은 대체로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들이다. 결국 행정 처리 과정에서 공평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생기게 된다.

인권은 성격상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각별히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 보장하는 인권은 최소 수준의 인권이라면, 행정은 최대의 인권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들 사이의 인권 문제는 관료제라는 조직의 특성과 연계되어 생겨나는 것이다. 정부 조직체는 전형적인 관료제이다. 행정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위계질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명령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 과정은 불가피하게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비록 행정 체계 속에서 위계질서가 요구되고, 역할의 중요성은 불평등하지만, 그것이 구성원의 기본 인권이 불평등하거나 인권 침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끼리의 인권 실행의 핵심은 아무리 위계질서가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인권은 인권 침해가 일어난 뒤 도와주고 대책을 강구하는 사후 구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중심의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미리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도입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을 보면, 애초 의도는 전자정부 출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정책 수립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효율성, 업무환경개선을 목표로 정책이 입안되었지만, 정책 내용에 담겨있는 반인권적 요소 탓으로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이 정책이 인권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파악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면, 사회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결국 행정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인권의 관련성 여부, 또는 인권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은 인권 문제의 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모든 정책을 인권 문제의 인지 아래 평가하고 집행한다면 우리 사회의 인권 실천 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3d).

3. 공공분야에서의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1) 교사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학생 인권 침해 중 차별이 가장 큰 문제이며, 학생들은 학교폭력,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전자명찰과 지문인식기 및 CCTV를 통한 정보인권침해 및 사생활 침해,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07a)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 침해는 두발, 복장, 용의, 강제보충수업, 소지품 검사, 차별, 가정배경, 성별, 성적, 외모에 따른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매체를 통한 표현 참여의 제한, 사상·양심·종교의 제한, 자치활동 및 외부 집회 참여 제한, 폭력이나 차별로 인한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부당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보호권,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빈곤층 및 소외 학생들의 복지권, 정당하게 일할 권리 등에서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7a)는 언론자료에 보도된 학교 내 인권관련 주요 이슈로는 학교 성폭력, 교육적 차별에 법적 제도적 논란, 운동부 차별에 대한 진단, 차별의 교육적 효과와 인권, 보충수업 관련, 급식비 및 급식사고 관련, 가정환경 조사 시 인권침해, 성적 차별, 성차별 및 탈의실 관련 문제, 용의복장의 지나친 규제, 학생인권법 관련 및 정치권 동향, 스쿨폴리스 도입 관련, 집단 괴롭힘 관련 문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통합교육),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문제, 이주노동자 자녀의 학습권, 일기검사 및 소지품 검사 관련, NEIS 관련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교육환경 및 학습권 침해 관련, 전자명찰 도입 관련, 생리 결석제 도입 관련, 두발규정 및 강제이발, 학생회의 독립성 및 학생회칙 문제, CCTV 설치에 관한 논란, 학교 내 폭력서클 관련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인권위원회·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2008)의 교원인권감수성 향상과

정 자료에 의하면, 중요한 인권 주제로는 학생들의 건강권, 정서함양권, 기본적인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 및 지식 등 인간경험을 배울 권리, 신체의 자유, 옷을 골라서 입을 권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인격적 존제로 존중받을 권리를 들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잘못된 교육철학(경쟁주의), 입시문화(0교시 수업, 사교육, 야간강제학습), 군사문화(획일주의 - 교복, 신발, 두발 등에 대한 강제), 인격권 무시, 조희문화, 인사문화, 줄 세우기 문화 등, 교사와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 폭력문화(체벌, 폭언, 심리적 압박 등), 반장문화, 완장문화, 유교문화(충효사상의 강제, 군사부일체 논리, 가부장문화 등), 서열주의, 학생 상담기능의 부재, 학칙 및 선도규정의 문제(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부재)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학생 인권 주제의 모든 내용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년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교사와 함께 하는 인권교육’에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15가지 학생 인권 목록과 침해 사례로 정리되어 있다. 15가지 인권 목록은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차별금지, 교육에 대한 권리, 학생 자치와 참여권,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접근권,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권리를 지킬 권리를 들고 있다. 그 내용 중 특징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정당성을 잃은 학교규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교사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일방적으로 교칙을 제·개정하는 경우, 학생에게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한 교칙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공개 요구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 강요된 교육활동: 강제 보충, 강제 자습 등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수업 강요, 학생 자신이 아니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서 빠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 언어폭력: “네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등 학생의 인격이나 잠재력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 “너희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등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형태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경우

(2) 차별금지

-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차별: 학생회 임원 자격 규정에 성적, 징계 유무, 학년 구분, 성별, 종교 등의 차별 규정을 두는 경우, 시설 개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특정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예) 학생은 중앙현관 출입 금지, 운동부가 아닌 일반 학생은 체육관 사용 금지 등의 규정을 두는 경우
- 성적 차별: 기숙사 입사 조건에 성적 제한 규정을 두거나 성적에 따라 기숙사 방을 배정하는 경우, 신입생 반 편성고사에서 최고득점자에게 입학 선서를 시키는 등 성적우수자를 우대하는 경우
- 성별 차별: 여학생은 두발 길이 자유인데 반해 남학생에게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성에 불리한 규정을 달리 두는 경우
- 학년 또는 나이에 따른 차별: 급식 순서를 정할 때 늘 고학년 먼저 먹도록 하는 경우, 하급학년에 상급학년 교실 근처에서 떠든다는 이유만으로 벌을 주거나 혼내는 경우
- 빈곤학생에 대한 차별: 급식 지원 대상임을 공개하는 경우, 교내 방송, 칠판에 이름 적기, 급식 바코드 설치, 담임의 호명 등 급식비 미납자를 함부로 공개시키는 경우
-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교사의 교육내용, 학교의 행사 내용 등에서 특정 가족형태만을 예시로 제시하는 경우. 예) 어버이날에 ‘엄마아빠 발 씻어드리기’와 같은 숙제를 내주는 경우
- 가출학생에 대한 차별: 가출의 원인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집으로 돌려

보내는 데 급급해 학생을 다시 위험에 몰아넣는 경우

- 여성에 대한 차별: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만 허용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에 다른 역할 수행을 강요하는 등 여남 차별적인 교육이나 지도를 행하는 경우, 생리 자체를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검증 자료로 의사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생리공결 처리에 까다로운 절차를 두어 이용률을 낮추는 경우
-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특수학급 미설치, 편의시설 부족, 교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를 가진 학생의 입/전학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참가 포기를 유도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예) 학부모가 실비를 내고 참가할 경우에만 장애학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3) 교육에 대한 권리

-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체육, 예체능 교육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0교사, -1교사, 강제 야간학습, 과도한 자격증 시험 준비 등 과중한 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 학생을 배제한 교육결정: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을 위해 협의할 수 있는 틀이 부재한 경우
- 유명무실한 교육선택권: 선택과목임에도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방과 후 교육이나 보충수업을 개설할 때 특정한 과목 수강을 강요하거나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두지 않는 경우
- 부적절한 학습 환경: 학교운영지원비를 원천 징수하는 등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
- 학습권 박탈의 남용: 수업시간에 복도에 내보내는 등 학습권을 박탈하는 일을 손쉬운 처벌 수단으로 남용하는 경우, 교문지도에서 걸린 학생들을 남겨 단체기합을 주느라 1교시 수업에도 못 들어가게 하거나 늦게 들여보내는 경우

-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과도한 출전과 훈련으로 수업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4) 학생 자치와 참여권

- 자치나 참여의 기반 부족: 학생 자치를 위해 배정되어 있는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 제한: 학생회 입후보 자격에 교사 추천, 징계 경력 없음, 품행단정 등의 요건을 두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경우, 학생회가 기획한 행사를 포함하여 회의 결정 사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허하는 경우
- 동아리 활동 규제: 동아리 설립 허가제를 두거나 까다로운 설립 절차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가 인정하는 동아리 가입만 허용하거나 특정 동아리에 대한 선입견을 함부로 유포하는 경우

(5) 신체의 자유

- 모욕적인 처우: 체벌, 단체기합 등 학생의 존엄을 모욕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벌을 주는 경우, 교실이나 복도, 교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게 하는 경우
- 강제노동과 동원: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무실이나 교장실, 교사 휴게실, 직원 화장실 등에 대한 청소나 관리를 학생들에게 맡기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교내외 행사에 참여를 강제하거나 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 기숙생활 강요: 특정 성적 이상 학생들의 기준을 정해 기숙사 입소를 강제하는 경우, 기숙사 규율에서 과도한 통금 시간, 아침 운동 강요, 빠질 때 벌점 처리 등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6)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양심에 반하는 서약의 강요: 반공포스터 그리기, 반일 글짓기 등 특정 사상에 대한 맹목적인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 종교 강요: 종교 의식 참여나 종교과목 수업을 강제하는 경우, 교사 개인의 종교를 포교할 목적으로 경전이나 종교서적 읽기나 쓰기를 과제로 내주는 경우
- 도서 등에 대한 검열: 사회과학도서, 정치적 소수자를 다루거나 정치적 소수자가 쓴 도서의 소지를 금지하거나 읽기를 중단시키는 경우

(7) 표현의 자유

- 복장과 두발 제한: 모든 학생에게 교복 착용, 교복 착용 시 양말, 속옷 색깔, 구두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두발의 길이, 색깔, 모양, 미용 도구 등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경우
- 매체 활동에 대한 규제: 교지나 학교신문에 대한 기획, 편집 과정에서 사전 검열이 이루어지는 경우
- 표현물과 의견 조직 금지: 학교행사시 동아리의 공연 내용에 대해 함부로 검열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게시된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 집회, 시위에 대한 제한: 학내외 집회 개최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주는 경우 혹은 처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 교외 활동 규제: 교외 토론회 참석 등 의사 표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을 금지하거나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하는 경우, 교외 동아리나 단체 활동, 학생회 연합 활동,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위원회 등의 활동 중단을 요구하거나 활동 내용을 문제 삼아 해체나 탈퇴를 강요하는 경우

(8) 사생활의 보호

- 사적기록물에 대한 침해: 일기장을 검사하거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상하는 경우, 학생이 쓰거나 받은 편지, 쪽지, 다이어리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함부로 열어보거나 반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낭독하는 경우
-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물품이 아님에도 휴대전화, 만화책, 미용도구, 카메라, 게임기, 장신구 등 특정 물품의 소지를 아예 금지시키거나 빼앗는 경우, 휴대전화를 아예 아침에 일괄 수거하거나 쉬는 시간에도 전원을 꺼놓게 하는 등 통신 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 학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소지품검사를 몰래 실시하거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불시에 무차별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탈의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 경우
- 개인 정보 침해: 학급 학생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등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등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학교 급식 관리를 위해 지문을 수집하거나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경우
- 교육관련 정보 공개: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정보에 대해 성격별로 달리 취급하지 않고 모두 보호자에게 일괄 공개해버리는 경우, 상담을 통해 파악된 학생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감시 장비의 설치: 전자명찰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생의 위치를 보호자가 추적할 수 있게끔 하는 알림 서비스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와 합리적 이유 없이 복도, 교사,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 관계와 소통 규제: 친구관계나 연애 관계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연애를 이유로 전학을 중용하거나 적발 시 벌점을 주는 경우

(9) 정보접근권

-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학교에 의해 수집, 기록, 보관된 정보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0) 건강권

- 학교환경: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교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정신 건강에 대한 배려 부족: 스트레스, 불안 등의 정신 건강을 보듬는 교육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담 전담 교사가 없는 경우
- 좋은 먹거리에 대한 보장 미흡: 급식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전문 인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위탁급식업체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
- 부적절한 건강 검진: 체육관 등 공개적인 장소나 엿보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 건강 촉진 활동의 부족: 체육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강제 격리 조치: 전염병 환자 발생시, 별다른 대책 없이 학생을 격리시키는 방식으로만 처리하는 경우

(11) 안전권

- 학내안전사고: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의 책임을 당사자나 교사 개인에게만 돌리는 경우
- 안전교육 미흡: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이나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12)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쉬는 시간에 대한 부당한 통제: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등교시간을 함부로 당기거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경우, 내용에 관계없이 만화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독이나 소지를 금지하거나 빼앗는 경우

(13)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 정당성을 벗어난 징계: 징계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데도 가벼운 징계에서부터 중징계까지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징계 규정 자체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조사 중인 사건을 이유로 또는 징계 사실만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전학이나 자퇴를 종용하는 경우
- 정당성을 잃은 징계절차: 상습적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간소화시켜 해당 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긴급성이 없는데도 오랜 시간 상담실에 남겨 두어 수업을 못 듣게 하거나 교내 봉사를 수업시간 중에 시키는 경우
-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 비행이나 규정 위반의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응징에만 무게를 두어 학생을 대하는 경우,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피해 학생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두기보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보호자와 피해 학생의 보호자 사이의 합의를 종용하는 데만 급급한 경우

(14)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 수업 도중에 경찰이 학교를

찾아와 학생에 대해 참고인 또는 용의자 조사를 벌이는 경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체포영장의 소지 여부, 긴급성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학생을 경찰에 인계하는 경우

- 일하는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 학생의 아르바이트를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금지시키는 경우
-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을 문제 원인을 제공한 사람처럼 대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오히려 전학을 요구하는 등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15) 권리를 지킬 권리

-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 양심에 따라 옳지 않다고 생각한 교사나 학교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교사나 학교 관리자, 이사회 등의 자질과 관련한 비판 의견을 말하거나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 구제절차에 대한 접근 제한: 학생이 교사에 의한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이 제보 학생의 신원을 밝히고 학생을 학교당국에 오히려 인계하는 경우, 외부 기관에 권리 구제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하는 경우

2) 군인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군대에서는 국가주의가 최우선적으로 강요 및 관철되고 있고, 구타·가혹행위, 성폭력이 잔존하며, 인권상담·고충상담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고, 공정하고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활동에 근본적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격오지에 고립된 부대, 폐쇄된 조직문화, 단선적이고 획일화된 의사결정 구조에서 오는 인권사각지대의 위험성이 있고, 출신별, 기수별 연결고리에 따른 차별이 있어 특정 출신에 대한 우대의 제도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배척, 신분·계급에 따라 각종 시설, 복장,

언어사용 등의 차별화, 명령의 정당성을 불문한 복종의 강요, 지휘관·상급자의 부당한 간섭·지시에 대한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직적 통제문화, 지휘관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 장치의 미흡, 임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사생활 침해는 당연시 하는 점, 외박, 휴가, 휴식 등의 여가권의 불충분한 보장, 보안을 이유로 한 사무실, 숙소, 신체, 소지품 등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수색과 같은 인권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2006b).

또한 주요한 장병인권 관련 문제로서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2008a)는 구타와 폭행, 성추행/성희롱, 왕따 등 신종 가혹행위, 군대내 동성애자 처리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들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2006a)는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으로서 인격적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권으로서 사적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 법률에 의하지 않은 처벌 및 구속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 유지 권리, 평등권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으로서 선거권, 청구권으로서 인사소청권, 의견진언권, 고충처리권, 사회권으로서 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제복착용권, 휴가권, 영조물 이용권을 들고 있다.

군인들이 보호받아야 할 각 인권 내용들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침해 사례가 있었는지를 2001년에서 200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 주제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혹행위

- 작전장교가 পে타이어 목에 씌우고 구보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 뒷머리 함몰, 찰과상 등에 의해 사망한 경우
- 연병장을 5바퀴 돌고난 후 실신하여 사망한 경우
- 선임병이 후임병의 머리, 뺨 등을 수회 폭행하거나 머리박아를 시키는 경우
- 멘소래담 로션을 눈과 성기에 바르는 경우

- 레슬링 자세로 허리잡고 돌리다가 이빨 2개를 부러뜨린 경우
- 근무중 선임 부사관이 몽둥이로 머리를 타격하는 경우
- 전투화발로 복부를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한 경우
- 약 9개월간 차량호에서 매일 2회씩 총 300회 가량 차려 자세 시켜 놓고 욕을 함.
- 근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
- 여단장이 공관근무병에게 손바닥과 구두발 등으로 양쪽 뺨과 정강이를 약 15회 폭행, 손바닥과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10여회 폭행, 신문으로 양 뺨을 10여회 폭행한 경우
- 왕따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부대를 한번 이동했으나 소문이 계속 돌아서 전속 온 부대에서도 또다시 왕따를 당하는 경우
- 일병이 이병에게 평소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영내 영점사격장에서 군가 3곡 강제로 부르게 하고, 쪼그려 뛰기 30회, 사격장 내 왕복 달리기 7회, 누워서 온몸 비틀기 20회 등을 시킨 경우
- 취사장 공터에서 일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떡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하고 머리를 2회 폭행. 취사장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떡살을 잡고 흔들며 손바닥으로 뺨 5회 폭행, 얼굴에 침 3회 뱉고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을 한 경우
- 후임병 관리 제대로 못한다고 상병이 일병을 막사 뒤 건조장으로 불러 이등병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1회 폭행. 식당 세척장에서 후임병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손바닥으로 얼굴 2회, 손날로 목 부위를 3회, 운동화발로 허벅지 부위를 4회 폭행한 경우
- 상병이 전입신병인 이병의 소포를 열어본 후 보급품이 아닌 샴푸, 칫솔, 면도기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사제물품을 쓴다고 복도에 내동댕이친 후 후임병에게 버리도록 지시하고, 이병이 취침 시 잠꼬대 했다고, 늦게 일어났다고, 암구어를 제대로 모른다고 전투화발로 걷어찬 경우
- 상병이 이병에게 위병근무 시 다른 상병에게 대든 것에 대하여 질책하며 머리를 밀자, 이병이 인상을 쓰며 대드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과

-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 상병과 일병이 경계근무 중 일병에게 줄며 근무를 선다고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하자, 일병이 대답을 하지 않고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을 때리고 전투화 발로 하퇴부를 때리자, 일병도 격분하여 상병의 얼굴을 때려 상호 폭행한 경우
 - 두발정리 불량을 이유로 행보관이 병사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고 일병의 식기 반납을 누구에게 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전투화발 및 손으로 폭행한 경우
 -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화장실 변기의 물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경우
 - 중사가 소대원의 주특기 교육 시 열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투화발로 가슴과 허벅지를 약 20대 폭행. 소대원들에게 교육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총 9차례에 걸쳐 2-50대 폭행하여 한 병사는 좌측고막천공상의 4주의 상해를 입음. 당직근무 시 저녁점호를 마치고 군기가 빠졌다면 소대원 28명을 약 1시간 동안 엎드려뺨쳐의 기합 및 질책을 하고 02:00경 취침시키며, 영내 공터등지에서 전봇대 타기, 방차통(무게 32kg) 메고 선착순 걷기 등 물리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 후배사병이 씻지 않는다거나 병영생활행동강령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수시로 때림. 눈과 성기에 액체형 소염제를 바르는 가혹행위를 했고 앞니 2개와 갈비뼈 3개를 부러뜨리는 등 매일 같이 폭력을 휘두른 경우
 - 중대장이 사격훈련 때 병사 5명이 통제에 잘 따르지 않자, 전장의 공포를 체험시켜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병사들을 사로 중간에 위치한 배수로 안에 웅크리고 있게 한 다음, 다른 중대원들로 하여금 그 위로 K-2 소총 실탄 사격을 하게 함으로써 가혹한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 된 경우
 - 운전병인 상병이 일병에게 공구정리를 시키자 공구명칭을 몰라 공구를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하자, 공구명칭을 알려줄 목적으로 공구를 지목하여 가져오도록 하였으나, 일병이 욕을 하자 주먹으로 가슴을 4회 폭행하고 전치 4주의 쇄골 골절을 입힌 경우

(2) 사생활 침해

- 공군 영관장교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공군본부 영창에 수용되었는데 기간 중 목욕, 독서를 금지시키고 감시카메라로 동태를 감시한 경우
- 중대장이 아무런 설명 없이 소지품 검사 후 일기장을 타군이 보는 앞에서 읽어보고 내용에 대하여 트집을 잡은 경우
- ‘육사 3금제도 사건’: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3금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요구하고 위반 시 퇴교처리하며, 교육 및 수련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휴학, 휴가기간에도 3금을 요구한 경우
- 육군교도소에 수용 중 교도병들로부터 욕설을 듣고 TV시청, 신문구독, 전화사용 등을 금지당한 경우

(3) 의료권 침해

- 복무 중 B형 간염으로 인하여 수통에 통원 및 9일간 입원치료를 하고 부대에서 병가를 받아 일반병원에 입원중인데, 복귀일자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휴가 미귀자로 처리되어 헌병대에 체포된 경우
- 군에서 평소에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아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직후 뇌종양 등으로 사망한 경우
- 복무 중 부대 간부의 작업지시를 받고 부대 창고 보수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관절뼈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으나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틀간 소속대 의무실에만 보내고 큰 병원에 보내주지 않아 수술시기를 놓쳐 장애인이 된 경우
- 군복무중 위암이 발병되었는데 군 병원에서 진료 중 부실한 진료로 위

- 암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아 종양 진단 기회를 박탈당하고, 민간외진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 군 복무 중 피로로 헤르페스 각막염이 재발되었으나 잘못된 약 처방, 치료지연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어 실명이 된 경우
 - 근무 중 허리가 아파 중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입원/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 사단에 배치되어 바로 GOP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당시 GOP 군의관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 했음에도 연대 군의관이 약 7개월간 방치하였고 결국 OO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다가 부대 복귀하였는데 중대장 등이 부대원들의 괴롭힘 등을 방지하지 못해서 재차 OO병원 정신과에 입원 중 전역하게 된 경우
 - 복무 중이던 차량 전복사고로 좌측 발목이 으스러지는 증상을 입었는데 담당 군의관 OO는 X-RAY 촬영만으로 뼈가 부러졌다며 기브스 조치만 하여, 이후 50여 개월 동안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다가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인대 및 연골 등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병교육 중 뇌수막염이 발병하였는데 군의관은 감기 처방만 하였고, 신병교육 종료 후 부대 배치 받아 고열이 있었는데 또다시 부대 군의관은 감기로 오진하였으며, 늦게 서야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내과적 진료만 하다가 마비로 쓰러진 경우
 - 복무 중 허리부상을 입었는데 부대에선 피병을 부리지 말라고 병원에 늦게 보내주었고, 결국 OO병원에 입원하여 허리 수술을 받고 요양 차 OO병원으로 다시 후송을 갔는데 이곳 군의관은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조기 복귀 시켰으며, 피해자가 다시 십자인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한 군의관이 바로 전출을 가면서 후임 군의관에게 재활에 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후임 군의관은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환부가 경직된 경우
 - 선·후임병들이나 소대장, 중대장의 눈이 의식되어, 더운 날씨에 힘에 부

친 행군을 하다가 탈진증세로 쓰러져 군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한 경우

- 제초작업 후 고열과 오한, 두통을 호소했으나, 감기로 오인해 해열제 등 초보적 치료만 하여 며칠 후 각혈까지 하게 되자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한 경우

(4) 법의 보호받을 권리 침해

- 근무 중 발생한 절도사건에 대하여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몰고, 협박 등으로 양심고백 자술서를 작성하라 하고, 병사들 앞에서 양심고백을 하게 한 경우
- 진정인의 남편이 기무부대 근무하는 000와 바람을 폈다며 기무부대에 민원을 제기하자 기무부대에서 진정인을 강제로 납치하여 조사하고 000를 강제전역 시킨 경우

(5) 동성애자 차별

- 군복무중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바, 입원기간 중 의무병과 군의관으로부터 호모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HIV 검사를 당한 경우

(6) 사적 제재

- 제대할 때까지 유실수반(과수원)에서 지속적인 농약작업만 한 경우
- 사단장이 운전병에게 공관청소, 설거지, 심부름, 일과 후 부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가서 수금해오기, 아침밥 짓기, 스포츠 마사지(안마) 해주기 등을 시키는 경우
- 이등병에게 생활관에서 거울보지 않기, 생활관에서 허락 없이 눕지 않

- 기, 혼자서 PX 가기, 혼자서 담배 피기 등을 못하게 하는 경우
-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개인관물 정리, 개인군화를 닦기, 식사시간 재촉, 코를 곤다고 욕함, 이등병끼리 PX를 못 가게 하는 경우
- 선임병의 생활관 관물정돈하기를 시키는 경우
- 이등병에게 관등성명 크게 하기, 선임병이 부르면 뛰어다니기, 식사 빨리 하기, 선임병 전역 날짜 외우기 등을 시키는 경우

(7) 양심, 사상의 자유 침해

- ‘군내 불온서적 차단’: 국방부 예하부대에 군내 불온서적 차단을 지시한 경우

(8) 소원수리제도 미비

- 병장이 후임병인 상병이 일병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했으나, 두 명이 병장이 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구타는 용납될 수 없기에 소대장이나 중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복무중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심해 당직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이 보고 사실이 공공연히 동료 대원들 등에게 알려져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고 공식 보고체계를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히려 징계를 받은 경우
- 가해 선임병이 피해자에게 차량정비도구 명칭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을 하고 스패너로 머리 때리고, 군가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선임병의 빨래 및 군장정비를 시키므로, 피해자가 위 사실을 부대 훈련 중에 당직자에게 보고하였으나, 부대 행정정보관 및 주임원사는 지휘통제실, 행정반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를 조사하여, 가해자는 피해자가 보고한 사실을 알고 추가적인 폭언 등을 하게 된 경우

- 상관이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경우
- 후임병이 잘못했을 때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적 제재를 하는 경우

(9) 언어폭력

- 일병이 군기 잡을 목적으로 후임 일·이병에게 상습 욕설을 하는 경우
- 선임병이 후임병이 웃었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말을 더듬었다고 말 더듬는 흉내를 내고, 근무자를 깨우지 않았다고 자체 반성문 작성을 요구한 경우
- “야, 이 새끼야, 뭐 이 따위로 하느냐, 나이 값도 못 하느냐, 이 따위로 해서 군생활 하겠느냐”는 등 폭언을 하는 경우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군인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 주제 및 침해 빈도수가 높은 인권 사례는 인격적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단체기합, 인격모독, 병사의 사병화,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관등성명 복창), 사적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사적 제재, 지휘관·상급자의 부당한 간섭·지시에 대한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직적 통제문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부당한 양정 및 양형, 군 사법기관의 부당 수사 및 수사권 남용), 사생활의 비밀 유지 권리(신상명세 공개, 편지 공개, 특정 종교 강요 및 종교생활 미 보장, 사생활 말하기 강요, 보안을 이유로 한 사무실, 숙소, 신체, 소지품 등의 영장 없는 압수 수색,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없음, 휴가 중 1일 1회 유선보고, 소수자 비밀 보호), 차별받지 않을 권리(부대배치, 포상휴가, 여성 군인 차별, 동성애자 차별, 신분·계급에 따른 차별), 인사소청권, 의견건의권, 고충처리권(고충처리 과정, 소원수리제도 개선 미비, 내부 고발자 배척), 일과 휴식의 권리(휴가권, 일과 휴식의 권리 침해 월급문제, 초과근무시간 보상제도), 의료권(의료접근권 침해), 의식주 및 환경권(열악한 복무여건, 부실한 냉난방 시설,

사생활 보장이 안 됨, 식사의 질, 보급품 지급), 인도법(민간인 학살 금지, 전쟁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노인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1)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건강한 노화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개인의 기능 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간호 서비스를 받고, 장애나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시설에서 질병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여도 노인이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핫 팩 치료 등 물리치료 중에 감각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화상 등 피부 상해가 발생함
- 평소 믿어오던 종교의 신념에 따라 노인이 약물 및 수혈을 강력하게 거부함
- 보호자(자녀)의 경제적 부담과 형편 때문에 병원 입원 치료를 거부함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약물 외에 민간에서 효용이 뛰어나다는 약을 선호하여 구입함
- 와상상태의 노인의 체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인이 욕창,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을 앓게 됨

(2) 영양 및 급식 서비스

충분한 영양섭취와 양질의 식사는 인간에게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기호에 맞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안전한 섭취를 돕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보호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중에는 음식을 씹는 능력, 소화기능의 문제 등으로 영양상태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고,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특별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에게 양질의 영양 및 식사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지만 공동생활시설이라는 특성 때문에 영양 및 식사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식사 도중에 종사자들이 옆에서 잔반을 처리하여 시끄럽고 불쾌한 경우가 있음
- 이른 아침에 외부활동을 하거나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를 거르거나 상대적으로 양질의 급식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됨
- 고도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투병 중인데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고자 하여 갈등이 생김
- 고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에 대해 특별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일률적인 간식 제공으로 개인별 기호나 식습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3) 생활 서비스(위생 및 청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목욕, 청소, 배변, 구강청결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케어서비스이며,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목욕, 배변서비스 영역에서 종사자들이 일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자칫 노인의 신체적 자긍심에 손상을 줄 수도 있

다. 특히,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지 않거나, 노인 개인의 신체 상황에 맞는 목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에게 충분한 수발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기저귀를 교체해 줄 때 말없이 기계적으로만 일해서 기분이 상할 때가 있음
-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고 싶은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기저귀에 배변을 하라고 함
- 종사자가 노인들에게 양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력이 부족하고 바빠서 양치를 제대로 해 드리지 않아서 노인의 구강상태가 청결하지 못함
- 예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던 습관 때문에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옷을 입은 채로 대소변을 보는 노인이 있음
- 같은 방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저귀를 바로바로 갈아주지 못하거나 대충 갈아주므로 방안에 쾌쾌한 냄새가 남
- 청소를 하더라도 햇볕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음

(4)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노인복지시설은 생활 노인에게 있어서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또 다른 의미의 가정이자 삶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공간과 구조,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각의 주거시설과 설비는 쾌적성, 편의성, 접근성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생활 속에서도 개인적 사생활이 적절히 보장되는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보다는 집단생활이 우선시되므로 다소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집단생활에서 오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생활리듬과 욕구를 고려한 주거환경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노인들이 식당, 화장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에 접근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일상생활을 하고 보장구를 사용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는 것이 불편한 노인이 손잡이를 잡고 생활실과 복도를 걸어가다가 복도에 장애물(예: 휠체어)이 있어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음
- 특별치료를 해 주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함
- 기억력이 좋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치료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있음
- 침대생활에 익숙하지만 시설의 취침 여건 상 모두 매트리스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자야 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고 몸이 불편한 경우가 있음
- 전동휠체어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요양보호사가 문단속을 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따라 나간 어르신이 실종되었다가 행인의 신고로 찾은 경우가 있음
- 팔찌나 목걸이 착용을 거부하는 치매노인이 시설을 나가 며칠을 배회하다가 신고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음

(5) 사생활 보호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인 일, 가족 또는 통신에 대하여 함부로 간섭받거나 명예 및 신용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역시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종사자들 사이에 대화의 소재로 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

다.

- 목욕을 하러갈 때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입기 때문에 다른 동료 노인들이 벗은 몸을 다 보게 됨
- 봉사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 때 몸을 보이기 싫어서 목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 이성의 봉사자가 목욕을 시켜줄 때 수치심을 느낌
- 와상노인 기저귀를 갈 때 침대 주변에 커튼을 쳐야 하지만, 할머니는 창피한지 모른다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음
- 절대 비밀이라는 약속을 믿고 상담을 했는데 비밀이 지켜지지 않음
- 생활 노인 어르신들의 개인 가족사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함
- 생활공간에 외부 방문객들로 인해 소란스럽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음
- 같이 사는 할아버지들이 방 앞에 뚫려있는 큰 유리 관찰구로 할머니의 생활을 들여다보아서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6)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에게 있어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노인과의 관계는, 상실된 관계체계를 복원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시설생활이 집단생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은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며, 동료노인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 또한 소수의 경우, 동료노인을 존중하지 않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들 간에 드러나는 다양한 갈등, 괴롭힘, 무관심 등은 매우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이것을 개인 간의 싸움이나 성격적인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이슈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치매 증세가 있어서 자주 실수를 하는 노인에게 동료 노인들이 놀리거나 무시함
-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동료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을 무시하거나 때리는 경우가 있음
- 성격이 급하고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동료 노인의 식사속도를 재촉하거나 식판을 뺏는 일이 생김
- 치매 증상,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인으로 인해 다른 노인들이 수면에 방해를 받음
- 휠체어를 타고 있는 동료 노인에게 ‘병신’이라고 욕을 하거나 같은 방을 사용하는 와상 노인이 기저귀를 갈 때 ‘냄새난다, 더럽다’ 등으로 수치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 특정 노인의 물건을 더럽거나 냄새가 난다며 버리거나 치우는 경우가 있음

(7)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 및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노인 학대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 중 하나이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부적절한 처우라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적 학대, 심리·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 유기와 같이 노인에게 위험이 되는 행동 뿐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 의한 방임까지 학대로 간주되고 있어서 노인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 젊은 시설 종사자가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음
-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주 욕을 하거나 때리기까지 해서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는 경우가 있음
- 시설 종사자가 노인에게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시설 종사자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놀리거나 혼내듯이 말을 하는 경

우가 있음

- 시설 종사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노인의 사소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음
- 노인이 모든 걸 귀찮아하고, 살 만큼 살았으니 이러다 죽겠다며 어떤 서비스도 싫어함
- 시설에 들어오고 나서 자녀들이 어르신의 도장을 훔쳐서 재산을 몰래 쓰고, 시설에 내야 하는 돈조차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8) 교류 및 통신, 소통의 자유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시설 내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시설 입소 이전에 유지해 온 기존의 관계들, 특히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욕구는 외출, 외박, 외부활동 참여, 가족 면회 등을 통해 노인들에게 서비스로 제공된다. 하지만 생활노인의 안전보장과 질 높은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생활의 규범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노인 개인의 인권과 욕구를 개별화하여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많은 시설 노인들이 자신을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의 비협조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생활 노인 역시 전화, 편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외부의 주요 타인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개인전화 외의 통신수단을 제한하는 등 정보통신 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 자주 외출을 요청하고 술에 취해 매우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다른 노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갈등을 빚음

- 가족들이 노인의 방문 요청을 부담스러워하며 시설의 전화를 피함
- 노인이 핸드폰으로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서 자녀들이 시설 측에 핸드폰 사용을 제한해 주기를 요청함

(9) 알 권리

입소와 퇴소과정에서 생활노인의 보호자 뿐 아니라 인지기능이 있는 생활노인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평가에서는 시설 입소 시 시설에 대한 소개와 권리에 대한 설명, 시설생활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알 권리는 자기결정권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인권주제라 할 수 있다.

- 부모를 집에서 모실 수 없어서 시설에 모시는 경우 자녀들은 불효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시설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지 못하고 시설에서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10) 의복서비스

노인의 질환과 특성상 의료적 처치와 갈아입기에 용이한 환자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선호에 맞게 선택하여 의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단체복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개별성과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 생활에서의 일체감 형성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입소자 노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의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 무조건 동일한 추리닝을 입어야 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
- 공동세탁을 하면서 옷이 망가지기도 하고 깨끗하게 세탁이 되지 않아

서 속상해 하는 경우가 있음

(11) 노동권 및 재산권

노동권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생활노인의 노동 참여는 경제적 이윤 추구의 목적과 치료적 목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치료적 목적일 경우, 노동행위가 어떤 치료적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공지하고 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경제적 목적일 경우 이윤을 정당하게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생활노인의 노동행위를 통해 발생한 이윤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시설의 수익창출을 위해 노인을 강제로 노동에 참여시키거나 치료적 목적을 가장하여 강제노동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산이나 동산이 있을 경우 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자녀들이 관리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에서 경제적 권리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나 교통비나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노인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치매노인을 위탁한 자녀가 시설에 통장을 대신 관리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다른 아들이 와서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주었다가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음
- 사무실에 통장을 맡겼는데 매달 연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확인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채로 있음
-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약화에 대해 잔존기능 향상을 위해 시설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게 함, 그런데 그 일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고, 가족들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당한다고 경찰에 고소함

(12) 정치·종교·문화생활권

인간은 종교적 자유를 누리고, 직접 자유롭게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여가를 향유하고,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들 역시 이러한 정치 및 종교적 자유권과 문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① 정치적 자유권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직접 또는 자유로운 선출을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평등한 보통선거와 비밀선거의 절차에 따라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정보 제한이나 타인의 정치적 개입 등으로 정치적 자유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생활노인의 정치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회의원 선거 때 아무도 선거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서 찍으러 가지도 않음
- 특정 후보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한 것 때문에 동료 노인에게 욕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음
- 시설 종사자가 시설에 도움이 될 만한 특정 후보를 찍도록 권유함

② 종교적 자유권

노인복지 시설 생활노인은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포교, 행사, 예배 및 의식을 통해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시설의 종교 활동에 참여해야 하거나 시설의 종교 활동이 없는 경우 노인이 원하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종교적 자유권을 침해받게 된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이러한 종교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본인이 원치 않아도 시설의 종교 예식에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본인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종교 기관에 참여하고 싶지만 시설 외부로 나가기 힘들어서 눈치를 봄

③ 문화생활권

노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와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노년기의 문화생활 향유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공동생활의 특성과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제약으로 생활노인의 문화생활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동작능력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케어서비스, 질병의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생활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문화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노인복지시설에는 퇴행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신체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받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배변서비스,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고 다른 활동이 제공되지 않아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 정도로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 유명한 강사를 섭외해 온 경우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꼭 참석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
- 노래방 기기 등 고가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평소에 프로그램 실을 개방하지 않아서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4) 정신장애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1) 입, 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입원을 결정하고 치료하고, 퇴원을 하는 과정이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그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시설에 비자발적 입원이 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된다. 특히, 사설이송단체를 통한 강제이송은 불법적인 절차이다.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정신과 전공의의 견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과 폐쇄 병동으로 입원을 시킴
-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체질환이 심해서 일반병동으로 입원이 되었다면 중간에 정신과 전문의로 주치의가 바뀌더라도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계속 입원 치료 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시설 직원)이 보호의무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입원 시 환자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자의입원 동의서에 지장을 찍도록 하여 6개월마다 시행하는 계속입원치료심사도 실시하지 않음
-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 강제 퇴원 결정이 내려졌으나 보호자가 재입원을 요구하고, 병원에서 거절하자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시킴
- 정신질환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 이송단체의 구급 차량에 의해 강제적 이송을 하는 경우
- 보호자는 힘이나 능력이 없고 환자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응급 차량으로 이송하고자 함

(2)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호의무자(가족, 인척, 국가)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환자들이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치료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가족들이 정신질환자를 치료받지 못하게 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입원 치료 중에도 치료적 목적의 면담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치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보호자인 남편이 정신분열증이 의심되는 아내의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반대함
- 본인은 병식이 없고 정신질환이 장기화되자 보호자도 치료를 포기함
- 치료 수용 인원 구성이 과다하고 치료 인력이 부족하여 면담이 불규칙적이거나 이루어지지 않음
- 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서 입원 기간의 대부분을 무기력하게 보냄

(3) 신체적 안전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특히, 부적절한 강박은 정신병원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강박,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시설 내 질서 유지나 말썽을 일으키는 환자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의 강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입원 치료 과정에서나 입소 생활 중에서 과도하게 공격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시설 종사자들이 환자를 구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금지되어야 할 사항이다.

- 치료과정에서 정신 장애인을 병원 임의대로 병동에 가두어 둠
- 치료과정에서 구타 및 강박 사례
- 병원 생활이 오래되었거나 생활을 잘하는 환자가 방장이 되어 환자들의 생활을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힘없고 생활을 잘 못하는 환자를 구타

(4) 적절한 식생활 보장

입원이나 입소하고 있는 경우, 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이외에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므로 영양가 있는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고, 개인의 취향이나 영양 상태와 식습관을 고려하여 식사와 간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급성기이므로, 잠을 잘 못 자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신체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 항정신병 약물치료로 인해 식욕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음
- 저소득층 의료 급여 환자에게 적절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음

(5)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생활시설의 특성상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주거공간으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 또한 숙소의 크기가 적절해야 하고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숙소 배정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과 조명, 환기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목욕과 화장실 이용 등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 난폭한 행동 재발을 우려한 치료진들의 결정에 따라 격리된 환자가 격리되는 동안 불량한 위생 상태에서 생활함
- 수십 명이 같은 공간에 입원한 가운데 공동생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을 무서워하여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함

(6) 사생활 보호

사생활의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의 내용이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신장애에 관한 신상정보가 공공기관이나 시설에서 수집 및 유통되는 경우와 치료를 이유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경우, 시설 등에서 CCTV로 정신장애인의 일상을 촬영하는 것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장애인간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성 교제가 발생하면 해당 장애인을 분리하거나 다른 시설로 보내려는 경우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화장실과 각 병실마다 CCTV 로 24시간 감시하여 사생활이 침해됨
- 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던 두 사람이 호감이 생기고 이성에 대한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의사와 가족들이 반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사람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강제로 옮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정신과 질환

- 자의 동의 없이 개인 신상 정보를 제공함
-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기록된 환자의 진단서를 사회복지 시설 직원에게 무단으로 발급해줌

(7) 통신, 의사소통의 자유

시설 외부와 자유롭게 서신이나 전화를 이용해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전화나 인터넷, 신문이나 잡지, 도서 등 외부와의 교류 수단을 구비하고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의사 표현과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의 자유로운 면회와 교류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지역 사회와 교류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사회의 근린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화 및 통신 기구의 사용을 보장하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정보접근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결정과정에 시설 내의 정신장애인과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대리 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시하여 구제와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입원 이후 집과의 연락이 차단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음
-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시설 전화를 사용하는데 통화 횟수와 시간이 제한됨
- 전화 통화 내용을 간호사, 보호사 등 병실 관리자가 옆에서 듣고 있고 기록함
- 일기나 편지를 쓸 때는 간호사로부터 필기구를 대여 받아 간호사실에서 작성
- 외출 및 면회가 금지됨

(8)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나 재활이라는 명목으로 정신 장애인에게 시설 내 장시간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작업치료비 명목으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액만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환자들이 생활 시설 내에서 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참여 여부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에 따른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받아야 하고 수입과 자신 명의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병원 시설의 청소 등의 노동에 장기간 동원되거나 봉투 접기 등의 단순작업에 배치되어 작업을 하지만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액수를 지급받음
-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작업치료 차원에서 청소, 세차 등을 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작업치료지침에 따른 신청, 동의 절차, 평가 등의 자료가 없음

(9) 알 권리

입원 환자들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치료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입원 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병명, 치료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원 환자들의 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치료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입원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치료진들이 이를 설명하고 환자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아야 하며, 시설 입소 시부터 진정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시설 내부의 고충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

다.

- 치료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함
- 입원 환자에게 입원 환자의 권리나 진정권 보장과 관련된 어떤 안내나 고지를 하지 않음

(10) 적절한 의복

각자의 연령과 취향, 욕구에 따라 의복을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한편 편의에 의해 입소자들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도 자유로운 의복 선택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입소 이후 일률적으로 동일한 의복을 입고 생활함

(11) 여가 및 문화생활권

시설에서는 자유로운 여가 생활을 보장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외부문화를 교류하고,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다.

- 병원에 환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하루 종일 누워서 자다가 깨다가 그냥 서서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음

(12) 정치 및 종교의 자유

① 정치의 자유

선거 및 참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나 시설 내의 생활인은 물

리적 접근성의 문제와 정보 제공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권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도 선거나 출마자에 대한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 활동에 있어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입소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 행사에 부당한 외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병원이나 시설 측 직원들이 환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지 않음
- 시설장이 아는 사람이나 추천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② 종교의 자유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시설 생활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시설이 많다는 한계가 있으나, 시설은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생활시설에서의 자유로운 종교 생활이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신앙과 불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획일적인 종교 의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 특정 종교와 의식을 강요당함
- 시설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종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5) 시설 아동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시설 아동 분야의 주요 인권침해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2005a)의 아동 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와 김승권 외(2003)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복지증진방안 연구 및 서문희, 안현애, 이삼식(2002)의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문헌조사와 국가인권위의 결정례집

및 인터넷의 사례들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나온 것들을 아동인권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1) 식생활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은 발달단계와 기호에 따른 식단의 식사를 하지만, 일부 시설은 가격을 고려하여 식단을 짜는 형편이었다.

- 먹기 싫은 것도 매일 같은 음식을 먹어야한다.
- 간식은 봉사단이 왔을 때 조금 먹고 그렇지 않으면 구경도 못한다.

(2) 의생활

아동의 의류가지들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이들의 선택에 전적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사나 생활지도사의 통제 아래에서 자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봉사자들이 보내준 의류의 경우 단체로 같은 모양이더라도 입게 하는 것 등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못한다.
- 매일 험 옷만 입는다. 나도 예쁜 옷을 입고 싶다.

(3) 주거환경

시설의 주거환경은 과거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복도형에서 주거형으로 변환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여전히 복도형의 수용 시설 같은 느낌의 방구조와 단체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단체로 한 방에 여럿이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숙식장소의 열악함으로 인해 가제도구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자야한다. 책을 읽거나 동생들과 놀 수도 없다.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도 고려하지 않고 숙소를 배정한다.
- 초 중등학교 아동에게 개인별 책상이 없거나 단체 독서실도 거의 없고 조용히 혼자 공부할 곳이 없다.
-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없다.

(4) 보건

- 아프다고 말하면 원장님이 때리거나 그냥 참으라고 한다.
- 아동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플 때 쉴 수 있는 보건실이나 안정실이 없다.
- 아플 때는 병원에 가기 보다는 있는 약으로 응급처치를 한다.

(5) 안전

- 아이의 불장난에 원장님은 불을 끄기 위한 소화기 같은 것을 찾지 않고 그냥 불을 끈다.
- 아동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이나 약물오염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 깨끗한 옷을 입고 싶은데, 봉사자가 와야지 빨아주기 때문에 더러운 상태로 그냥 입고 있어야 한다.
- 청소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 바퀴벌레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다.
- 성문제가 발생할 때는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조용히 처리한다.

(6) 아동 입소시의 준비

-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이동한다.

(7) 시설에서 아동 보호

- 집에 오면 밖에 나갈 수 없다.
- 못나가게 문을 잠가 놓는다.
- 밖에 자유롭게 다니고, 학교에서 친구랑 사귀고 싶다.

(8) 체벌과 문제행동

-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곳의 선생님한테 매를 맞는다.
- 친구들과 싸우거나, 장난을 지나치게 치면 밥을 안 준다(장난을 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모욕적인 처벌, 비인간적인 처벌·시설의 잘못을 지적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

(9)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 몇 일전에 어떤 아이가 친구에게 말을 안 듣는다고 밖에 보자고 했다. 마구 때리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간 적이 있다.
- 비행을 산 시설 아동을 위한 변호인 등 전문가 조력 프로그램을 일부 시설에 도입되었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생길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직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

(10) 부모와의 관계 증진

- 부모가 있는 아동에게는 부모와의 관계형성과 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시설에서 부모가 없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아동의 부모-자녀관계의 유사한 경험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

(11)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

- 퇴소 후 자립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양육시설과 소규모 시설 간에 차이가 있으며 퇴소 후 사후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 퇴소 후 아동이 구직, 질병, 비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시설에서는 사후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한다.

(12) 교육권

- 학교 진학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에는 갈 엄두가 나지 않음
- 돈이 제일 안 들어가는 학교에 가야 한다.
- 영유아가 많이 입소하는 일시보호시설에서는 소수집단 아동에게 언어교육 등 실시해야 하나 어려움이 있다.
- 아동의 성장 발달 수준에 따른 학습, 사회성 훈련, 정서지도, 놀이 지도 등 개별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 학습장애 아동이나 행동장애 아동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가끔 지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 학교 내의 동아리활동이나 특별활동을 거의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13) 풍부한 인간관

- 시설 내 사귄 친구가 별로 없다. 나이또래가 다르기도 하고, 직원들과는 별로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14) 문화적 권리

- 방과 후 텔레비전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다.
- 주말이나 방학 때는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시키는 일들을 하거나, 00원 동생들을 돌봐야한다.
- 문화적인 영화를 보거나, 밖에 나가서 구경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 용돈은 있을 수도 없고, 학교 준비물을 사달라고 말하기가 무서워서 학교에 가면 매일 혼난다.
-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다. 요즘은 숙제를 인터넷으로 찾는 게 많은데 컴퓨터도 자주 고장 나고,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5) 개인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 아직 의사결정이 없는 영유아의 욕구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파악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간다.
- 머리모양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주말에 가끔 오는 봉사단에 의해 머리를 자르는 대로 그냥 놔두어야 한다.
- 주말에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주는 일을 해야 한다.
- 시설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 / 심지어 시설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아동이나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아동은 시설을 나가야 한다.

(16) 사생활의 권리

- 밖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다.
- 전화를 사용할 때 눈치가 보여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친구들과 전화통화 못한다.
- 특별한 보고와 지도가 필요한 아동은 선별하여 처리한다.
- 봉사기관에서 사진 찍기 싫어도 나중에 혼날까봐 그냥 같이 찍는다.
- 가끔 봉사하시러 나오는 후원단체들이 혼자 쉬고 싶은데, 방으로 들어와서 귀찮게 하기도 한다.
- 용돈은 받아 본 적이 없다. 과자도 사먹고 싶은데, 돈을 달라고 말해 본 적 없다.
- 후원회의 사람이 가끔 돈을 줄 때도 있는데, 여기 00원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다시 가져간다.
- 아동의 기초화장품은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 생활지도원이 구입해준다. 사실상 돈이 없어 구입하기가 어렵다.
- 아르바이트하고 싶은데, 밖에서 마음대로 일할 수도 없고, 몰래 일하고 있는 형들이 있긴 한데, 원장님이 거의 포기한 것 같다.
- 아동의 개인 물품은 자유롭게 살 수 없고 생활지도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7) 시설운영에의 참여

- 여기에 같이 사는 아이들의 모임 같은 건 없고, 우리의 생각은 아무상관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여한다.
- 시설내의 생활규칙은 아동이 참여하거나 직원이 참여할 기회가 없어 직원이원장이 정한 생활 수칙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 시설 내 아동 자치회가 있지만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아동자치회의(학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시설에서 무시한다.
- 생활규칙 운영위원회에 아동이 참석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6) 시설 장애인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양성화된 조건부신고 장애인 생활시설 22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연구결과(남구현 외, 2005)와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2006c)’를 바탕으로 실무자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정리하였다.

(1) 인간존엄성 : 인격권과 평등권

인간으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설의 생활인들은 시설장과 직원과의 대화에서 나이가 훨씬 많음에도 하대를 당하거나, 존칭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에서 꾸중을 들음으로서 인격적인 모욕을 받기도 한다.

- 내 나이 63세 인데 시설장 부부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 한다.
- 시설에서 대화한 적이 없어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 바지 흘러내린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혼낸다.

(2) 의식주

식사, 숙소, 의복, 이·미용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였다.

- 여기서 살려면 하루 일과는 당연히 따라야 한다.

-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방송 틀어주니까 안 일어날 수 없다.
- 하루 종일 누워서 자다 깨다 한다.
- 낮잠을 자거나 그냥 앉아 있다.
- 그냥 주니까 먹는다. 굶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긴다.
- 하루 3끼 반찬이 다 똑같다. 밥이 적고, 간식이 없다.
- 이곳이 맞지 않으며 정신병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봐야 한다.
- 돈이 없어 예쁜 옷을 살 수 없고, 헌옷을 물려 받아야한다.
- 내 옷을 두고 시설에서 주는 옷을 입어야 한다.
- 2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만 속옷부터 겉옷까지 갈아입는다.
- 자원봉사자와 같이 하는데 목욕시간이 짧아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다.
-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목욕해서 창피하다.
-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춥고 좁다.
- 여성의 경우, 남자 자원봉사자가 목욕시켜서 창피하다.

(3) 의료보장권

시설생활인이 아플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권으로 원하지 않은 의료처치를 받거나 정기검진에 대한 항목들을 인권침해 사례로 수집하였다.

- 아프다고 하니, 병원은 안 데리고 가고 기도만 해줬다.
-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별 소용이 없어서 그냥 참는다.
- 아프다고 하지 않아서 병이 더욱 악화된 경우도 있다.
- 말 안 들으면 정신병원에 보내기 때문에 그냥 안 아픈 척 한다.
- 아프거나 누워있거나 밥에 불을 끄지 않고, 싸우면 굶기기도 한다.

(4) 신체, 정신적 안전의 권리

시설 내 폭력, 성폭력,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한 폭력이나 신체의 불편으로 일어나는 안전에 대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시설 측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인권침해사례를 수집하였다.

- 진동휠체어는 여러 번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그런 것을 사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 시설 안에서 화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것들이 없지만, 시설에서 질병, 사망, 사고 등으로 원인 모르게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여성 중에 제일 말 없는 A씨를 남자들이 성폭행 했다. 그래도 A씨는 소리도 못 지른다. 소리도 못 지르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한 것 같다.
- 먹을 것을 요구했다가 손과 몽둥이에 맞았다.

(5) 입·퇴소 자기결정권

장애로 인해, 가족의 부담되기 싫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집이나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살아갈 만한 적절한 지원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의 과정에 대한 본인의 의지, 사전 정보 취득에 대한 내용에 해당된다.

-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택시를 태워 시설로 데리고 갔다.
-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데리고 갔다.
- 목욕탕에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와보니 시설이었다. 그래도 김씨는 소리도 못 지른다.
- 시설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퇴소하지 못한다.
- 시설에서 나가고 싶지만 장애나 돈이 없어서 나갈 수 없고, 나가서 어

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다.

(6) 사생활의 자기결정권/사생활침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으로 각종 신분증의 관리, 사진촬영과 방문에서의 동의를 받았는지, 시설내 자신의 행동에 제약을 주는 감시물이나 감시자가 있는 지에 대한 사항을 토대로 수집하였다.

- 텔레비전 리모컨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내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서 볼 수 없다.
- 채널은 한 개의 채널만 본다. 텔레비전이 고장나서이다.
-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설에만 묻고 사진을 찍는다.
- 후원자들이 방문하면 의례히 사진을 찍으러 나가서 사진을 찍고, 방을 공개해야한다.
- 감시카메라가 현장 출입구에 있다. 주로 직원이 현관문 앞에 늘 서 있으면서 못나가게 하고 외부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한다.

(7) 신체의 자유

장애인이라는 신체의 불편함 때문에 이동에 제약을 주는지, 움직임에 불편을 주는지에 대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인권침해 사례이다.

- 위험하다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
- 외출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아예 모른다.
- 나갈 수 없고 이동수단도 없다. 일요일에만 차타고 교회에 간다.
- 도망가 본적도 없고 그러다가는 잡힌다.

- 나가면 다친다고 못 나가게 하고 밤 7시에는 아예 문을 잠근다.
- 나가고 싶어도 밖에 나가는 것이 고작 시설 내 휠체어 타고 운동장 도는 정도다.
- 휠체어는 밖에 나갈 때만 쓰고 실내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기어 다닌다.
- 이동 할 일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8) 종교의 자유

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설의 특성상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본인의 원래 종교와 현재 종교, 종교 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이다.

-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해도 강제로 예배드리러 가야 한다.
- 먹을 것을 요구했다가 손과 몽둥이에 맞았다. 원래는 불교 신자였는데, 여기 와서 기독교로 바꾸었다.
- 먹을 것을 요구했다가 손과 몽둥이에 맞았다. 본인은 교회에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몰래 기도한다.

(9)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과 표현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과 편지, 전화통화, 외부인의 방문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했다.

- 그냥 주는 대로 안 먹으로 혼날 것 같아서 말을 못한다.
- 여기 생활하는 동안 사무실 전화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전화는 걸지 못하고 받는 것만 한다.
- 개인적 용무로는 외출한 적이 없고 단체로 외출한 적은 있다.
- 가족과 거의 교류가 없다.

(10) 가족권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가족과의 교류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이다. 가족현황, 가족모임의 참여, 연애와 결혼 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가족과 몰래 전화하다가 혼났다.
- 가족과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 내가 여기 병원에 있을 때 언니랑 형부랑 시설에 왔다갔다 하더라. 내가 병원에 입원해있는지 몰라서 시설로 왔다갔다는 말을 직원에게 전해 들었다.
- 입소 때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는 지난번에도 3번이나 왔다가 못 만나고 갔는데, 그 때 말기고 간 간식을 먹었냐고 가족이 물어봤다. 그런데 나는 가족들이 왔었는지도 몰랐다.
- 엄마와 동생이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살고 싶다.

(11) 교육 받을 권리

보편적인 생의 주기로 볼 때, 시설 입소 기간 동안 학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생활인의 시설에서의 교육활동 참여, 시설인의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내용들에 대한 침해사례이다.

-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교육받고 싶다고 말 할 수 없다.

- 이동이 불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다.
- 교육프로그램도 없고, 정보를 알지 못한다.

(12) 노동권/경제권

시설에서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자신의 경제적인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직업 활동에서의 임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것이나 시설내의 강제노역, 직업 활동을 원할 때의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관리 등의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침해사례이다.

- 00공장에서 1년 정도 일했는데, 원장이 사장이라서 돈을 받아 본 적이 없다.
- 00만들기 등 일을 하는데, 평소 일요일은 안 하다가 바빠지면 하고, 밤 12시 넘어서 새벽까지도 일한다.
- 일 못하면 혼다고 간식이나 품삯이 없다.
-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지만, 일해도 돈을 못 받는다.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지도 몰랐고, 그런 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른다.

(13) 선거참정권

시설에 있는 동안 투표를 했는지, 선거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는지, 투표 시 비밀보장여부, 특정후보를 강요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들이다.

- 선거를 할 때는 몇 번을 찍으라고 해서 그 번호를 찍었다.
- 점자로 된 자료가 없어서 정보취득이 어려웠다.

(14) 진정절차 및 시설운영의 참여

시설 생활인이 시설 운영에 어떤 구조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공식적인 회의절차 여부나 건의함, 진정함 설치, 생활인의 의견 반영, 시설 생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을 하는지에 대한 침해사례를 수집하였다.

- 생활인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요청해도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 진정함이나 건의함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7) 경찰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국가인권위원회(2007c)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유형별로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이 21.9%로 가장 높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12.3%에 이르며, 편파수사(9.6%), 체포 과정의 가혹행위(6.8%), 사법경찰관의 수사미진(6.6%), 체포요건 결여(3.3%), 총기 및 수갑 등의 부당사용(2.9%)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퍼센티지가 가장 높은 첫 번째 세 가지 사례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불법시위자 검문과 임의동행 부문을 인권과 관련된 가장 큰 쟁점으로 채택했다.

(1)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폭행

현장에서는 체포가 시간과 장소와 관련하여 매우 긴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를 제압, 체포하기 위해 물리력의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자의식 없이 욕설을 하게 된다는 견해가 많이 있다. 단, 고문은 대표적인 강압수사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현장에서는, 특히 조직폭력범죄자, (아동)성범죄자 등에 대한 수사의 경우 경찰관 개인의 성격, 정의감 등이 폭력행위로 표현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많이 양호해졌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따라서 법집행자의 업무 이해 교육, 감정 조절 및 통제 교육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 집회 때문에 출동한 형사기동대의 폭행

(2) 인격권 침해

인격권 침해 부문은 욕설, 사건과 무관한 사적 질문, 수갑과 포승줄로 묶는 행위, 조롱하고 놀리는 경우, 성폭행 수사 시 피의자의 사정여부를 물어보는 행위, 용의자의 범죄내용을 주위에 알리는 경우가 포함된다. 체포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욕설은 부당한 것이지만 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조롱, 사적 질문 등은 업무 이해 부족, 여성에 대한 비하심 등이 원인일 수 있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인식이 부족할 수도 있으며, 입직 과정의 문제, 교육, 관리/감독 등의 총체적 부실에서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성폭행 수사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범행당시의 정황을 추궁하는 사례는 성범죄 수사의 전문성 미비, 인권의식 부족, 여성범죄에 대한 성찰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의 범죄를 주위에 알리는 경우는 탐문 대상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용의자와 범죄의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용의자의 과거 전과 사실 등을 유포한 경우인데, 수사상 기밀을 누설하였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징계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 회사 내 도난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이 사원들의 속옷 속을 검신한 행위
- 피의자 출석 서한 겹봉투에 ‘피의자 출석요구서’라고 기재된 것에 의해 이웃들에게 피의자 신분임이 노출된 사례

(3) 편파수사

편파수사는 수사의 결론을 미리 결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진술을 조작하는 전형적인 강압수사이다. 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에 의한 매수, 인척관계이거나 친분이 있는 관계임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소수이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나 노숙자 등 행색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 폭행당한 이의 전과사실을 알고부터 가해자 취급

(4) 검문

대상자는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행 <경직법>상 경찰관은 불법집회 참가를 시도하는 혐의자인 경우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반인권적인 법조항, 직무수행에 대한 과도한 의욕 등이 문제시되기도 한다. 특히, 집회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태도도 문제다. ‘불법집회’라는 경찰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도 많다. ‘미신고집회’라고 불법집회라고 볼 수 없으며, 단순히 집회장 출입을 이유로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경직법> 제3조의 불심검문의 요건인 합리성, 상당성, 최소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이다. 목전에 행하여지려하는 불법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6조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많으며 원천봉쇄, 상경차단 등 유사 사례가 다수 있다.

- 검문 시 경찰이 신분증과 검문이유를 제시하지 않음

(5) 임의동행

기본적으로 임의동행 요구 거부자를 강제 연행하는 것은 형법상 ‘불법체

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경직법>상 직권남용으로 징역 1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실적평가 환경에서 직무 수행 욕심과 공명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거동수상자 중에서도 범죄와 연관성을 보고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자(피복에 혈흔이 있다거나)는 현행범체포 가능, 그 외에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연행은 불가하다. 그러나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 경찰의 동행 요구에 거부하자 무릎을 발로 차고 수갑을 채운 후 강제로 대질심문

8) 교정공무원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열악한 구금시설 내에서는 다양한 사항이 인권문제로 대두된다. 국가인권위원회(2003c)는 수용자의 인권침해여부가 문제되었던 주요영역들을 범주화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계구사용 등 유형력 행사, 외부교통, 의료, 기타 시설 내 처우, 징벌, 권리구제절차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운호 등(2005)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구금시설 내 진정사유(2002, 2003 기준)를 빈도 분석하여 의료조치미흡, 권리구제절차제한, 서신집필제한, 부당한 조사와 징벌, 폭력·가혹행위, 부당처우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장진섭(2007)은 수용자 권리침해의 원인과 유형을 생명권침해, 수용자간 폭행, 서신 및 집필, 접견, 시설 및 처우, 신체 및 거실검사, 의료, 징벌로 나누었다. 교정공무원이 말하는 현재의 최대 인권문제는 시설 자체의 문제, 진료의 문제였다.

쟁점이 되는 공통된 인권문제를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의료, 권리구제절차, 시설 및 처우, 부당한 징벌, 외부교통, 계구사용, 서신 및 집필 7가지로 나누어진다.

(1) 의료

소수의 의료진이 수많은 수용자를 담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의료와 진료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인권문제이다. 교정시설은 현재 인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의료장비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는 처지이다. 이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도소 당국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속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 상에 복합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완벽한 진료는 불가능하겠지만 진료와 치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정확한 병명을 알고 적절한 처방을 받을 기회는 제공되어야 함에도 급성폐렴을 단순한 감기로 오진한다던가, 입소 전부터 병을 앓아왔던 수용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더 악화된 사례가 접수된다는 것은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로만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동안 의사 부재 시의 발병은 큰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어 아픈 채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병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설 내에서의 오진 때문에 출소 후 일반 병원에서 검사받을 때 큰 병으로 진단받는 경우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의료영역에서의 인권침해 판단기준인 의사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 국가의 질병치료 의무, 신속한 치료와 적절한 처방, 교정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원칙,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수혜(국가인권위원회, 2003c)에 관한 사항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 위암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복역 중 심한 기침과 고통을 호소하여 가석방신청을 했으나 묵살되었고 출소 후 폐암진단을 받은 사례

(2) 시설 및 처우

시설 내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들 중의 하나가 과밀수용이다. 과밀수용의 기준은 행형법규상에 명시된 적정수용인원이며, 이 인원을 초과하여 수용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 국제법, 행형법, 각종 행형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김혜경, 2002). 이러한 법적 근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과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구금시설 내 재원이나 인력적 형평상 개인에게 할당되는 공간, 공동사용공간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수건, 칫솔, 비누 등의 위생에 문제가 있고 공급량이 적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시설 내에서는 관련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수용자로부터 크고 작은 소송이 제기된다. 김혜경(2002)은 과밀수용의 원인을 교정인력의 부족, 미결구금의 남용, 가석방활용의 미흡, 범죄의 증가로 보았다. 결국 과밀화 현상은 부족한 시설과 인력의 한계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 전체의 인식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비위생적 담요관리에 대한 민원을 냈고 청력관리에 대한 확답을 받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음

(3) 권리구제절차

수용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행형법상 청원권과 형행법시행령의 소장면담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장진섭, 2008). 이러한 권리구제제도는 수용자의 침해된 권리를 되돌리고 법적 지위의 보장과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용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하는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d).

법적권리구제의 유형은 크게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소송, 소장면담·청원 등의 법령상의 구제수단과 교정시설 내 감시단, 교정시민 옴부즈맨, 교정행정자문위원회의 자체적 구제수단이 있다. 그러나 청원-청원권 행사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 청원서 집필 및 발송 시에는 집필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허가의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조사와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결정을 내릴 필요도 있다. 수용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장면담은 신청한 경우 반드시 면담이 성사되어야 한다.

- 복역 중 받은 치료가 잘못되어 면진진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우편을 통한 진정서마저 검열되고 발송금지조치를 내려 진정을 방해한 사례

(4) 부당한 징벌과 계구사용

징벌은 교도소에서 교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한 각종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교정처우상의 불이익처분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e). 그러나 이것은 수용생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자의 기본권을 강하게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장진섭, 2008). 교정공무원들은 징벌을 수용질서의 확립과 유지, 보안이라는 측면과 수용자의 불평·불만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징벌을 받는 수용자는 금지, 작업상여금 삭감, 작업정지, 도서열람 제한 등의 불이익 외에도 접견횟수, 자치활동, 전화사용, 물품급여, 사회견학, 가석방회부 등의 일상적 처우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e). 이 가운데 인권침해소지가 가장 높다는 금치는 관련 집행내역이 부실하기 때문에 확대 해석되어 접견, 서신수발 등의 외부와의 교통권 차

단, 운동 금지 등의 건강권도 침해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포괄적인 규정
에 의해 교정공무원들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징벌집행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벌에 관한 인권위의 꾸준한 정책개선권고를 수용한 법무부에 의해
2004년 징벌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다(이호중, 2006). 그 결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법적용의 한계와 모호함이 존재한다.

계구사용 역시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수용자의 신
체적 속박을 가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계구사용은 그 목적과 요건이 행정법
상에 명시되어 있으나, 과거에는 보복이나 징벌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의의제거나 소장면담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용되기도 했다(국가인권위원
회, 2002d). 계구는 포승, 수감, 사슬, 안면보호구가 포함되었지만, 2004년
이후 사슬과 가죽수갑의 사용은 폐지가 되었다.

계구 사용은 수용자의 도주, 위해, 폭동의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다른 어
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이호중,
2006). 자살을 막기 위한 계구사용이 또 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것은 아
닌가라는 논란이 여기에 포함된다.

- 계구착용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 이에 대한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사례

(5) 외부교통

구금시설 내의 외부교통수단이 접견, 서신, 신문, 도서의 열람에서 전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권리의 범위도 그 만큼 커져야 하겠다.

- 인력부족을 이유로 외부로 보내는 서신을 1일 1통으로, 접견을 주 1회
로 제한한 경우

(6) 서신 및 집필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고, 소장은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한다. 집필의 경우 역시 소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집필실 등의 지정된 장소에서 집필을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e). 문제는 서신과 집필을 구금시설 측에서 불허하는데 있다.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필된 집필물은 불법집필물로 징벌사유에 해당되며, 집필도구의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도 인권침해의 사례에 해당된다. 따라서 행형법에 명시된 대로 교정시설 내에서 타인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고, 주고받은 서신은 검열하지 않게 하며,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폭넓게 허용하고, 제한사유의 적용이 남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수용자가 서신업무 보조를 하면서 다른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 개인정보 열람에 관여한 사례

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주요 인권 쟁점 및 사례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의 주요 인권쟁점 중의 하나는 주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특정 정책이 인권 보호에 어떻게 기여하고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즉 사전에 인권의 관점을 고려하여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인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사례인데, 국가정책의 수립, 집행과 인권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그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상 가능한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에 인권의 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권과 정책의 관련성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인권 실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범죄를 줄여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끼리 충돌하는 경우에 정책 수립 및 집행과 인권의 관련성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는 불가피하게 선택을 요구받게 되고, 정책의 성격에 따라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하고 사회적 요구가 무엇인가 판단하여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차등하여 규정한 것이라든지 경찰을 채용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들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물론 지금은 바뀐 사례들이지만, 모두 국가 수준에서 정해져 있던 인권에 관한 규정들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고, 많은 이들의 인권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관계, 공무원끼리의 인권 존중에 대한 문제도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의 주요 인권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는 국민은 행정 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 서비스의 대상인 국민의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많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대민관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은 다수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소수의 요구를 소홀히 다루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고 심지어 무시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집단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들이다. 결국, 행정 처리 과정에서 공평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인권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소수의 인권이며, 상대적으로 상대적 약자이거나 소수자인 사람들에게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서 이야기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 및 대민관계에서 요구되는 인권은 공무원끼리의 관계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의 조직체는 관료제이고, 관료제는 위계적인 질서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개개인의 평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정부 조직의 위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거나 일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업무 분장 속에서 인권 평등이 가지는 의미는 모든 공무원들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행정 체계 자체를 일개의 개인이 바꾸는 것은 어렵고, 특유의 위계질서로 인해 개개인의 고유한 평등성이 인정받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한 현실 자체가 이러한 위계 조직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위계질서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은 공무원 간의 인권을 실현하는 핵심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국가인권위원회, 2003d).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이라는 거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대민관계 및 공무원간의 관계 등의 미시적 차원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만약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 다루어야 하는 인권 문제 또한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 고려하여 인권 및 인권 침해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출발

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범위를 감안한다면,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인권의 주제는 개인의 사생활, 인사권 및 채용, 복지, 노동, 성차별 등에 걸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실제로 행정 업무를 집행, 수행하는 행정 공무원들과 직접적, 간접적 관련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주의깊이 살펴보지 않는다면 인권과 관련된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행정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이론적 배경 및 틀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도 많은 이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내용으로 문항을 만들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인권의 문제를 고려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행정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로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국가행정은 다수의 효율성을 위주로 정책을 집행하여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게 마련이고, 빈도는 높지 않을지라도 그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은 모두가 더불어 만족하며 잘 살아가도록 이끄는 데 일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주도의 개발정책, 경제회복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것과는 정반대의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도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며, 단지 수에 압도당하여 각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II.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과정 및 방법

1. 인권교육 평가요소 및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연구모형

본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은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과 교육목표이원분류표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Bloom은 교육목표분류학에서 교육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인권교육의 목표를 첫째, 인지적 영역의 목표로서 인권에 대한 지식의 획득, 둘째, 정의적 영역의 목표로서 인권옹호적인 가치와 태도의 내면화, 셋째, 행동적 영역의 목표로서 인권옹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로 설정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교육의 3가지 목표 영역별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류은숙, 2008).

1) 인권에 관한 지식 획득

- 모든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과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내용
- 보편성, 상호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등 인권의 원칙
- 시민·정치적이며 경제·사회·문화적인 인권의 범주에 대한 인식
- 인권의 역사와 지속되고 있는 인권의 발전
- 세계인권선언, 양대 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법
- 인도주의법, 전쟁법
- 지역(region) 및 국가, 자기 고장에 존재하는 인권 규범
-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한 지식
- 인권을 보호, 보장, 증진시킬 책임이 있는 인물과 기관, 단체
- 조직(공무원, 군인, 경찰 등) 구성원의 대 사회적 책임과 의무

2) 인권 옹호적 가치와 태도 내면화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 타인에 대한 존중, 자기존중,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희망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공감과 연대의식 갖기
- 인권의 향유가 모든 조직의 정의로운 운영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하기

3) 인권옹호 행동 기술 개발

-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분석하기
- 인권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사회적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
- 인권침해를 유발한 요인 분석하기
- 자신이 가진 ‘편견’을 식별하고 ‘관용’ 키우기
-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기술
-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 긍정적이고 비 억압적인 인간관계 형성하기
-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 해결하기
- 책임지기
- 결정에 참여하기
- 현존하는 인권보호 기구와 절차에 대해 알고 이용할 줄 알기
- 반인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세우기

인권교육 평가요소는 인권교육의 목표인 인권에 대한 지식, 인권 옹호적 가치 및 태도, 인권옹호 행동 기술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옹호 행동 기술은 인권 문제에 부딪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인권교육 평가도구에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권 옹호적 가치/태도 요소만을 평가하기로 한다.

다만,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권 옹호적 가치/태도는 한 개인 안에서는 분리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그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인권 옹호적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인권 옹호적 가치/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인권 문제를 인권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인권에 대한 가치/태도를 평가하는 문항 속에는 인권에 대한 지식도 포함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도구에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과 가치/태도를 문항별로 분리하여 평가하지 않고 한 문항 안에서 동시에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목표이원분류표를 근거로 하였다. 교육목표이원분류표란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교차시켜 분류해놓은 표를 말한다. 따라서 인권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인권교육의 목표 영역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인권교육 내용은 9개 공공분야에 공통적인 인권내용과 각 분야별로 특수한 인권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인권교육의 평가의 목표 영역과 내용 영역을 중심으로 한 평가요소를 교사 분야를 예를 들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인권교육 평가요소(교사 분야의 예시)

| 내용 | 목표 | 지식 | 가치/태도 |
|-------------------|-------------------|----|-------|
| 9개 공공분야에 공통된 인권내용 | 다수의 효율성 vs 소수의 인권 | | |
| | 사생활 보호 vs 공공의 안전 | | |
| | 재정 vs 인권(보호, 관리) | | |
| | 인력 vs 인권(보호, 관리) | | |
| | 수월성 vs 적법성 | | |
| | 자신의 인권 vs 약자의 권리 | | |
| | 개인정보보호 | | |
| | 개인의 알 권리 | | |

| 내용 | 목표 | 지식 | 가치/태도 |
|-----------------------------|--------------------------------|----------------------|-------|
| | 개인적인 성향 | | |
| | 기관장과 직원 간의 입장, 견해 충돌 | | |
| | 호감을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등해서 대우 | | |
| | 비인격적으로 대우 | | |
| 9개 공공분야별로 특수한 인권내용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정당성을 잃은 학교규율 | |
| | | 언어폭력 | |
| | 차별금지 |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차별 | |
| | | 성적 차별 | |
| | | 성별 차별 | |
| | | 학년 또는 나이에 따른 차별 | |
| | | 빈곤학생에 대한 차별 | |
| | | 여성에 대한 차별 | |
| | |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 |
| | 교육에 대한 권리 |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 |
| | | 학생을 배제한 교육 결정 | |
| | | 학습권 박탈의 남용 | |
| | |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 |
| | 학생 자치와 참여권 |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 제한 | |
| | | 동아리 활동 규제 | |
| | 신체의 자유 | 모욕적인 처우 | |
| | | 강제노동과 동원 | |
|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종교 강요 | |
| | 표현의 자유 | 복장과 두발 제한 | |
| | | 매체 활동에 대한 규제 | |
| | 사생활과 개인 정보의 보호 | 사적기록물에 대한 침해 | |
| | |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 |
| | | 개인 정보 침해 | |
| 감시 장비의 설치 | | | |

| 내용 | 목표 | | 지식 | 가치/태도 |
|----|---------------|------------------|----|-------|
| | 정보접근권 |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
| | 건강권 | 정신 건강에 대한 배려 부족 | | |
| |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쉬는 시간에 대한 부당한 통제 | | |
| |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 정당성을 벗어난 징계 | | |
| | | 정당성을 잃은 징계절차 | | |

2.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과정 및 방법

1) 1차 전문가 자문내용

(1) 교사 분야 전문가 1차 자문

교사 분야 인권침해 사례의 중요도와 심각도에 대한 전문가의 ‘상’, ‘중’, ‘하’ 평가 결과를 15가지 인권 주제별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자문결과 중요도와 심각도에서 ‘중’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평가문항을 제작하였고, 중요도와 심각도 중 하나라도 ‘하’라고 평가받은 사례는 문항제작 시 제외하였다.

①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정당성을 잃은 학교규율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가 ‘상’이라고 평가한 것이 많았고 ‘중’이라고 평가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언어폭력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② 차별금지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차별에서는 심각도는 모두 ‘상’이라고 평가했고, 중요도는 ‘상’ 또는 ‘중’으로 나타났다. 성적, 성별, 학년 또는 나이, 빈곤, 가족

형태, 여성, 장애학생, 이주민학생·인종적 소수자·북한 출신 이주민, 성소수자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비혼 임신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도가 ‘하’라고 평가하여 문항제작 시 제외하였다.

③ 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가 대체로 ‘상’이라고 평가했다. 학생을 배제한 교육결정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이 많았지만 심각도는 ‘상’이 더 많았다. 유명무실한 교육선택권과 부적절한 학습 환경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다 ‘중’이라고 평가했다. 학습권 박탈의 남용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이라는 평가가 많았으나, 심각도는 모두 ‘상’이라고 평가했다.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상’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심각도는 모두 ‘상’이라고 평가했다.

④ 학생 자치와 참여권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에서 ‘상’이라는 평가와 ‘중’이라는 평가가 반반으로 나타났다. 다만, 타 학교 학생회와의 연합 활동 불허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하’라고 평가하여 문항제작 시 제외시켰다. 동아리 활동 규제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를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⑤ 신체의 자유

모욕적인 처우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한 사례가 많았으나, 도구를 사용하여 강제 이발시키는 경우나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벌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하’라고 평가하여 문항제작 시 제외시켰다. 강제노동과 동원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모두 ‘중’이라고 평가했으나, 심각도는 ‘상’이라는 평가가 더 많았다. 기숙생활 강요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서약의 강요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고, 일방적 생각의 주입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를 대체로 ‘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특정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과 도서 등에 대한 검열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하’라고 평가하여 문항제작 시 제외하였다. 그리고 종교 강요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⑦ 표현의 자유

복장과 두발 제한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대체로 ‘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화상이나 신체적 특성을 가진 학생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복장 기준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하’라고 평가하여 문항제작 시 제외하였다. 매체 활동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이지만, 심각도는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표현물과 의견 조직 금지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사례별로 ‘상’, ‘중’, ‘하’로 다양한 평가를 하였으나, 심각도는 대체로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중에서 학교행사 시 동아리의 공연 내용에 대해 검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하’라고 평가하여 문항제작 시 제외하였다.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 ‘중’ 반반으로 평가하였다. 교외 활동 규제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⑧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적 기록물에 대한 침해와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개인 정보 침해, 교육관련 정보 공개, 감시 장비의 설치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에서 ‘상’이라는 평가와 ‘중’이라는 평가가 골고루 나왔다. 단, 교육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상담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는 중요도가 ‘하’인 것으로 평가되어 문항제작 시 제외하였다. 관계와 소통 규제에 대해서는 중요

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⑨ 정보접근권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참여를 위한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이지만 심각도는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⑩ 건강권

학교환경, 건강촉진 활동의 부족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정신 건강에 대한 배려 부족, 좋은 먹거리에 대한 보장 미흡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고, 까다로운 보건실 운영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⑪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쉬는 시간에 대한 부당한 통제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에서 ‘상’이라는 반응과 ‘중’이라는 반응이 반반씩 나타났다.

⑫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정당성을 벗어난 징계와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고, 정당성을 잃은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중요도와 심각도를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차이에 대한 고려 없는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⑬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과 관련해서는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대체로 ‘상’이 많고 ‘중’이라고 평가한 것도 있었다.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살핌 소홀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성폭력 피해 학생의 피해사실이 공개되어 2차 피해의 위험

에 빠뜨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하’라고 평가하여 문항제작 시 제외하였다.

⑭ 권리를 지킬 권리

이익을 제기한 학생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⑮ 안전권

학교 밖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2) 군인 분야 전문가 1차 자문

① 인격적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

언어폭력, 구타, 가혹행위, 단체기합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암기 강요와 성적 농담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상’이라고 평가했으나 심각도는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병사의 사병화, 관등성명 복창, 성희롱, 성군기 위반사고, 성폭력, 성추행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이지만 심각도는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왕따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② 사적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

사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 중요도는 ‘상’인데 심각도는 ‘중’인 사례가 둘 있었으며, 중요도는 ‘중’인데 심각도가 ‘상’이라고 평가한 사례가 둘 있었다.

③ 차별받지 않을 권리

출신배경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

하였다.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에서 대부분이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신분·계급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에서 ‘상’인 경우와 ‘중’인 경우 두 가지로 나타났다. 동성애자 차별과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이지만 심각도는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④ 병역의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상’이라고 평가했고, 징병제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⑤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부당 수사, 수사권 남용, 적법절차 무시 등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상’이라고 평가했고, 피고인의 변호권 침해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⑥ 사생활의 비밀 유지 권리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사생활 말하기 강요, 휴가 중 보고 지시, 영창 내 감시 카메라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상’, 심각도는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우편물 공개, 소수자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상’이라고 평가하였다. 신상명세 공개, 종교 생활 미 보장, 사생활 공간 미 보장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라고 평가하였다.

⑦ 인사소청권, 의견건의권, 고충처리권

의견건의 위반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으로 나타났다. 소원 수리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상’이 많았고, 심각도는 ‘중’이 더 많이 나타났다. 고충처리 위반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상’, 심각도는 ‘중’으로 나타났다.

⑧ 일과 휴식의 권리

일과시간 이후 휴식권 침해, 월급 문제, 초과근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상’, 심각도는 ‘중’으로 나타났고, 휴가권 침해, 휴일 휴식권 침해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으로 나타났다.

⑨ 통신의 자유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상’이고 심각도는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⑩ 의료권

의료접근권 침해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중’인 사례가 더 많았고, 심각도는 모두 ‘상’으로 평가되었다. 부정확한 진료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모두 ‘중’으로 평가되었으나, 심각도는 ‘중’과 ‘상’ 반반씩 나타났다.

⑪ 양심, 사상의 자유

사상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으로 평가되었다.

⑫ 의식주 및 환경권

열악한 복무여건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상’, 심각도는 ‘중’으로 평가되었고, 사생활 공간 미비와 식사의 질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라고 평가했다.

⑬ 인도법

민간인 학살 금지, 전쟁 포로에 대한 대우, 적법절차의 제한과 관련하여 중요도는 모두 ‘중’, 심각도는 모두 ‘상’이라고 평가되었다.

(3) 노인 분야 전문가 1차 자문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인권 실태 연구와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주요 주제별로 다양한 인권침해 관련 사례들을 추출하였다. 1차 전문가 자문에서는 연구팀이 추출한 71개의 사례를 표로 정리하여 각각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는 이유와 중요도 및 심각도를 질문하였다. 중요도는 빈도와 관련하여 ‘상’, ‘중’, ‘하’ 중에서 택일하며, 심각도는 빈도수와 관계 없이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과 관련하여 ‘상’, ‘중’, ‘하’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으로 응답한 사례는 22개, 중요도는 ‘상’, 심각도는 ‘중’으로 응답한 사례는 2개,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상’으로 응답한 사례는 5개, 중요도는 ‘하’, 심각도는 ‘상’으로 응답한 사례는 2개,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으로 응답한 사례는 22개였으며,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하’로 응답한 사례는 9개, 중요도는 ‘하’, 심각도는 ‘중’으로 응답한 사례는 1개,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하’로 응답한 사례는 8개였다.

1차 전문가 자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요도와 심각도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상’으로 응답한 사례 중에서는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례,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20개의 사례를 문항제작에 활용하였다. 또한 중요도와 심각도를 모두 ‘중’으로 응답하였거나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하’, 또는 중요도는 ‘하’, 심각도는 ‘중’으로 응답한 사례 중 실무자 FGI에서도 중요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된 바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11개의 사례를 문항제작에 활용하였다.

① 중요도와 심각도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상’으로 응답한 사례 중에서 문항제작에 활용된 예

- 와상상태의 노인의 체위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인이 욕창,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을 앓게 됨 (보건의료서비스)
- 고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에 대해 특별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가 있음 (영양 및 급식 서비스)
- 기저귀를 교체해 줄 때 말없이 기계적으로만 일해서 기분이 상할 때가 있음 (배변 서비스)
 - 화장실에서 배변을 하고 싶은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기저귀에 배변을 하라고 함 (배변 서비스)
 - 종사자가 노인들에게 양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력이 부족하고 바빠서 양치를 제대로 해 드리지 않아서 노인의 구강상태가 청결하지 못함 (청결 서비스)
 - 같은 방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기저귀를 바로바로 갈아주지 못하거나 대충 갈아주므로 방안에 쾌쾌한 냄새가 남 (쾌적한 주거생활)
 - 청소를 하더라도 햇볕이 들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음 (쾌적한 주거생활)
 - 요양보호사가 문단속을 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따라 나간 어르신이 실종되었다가 행인의 신고로 찾은 경우가 있음 (안전한 생활 보장)
 - 팔찌나 목걸이 착용을 거부하는 치매노인이 시설을 나가 며칠을 배회하다가 신고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음 (안전한 생활 보장)
 - 치매 증상,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인으로 인해 다른 노인들이 수면에 방해를 받음 (안락한 생활 보장)
 - 절대 비밀이라는 약속을 믿고 상담을 했는데 비밀이 지켜지지 않음 (사생활 보호)
 - 와상노인 기저귀를 갈 때 침대 주변에 커튼을 쳐야 하지만, 할머니는 창피한지 모른다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음 (사생활 보호)
 -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동료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을 무시하거나 때리는 경우가 있음 (동료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 성격이 급하고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동료 노인의 식사속도를 재촉하거나 식판을 뺏는 일이 생김 (동료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 휠체어를 타고 있는 동료 노인에게 ‘병신’이라고 욕을 하거나 같은 방을 사용하는 외상 노인이 기저귀를 갈 때 ‘남새난다, 더럽다’ 등으로 수치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동료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에게 자주 욕을 하거나 때리기까지 해서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는 경우가 있음 (신체적 학대)
- 젊은 시설 종사자가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있음 (언어적 학대)
- 시설 종사자가 노인에게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음 (언어적 학대)
- 시설 종사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노인의 사소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음 (방임)
- 시설 종사자가 시설에 도움이 될 만한 특정 후보를 찍도록 권유함 (정치적 자유권)

② 중요도와 심각도를 모두 ‘중’으로 응답하였거나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하’, 또는 중요도는 ‘하’, 심각도는 ‘중’으로 응답한 사례 중에서 문항제작에 활용된 예

- 핫 팩 치료 등 물리치료 중에 감각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화상 등 피부 상해가 발생함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보호자(자녀)의 경제적 부담과 형편 때문에 병원 입원 치료를 거부함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약물 외에 민간에서 효용이 뛰어나다는 약을 선호하여 구입함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고도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투병 중인데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고자 하여 갈등이 생김 (영양 및 급식 서비스)
- 목욕을 하러갈 때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입기 때문에 다른 동료 노인들이 벗은 몸을 다 보게 됨 (사생활 보호)

-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치매 증세가 있어서 자주 실수를 하는 노인에게 동료 노인들이 놀리거나 무시함 (동료 노인에게 존중받을 권리)
- 시설에 들어오고 나서 자녀들이 어르신의 도장을 훔쳐서 재산을 몰래 쓰고, 시설에 내야 하는 돈조차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재정적 학대)
- 가족들이 노인의 방문 요청을 부담스러워하며 시설의 전화를 피함 (교류 및 소통권)
- 사무실에 통장을 맡겼는데 매달 연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확인해주지 않아서 모르는 채로 있음 (재산권)
-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약화에 대해 잔존기능 향상을 위해 시설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게 함, 그런데 그 일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고, 가족들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경찰에 고소함 (노동권)
- 본인이 원치 않아도 시설 종교 예식에 강제로 참여해야 할 경우가 있음 (종교적 자유권)

(4) 정신장애 분야 전문가 1차 자문

정신장애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실태 연구와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주요 주제별로 다양한 인권침해 관련 사례들을 추출하였다. 1차 전문가 자문에서는 연구팀이 추출한 50개의 사례를 표로 정리하여 각각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는 이유와 중요도 및 심각도를 질문하였다. 중요도는 빈도와 관련하여 ‘상’, ‘중’, ‘하’ 중에서 택일하며, 심각도는 빈도수와 관계 없이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과 관련하여 ‘상’, ‘중’, ‘하’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으로 응답한 사례는 25개, 중요도는 ‘상’, 심각도는 ‘중’으로 응답한 사례는 6개,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상’으로 응답한 사례는 9개,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으로 응답한 사례는 10개였으며, 전문가 자문위원이 추가로 제시한 사례가 8개였다.

1차 전문가 자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중요도와 심각도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상’으로 응답한 사례 중에서는 중복되거나 비슷한 사례,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22개의 사례를 문항제작에 활용하였다. 또한 중요도와 심각도 중 모두 ‘중’으로 응답한 사례 중 실무자 FGI에서도 중요하거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된 바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3개의 사례를 문항제작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위원이 추가로 제시한 사례를 2개 추가로 문항제작에 활용하였다.

① 중요도와 심각도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에 ‘상’으로 응답한 사례 중에서 문항제작에 활용된 예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정신과 전공의의 견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과 폐쇄 병동으로 입원을 시킴 (입, 퇴원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시설 직원)이 보호의무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음 (입, 퇴원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 입원 시 환자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자의입원 동의서에 지장을 찍도록 하여 6개월마다 시행하는 계속입원치료심사도 실시하지 않음 (입, 퇴원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 강제 퇴원 결정이 내려졌으나 보호자가 재입원을 요구하고, 병원에서 거절하자 다른 정신병원에 입원시킴 (입, 퇴원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 정신질환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설 이송단체의 구급 차량에 의해 강제적 이송을 하는 경우 (입, 퇴원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
- 치료 인력 부족으로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아서 입원 기간의 대부분을 무기력하게 보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 환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면 관리 차원에서 강박 실시 (신체적 안전)
- 병원 생활이 오래되었거나 생활을 잘하는 환자가 방장이 되어 환자들의 생활을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힘없고 생활을 잘 못하는 환자를 구타

(신체적 안전)

- 저소득층 의료 급여 환자에게 적절한 급식이 제공되지 않음 (적절한 식생활 보장)
- 난폭한 행동 재발을 우려한 치료진들의 결정에 따라 격리된 환자가 격리되는 동안 불량한 위생 상태에서 생활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 수십 명이 같은 공간에 입원한 가운데 공동생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을 무서워하여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 화장실과 각 병실마다 CCTV 로 24시간 감시하여 사생활이 침해됨 (사생활 보호)
- 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던 두 사람이 호감이 생기고 이성애에 대한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의사와 가족들이 반대하여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사람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강제로 옮김 (사생활 보호)
-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기록된 환자의 진단서를 공공기관 직원에게 무단으로 발급해줌 (사생활 보호)
- 입원 이후 집과의 연락이 차단됨 (통신, 의사소통의 자유)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알려주지 않음 (통신, 의사소통의 자유)
-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시설 전화를 사용하는데 통화 횟수와 시간이 제한됨 (통신, 의사소통의 자유)
- 병원 시설의 청소 등의 노동에 장기간 동원되거나 봉투 접기 등의 단순작업에 배치되어 작업을 하지만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액수를 지급받음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작업치료 차원에서 청소, 세차 등을 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작업치료지침에 따른 신청, 동의 절차, 평가 등의 자료가 없음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 치료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함 (알 권리)

- 시설장이 아는 사람이나 추천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정치의 자유)
- 시설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종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 (종교의 자유)

②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으로 응답한 사례 중에서 문항제작에 활용된 예

- 보호자인 남편이 정신분열증이 의심되는 아내의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반대함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 입소 이후 일률적으로 동일한 의복을 입고 생활함 (적절한 의복)
- 병원이나 시설 측 직원들이 환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지 않음 (정치의 자유)

③ 전문가 자문위원이 추가로 제시한 사례 중 문항제작에 활용된 예

-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 지시 없이 미리 정한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을 실시함
- 시군구에서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 그 역할이 형식적임

(5) 시설 아동 분야 전문가 1차 자문

시설 아동 분야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시설종사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인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본 전문가는 중요도와 심각도에 대한 척도를 체크해주지 않고, 이러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문해 주어 그것을 토대로 정리해보았다.

① 생존권 인권상황

- 식생활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이유는 시설을 아동의 복

지와 성장을 위한 공적 기관이라고 보기보다 부의 축적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것에 있다. 실제 많은 시설이 비리나 생활인 인권침해로 비판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수급비의 주인은 당연히 아동인데도, 마치 재단이 아동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위치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 의생활

의복비는 기본 생계비에 해당하는데, 시설 아동이 자신에게 나오는 기초 생활수급비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한 달의 생계 지출을 계획하고 지출해보는 과정이 중요한 생활교육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 주거환경

시설 종사자들 사이에는 주거지역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동과는 무관하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주거지역의 결정이 아동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일지라도 아동의 의견을 귀담아듣거나, 결정권을 부여할 사안이 아니라 행정 처리가 우선되어야 할 사안일뿐이라는 생각을 한다. 주거환경으로서의 위생, 통풍, 빛, 사적 공간 등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가 적절하며, 위생적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활 아동의 충분한 동의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과정은 거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 보건/안전

직원에 의한 성폭력(성희롱 포함)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엄중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동들 사이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아동의 회복, 가해 아동에 대한 재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은 주위 학생들의 동요나 시설의 이미지를 우선 고려하

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를 덮어두면 계속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피해아동에게는 2차 폭력을 가하는 것이 된다. 반면, 아동의 성행동이나 성적 관계는 무조건 금지하고 혼내기보다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보호권 인권실태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된 인권으로 아동 입소시의 준비, 시설에서 아동보호, 체벌과 문제행동, 특별한 아동에 대한 보호, 부모와의 관계 증진,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 체벌과 문제행동

체벌도 교육과 양육의 과정으로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을 동등한 인격체보다는 미숙한 인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소수를 본보기 삼아 전체 아동을 손쉽게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직원들의 태도이다. 밥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강력한 위협이 있어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여 금식과 같은 반인권적 처사도 처벌의 일종이라고 간주한다. 아이들 사이의 위계가 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손 안대고 통제하겠다는 생각도 문제가 있다. 또한 시설 내 규칙을 어겼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절차가 공정한지, 강압적인 진술 강요나 부당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 부모와의 관계 증진

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이다. 부모와의 만남이 아동의 안녕과 정서에 해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아동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만남의 필요에 대한 판단은 시설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 귀가, 퇴소와 사후지도

퇴소 후 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책임을 시설에게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니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시설 생활 아동의 자립 생활에 대한 지원책임을 맡은 기관을 따로 설립하거나 시설에 책임을 맡기려면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③ 발달권

○ 교육권

아동을 사회 활동(학교 등), 개인의 욕구를 가진 개체로 보기보다 집단(시설)의 일원으로만 생각하여 노동력 등 집단에 필요한 것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 공동체 일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개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과 양육의 과정이다.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 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우선한다. 또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 각 아동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원의 부족으로만 원인을 돌려 다른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개별 아동에 대한 교육 계획이 필요하다.

아동은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아동에 대한 지원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입시위주의 교육 외에 다른 교육 활동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 풍부한 인간관계

시설에 친구들을 데려오거나 시설이외의 아동의 집을 방문할 때, 기준(통념상 청소년의 외모)에서 벗어난 아동은 불량하다는 생각을 하며 시설장이나 직원은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고려하여 시설이 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문화적 권리

시설 아동은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열려있는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구하는 데 시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④ 자유권, 참정권 인권실태

○ 개인생활에 대한 의사결정

시설들은 아동의 보호와 양육 등 시설의 운영 자체를 종교의 교리와 실천으로 하고, 종교를 떠나서는 시설 운영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타종교는 허용불가라는 입장을 취한다. 시설 아동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동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종교든 상관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 시설 차원의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도 아동의 기호가 아닌 시설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판단하기도 한다.

아동은 누구와 함께 살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입양과 같은 중요한 문제라면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에서는 일일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없고, 이것으로 인해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의견 청취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사생활의 권리

아이들의 개인 생활, 사회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안전과 보호의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다. 이는 아동의 문제 발생, 사고 책임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여 아동의 개인 생활, 사회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들이 친구들과의 통화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감시를 받고 있다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된다. 만약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권리 침해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생활에서 개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과 반드

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이것은 아동의 사회생활(학교), 욕구 등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또한 특별한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라도 효과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 아동의 사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아동의 모습을 사진에 담을 태도 아동을 초상권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 것은 아동의 단순한 감정으로만 이해할 뿐 아동 개인의 존엄성이나 비밀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생활에서 개인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이 아닌 ‘시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동의 욕구 등은 무시되고 있다.

○ 경제권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비나 아동 명의의 통장에 대해 아동이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느냐에 있다. 아동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노동하는 동안에 겪을 수 있는 업주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인권 교육이나 법적 구제절차에 대한 안내 등이 필요하다. 반면, 아동이 공부나 진로에 대한 준비에 전념하고 싶은데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이다. 시설은 아동의 생계유지 뿐 아니라 진로 준비, 자립생활에 대한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오갈 데 없는 너를 먹여 주고 채워주는 게 어디냐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시설운영에의 참여

시설에 대한 불만이 커져 시설운영을 비판하는 세력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로 시설 아동은 명령과 규율을 지키는 대상으로만 인식되며, 시설은 아동의 생각과 결정으로 굴러가는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생활 수칙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한 규칙일 뿐, 시설 생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간주한다. 생

활 수칙은 아동이 지켜야 할 것일 뿐, 시설 운영에 반영하기에 아동의 의견은 즉흥적이고 미숙하여 아동의 의견 수렴은 불필요하다는 견해이다.

(6) 시설 장애인 분야 전문가 1차 자문

① 인간존엄성, 행복 추구권

구조적 환경과 함께 시설거주인을 존엄한 인간, 성적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시혜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데서 발생한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조적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 호칭의 경우 자신의 연령에 맞는 보편적 생활을 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상호 존칭어를 사용해야한다. 중요도와 심각도는 ‘중’, ‘상’으로 보았다.

② 의식주 생활전반

현 생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사회복지를 위한 거주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되어 있다. 시설화를 막고 가급적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욕구를 파악하고 개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식의 규모를 소규모화하기 위한 노력, 식단을 짤 때 거주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예산의 부족, 시설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술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요도와 심각도가 ‘상’으로 평가되었다.

③ 의료 및 건강의 권리

시설과 정신병원간의 커넥션,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는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시설거주중이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 예산지원(보조금/ 의료보호)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 심한 경우 시설 거주인 명단에 올라있으나 실제 생활은 정신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로 장기입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중요도는 ‘상’으로 심각도는 ‘중’으로

평가하였다.

④ 신체 및 정신적 안전의 권리

원칙적으로 시설거주인에게 폭력이 행사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며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거주인에 대한 체벌과 폭력이 행사되는 문제는 폐쇄적인 시설 운영, 시설종사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업무부담, 소진 등이 발생 원인이다. 체벌과 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중’으로 평가하였다.

⑤ 사생활 보호와 자기결정권

면회를 보장하는 문제와 외부인의 방문 시 거주인의 사전 동의를 얻고 사생활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며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획일적인 기상, 소등 등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방을 여러 명이 사용하는 물리적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가급적 소규모화하고 한 방 사용인원을 3-4인 이하의 규모로 제한하고 가급적 1~2인실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소속사 제도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집단생활방식으로 설계된 대규모시설이 폐쇄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소규모 그룹홈 등으로 서비스제공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요도 심각도를 ‘중’으로 평가하였다.

⑥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뿐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동의를 구하지 않는 강요는 반인권으로 보고 중요도 심각도를 ‘상’으로 평가하였다.

⑦ 표현 및 정보의 자유

개별 시설 거주인들의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사회복지사업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당사자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참여하고 의사소통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거주인의 권리로서 이의제기 권한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자체적인 시설인권규정, 서비스 매뉴얼 등을 통해 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요도 심각도 모두 ‘상’으로 평가하였다.

사무실 전화기를 거주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거주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전화는 개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중요도와 심각도는 모두 ‘하’로 평가하였다.

가급적 핸드폰 등 개별적인 의사소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는 공중전화를 설치하고(개인적 통화가 가능한 장소에) 전화카드를 소지하여 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중요도와 심각도는 ‘상’으로 평가하였다.

⑧ 입소자기결정권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 입, 퇴소는 ‘조치제도’로 당사자의 신청 등에 의해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시설에 입소하거나 퇴소 조치한 이후 사후보고를 통해 조치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중요도, 심각도 모두 ‘상’으로 평가하였다.

입소자기결정권 침해의 경우 상당부분 시설종사자 등의 전문성, 인권감수성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중요도는 ‘상’, 심각도는 ‘중’으로 평가하였다.

시설화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환경이다. 지지체계와의 단절로 개인의 시설화를 보다 공고하게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고 보고 중요도와 심각도는 ‘상’으로 평가되었다.

⑨ 신체의 자유

시설 거주인들이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이동의 자유를 누릴 있도록 해야 하며, 이동이 불편한 문제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지역사회에 나와 있는 장애인조차 겪는 문제이다. 적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 물

리적 환경, 자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중요도와 심각도도 ‘상’으로 평가하였다.

⑩ 가족권

집단생활, 인격의 주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시설생활에서 가족을 이룰 권리, 연애 등의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우며, 개별 종사자들의 태도가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으나 인권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요도와 심각도도 ‘상’으로 평가되었다.

⑪ 문화권

시설거주인의 시설병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 거주인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과 위협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 등의 자기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위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위협에 대한 대처교육실시, 지역사회에서 사회참여를 통해 터득해나가기 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중요도와 심각도는 ‘상’으로 평가되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채널 선택권의 문제는 선택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생활. 시설 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분류체계를 달리해야 하여야하므로 중요도와 심각도는 ‘하’로 평가되었다.

⑫ 노동권/경제권

시설 내 강제노동의 경우 당사자와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시설공동체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시설 측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설생활인 입장에서는 시설에 사는 상황에서 시설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적절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노동은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중요도와 심각도는 ‘중’으로 평가하였다.

⑬ 참정권

시설거주인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재 시설생활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미비하다. 일부 대형시설의 경우 시설 내 별도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중요도와 심각도는 ‘상’이다.

⑭ 진정절차 및 시설운영의 참여

시설 내에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함이나 건의함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중요도와 심각도는 ‘상’, ‘중’으로 평가하였다.

(7) 경찰 분야 전문가 1차 자문

경찰 분야 인권침해 사례들을 7가지 주제별로 나누어 전문가로부터 중요도와 심각도를 ‘상’, ‘중’, ‘하’로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중요도와 심각도에서 ‘중’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평가문항을 제작하였고, 중요도와 심각도 중 하나라도 ‘하’라고 평가받은 사례는 문항제작 시 제외시켰다.

① 신체훼손 및 언어폭력, 심리적 폭력

이 주제에는 구타, 욕설, 억압적 상황에서의 조사 등이 포함된다.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때리고 고문한 경우와 동의 없이 강제 채혈한 사례는 심각도와 중요도가 모두 ‘상’이었고, 시위진압과정에서 최루탄 등을 살포한 사례와 누워있는 시위자를 구타한 행위와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례, 과정자백강요에서 상해는 중요도가 ‘상’, 심각도는 ‘중’이었다. 자백을 받기 위해서 임의 동행한 노숙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분실물피해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속옷 안쪽까지 검사한 경우, 연행한 시위자를 묶은

후 조롱한 사건, 성폭행 피해자에게 그 때의 상황을 설명시키는 것은 중요도가 ‘중’, 심각도는 ‘상’이었다. 동의없이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체포과정에서의 욕설은 중요도가 ‘중’ 심각도 ‘중’, 살인혐의자에 대한 구타와 고문은 심각도와 중요도가 모두 ‘상’이었다.

② 제한사항

변호인 접견을 제한한 사례와 구속적부심사가 거부된 사례는 중요도 ‘중’, 심각도 ‘중’이었다.

③ 형평성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질심문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유도한 사례, 장애인 조사 때 보호자 없이 대질심문을 한 경우는 중요도가 ‘중’, 심각도는 ‘상’이었다.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와 가정폭력을 당하는 부녀자의 도움요청을 방치한 경우, 소재불명을 근거로 지명 수배한 사례, 사건과 무관한 사적 질문에 대한 대답 종용, 합의강요, 특정단체 회원인 교사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 부모입회 없이 진행한 미성년자 조사와 영장 없이 사물을 압수한 경우는 중요도와 심각도가 ‘중’이었다. 절도혐의자를 수사하면서 보호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례는 중요도와 심각도가 ‘중’ 이었다. 정신장애 성폭행사건에서 보호자 없이 대질심문한 사례는 중요도 ‘중’, 심각도 ‘상’이었다, 일방의 편만 든 편파수사 사례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었다.

④ 검문

불법집회장소로 가는 길목에서 불심검문을 단행한 경우와 경찰로부터 설명 없이 제지를 당하여 신분증제시를 요구받는 경우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었다.

⑤ 동행 및 연행

임의동행 거절시 강제 연행한 사례, 동행거부고지를 하지 않고 서에서 대

질신문을 진행한 사례, 임의동행 한 뒤 조사한 후 임의동행서를 받은 사례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었고, 동행요구에 의해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게끔 만든 경우는 중요도 ‘중’, 심각도 ‘상’이었다.

⑥ 개인정보 보호

조사와 관계없는 사적인 질문을 한 경우와 동거녀에게 용의자의 범죄혐의를 말한 경우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었다. 접촉사고 피의자의 혼인서약을 제출받고 남편 직장에 찾아간 사례는 중요도 ‘중’, 심각도 ‘상’이었다. 성폭행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야기가 기사화된 사례는 중요도 ‘중’, 심각도 ‘상’이었다.

⑦ 진료

병자의 통원치료를 불허한 경우와 응급조치가 필요한 피의자의 진료를 거부한 사례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에서 ‘상’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 무조건적 출석요구, 수양원을 탈출하여 원의 불법을 고발한 이들을 다시 수양원으로 돌려보낸 경우, 현행범을 체포한 뒤 입건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조사 후 범죄혐의가 밝혀졌지만 경찰서에 머물게 한 경우, 서류미비의 이유로 고발사건이 접수 안 된 경우, 잇따른 강도사건으로 의심되는 전과3범자를 경찰서로 부른 행위, 채팅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잡은 함정수사의 경우, 조폭 수사 중 범죄사실의 진술내용을 녹화한 경우, 부당행위에 대한 고소장이 진정으로 변경되어 항고한 사례, 헌법소원 권리 박탈, 벌금 미납자를 연행하던 중 얼굴을 노출한 경우, 구속통지를 안 한 경우와 수사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중요도와 심각도에서 ‘하’를 받아 문항에서 제외시켰다. 이 외에 중요도와 심각도에서 ‘하’를 받은 내용인 출석에 불응한 이를 지명 수배하여 주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한 사례피의자의 자해상처를 방치한 사례와 중요도 ‘하’와 심각도 ‘중’을 받은 사례인 탐문수사 중 용의자의 직장에 범죄내용이 알려진 사례는 문항에 포함시켰다.

(8) 교정공무원 분야 전문가 1차 자문

원칙상 중요도와 심각도에서 하나라도 ‘하’로 평가가 되었다면 문항에서 제외시켜야 하지만 한정된 사례수로 인해 모든 문항을 포함시켰다.

① 신체훼손 및 기합

교도관에게 평소 욕설을 하는 수용자를 포승으로 묶고 격리수용한 사례, 소수의 잘못에 대해 단체기합을 주어 수용자간 폭행을 조장한 사례, 교도관의 욕설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적 반응으로 금치 조치시킨 사례, 동료와의 싸움으로 3일 동안 포승된 채로 지내다가 사망한 경우, 여성수용자 성추행 부분에서 중요도와 심각도가 모두 ‘상’으로 평가되었다. 심하게 난폭한 행동을 한 수용자에게 충기를 사용한 사례와 작업 후 장갑을 소지한 채 들어오는 수용자를 구타한 사례는 중요도 ‘중’, 심각도 ‘상’이었다. 수용자의 신체 특징을 비하한 사례는 중요도 ‘하’, 심각도 ‘중’이었고, ‘성실’ 등의 구호외침은 중요도와 심각도가 ‘하’로 평가되었다.

② 안전권

작업 중 손가락 절단과 자살원인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중요도와 심각도가 ‘중’이었다.

③ 진료

심각한 증세에도 약만 처방한 경우, 주말이라는 이유로 진료 허용이 안된 경우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었다. 수술을 받지 못하여 실명한 사례, 심각한 병에 대해 수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 큰 병으로 발전한 경우, 유통기한 지난 약 제공, 자해한 수용자에게 응급조치가 없었던 경우는 중요도, 심각도 모두 ‘중’으로 평가되었다.

④ 제한 및 검열

변호사 접견불허, 토요일 접견 제한은 중요도, 심각도 모두 ‘상’, 동료에게 폭행당한 수용자가 소장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인권위 발행책자 반입금지와 일간지 기사를 삭제한 채 열람을 허용한 경우, 집필불허, 정보공채청구 거부, 정보공개신청과 구제시도 목살은 중요도 심각도 모두 ‘중’이었다. 서신발송과 준비서면 발송 불허는 중요도 ‘중’, 심각도 ‘상’이었고, 실내복의 지퍼 등을 문제 삼아 영치 품목으로 불허한 사례, 공범 아닌 동료와의 서신교환불허는 두 부문에서 모두 ‘하’로 평가되었다.

⑤ 환경 (공간, 물품, 위생)

좁은 공간에 다수인원 수용과 실내 악취는 중요도, 심각도에서 ‘상’, 목욕 실시일에 목욕불허는 중요도 ‘상’, 심각도 ‘중’이었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수건 등의 생활물품은 중요도는 ‘중’, 심각도는 ‘상’으로 평가받았다.

⑥ 개인정보노출 및 사생활보호 (신체검사)

수용자 거실 앞에 주민번호 등의 정보가 적힌 이름표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상’이었고, 에이즈보균자의 정보가 노출된 경우 두 부문에서 모두 ‘중’이었다. 알몸상태로 신체검사 받은 사례는 중요도 ‘중’, 심각도 ‘상’으로 평가되었다.

⑦ 형평성

시설 내 쌍방폭행에 대해 일방의 편만을 드는 경우,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모호한 기준, 교도소 측의 실수로 특별면회 등의 기본권 제한받은 경우, 부친 장례식 참석불가는 중요도와 심각도 모두 ‘중’이었다. ‘가족만남의 집’ 이용제한, 손도장 날인 거부로 영치금품 사용불허는 중요도 ‘중’, 심각도 ‘하’였다. 조사수용기간 초과, 출석통지서를 30분 전에 전달한 사례는 중요도 ‘하’, 심각도 ‘중’으로 평가되었다. 진행 중인 소송사건 지역에서 두 시간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송한 경우, 재판받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 사복착

용 불허, 미결수용자의 생활용품지급 제한, 학습을 위한 카세트사용 금지처분, 동명이인을 몇 시간동안 포승한 채로 둔 경우는 모두 ‘하’로 평가되었다.

(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전문가 1차 자문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연구진이 각종 문헌 및 자료 검토를 통하여 수합, 정리한 일반 행정 분야의 이슈와 각 이슈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 내용에 대한 1차 자문을 위해 행정공무원 1인을 인권교육전문가로 섭외, 의뢰하였다.

인권교육전문가는 일반 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이슈 및 인권침해 사례의 내용에 대한 검토 및 각 이슈 및 사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진술하고, 각 이슈 및 사례의 중요도 및 심각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특히, 전문가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물어본 것은 문항을 진술할 때, 가능하다면 응답자에게 답이 쉽게 노출되는 방식으로 진술을 하지 않고, 응답자가 고민을 하게끔 유도하여 가능한 한 현재의 자신의 상태, 수준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 내용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응답자가 이러한 인권침해를 할 수밖에 없는 맥락적 상황이나 이유를 물어봄으로써, 응답자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응답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이나 수준에 대해 솔직한 응답을 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현재 상태, 수준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또한 각 이슈 및 사례의 중요도 및 심각도를 물어보고, 이후의 일반 행정 분야의 실무자의 응답과 비교, 대조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문항 속에서 진술할 때 그러한 차이점을 이용하여, 각 문항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일반 행정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전문가 1차 자문 내용은 인권침해 관련 사례의 내용이 주로 개인의 사생활, 인사권, 채용 등에 집중이 되어 있으므로, 일반 행정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골고루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

다는 것이었다. 또한 사생활, 인사권, 채용 등의 이슈 외에 복지, 노동 정책 사안, 성차별 문제 등을 추가하여 사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또한 전문가는 각 이슈의 배분비율이 사생활 10%, 인사권(전보 포함) 15%, 채용(평등권 포함) 15%, 노동 20%, 복지(급여 포함) 15%, 성차별 15%, 기타 10%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각 이슈에 대한 비중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와 유사하게 문항의 수를 구성하되, 연구자의 판단과 숙고에 따라 위의 비율은 약간 조정되었다.

다음의 표는 일반 행정 분야 전문가가 제시한 인권침해 발생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권지식 및 감수성의 부족과 인권에 대한 무관심이고, 이것이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표 III-2>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

| | |
|------------|---|
| 인권침해 발생 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지식, 감수성이 낮음 -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 - 공무원의 선례 및 관습, 관례에 따른 업무 처리 - 공무원의 업무 수행 시 경제발전 우선 정책, 자체 추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림 -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권 관련 정책 반영 미흡 - 공무원의 소수자, 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인식 부족 -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부족 -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이 낮음 - 인권은 자신과 관계없는 별개의 영역으로 인식 - 인권의 보편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

전문가의 1차 자문 결과를 통해 실무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사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문항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성과 구체성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사례에 대한 중요도 및 심각도의 ‘상’, ‘중’, ‘하’를 매기고,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사례를 문항화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사례들은 모두 제외하였다. 즉 행정공무원들이 비교적 빈번하게 접하는 경우들은 중요도, 빈번하게 접하지는 않더라도 그 영향이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심각도를 매기게 함으로써 빈도만을 고려하여 사례화 함으로써,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사례를 제외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였다. 전문가가 매긴 중요도와 심각도의 정도를 고려하여 여러 사례들을 수정, 추가하였고, 위에서 전문가가 조언한 바대로, 특정한 이슈나 사례의 수가 과도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 제시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FGI(Focus Group Interview) 내용

본 평가도구에 반영할 내용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지역 및 직급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것은 자칫 전문가들이 간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실무자들이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인권 침해 사례가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는지, 또한 그러한 사례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러한 사례들을 목격하거나 혹은 경험하는 당사자로서 경험하는 그 외의 추가할 만한 사례들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분야별 실무자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사 분야 FGI 내용

교사를 대상으로 한 FGI는 10월 11일 6시 30분-9시 30분까지 2시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교사는 남자 교사 1명과 여자 교사 4명이었다. 직위는 중학교 교장, 교육청 장학사, 중학교 학생부장, 중학교 사회과 교사,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였다. 인터뷰에 사용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학교에서 학생들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인권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 학교에서는 다음의 주제들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권 상황이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아울러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

십시오.

- 학생의 존엄 및 의사존중
- 차별금지
- 교육받을 권리
- 학생 자치와 참여권
- 신체의 자유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관련
- 표현의 자유
-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 정보접근권
- 건강권
- 안전권
-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권리를 지킬 권리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상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례로는 방과 후 학교 운영에서 학력신장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속에 방과 후 학교나 특기적성교육의 기본 취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수업시간에 정말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고, 각자가 가진 다양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로는 교사가 학생들

이 잘못해서 혼낼 경우에 다른 교사의 다음 수업시간까지 안 들여보내면서 혼냄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수업의 강제성 문제가 있었다. 학생들은 하기 싫어 하지만,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그 학교만 방과 후 학교 등을 안 하면 소문이 나게 되고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어렵게 되므로, 모든 학생에게 강제로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② 언어폭력

언어폭력과 관련해서는 여학생에게 “네 대가리에는 자갈만 들었냐?”라는 말을 한다든지, 너무도 쉽게 치명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다. 체벌을 쉽게 할 수 없는 시대이므로 잘못했을 경우에 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③ 학생자치권

학생자치권과 관련해서는 학생자치활동이 예전보다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노는 토요일이 생기면서 수업시간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자치활동이나 개발활동을 줄여 일주일에 한 시간을 하나, 그것도 행사활동이 있을 때면 못 하게 되다보니 거의 자치활동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개발활동은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고 없어진 지 오래고, 실질적으로는 논술, 영어영재, 과학영재 등의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④ 신체의 자유권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움직일 공간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 탈의실 문제는 남녀공학 뿐 아니라 요즘 학교에서 탈의실을 거의 다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러나 탈의실을 만들어 주어도 사용을 거의 안 하고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며, 학생들은 탈의실보다도 휴게공간을 더

필요로 한다고 했다.

가혹한 벌을 주는 경우로는, 일부 학교에서 등교 시 교문에서 신발주머니 검사를 하여 안 가지고 온 학생에게는 운동장 20바퀴 돌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잘못된 학생에게 혼내면서 열쇠로 머리를 툭툭 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두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머리를 기르도록 허용하면 그 다음 파마하고, 파마하면 눈에 아이라인 그리고, 입술 칠하고, 눈썹 붙이고, 등등 얼굴 화장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내 자식 같으면 머리를 마음대로 하고 다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인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원해서 만든 종교 동아리를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⑥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학생 및 학생 가족의 정보가 기업 쪽에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학생회에서 결의하여 자율규정으로 정하고, 학부모들도 원하기에 대부분 일과시간에는 건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을 그것에 빼겨서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신, 학교 내 모든 전화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전화를 쓸 일이 있는데도 못 쓰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사생활 침해 사례로는 잘못된 학생을 교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벌을 줌으로써 잘못된 내용을 모든 교사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들었다.

⑦ 건강권, 학교 환경문제

건강권 및 학교 환경과 관련해서는 에어컨 미설치 문제,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 문제를 들었다.

⑧ 휴식과 문화의 권리

학교 매점의 질 개선, 교실의 방음벽 필요, 학교 내 놀이공간이나 특별실 부족을 들었다. 학생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가르쳐도 쉬는 시간에 칠 공간이 없다고 했다. 또한 운동장과 강당을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운동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을 엘리트체육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학교 내 놀이공간이나 특별실이 모자라고 휴게실이 없어 주차장에서 놀고 있다고 했다.

⑨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학생들

특수반으로 가야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부모가 원해서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교사들이 모든 아이들을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장애 학생들을 쉬는 시간에 괴롭힐 경우 교사가 쉬는 시간까지 교실에 가서 일일이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새터민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2) 군인 분야 FGI 내용

군인의 경우에는 군의 보안문제로 인해 현직 군인들을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최근에 군에서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하여 10월 24일 3시~4시까지 1시간 동안 FGI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응해준 대상자는 2008년 6~9월 사이에 현역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예비역 3명이었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 질문

○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 인권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더 보장되어야 할 인권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주제별 질문

- 언어폭력: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간, 또는 선임병과 후임병간에 언어사용에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혹행위: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현재 체벌, 물리적 가혹행위, 단체기합 등을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 성군기 위반사고: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군기 위반사고가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 사적 제재: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심부름이나 사적인 일을 어느 정도 자주 시킨다고 보십니까?
- 차별: 군대에서 성별로, 사관학교-비사관학교 출신배경별로 대우가 어느 정도 다르다고 보십니까?
- 동성애자 차별: 군대에서는 동성애자를 일반병사와 어느 정도 달리 대우하며, 달리 대우하는 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부당수사: 일반적으로 군대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사생활침해: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군인에게 온 우편물을 본인 동의 없이 열어보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자주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 수사권 남용: 일반적으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 소원수리제도 위반: 일반적으로 간부가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신고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 휴식권: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일과시간 이후에 작업을 시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 의료권: 일반적으로 군대 내에서 병이 나거나 다쳤을 경우 충분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언어폭력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간, 또는 선임병과 후임병간에 언어 사용에서 고쳐야 할 점으로는 모든 생활이 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욕을 많이 사용하니까 군대 오기 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도 와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대에서 어느 정도의 욕은 심각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많이 들어서 ‘욕이 그냥 욕이구나’, ‘욕이 말이구나’하며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마음이 약한 신입병이 새로 들어왔을 때는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욕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군대란 곳이 원래 딱딱한 곳이고 세계 나가야 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욕을 많이 쓰기도 하기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욕을 하는 이유로는 욕을 안 하면 후임병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욕을 해야 하고 욕을 해야 말을 듣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욕을 안 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반드시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안 할 때 그 사람에게 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부모에 대한 욕 등과 같이 심한 욕을 사용하지 않는 한, 나머지 욕은 괜찮다고 보았다. 그러나 군대는 명령체계가 있기 때문에 명령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명령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② 체벌, 가혹행위, 단체기합

그동안 몇 년 사이에 군대가 엄청나게 바뀌어 체벌이나 물리적 가혹행위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지휘관이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감하게 교육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질이 나쁜 군인이 들어오면 가혹행위가 아직도 발생하긴 한다는 것이다. 나쁜 상사를 만나면 군생활이 어렵다고 했다. 특히, 헌병 쪽에는 아직도 구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군대에서 체벌이 없어지긴 했지만, 선임병이 후임병을 때린 것을 상부에 보고할까봐 두려워서 후임병을 체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체벌이 조금은 있으므로, 폭행, 가혹행위 등을 엄격하게 다루면 없어질 것 같다고 보았다.

③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군기 위반사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성군기 위반사고는 개인차가 있는 문제로 변태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요즘은 휴가나 외박 등 군이 예전보다 자유로워져서 여자들을 볼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남자끼리는 중학생 때도 친구들끼리 성희롱을 많이 하는데, 수치심을 약간 느끼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다. 즉 군에서도 장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심각한 경우라면 고민에 빠뜨릴 정도의 수준일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에서 방임하지 않고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④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이나 사적 제재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심부름 등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PX 다녀오기, 담뱃재 떨어주기 등을 당연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선임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본인도 선임이 되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정도를 넘어서서 누나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 너무 사적인 경우를 강요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회사에서도 막내가 커피 타고 하는 것처럼 군에서도 후임병이 잔심부름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의라고 생각하며, 다만 군에서는 더 심화되

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⑤ 성별, 출신배경별 차별 대우

장교들 중 높은 사람들은 사관학교 출신들이 많으니까 자기 출신을 챙겨 주는 것이 당연하고, 사관학교 출신이 진급도 빠르고 대우를 받는다고 했다.

⑥ 동성애자 차별

이등병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선임이 되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관심병사들에게는 관찰을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바로잡기 위해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⑦ 적법절차

군대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병사가 잘못된 경우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⑧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편지가 아닌 물건을 보낼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 확인을 한다고 했다. 겉으로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기밀누설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열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동의하에 열어보면 더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더 보장되어야 할 인권 문제로는 자기 생활 보장이 안 되는 점, 특히 병장이 되기 전 1년 넘는 적응 기간 동안 자기 시간이 없는 점을 들었다.

⑨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라 하더라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 진실을 말하면 매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급자 말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위

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탄약이나 총기 등을 위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따르는 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지휘관들은 지휘관 위에 또 지휘관이 있기 때문에,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했다. 요즘은 상관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편이라는 것이다.

⑩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 신고 처리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수시로 물어보지만 말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왜냐하면 말해도 해결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담하는 부사관들이 있어 상담해주고 해결책을 모색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말을 하면 주변 병사들이 다 이르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이 많은 간부는 잘 처리해 주지만, 몇 개월 안 된 간부들은 잘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본인에게 피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간부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비밀보장이 잘되어야 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병사들에게 누군가가 일렀다는 것을 알도록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전출을 시켜주든지 해야 하는데, 간부들이 귀찮으니까 다른 병사들에게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말로 할 경우, 그러면 누가 일렀다는 것을 알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⑪ 일과시간 이후의 작업

군대가 항상 바쁜 건 아니고 일 년 중 바쁜 기간이 있는데, 향토 사업을 하는 기간이나 연말에 바쁠 때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작업을 하게 된다고 했다. 군대도 주5일제로 주말에는 자유 시간으로 빨래나 휴식을 취하나, 월요일에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주말에도 청소를 하게 된다고 했다.

보상을 해주지는 않지만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

면 병사들이 짜증을 내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속으로는 불만이 있지만
나만 바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바쁘니까 그냥 따라 간다는 것이다.

⑫ 의료권

충분한 진료를 받기는 하지만, 조금 아플 경우에는 눈치를 많이 보게 된
다고 했다. 특히, 내성적인 병사는 눈치를 많이 본다고 했다. 그러나 군대에
서도 방치했다가 큰 병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프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문제는 바쁜 기간에 아프다고 하면 눈치가 보
이는데, 진료 보장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술 등을 외부에서 받겠다고
하면 부모님 오시라고 해서 외부 병원에서 9박 10일 정도의 시간을 내주거
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진료 보장은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의료의 질이
사회에서보다 떨어진다고 했다.

(3) 노인 분야 실무자 FGI 내용

노인분야의 실무자 FGI는 일정 상 2차에 걸쳐 3명, 2명으로 구성된 그룹
으로 진행되었다. 1차로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원장(여) 1명과 규모가
서로 다른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명(여)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FGI를 실시하였다. 2차로 노인전문요양원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
사(여) 1명과 노인전문요양원 치매병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여) 1명으
로 구성된 집단에서 FGI를 실시하였다.

① 연구진들이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했던 사례들과 중복되는 경우들도 상
당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례를 문항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더 현
실감 있는 표현과 가치/태도의 갈등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단체 생활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밤에 장애가 있는 노인이 있
을 때 수면을 편하게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다른 동료 노인들이 같은 방 안에서 기저귀를 갈 때마다 방 안에 냄새

가 나서 불쾌함

- 성격적 마찰로 인해 동료 노인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함

② 연구진들이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했던 사례들과 다소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았다.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기존의 연구를 시행했던 시설과 다른 시설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기존 연구 이후 노인 분야에서의 인권이 어느 정도 향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 노인시설에서 영양 및 급식 서비스는 중요한 서비스이므로, 아침 식사 전에 노인들이 외출을 하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치료실로 이동하는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보호사가 반드시 모시고 감

③ 실무자 FGI를 통하여 추가로 문항 제작에 활용하게 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고 싶어 해서 의료진들에게 처방 외에 과도하게 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주로 저염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노인들 중에는 입맛에 맞지 않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음
- 어떤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질긴 것같이 딱딱한 총각김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노인들 중에는 식사를 천천히 여유 있게 하고 싶어 하지만, 단체 식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급하게 식사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함
- 시설에는 한 방에서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취침 시간 전까지는 같은 방에 있는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보고 싶지 않더라도 같이 봐

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보호자나 어르신이 시설 사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않으면 종사자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동료 노인들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음
-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주로 침대에서 이불을 덮은 채 지내기 때문에, 시설에서 겨울철에도 내복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들의 거주지와 다르기 때문에, 선거가 다가오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야 시설 근처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 어르신들이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싶어 하여 갈등 상황이 생기기도 함

④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사례들이 있었으나, 몇몇 특수한 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은 문항제작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OO시설(소규모 시설)은 보호하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 때문에 치매 노인환자들이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음
- OO시설에서는 보호자가 노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늦게 연락했다고 시설 측에 불만을 표한 경우가 있음

(4) 정신장애 분야 FGI 내용

정신장애 분야 FGI는 일정상 섭외된 6명을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2차에 걸쳐 2명, 4명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FGI를 실시하였다. 2차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호사(남) 1명과 간호사(여) 1명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FGI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차로는 정신요양원 원장(여) 1명과 종합병원 정신병동 수간호사(여) 1명, 서로 다른 정신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여) 2명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FGI를 실시하였다.

① 연구진들이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했던 사례들과 중복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례를 문항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더 현

실감 있는 표현과 가치/태도의 갈등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정신질환이 의심되지만, 보호자인 가족들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치료에 반대하거나 입원을 시키고도 시설과의 연락을 피하는 등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환자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환자들과 시설 종사자들 사이의 갈등
- 시설에서 환자에게 병원 생활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갈등이나 어려움
- 동료 환자들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

② 연구진들이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했던 사례들과 다소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기존의 연구를 시행했던 시설과 다른 시설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기존 연구 이후 정신장애 분야에서의 인권이 어느 정도 향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때로는 오히려 정신장애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다보면 실제적인 치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 약을 먹지 않으면 난폭해 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투약을 거부할 때에 강제투약을 하면 인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최근에는 자의입원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음

③ 실무자 FGI를 통하여 추가로 문항 제작에 활용하게 된 사례는 12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호자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스러워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 시설 생활 중에 힘이 세고 공격적인 환자들을 다루기가 힘들지만 물리적 폭력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단체 식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식사를 급하게 해야 하는 때가 많아서 환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
- 환자들이 휴대폰을 소지하는 경우 수시로 119나 112 등에 장난전화를 걸어서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함
- 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외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가급적 외출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함
-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외출 절차가 까다로워서 불편함
-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고, 전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입원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설 생활과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입소시설에 정해진 취침 시간에도 환자들이 텔레비전 시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갈등이 생김
- 환자들이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답답해 함
- 환자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 환자들 사이에도 종교적 갈등이 생기기도 함
- 환자들이 화장지를 변기에 집어넣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음

④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사례들이 있었으나, 몇몇 특수한 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은 문항제작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OO시설에서는 보호자가 자주 면회를 오고 그 때마다 동료 환자들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동료 환자들 사이에서 힘을 가지고 다른 환자들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음
- OO시설에서는 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물건을 환자들이 가지고 올 때 그 물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갈등이 생기기도 함
- OO시설에서는 환자가 난폭하게 행동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약 처방을 함으로써 환자를 통제하기도 함

- OO시설에서는 환절기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난방을 하지 않아서 환자들이 감기에 많이 걸림

(5) 시설 아동 분야 FGI 내용

아동 시설 분야의 실무자 FGI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OO시설 생활지도사(여) 2명, OO시설 생활지도사 2명(남 1, 여 1), OO시설 원장(남) 1명과 기획실장(남) 1명으로 총 6명이고, 일정 상 3차에 걸쳐 2명, 2명, 2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① 연구진들이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했던 사례들과 중복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례를 문항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더 현실감 있는 표현과 가치/태도의 갈등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대부분 아동이 아프면 생활지도사들은 약을 주는 것으로 약물의 오, 남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
- 대규모 시설에서는 간호사가 상주하나, 그렇지 않은 곳은 응급처리를 생활보호사가 하고 있었다.
- 사회복지를 공부했지만 직급이 생활지도원이라서 아이들 숙소에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아동에 대한 보호도 생활지도원이 알아서 처리하고 있었다.
- 아동의 욕구대로 모든 것을 맞추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활지도사가 많았다.
- 외부 친구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친구 집에 놀러가기도 하는 등 자유롭게 친구를 사귀고 있었다.
- 아동들이 가지각색이고 개성도 다르지만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게 부담되는 부분이어서, 힘들지만 같이 생활지도원의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었다.
- 한 명 공부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개인이 정말 쉬고 싶을

때 설 수 있는 공간이의 한계가 있었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반응하고 있었다.

- 아이들의 생활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개인이 알지 못하고 대체로 생활지도사가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개인통장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원을 받기도 하고 있다.
- 학년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시설에서 정해주는 사람들과 한 방에서 약 10명-20명 정도가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 생활지도원들은 아이들의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은 어린아이들은 지금 사는 곳의 이념을 따라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 생활지도사들은 나름의 규칙을 지도원들이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류와 아이들의 회의를 거쳐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 생활지도사들은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우선 그 친구가 퇴소가 할 마음이 있는지 퇴소를 하고도 어떻게 지낼 것인지를 고려하여 아이의 퇴소를 결정하게 된다.

② 연구진들이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했던 사례들과 다소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기존의 연구를 시행했던 시설과 다른 시설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기존 연구 이후 아동 시설분야에서의 인권이 어느 정도 향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 식생활은 대량으로 식당에서 줄서서 먹는 것에 대해 어쩔 없는 실정으로 보았으며, 점차 나이든 아이들은 자신의 옷을 보호사와 같이 고르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 가장 큰 의식주의문제는 환경으로 보았다. 공간은 좁고 아이들은 많고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책상도 공간적인 차원에서 충족시킬 수가 없다.
- 퇴소를 결정하고 나서는 우리나라 기관이 대부분이 퇴소를 하면 그 친

구가 이제까지 받은 후원금, 나라에서 주는 자립형 적금을 받아서 당분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행사가 있어서 사진 촬영을 찍을 때 방문자의 고려를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고 반응하였다.
- 요즘은 개별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은 없다고 파악했다. 시설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수영장도 있다. 신청을 하면 수영이나 헬스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학원이나 공부를 위한 진학은 지금으로서는 장학재단으로 지원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 후원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학원의 배려로 100% 무급으로 해줘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

③ 실무자 FGI를 통하여 추가로 문항 제작에 활용하게 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만나는 기회를 주나, 부모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았고, 아이들의 부모님의 소재까지 파악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이었다.
- 단체생활이라고 생각해서 단체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별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단체 별로 보고 있었다.
-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음성적인 부분에서 저도 야한 동영상이나 음란물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들도 개별 생활지도원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많았다.
- 한 시설에서는 학년별로 방을 돌아가면서 쓰고, 다른 시설에서는 학년을 섞어서 한 생활지도원이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 생활지도원 1명당 20명 정도를 감당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과 깊은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
- 중학교 고등학생에 따라서 통금시간이 있다. 아이들의 생활지도원과 상의해서 근래에 학생회가 모여서 대표자끼리 회의를 하여 초, 중, 고등

학생의 통금시간이나 취침시간을 다 회의를 하기도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하니깐 아이들도 그나마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④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사례들이 있었으나 몇몇 특수한 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나, 사례가 시설에 종사자에게 적절하지 않아 문항제작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어떤 한 시설에서는 아동이 생활하는 숙소와 학교가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외부와 철저히 격리되어 있어서 친구관계도 외부아이들과 단절되었다.
- 시설운영에의 참여는 시설 기관장의 가치관, 인권의식에 따라 생활지도원과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 아이들 대부분은 시, 군, 구의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입소의 자유가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6) 시설 장애인 분야 FGI 내용

장애인 시설분야의 실무자 FGI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00 장애인 시설 생활지도사(남), 생활지도사(남), 00 생활원, 생활지도사(여), 생활지도사(여)로 총 4명이고, 일정 상 2차에 걸쳐 2명, 2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① 연구진들이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했던 사례들과 중복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사례를 문항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더 현실감 있는 표현과 가치/태도의 갈등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인간에의 존중은 장애인이 나이가 많아도 사회복지사나 봉사자들은 이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경우보다는 반말 등 편한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봉사자들은 장애인들의 신체 불편을 자신과 다름으로 차별적인 사고를 하여 인권침해를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

다는 의견을 보였다.

- 장애인의 신체특성상 의료시설이 중요한데, 큰 시설인 경우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출퇴근이었고, 야간의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알아서 처리하고 있었다.
- 장애인의 표정과 모습으로 아픈 것을 짐작하는 방식이었다.
-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방에서의 세력싸움은 가끔 존재하는 정신적, 신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 시설이기 때문에 오는 사생활침해와 자신의 생활에 대한 결정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봉사자들이 도와주러 오는 것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었다.
- 장애인들의 가족과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당사자의 부모들에 의해 결정되며, 시설에서는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지만, 참가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얼마 되지 않는다.
- 중증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은 노동활동도 하고 자신의 통장을 관리하지만, 중증인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관리하였다.
- 분별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선거를 하도록 하고, 대부분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 시설에 진정함이나 건의함이 있으나, 글을 쓰기 불편한 장애인들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었고, 장애인들의 시설 운영에의 참여는 제한되었다.

② 연구진들이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했던 사례들과 다소 괴리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았다.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기존의 연구를 시행했던 시설과 다른 시설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기존 연구 이후 장애인시설분야에서의 인권이 어느 정도 향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지만, 참가할 수 있는 생활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 장애생활인들은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대부분 담당 사회복지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해석되고 있었다.
- 의생활은 주로 몸이 불편하여 사회복지사의 취향으로 의류를 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음식도 시간에 맞추어 먹여야하는 환경적인 제약이 있었다.
- 특히, 목욕은 봉사자보다 담당사회복지사가 해주는 것으로 인권에 대해 약간 의식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③ 실무자 FGI를 통하여 추가로 문항 제작에 활용하게 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이기 때문에 신체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시설 봉사자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장애인들의 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 장애인의 성적인 문제, 성폭력이나 성추행과 같은 일들이 표면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억제해야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심리치료가 부족해 보였다.
- 시설의 직원 중들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생활인도 시설의 재단이념에 따라야한다는 견해였다.
- 장애인의 근본적이 연애나 결혼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었고, 시설사회복지사도 대부분이 여자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꺼려하고 있었다.

④ 그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사례들이 있었으나 몇몇 특수한 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나, 사례가 시설에 종사자에게 적절하지 않아 문항제작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장애생활인들은 해당 주소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의뢰를 하고 관할 시설에 의뢰된다. 의뢰가 오면 입소 여부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였다.

(7) 경찰 분야 FGI 내용

경찰 분야의 실무자 인터뷰 참여자는 총 5인이었고, 인터뷰는 3인과 2인씩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직위는 순경 2명과 경사 3명이었다.

경찰 분야 실무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찰관이 생각하는 인권

사건용의자나 피의자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 피의자의 경우는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다. 그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 내부에서도 고학력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과거처럼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 피의자들에게 경찰이 구타를 당하고 욕설을 듣는 경우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도 경찰이 먼저 때리지는 않는다. 같은 잘못을 해도 공무원은 가중 처벌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참아야 한다.

인권위원회 공무원들은 경찰의 공무 현장에 대한 지식을 더 쌓을 필요가 있다. 경찰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옆에서 볼 필요도 있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이 가해자에게 욕을 하는 경우, 그 결과만을 가지고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위상황에서 전경들의 돌발행동에 대해 논하기 전에 며칠씩 밤을 새고 피곤한 이들의 정신상태도 고려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시위대들의 행동 중에서 전경들을 화나게 할 만한 불법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② 인권침해로 오해받는 경우(시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의 인권침해)

가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체구속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경우 강제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팔이 꺾이거나 가벼운 상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경찰의 구타에 의한 상처와는 다르다.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어

떨 수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함에도 신체에 상처를 입은 피의자는 그 상처를 가지고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는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고, 인권위에 신고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 외에도 경찰의 검문검색, 채혈, 임의동행 요구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법조항에 있는 것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행되었다면 문제시될 수 없는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그 상황을 과장하거나 그 상황에서 나뉘었던 기분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8) 교정공무원 분야 FGI 내용

교정공무원은 총 3인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남성 세 명으로 직위는 전원 교위였다. 교정공무원 3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용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침해부분

수용자들은 과밀수용과 의료의 미진을 주요한 인권침해 사례로 생각한다. 수용자들은 독고수용을 원하지만, 시설 상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사실, 형행법상으로는 독고수용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구치소의 형편에 따라 많은 때는 4, 5명에서 6명까지도 수용될 수 있다. 전국의 시설 중에서도 독고수용, 혹은 1실 2인의 원칙이 지켜지는 곳에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지만 1실에 5-7명이 수용된 장소는 사정이 다르다.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환경, 시설적 요인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한다. 시설과 인력, 예산이 발전하는 인권의식을 못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의료문제이다. 수용시설 내에서는 국가에서 지급되는 의료 관련 약제와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약의 보급을 원하는 수용자들이 많다고 한다. 무료로 제공되는 약이다보니 많은 수용자들의 수요를 따라잡

지 못한다. 보건의료과에는 꾸준히 약을 타고 검진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의무관 등 의료 요원들의 세심한 검진과 처방을 기대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처방과 검진의 부실에 불만을 가진 수용자들이 진정을 주로 하는 편이다.

② 교정공무원이 보는 인권문제와 인권침해로 오해받는 경우

일반 외과의사는 교도소 내에 상주하지만 정신과 분야의 의사가 없다. 작년년부터 심리사가 교도소 내에 배치되고 있다.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수용자들은 교정 심리검사와의 상담을 주선받아야 하지만, 상담과 관련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 또한 구치소에 갇힌 수용자의 경우는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와는 달리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합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태임에 따라 법 개정이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외부에서 봤을 때, 시설 내에서는 인권침해로 생각되는 예들이 많이 존재한다.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를 제지시키는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하거나 사슬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수용자들이 반항을 하면 상처가 생길 수도 있다. 수용자는 그것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사실도 있겠지만 거짓된 내용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사건의 전후사정과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③ 교정공무원이 생각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위원회와 검찰, 교정시설은 상호보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기관 대 피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도소라는 장소는 아직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곳이며 교육시켜야한다 라는 생각부터 버리는 것이 옳다. 교정공무원과 인권교육기관은 상하의 개념이 아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 평등한 관계에서 잘못을 지적한다면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다.

④ 인권의식의 증가와 시설 내의 변화

의식주가 가장 큰 문제였던 과거에 비해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 무게를 두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변화에 교도소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시설 내에서는 의식주만 해결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수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에 대한 요구를 한다.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입소하는 사람들은 신세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가정에서는 각자의 독립된 공간에서 자라왔던 사람이다. 이들이 수용시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체생활의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성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던 부분이 그들에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의 수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지금 상당부분의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의 환경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구타가 사라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해지고, 수갑과 같은 계구사용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수용자를 며칠씩 묶어두었지만 현재는 의무관의 소견을 참고하여 묶었다가도 관찰하고 기록한 다음에 다시 풀어주어야 하고 풀어준 뒤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공개신청은 대부분 허락된다. 서신발송, 검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FGI 내용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대상은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 다양한 직급 및 부서에 종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행정 공무원들로서,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본 연구를 위해 실무자 인터뷰에는 남 2인, 여 3인, 총 5인의 대상자가 참여하였고, 이들은 직급은 5급-8급 사이에 속하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다.

실무자 FGI에서는 1차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와 심각한 인권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고, 2차로는 전문가의 1차 자문을 통해 재선별한 이슈 및 사례들을 15개 내외의 질문으로 압

측하여 제시하면서, 각 질문에서 제시된 사례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는지, 혹은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는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의 FGI 질문은 개인의 사생활, 인사권, 채용, 노동(외국인 근로자), 복지, 성차별, 기타(중범죄자, 탈북자 등)에 대한 것이었고, 이러한 질문들이 이슈별로 여러 문항씩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각 사례에 대한 중요도와 심각도를 체크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전문가의 1차 자문에서 전문가가 체크한 중요도와 심각도와 비교, 대조함으로써, 일반 행정 분야의 문항을 진술할 때 그러한 입장 및 관점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무자들이 문항을 접할 때 실무자들이 각 사례와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문항에서의 의도하는 답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진술하여 인권교육 전, 후의 개인의 인권의식이 어떠한지에 관해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앞서 실시한 전문가의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의 이슈 및 사례들을 수정, 추가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서, 총 67개의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자들은 각 사례에 관해 중요도와 심각도를 체크하도록 요구받았다.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의 경우, 전문가 1차 자문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로의 배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지나치게 편향되지 않도록 이슈 및 사례들을 수정, 추가, 삭제한 내용이 실무자들에게 체크리스트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인권교육전문가가 이 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중요한 이슈 및 사례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확한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인권의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1차 자문 후 그 내용이 대폭 반영되어, 초기에 전문가에게 제시한 1차 자문의 내용과 전문가의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한 실무자 인터뷰 내용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 외에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이미 법이 바뀌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들, 예를 들면 공무원 채용 시 응시연령의 제한, 이혼한 여성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차별, 병역 의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이 이제는 더 이상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관련 문항을 삭제하였다.

실무자 인터뷰 후, 이 분야의 전문가 1차 자문 및 실무자 인터뷰 결과를 동일한 표에 제시하여, 각 사례에 관해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응답 경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와 실무자 간의 관점이나 입장이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러한 입장의 차이를 문항화 과정에서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3) 전문가 2차 자문 내용

(1) 교사 분야 전문가 2차 자문 내용

68개의 문항 중 49개의 문항을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예를 들면, ‘기숙사 입사 시 성적우수자를 우대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유능한 학생에게 포상을 하는 것이므로 학업동기 유발 차원에서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 38개의 문항에 대하여는 내용을 더 적절한 말로 수정해 주었다(예를 들면, ‘학교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교사나 학교, 학부모의 몫이므로, 교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 없이 교사나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교칙을 제·개정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교사와 학교장의 몫이다.’). 17개의 문항에 대해서는 다른 문항과 중복되거나 다른 문항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여, 최종 문항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해야 한다’쪽으로 긍정적인 문장으로 문장 말미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를 했다.

둘째, 문항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꺼번에 제시한 경우도 있고 제한적인 이유만을 제시한 경우들이 있다. 여러 이유를 열거할 경우 문항이 길어져 읽기 힘들고, 하나의 이유만 제시할 경우 다른 이유로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은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 경우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문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인권의식을 파악하기에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만을 제시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셋째,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을 것이고, 그 요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다시 인권의식의 편차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그 점을 고려해서 문항을 재검토하고 문항별로 수위의 편차를 두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의견은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 의견을 참고하기는 하더라도 결정권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 결정의 기회까지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 결정권을 주더라도 중요 사안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 모든 사안에 대해 알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 등으로 입장이 나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 최고 수준은 제일 나중의 경우이겠지만, 하나의 문항으로 이걸 모두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낮은 수준이라도 인권 의식이 갖추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과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이 갖추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구분하여 잇달아 배치해두어도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군인 분야 전문가 2차 자문 내용

2차 인권교육전문가 자문 결과 66개 문항 중 45개의 문항(예를 들면, ‘극단적 전시 상황에서도 복종을 가능하게 하려면, 평소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물리적으로 힘든 벌을 주는 것쯤은 용인되어야 한다.’)을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4개 문항(예를 들면, ‘군기유지와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서 생활관 바닥 청소를 일·이등병에게만 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은

다른 문항과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 10개 문항(예를 들면, ‘동성애적 행위를 방치할 경우 본능을 억제당하는 젊은 남성이 대부분인 군에서 성군기 관련사고가 빈발하게 되므로, 남성 병사 간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할지라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16개 문항(예를 들면, 군의 명령-복종관계에서 병사는 간부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므로, 부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과수원 작업을 ‘시킨 경우와 같이, 병역 의무가 아닌 사적 업무를 시킬지라도 따라야 한다.’→ ‘하는 것도 병역의무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문항의 내용 중 일부를 더 적절한 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부적절한 10개 문항은 최종 문항에서 제외시켰고, 다른 문항과 중복되는 4개 문항은 다른 문항 속에 통합시켜 수정하였으며, 16개 문항은 권고한 대로 더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66개의 문항 중 부적절한 10개와 통합시켜야 할 4를 합한 14개를 제외한 52개 문항 중에서 인권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중요도, 심각도 응답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0문항을 선정하였다.

(3) 노인 분야 전문가 2차 자문 내용

2차 전문가 자문 결과 평가도구에 대한 전반적 의견으로 현재 평가항목의 분류는 이슈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영역과 세부영역의 위계를 갖고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재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 ① 기본안전 보장 권리: 물리적환경의 안전성, 보호처치의 안전성 등
- ② 질 높은 보호를 받을 권리: 배변, 위생, 영양, 간호처치, 재활 등
- ③ 존중받을 권리: 직원들로부터, 동료노인들로부터 존중받을 권리
- ④ 자립적(자율적) 생활 권리: 알권리, 자기결정권(서비스내용, 정치, 종교, 문화), 잔존능력 활용 등

노인의 인권을 보는 기본 관점이 정리되고, 가치판단의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을 철학적으로 정리하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욕구에도 위계가 있듯이, 안전한 생명권 보호가 가장 우선되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인의 자기결정권이 허용되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시설의 통제의 균형점 찾기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의 자유는 다른 노인에게 폐해가 되지 않고, 개인의 건강에도 위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유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류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가중치 문제 혹은 영역 문항 수 배치 등이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개별 평가항목은 보다 정확하고 방향성이 명확해야, 지침으로서의 효과가 있는데 개별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표현이 상당부분 작위적이고 특정한 단서를 붙인 애매한 상황을 평가하면, 애매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특정 단서를 붙인 부분은 예로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지, 설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원칙을 정하고, 가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애매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교육하는 참고자료의 풍부한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개별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 내용 중에서 보호자(자녀) 문제와 관련된 내용-보호자들이 노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문제, 노인의 치료에 대한 의료진과 보호자의 견해가 다를 때, 보호자의 경제적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평가 문항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었다.

따라서 지나치게 특수한 사례를 활용하여 문항을 제작한 것으로 자문위원이 지적한 문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에 담긴 가치 갈등 상황은 담아내되 보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수정하였다. 한편, 자문 결과 보호자(자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평가 문항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교육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므로, 기존대로 문항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슈별 위계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기존 연구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진 안에서 이미 검토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자문위원의 견해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정신장애인 분야 전문가 2차 자문 내용

연구진이 정신장애분야에서의 인권실태에 관한 문헌연구와 1차 전문가 자문, 실무자 FGI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한 문항 구성과 문항 초본에 대해 2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자문 내용에 따라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의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답이 비교적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문항들의 문장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고, 적합하지 않은 일부 용어들을 수정하였다.

그런데 초기 문항 제작과정에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과 가치/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12:28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그런데 자문 결과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비교적 정답이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가치/태도는 상충되는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가 한 문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응답자에 따라 각자의 가치/태도에 따라 다른 답변을 찾아낼 수 있지만,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문장 표현에 가치갈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분명한 내용으로 문장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무자 FGI의 내용을 반영하여 추가된 사례를 활용한 문항 중에 한 문항은 너무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신장애 시설의 실태를 잘 반영하는 사례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문항은 보다 더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5) 시설 아동 분야 전문가 2차 자문 내용

인권가치태도 평가도구에서 연구진입장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한 의도를 밝힐 것을 고려해주었다. 40번 문항의 경우, 모든 소지품 검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상황적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갖추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15번 문항의 경우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과 아예 방임하는 것은 다르다고 보고 있었다. 인권이 자기결정권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아무런 작용을 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아동의 교육적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욕구가 좌절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유를 파악해서 새로운 교육적 호기심을 형성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1, 2, 6, 7, 8, 12, 13, 15, 17, 21, 26, 27, 29, 31, 33, 35, 37, 40, 42, 43, 44번 문항은 연관관계가 어색하거나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문항으로 보인다. 23번은 답이 너무 뻔해 보여 의식과 태도를 측정하기에 곤란한 문항으로 보인다. 16번 문항처럼 너무 극단적인 질문 구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생활 아동이 친구가 없는 건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9번 문항처럼, 방향과 원칙을 묻는지 의무적 이행을 묻는지가 애매한 문항들이 눈에 띈다. 생활실 규모가 작다면 개별 책상을 두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파악하였다. 만약 공부 공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여 아예 책상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거나 몇몇 아동에게만 독점되어 있다면 문제일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었다.

시설 안에서 공부를 잘하거나 특정 기능을 보유한 아동을 우대한다든지 성별, 장애 여부,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위계 관계와 차별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7번 문항에서 형과 동생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시설에 소년들만 생활하는 건 아닐 것이다.

더불어, 시설 안에서 아동들이 자기 권리에 대해 알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규칙이 성문화되어 있는가, 규칙 위반 시 절차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참여의 경우도 그냥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공식적 참여 기구가 존재하는가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폭력 피해의 경험, 가해의 경험, 노동 경험(그 경험이 시설 안에서 일어났든 밖에서 일어났든, 입소 전 경험이든 아니든) 등 아동들의 생활에서 겪는 갈등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가도 시설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고 생각된다.

본 2차 자문을 통해서 본 문항이 그 부분에 대한 인권의식에 대해 이것이 아동의 인권을 의식한 것인지, 어디까지가 인권을 지켜야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명하게 인권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은 제대로 된 인권가치 태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정답만을 고려하게 되므로 2가지 가치를 대립시켜서 인권가치 딜레마와 경제적인 효율성 등과의 대립된 가치들은 문항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혼동스러운데, 이렇게 애매하게 문항을 만들어 평가해서 가치 태도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차 자문을 통해 부족하게 보이는 폭력 피해의 경험이나 가해의 경험, 아동의 시설내의 차별에 대한 부분의 문항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시설장애 분야의 이슈별 2차 전문가 자문 내용

2차 인권교육전문가 자문 결과 40문항을 검토 받았는데, 인권교육전문가로부터 대체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나, 문구상의 어감이나 너무 답이 보이는 문항에 대한 수정을 제안 받았다. 적절하지 못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문항으로는 보호의무자의 임의에 따른 입소, 생활인의 싸움, 격리 등의 문항에서 인권기준에 제시된 기준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한 후 평가문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또 아플 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인권의 문제를 종사자 개인의 불성실함으로만 몰아갈 위험이 있는데, 시설 구조의 문제와 종사자 인권의식의 문제는 분리하여 명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평가 의도가 종사자 인권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서비스제공과정에서의 인권(윤리)감수성을 엄밀하게 평가하도록 문항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보호사에 의한 휠체어 사용 제한의 경우, 생활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별적 욕구가 다른데, 생활인에 대한 종사자의 편견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치료 시, 외부와

격리, 일상의 일과에 대한 선택과 제한의 문항에서는 ‘당연히’, ‘최대한’의 일 방향적인 표현을 없애고 ‘불가피하다’로 바꾸는 등 문항의 내용 중 일부를 더 적절한 말로 또는 의도에 맞는 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부적절한 표현의 문항은 표현을 수정하였으며, 중복되는 문항은 다른 문항 속에 통합시키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였다. 7개 문항은 권고한 대로 더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전문가와 실무자들의 중요도, 심각도 응답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40문항을 선정하였다.

(7) 경찰 분야 전문가 2차 자문 내용

① 검사 문항 관련

문항의 내용이 인권과 관련한 질문자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너무도 평이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은 이미 교육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태도와 실제 활동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는 지적이었다.

문항의 기술방식을 다소 완고한 표현(예: ‘반드시 해야 한다’보다는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을 사용하여 응답하는 사람의 솔직한 생각을 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평이 있었다.

② 추가되어야 할 문항(분야)

문항이 수사 영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활동 전반에 걸친 인권의식 측정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수사 외에도 경비, 정보, 생활안전, 보안 등 다양한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주었다. 수사조사과 인력은 전체 경찰인력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수사요원도 모두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검거 위주의 활동을 하는 형사도 많다. 따라서 수사의 좁은 부분인 조사활동만을 염두에 둔 질문은 경찰활동 전반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고 다른 질문들이 훨씬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식으로 질문의 범위가 좁으면 응답자(교육을 수강하는 경찰관들)의 직

무 분야가 다를 경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보안, 정보 등의 다른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한 설문지에 포함할 것인지, 또는 각 분야별로 별도의 문항을 만들어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경찰 분야 전문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 활동상의 인권 침해는 좀더 노골적이며 극단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미성년자 관련 항목 외에도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여성(성폭력 피해자 이외의) 등 다른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의 제안으로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또는 부당한 법제도에 대한 거부의 사례를 들어 인권의식을 파악하는 문항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은 만들어진 문항 하나하나의 내용을 법적근거를 토대로 인권침해여부를 확인하였고, 인권감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문항의 예시를 각 문항마다 제시해 주었다.

(8) 교정공무원 분야 전문가 2차 자문 내용

1차 자문에서는 사례에 대한 일대일 자문을 중요도와 심각도를 중심으로 평가했고 각 사례마다 인권침해의 원인과 법적근거를 제시했다. 2차 자문에도 1차와 마찬가지로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한 침해원인과 근거를 기준으로 구금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해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등 인권과 관련된 불법여부와 불법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또한 법적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자문위원의 개인적 생각과 인권침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안사항이 있었다.

(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전문가 2차 자문 내용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전문가 1차 자문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의 문항 51개를 도출하였고, 전문가 2차 자문의 내용으로 문항 초본의 검토를 의뢰하였다.

전문가 2차 자문 내용으로는 먼저 현재의 문항을 엄선하여 인권교육 전, 후에 검사를 실시할 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도록 문항을 최대한으로 간소화 또는 쉽게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즉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이 2시간(90-100분 정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문항을 간소화함으로써, 인권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검사의 문항에 부담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각 문항의 의도가 진술 상에서 노출되거나 혹은 문항의 표현이 직설적인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있었다. 또한 문항 속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그렇다(맞다)’ 혹은 ‘그렇지 않다(틀리다)’ 중 하나의 답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문항 속의 진술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제시되었다. 그 외 미 제도가 바뀌었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질문인 경우, 사례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등은 수정, 혹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과 유사한 주제를 여러 문항으로 묻는 경우에는 문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문항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총 51개의 문항 초본 중 최종적으로 40개의 문항이 확정되었다. 이 문항들은 사생활, 인사권(진보 포함), 채용(평등권 포함), 노동, 복지(급여 포함), 성차별, 기타에서 각 이슈의 중요도 및 심각도, 그리고 문항화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각 이슈별 문항 수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의 최종 문항을 완성하였다.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의 최종문항은 사전, 사후 검사로 제시되는데, 다른 분야의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진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배열을 서로 달리하여 응답자가 사전 검사에서 문항의 내용

을 숙지함으로써, 사후 검사에서 사전검사에 의한 기억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IV. 공공분야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의 실제

1. 검사 문항의 측정요소 및 최종 문항

본 검사는 9개 분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문항(완성형 버전 20문항, 간편형 버전 10문항)과 각 분야에 특수한 특수문항(완성형 버전 40문항, 간편형 버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검사문항들은 각종 관련 문헌 연구, 1-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 및 실무자 인터뷰 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제작되었고, 현실적인 맥락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문항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또한 검사 시,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해 검사 참여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억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및 사후 검사의 넘버링을 모든 분야에서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각 문항이 의도하는 바가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정, +)과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역, -)들을 주제 및 내용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채점표의 경우에는 검사실시자가 본 검사 도구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채점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본 검사 결과의 채점 및 분석을 위해 SPSS 15.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1) 공통문항의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

9개 공공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통문항은 문헌조사, 여러 차례의 인권교육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 등을 통하여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최종적으로 완성형 검사는 20문항(사전 검사 1번-20번), 간편형 검사는 10문항(사전 검사 1번-10번)으로 확정되었다.

공통문항의 완성형 검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골고루 다루고자 하였는데,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 차별,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문항은 그 이슈의 비중을 고려하여, 주로 이슈 당 한 문항씩 제시되고 있는 다른 이슈들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의 문항(2-3문항)으로 제시하였다. 공통문항의 내용은 [부록 6]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들은 공통문항의 문항 구성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완성형 버전 검사의 이슈 중 간편형 검사의 이슈로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그중에서 10 문항을 선정하였다. 표에 제시된 문항번호에서 전, 후는 사전, 사후 검사에서의 문항번호를 뜻하는 것이고, 정문항은 긍정적으로 진술된 문항(+), 역문항은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을 의미한다.

<표 IV-1> 공통문항(완성형)의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법 앞의 평등 | 전과자, 재소자들은 일반인들과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1 | 1 | 20 | - |
| 국적선택의 권리 | 남자 연예인이 군 입대 나이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연예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 1 | 2 | 19 | - |
| 성차별 | 여자사단장이 부대를 지휘한다면 부대를 이끌어가는 데 능숙하지 못할 것임. | 1 | 3 | 18 | - |
| 연고에 따른 차별 | 직원을 뽑을 때, 학벌, 출신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임. | 1 | 4 | 17 | - |
| 이주노동자 차별 |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음. | 1 | 5 | 16 | - |
| 노동권 | 경제가 어렵더라도 근무조건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1 | 6 | 15 | - |
| 성적소수자 차별 | 직장동료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심리적 거리가 생길 것 같음. | 1 | 7 | 14 | - |
| 장애인 차별 | 휠체어를 타고 있는 지체장애인이 들어오면, 부탁받지 않았어도 밀어드리는 것이 좋음. | 2 | 8 | 13 | - |
| | 자신의 자녀가 정신장애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걱정스러운 것 같음. | | 9 | 12 | - |
| 질병에 | HIV 보균자는 발병 전이라고 일반인과 격리하는 것이 좋음. | 1 | 10 | 11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다른 차별 | | | | | |
| 사생활 보호 |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부모가 자녀의 일기장을 봐도 됨. | 3 | 11 | 10 | - |
| | 개인의 사생활 보호 보다는 전체 구성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임. | | 15 | 6 | - |
| | 업무 상황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직장동료나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 | | 17 | 4 | - |
| 인격존중 | 고객이 나이가 어린 사람인 경우, 당사자 보다는 보호자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함. | 1 | 12 | 9 | - |
| 소수의 권리 | 시간과 돈의 제약이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할 수밖에 없음. | 1 | 13 | 8 | - |
| 민원인의 권리 |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다면, 민원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 | 1 | 14 | 7 | - |
| 순응주의 | 기관장의 지시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좋음. | 1 | 16 | 5 | - |
| 알 권리 |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 | 1 | 18 | 3 | - |
| 인간의 존엄성 | 직장에서 상급자는 업무상의 효율성을 위해 하급자에게 반말로 지시를 할 필요가 있음. | 1 | 19 | 2 | - |
| 기본생활권 | 제조사들에게는 냉,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도 됨. | 1 | 20 | 1 | - |

<표 IV-2> 공통문항(간편형)의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법 앞의 평등 | 전과자, 재소자들은 일반인들과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1 | 1 | 10 | - |
| 연고에 따른 차별 | 직원을 뽑을 때, 학벌, 출신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임. | 1 | 2 | 9 | - |
| 이주노동자 차별 |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음. | 1 | 3 | 8 | - |
| 성적소수 | 직장동료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심리적 | 1 | 4 | 7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자 차별 | 거리가 생길 것 같음. | | | | |
| 장애인 차별 | 자신의 자녀가 정신장애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걱정스러울 것 같음. | 1 | 5 | 6 | - |
| 인격존중 | 고객이 나이가 어린 사람인 경우, 당사자 보다는 보호자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함. | 1 | 6 | 5 | - |
| 소수의 권리 | 시간과 돈의 제약이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할 수밖에 없음. | 1 | 7 | 4 | - |
| 사생활 보호 | 개인의 사생활 보호 보다는 전체 구성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임. | 1 | 8 | 3 | - |
| 알 권리 |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 | 1 | 9 | 2 | - |
| 인간의 존엄성 | 직장에서 상급자는 업무상의 효율성을 위해 하급자에게 반말로 지시를 할 필요가 있음. | 1 | 10 | 1 | - |

공통문항의 경우,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모두 문항 진술의 형태가 역문항이기 때문에 모두 ‘-’로 표시되었다.

<표 IV-3> 공통문항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완성형 검사 | 사전 및 사후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및 사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 | - | - | - | - | - | - | - | - |

2) 특수문항의 문항 구성표와 채점표

특수문항의 내용이 되는 이슈는 각 분야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 별 이슈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 문헌 및 인터넷 등의 최신 자료 조사, 전문가 1, 2차 자문 및 실무자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서 특수문항이 내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수정, 추가하여 각 분야별 최종 문항을 확정하게 되었다. 특수문항은 해당 분야에 고유한 내용들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분야의 주된 이슈들을 문항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각 분야별 특수문항의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를 제시하고, 검사문항은 각 분야별로 [부록 6]에 제시하였다.

(1) 교사 분야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

교사 분야의 경우에는 완성형 검사의 경우, 총 11개의 이슈에 대해 각 사례를 구성하여 문항화 하였다. 간편형 검사의 경우, 완성형 검사에서 한 개의 이슈를 제외하고 총 10개의 이슈에 대해 문항을 구성하였다. 교사 분야의 완성형 및 간편형 문항 구성표, 그리고 각 검사의 채점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4> 교사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정당성을 잃은 학교규율 | 4 | 21 | 30 | - |
| | | | 27 | 54 | - |
| | 51 | | 60 | - | |
| | 언어폭력 | | 22 | 59 | - |
| 차별금지 |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차별 | 6 | 24 | 57 | + |
| | 성적 차별 | | 31 | 50 | - |
| | 성별 차별 | | 45 | 36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빈곤학생에 대한 차별 | | 41 | 40 | - |
| |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 | 53 | 21 | - |
| | | | 60 | 28 | + |
| 교육에 대한 권리 |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 5 | 25 | 42 | - |
| | | | 36 | 45 | - |
| | | | 39 | 56 | - |
| | 26 | | 38 | - | |
| |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 | 43 | 55 | - |
| 학생 자치와 참여권 |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 제한 | 2 | 28 | 53 | + |
| | 동아리 활동 규제 | | 48 | 33 | - |
| 신체의 자유 | 모욕적인 처우 | 2 | 29 | 31 | - |
| | | | 50 | 52 | - |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양심에 반하는 서약의 강요 | 2 | 30 | 51 | - |
| | 종교 강요 | | 37 | 44 | - |
| 표현의 자유 | 복장과 두발 제한 | 5 | 38 | 26 | - |
| | | | 55 | 43 | - |
| | 매체 활동에 대한 규제 | | 40 | 23 | - |
| | | | 42 | 39 | - |
| | | | 58 | 41 | - |
|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사적기록물에 대한 침해 | 7 | 44 | 35 | - |
| | | | 46 | 37 | - |
| |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 | 33 | 34 | - |
| | | | 47 | 48 | - |
| | 개인 정보 침해 | | 49 | 29 | - |
| 감시 장비의 설치 | 52 | 32 | - | | |
| 23 | 58 | - | | | |
| 정보접근권 |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 2 | 54 | 27 | + |
| | 참여를 위한 정보 | | 35 | 46 | + |
| 건강권 | 보건실 운영 | 1 | 56 | 25 | - |
|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 정당성을 벗어난 징계 | 4 | 32 | 24 | - |
| | | | 34 | 47 | - |
| | | | 57 | 49 | + |
| |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 | | 59 | 22 | - |

<표 IV-5> 교사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정당성을 잃은 학교규율 | 2 | 11 | 30 | - |
| | 언어폭력 | | 22 | 29 | - |
| 차별금지 | 성별 차별 | 3 | 26 | 15 | - |
| | 빈곤학생에 대한 차별 | | 25 | 16 | - |
| |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 | 29 | 12 | - |
| 교육에 대한 권리 |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 2 | 14 | 27 | - |
| |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 | 15 | 26 | - |
| 학생 자치와 참여권 |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 제한 | 2 | 16 | 25 | + |
| | 동아리 활동 규제 | | 27 | 14 | - |
| 신체의 자유 | 모욕적인 처우 | 1 | 17 | 24 | - |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양심에 반하는 서약의 강요 | 2 | 18 | 23 | - |
| | 종교 강요 | | 22 | 19 | - |
| 표현의 자유 | 복장과 두발 제한 | 2 | 23 | 18 | - |
| | 매체 활동에 대한 규제 | | 24 | 17 | - |
|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 3 | 20 | 22 | - |
| | 개인 정보 침해 | | 28 | 13 | - |
| | 감시 장비의 설치 | | 13 | 28 | - |
| 정보접근권 |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 2 | 30 | 11 | - |
| | 참여를 위한 정보 | | 21 | 20 | + |
|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 정당성을 벗어난 징계 | 1 | 19 | 21 | - |

<표 IV-6> 교사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 (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2) 군인 분야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

군인 분야의 경우에는 완성형 검사는 총 11개의 이슈, 간편형 검사의 경우에는 총 9개의 이슈에서 도출한 문항들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군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였고, 각 이슈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문항의 수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한 이슈 당 여러 개의 문항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군인 분야의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의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7> 군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인격적 존엄 및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 | 구타 | 8 | 27 | 54 | - |
| | 가혹행위 | | 34 | 47 | - |
| | 언어폭력 | | 21 | 60 | - |
| | 단체기합 | | 22 | 59 | - |
| | 성희롱 | | 31 | 50 | - |
| | 암기강요 | | 23 | 58 | - |
| | 왕따 | | 24 | 57 | - |
| | 성적 농담 | | 25 | 56 | - |
| 사적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 | 사적 제재 | 3 | 26 | 33 | - |
| | | | 40 | 41 | - |
| | | | 48 | 55 | - |
|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부당 수사 | 3 | 33 | 48 | - |
| | 징계권 남용 | | 36 | 45 | - |
| | 적법절차 무시 | | 39 | 42 | - |
| 사생활의 비밀 유지 권리 | 신상명세 공개 | 6 | 49 | 32 | - |
| | 우편물 공개 | | 41 | 40 | - |
| | 영창 내 감시카메라 | | 45 | 36 | - |
| | 사생활 말하기 강요 | | 51 | 30 | - |
| | 영장 없는 압수 수색 | | 42 | 39 | - |
| | 사생활 공간 미보장 | | 44 | 37 | - |
| 통신의 자유 | 휴대폰 소지 금지 | 4 | 56 | 25 | - |
| 사상·양심의 자유 | 특정 종교 강요 | | 53 | 28 | - |
| | 양심적 병역 거부 | | 32 | 49 | - |
| | 사상의 자유 침해 | | 59 | 22 |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군인 차별 | 6 | 28 | 53 | - |
| | 동성애자 차별 | | 30 | 26 | - |
| | | | 47 | 34 | - |
| | | | 55 | 51 | - |
| | 신분·계급에 따른 차별 | | 38 | 43 | - |
| | 출신배경에 따른 차별 | | 43 | 38 | - |
| 인사소청권, 의견건의권, 고충처리권 | 의견 건의 위반 | 4 | 29 | 52 | - |
| | 소원수리제도 위반 | | 46 | 23 | - |
| | | | 50 | 31 | - |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 | 58 | 35 | - |
| 일과 휴식의 권리 | 휴가권 침해 | 3 | 52 | 29 | - |
| | 휴식권 침해 | | 35 | 46 | - |
| | 월급 문제 | | 54 | 27 | - |
| 의료권 | 의료접근권 침해 | 2 | 57 | 24 | - |
| | 부정확한 진료 | | 37 | 44 | - |
| 의식주 및 환경권 | 열악한 복무여건 | 1 | 60 | 21 | - |

<표 IV-8> 군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인격적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 | 구타 | 4 | 14 | 27 | - |
| | 가혹행위 | | 18 | 23 | - |
| | 언어폭력 | | 11 | 30 | - |
| | 단체기합 | | 12 | 29 | - |
| 사적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 | 사적 제재 | 1 | 13 | 28 | - |
|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부당 수사 | 2 | 17 | 24 | - |
| | 징계권 남용 | | 20 | 21 | - |
| 사생활의 비밀 유지 권리 | 우편물 공개 | 3 | 23 | 18 | - |
| | 사생활 말하기 강요 | | 26 | 15 | - |
| | 영장 없는 압수 수색 | | 24 | 17 | - |
| 사상·양심의 자유 | 특정 종교 강요 | 2 | 28 | 13 | - |
| | 사상의 자유 침해 | | 30 | 11 |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동성애자 차별 | 2 | 16 | 25 | - |
| | 신분·계급에 따른 차별 | | 22 | 19 | - |
| 인사소청권, 의견건의권, 고충처리권 | 의견 건의 위반 | 2 | 15 | 26 | - |
| | 소원수리제도 위반 | | 25 | 16 | - |
| 일과 휴식의 권리 | 휴가권 침해 | 2 | 27 | 14 | - |
| | 휴식권 침해 | | 19 | 22 | - |
| 의료권 | 의료접근권 침해 | 2 | 29 | 12 | - |
| | 부정확한 진료 | | 21 | 20 | - |

<표 IV-9> 군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 (정: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3) 노인 분야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

노인 분야에서는 완성형 검사의 경우 총 14개의 이슈, 그리고 간편형 검사에서는 총 12개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례들을 도출하여 문항화 하였다. 노인 분야의 경우에도 이 분야에서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 및 사례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었는데, 이에 따라 각 이슈별 문항수는 적게는 1-2개, 많게는 4-5개로 제시되었다. 노인 분야의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0> 노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보건의료 서비스 | 물리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5 | 21 | 60 | - |
| | 어르신들의 추가 약물 요구 | | 33 | 48 | - |
| | 와상 노인의 체위 변경 | | 42 | 39 | - |
| | 치료진과 보호자의 견해 차이 | | 50 | 31 | - |
| | 어르신들과 보호자의 외부 약물 복용 요구 | | 57 | 24 | - |
| 영양 및 급식 서비스 | 고도비만, 고혈압 환자에 대한 음식 섭취 제재 | 5 | 22 | 59 | + |
| |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특별식 제공 | | 34 | 47 | + |
| | 저염식 식사 | | 43 | 38 | + |
| |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 | | 51 | 30 | - |
| | 식사 시간제한 | | 58 | 23 | - |
| 위생 및 청결 서비스 | 기저귀 교체시 정서적 교감 | 4 | 23 | 58 | + |
| | 배변 활동 지원 | | 35 | 46 | - |
| | 양치 서비스 | | 44 | 37 | - |
| | 같은 방에 있는 노인들로 인한 냄새 | | 45 | 36 | - |
|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 | 동료 노인들의 중증 증세로 인한 취침 방해 | 4 | 24 | 57 | - |
| | 동료노인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쾌적하지 않음 | | 36 | 45 | - |
| | 안전을 위한 문단속 | | 52 | 29 | + |
| | 치매노인의 안전을 위한 목걸이 착용 | | 53 | 28 | - |
| 사생활 보호 | 목욕하러 가기 전과 후에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체 노출 | 4 | 25 | 56 | - |
| | 상담내용 공개 | | 37 | 44 | - |
| | 기저귀 갈 때 커튼을 치지 않음 | | 46 | 35 | - |
| | 시청을 원치 않을 때에도 텔레비전 시청을 해야 하는 경우 | | 59 | 22 | - |
| 동료 노인들에게 존중받을 권리 | 동료 노인들끼리 서로 놀림 | 4 | 26 | 55 | - |
| |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을 괴롭힘 | | 38 | 43 | + |
| | 건강한 노인이 약한 노인을 괴롭힘 | | 47 | 34 | - |
| | 종사자들 몰래 일어나는 괴롭힘 | | 54 | 27 | + |
| 신체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 | 폭력적인 노인을 방에 가두어 통제 | 4 | 27 | 54 | - |
| | 반말 및 놀리는 말 | | 39 | 42 | - |
| | 사소한 요청에 대해 세심하게 반응하지 않음 | | 48 | 33 | - |
| | 자녀들이 어르신의 재산을 사용하고 시설비용도 제공하지 않음 | | 55 | 26 | - |
| 통신, 소통의 자유 | 보호자들이 바쁘다고 방문을 피함 | 1 | 28 | 53 | - |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알 권리 | 시설 서비스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1 | 29 | 52 | + |
| 의복서비스 | 겨울철에 내복 제공하기 | 1 | 30 | 51 | - |
| 노동권 및 재산권 | 잔존능력 향상을 위한 작업 활동에 당사자의 동의 구하기 | 2 | 31 | 50 | + |
| | 노인의 통장 잔고 확인해 주기 | | 40 | 41 | + |
| 정치적 자유권 | 부재자 투표 | 2 | 32 | 49 | + |
| |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 | | 56 | 25 | - |
| 종교적 자유권 | 시설의 특정 종교 강요 | 1 | 41 | 40 | - |
| 문화생활권 | 텔레비전 시청 시간 | 2 | 49 | 32 | - |
|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 | 60 | 21 | - |

<표 IV-11> 노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보건의료 서비스 | 어르신들의 추가 약물 요구 | 3 | 11 | 30 | - |
| | 와상 노인의 체위 변경 | | 19 | 22 | - |
| | 치료진과 보호자의 견해 차이 | | 26 | 15 | - |
| 영양 및 급식 서비스 |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특별식 제공 | 3 | 12 | 29 | + |
| |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 | | 20 | 21 | - |
| | 식사 시간제한 | | 27 | 14 | - |
| 위생 및 청결 서비스 | 배변 활동 지원 | 2 | 13 | 28 | - |
| | 같은 방에 있는 노인들로 인한 냄새 | | 21 | 20 | - |
| 사생활 보호 | 상담내용 공개 | 2 | 14 | 27 | - |
| | 기저귀 갈 때 커튼을 치지 않음 | | 22 | 19 | - |
| 동료 노인들에게 존중받을 권리 | 동료 노인들끼리 서로 놀림 | 2 | 15 | 26 | - |
| |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을 괴롭힘 | | 23 | 18 | + |
| 학대 | 폭력적인 노인을 방에 가두어 통제 | 2 | 16 | 25 | - |
| | 반말 및 놀리는 말 | | 24 | 17 | - |
|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 | 안전을 위한 문단속 | 1 | 17 | 24 | + |
| 알 권리 | 시설 서비스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1 | 18 | 23 | + |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의복 서비스 | 겨울철에 내복 제공하기 | 1 | 25 | 16 | - |
| 노동권 | 잔존능력 향상을 위한 작업 활동에 당사자의 동의 구하기 | 1 | 28 | 13 | + |
| 정치적 자유권 | 부재자 투표 | 1 | 29 | 12 | + |
| 문화생활권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 1 | 30 | 11 | - |

<표 IV-12> 노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 (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 성 형 검 사 | 사 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편 형 검 사 | 사 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신장애인 분야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

정신장애인 분야에서는 완성형 검사에서는 총 16개의 이슈, 그리고 간편형 검사에서는 총 12개의 이슈를 중심으로 각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의 이슈 및 사례들 또한 유관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문항화 하였고, 그를 통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자신의 현재 그대로의 상태를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유도하였다.

정신장애인 분야의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3> 정신장애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문항 |
|----------------------------|----------------------------------|-----|------|----|-------|
| | | | 전 | 후 | |
|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 보호의무자의 재입원 요구에 따른 다른 병원 입원 | 5 | 21 | 60 | - |
| | 사설 이송 단체를 통한 강제 이송 | | 35 | 46 | - |
| | 자의입원 여부 | | 48 | 33 | - |
| | 시설 직원이 보호의무자로 서류 작성 | | 56 | 25 | - |
| | 응급실에서 정신과 전공의에 견해에 따라 입원시킴 | | 60 | 21 | - |
|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 사회적 편견을 의식한 보호자들의 치료 반대 | 3 | 22 | 59 | - |
|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의와의 상담 부족 | | 36 | 45 | - |
| | 보호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한 | | 49 | 32 | - |
| 신체적 안전 | 방장의 구타 | 4 | 23 | 58 | - |
| | 환자들끼리의 싸움을 통제하기 위한 강박 실시 | | 37 | 44 | - |
| | 정신과 전문의 지시 하에서의 강박 | | 50 | 31 | - |
| | 공격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물리적 폭력 | | 57 | 24 | - |
| 적절한 식생활 보장 | 원활한 단체 식사를 위한 식사 시간제한 | 2 | 24 | 57 | - |
| | 일반 보험환자와 저소득층 의료 급여 환자 사이의 급식 차별 | | 38 | 43 | - |
|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 파손 방지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지 않음 | 3 | 25 | 56 | - |
| | 격리실 내부의 위생 상태 | | 39 | 42 | - |
| | 중증 환자로 인한 취침의 어려움 | | 51 | 30 | - |
| 사생활 보호 |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 진단서 발급 | 3 | 26 | 55 | - |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화장실 및 샤워실에 CCTV 설치 | | 40 | 41 | - |
| | 보호자의 반대에 따라 이성 교제 제한함 | | 52 | 29 | - |
| 통신, 의사소통의 자유 | 건의함과 진정함을 병행하여 사용함 | 4 | 27 | 54 | - |
| | 가족들과의 접촉 제한 | | 41 | 40 | - |
| | 공중전화 설치 및 사용 | | 53 | 28 | - |
| | 휴대폰 사용 제한 | | 58 | 23 | - |
| 외출의 자유 | 안전을 위해 외출 제한 | 2 | 28 | 53 | - |
| | 증상이 경미한 경우 외출 권장 | | 42 | 39 | + |
|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 작업 치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 3 | 29 | 52 | - |
| | 작업에 대한 낮은 임금 | | 43 | 38 | - |
| | 정기적인 수입을 스스로 관리하게 함 | | 54 | 27 | - |
| 알 권리 | 병원 생활과 권리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2 | 30 | 51 | - |
| | 병명과 치료 프로그램 계획 등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 44 | 37 | - |
| 적절한 의복 | 일률적으로 동일한 의복 착용 | 1 | 31 | 50 | |
| 여가 및 문화생활권 | 취침시간과 텔레비전 시청 요청 | 3 | 32 | 49 | |
| | 문화 프로그램 참여 강요 | | 45 | 36 | |
| | 산책과 운동을 위한 공간 확보 | | 55 | 26 | |
| 정치의 자유 | 투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참여 독려 | 2 | 33 | 48 | |
| |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권유 | | 46 | 35 | |
| 종교의 자유 |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시설에서의 종교적 자유 | 2 | 34 | 47 | |
| | 시설 내의 동료 환자들 사이의 종교적 갈등 | | 47 | 34 | |
| 기타 | 시군구의 보호의무자 역할 | 1 | 59 | 22 | |

<표 IV-14> 정신장애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문항 |
|----------------------------|----------------------------------|------|-------|----|-------|
| | | | 전 | 후 | |
|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 보호의무자의 재입원 요구에 따른 다른 병원 입원 | 3 | 11 | 30 | - |
| | 사설 이송 단체를 통한 강제 이송 | | 21 | 20 | - |
| | 자의입원 여부 | | 28 | 13 | - |
|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 사회적 편견을 의식한 보호자들의 치료 반대 | 3 | 12 | 29 | - |
|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의와의 상담 부족 | | 22 | 19 | - |
| | 보호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한 | | 29 | 12 | - |
| 신체적 안전 | 환자들끼리의 싸움을 통제하기 위한 강박 실시 | 2 | 13 | 28 | - |
| | 정신과 전문의 지시 하에서의 강박 | | 23 | 18 | - |
| 적절한 식생활 보장 | 원활한 단체 식사를 위한 식사 시간제한 | 2 | 14 | 27 | - |
| | 일반 보험환자와 저소득층 의료 급여 환자 사이의 급식 차별 | | 24 | 17 | - |
| 사생활 보호 |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 진단서 발급 | 2 | 16 | 25 | - |
| | 화장실 및 샤워실에 CCTV 설치 | | 25 | 16 | - |
| 외출의 자유 | 안전을 위해 외출 제한 | 2 | 17 | 24 | - |
| | 증상이 경미한 경우 외출 권장 | | 26 | 15 | + |
|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 중증 환자로 인한 취침의 어려움 | 1 | 27 | 14 | - |
| 통신, 의사소통의 자유 | 건의함과 진정함을 병행하여 사용함 | 1 | 18 | 23 | - |
| 노동권 | 작업 치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 1 | 19 | 22 | - |
| 알 권리 | 병원 생활과 권리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1 | 20 | 21 | - |
| 여가 및 문화 생활권 | 산책과 운동을 위한 공간 확보 | 1 | 30 | 11 | - |
| 기타 | 시군구의 보호의무자 역할 | 1 | 15 | 26 | - |

<표 IV-15> 정신장애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 (정: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5) 시설 아동 분야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

시설 아동 분야의 특수문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7가지 권리를 중심으로 완성형 검사의 경우, 19개의 이슈, 그리고 간편형 검사의 경우 18개의 이슈를 도출하여 문항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각 이슈는 1-5개까지 다양한 문항 수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아동 분야의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6> 시설 아동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권리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 전 | 후 | |
| 아동의 생존권 | 식생활 | 단체 식단 | 2 | 21 | 60 | - |
| | | 간식문제 | | 22 | 59 | - |
| | 주생활 | 잠자는 시간제한. | 3 | 23 | 58 | - |
| | | 연령에 따른 숙소배정 | | 37 | 44 | + |
| | | 방의 질서를 유지와 방장의 권한 | | 28 | 53 | - |
| | 의료/위생 | 시설의 재정이 부족으로 인한 의료부족 | 3 | 25 | 56 | - |
| | | 응급처치할 때 약의 남용 | | 26 | 55 | - |
| | | 아동의 약물에 대한 교육 | | 27 | 54 | - |
| | 보호받을 권리 | 별 | 아동의 체벌문제 | 1 | 24 | 57 |
| 특별한 아동 보호 | | 소외아동에 대한 대처 | 5 | 29 | 52 | - |
| | | 학습장애아동에 대한 대처 | | 34 | 47 | - |
| | | 영유아의 욕구 | | 31 | 50 | - |
| | | 학대받은 경험이나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한 편견 | | 57 | 24 | - |
| | | 문제 아동들의 격리 생활보호사의 처리문제 | | 50 | 31 | - |
| 귀가문제 | | 아동의 귀가시간 제한 문제 | 1 | 30 | 51 | + |
| 의사소통 문제 | 아동의 시설 내 전화사용 및 가족, 직원과 대화문제 | 1 | 43 | 38 | - | |
| 발달권 | 교육권 | 상급학교의 진학 문제 | 4 | 32 | 49 | - |
| | | 개별지도의 문제 | | 33 | 48 | - |
| | | 아동의 학교 내의 동아리활동이나 특별활동 | | 35 | 46 | - |
| | | 시설 내에 컴퓨터, 인터넷사용의 제한 | | 40 | 41 | - |
| | 친구관계 | 친구관계의 제한 | 1 | 36 | 45 | - |
| | 문화적 권리 | 단체 활동으로서의 영화관람 | 2 | 38 | 43 | - |
| 개별 책상, 옷장의 소유 | | 49 | | 32 | - | |
| 자유권 | 사생활침해 | 아동들의 사진이 포스터나 홈페이지에 실리는 문제 | 5 | 54 | 27 | - |
| | | 아동의 사적 행동에 대한 제약 | | 55 | 26 | - |
| | | 소지품검사 | | 60 | 21 | - |
| | | 아동의 편지 이메일 관리 문제 | | 44 | 37 | - |
| | | 후원회 사람들이 주는 용돈 문제 | | 45 | 36 | - |
| | 경제권 | 아동의 용돈의 관리문제 | 3 | 39 | 42 | - |
| | | 후원회의 용돈 관리문제 | | 46 | 35 | + |

| 권리 | 이슈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문항 |
|------|----------|--------------------------------|-----|------|----|-------|
| | | | | 전 | 후 | |
| | | 개인물품 구입 | | 47 | 34 | + |
| | 숙소 선택권 | 한 방에 같이 생활하는 아동 선택의 문제 | 1 | 48 | 33 | + |
| | 종교의 자유 | 시설의 재단에서 하는 종교관련 행사와 집회참여 | 1 | 41 | 40 | - |
| 참정권 | 생활수칙 | 시설내의 규칙의 참여 제한 | 2 | 42 | 39 | - |
| | 시설운영 참여 | 시설의 운영이나 재정 상태운영에의 참여 제한 | | 59 | 22 | - |
| 사후관리 | 부모와 관계형성 | 아동은 입소할 때 상황이나 자신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 | 3 | 58 | 23 | - |
| | |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의 연락처에 대한 알 권리 | | 52 | 29 | - |
| | 퇴소 후 자립 | 퇴소 후 자립의 정착금 문제 | | 53 | 28 | - |
| 기타 | 성문제 | 아동의 성적 고민에 대한 문제 | 2 | 56 | 25 | - |
| | |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관한 문제 | | 51 | 30 | - |

<표 IV-17> 시설 아동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권리 | 이슈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문항 |
|---------------|-----------|----------------------|-----|------|----|-------|
| | | | | 전 | 후 | |
| 아동의 생존권 | 식생활 | 단체 식단 | 2 | 11 | 45 | - |
| | | 간식문제 | | 12 | 43 | - |
| | 주생활 | 잠자는 시간제한. | 3 | 13 | 43 | - |
| | | 연령에 따른 숙소배정 | | 27 | 29 | + |
| | | 방의 질서를 유지와 방장의 권한 | | 18 | 38 | - |
| | 의료/위생 | 시설의 재정이 부족으로 인한 의료부족 | 3 | 15 | 41 | - |
| | | 응급 처치할 때 약의 남용 | | 16 | 40 | - |
| 아동의 약물에 대한 교육 | | 17 | | 39 | - | |
| 보호받을 권리 | 벌 | 아동의 체벌문제 | 1 | 14 | 42 | - |
| | | 소외아동에 대한 대처 | | 19 | 37 | - |
| | 특별한 아동 보호 | 학습장애아동에 대한 대처 | 4 | 24 | 32 | - |
| | | 영유아의 욕구 | | 21 | 35 | - |

| 권리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 전 | 후 | |
| | | 문제 아동들의 격리 생활보호사의 처리문제 | | 40 | 15 | - |
| | 귀가문제 | 아동의 귀가시간 제한 문제 | 1 | 20 | 36 | + |
| | 의사소통 문제 | 아동의 시설 내 전화사용 및 가족, 직원과 대화문 제 | 1 | 33 | 23 | - |
| 발달권 | 교육권 | 상급학교의 진학 문제 | 4 | 22 | 34 | - |
| | | 개별지도의 문제 | | 23 | 33 | - |
| | | 아동의 학교 내의 동아리활동이나 특별활동 | | 25 | 31 | - |
| | | 시설 내에 컴퓨터, 인터넷사용의 제한 | | 30 | 46 | - |
| | 친구관계 | 친구관계의 제한 | 1 | 26 | 30 | - |
| | 문화적 권리 | 단체 활동으로서의 영화관람 | 2 | 28 | 28 | - |
| 개별 책상, 옷장의 소유 | | 39 | | 17 | - | |
| 자유권 | 사생활침해 | 아동들의 사진이 포스터나 홈페이지에 실리는 문 제 | 4 | 44 | 12 | - |
| | | 아동의 사적 행동에 대한 제약 | | 45 | 11 | - |
| | | 아동의 편지 이메일 관리 문제 | | 34 | 22 | - |
| | | 후원회 사람들이 주는 용돈 문제 | | 35 | 21 | - |
| | 경제권 | 아동의 용돈의 관리문제 | 3 | 29 | 27 | - |
| | | 후원회의 용돈 관리문제 | | 36 | 20 | + |
| | | 개인물품 구입 | | 37 | 19 | + |
| | 숙소 선택권 | 한 방에 같이 생활하는 아동 선택의 문제 | 1 | 38 | 18 | + |
| 종교의 자유 | 시설의 재단에서 하는 종교관련 행사와 집회참여 | 1 | 31 | 25 | - | |
| 참정권 | 생활수칙 | 시설내의 규칙의 참여 제한 | 1 | 32 | 24 | - |
| 사후관리 | 부모와 관계형성 |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의 연락처에 대한 알 권리 | 2 | 42 | 14 | - |
| | 퇴소 후 자립 | 퇴소 후 자립의 정착금 문제 | | 43 | 13 | - |
| 기타 | 성문제 |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관한 문제 | 1 | 41 | 15 | - |

<표 IV-18> 시설 아동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 (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설 장애인 분야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

시설 장애인 분야의 경우, 완성형, 간편형 검사 모두 총 13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완성형 검사는 이슈별로 1-6개의 문항, 그리고 간편형 검사의 경우에는 1-3개의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시설 장애인 분야에서 쟁점이 된다고 간주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 장애인 분야의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9> 시설 장애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입소 자기 결정권 | 보호의무자의 임의에 따른 입소 | 2 | 21 | 60 | - |
| 의사표현의 자유 | 아플 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 3 | 43 | 38 | - |
| | 아프다고 보호사의 주관에 의해 판단하여 병원에 보냄 | | 44 | 37 | - |
| | 원장이나 보호사의 호칭 | | 35 | 46 | - |
| 신체의 자유 | 보호사 임의에 의한 행동규정 | 5 | 32 | 49 | - |
| | 보호사에 의한 휠체어 사용 제한 | | 33 | 48 | - |
| | 외출에 대한 규제 | | 52 | 29 | - |
| | 생활인의 싸움 시, 격리 | | 30 | 51 | - |
| | 치료 시, 외부와 격리 | | 25 | 56 | - |
| 선택권 | 시간대별로 지정된 프로그램 참여 | 6 | 29 | 52 | + |
| | 일상의 일과에 대한 선택과 제한 | | 22 | 59 | - |
| | 다양한 활동 수렴과정의 선택권 제한 | | 58 | 23 | - |
| | 잠자는 시간의 선택권 제한 | | 24 | 57 | - |
| |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의 제한 | | 59 | 22 | - |
| | 단체생활로 인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권리 | | 36 | 35 | - |
| 교육권 | 공부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제한 | 2 | 38 | 43 | - |
| | 시설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개발 인식부족 | | 56 | 25 | - |
| 참정권 | 선거참여에 제한 | 2 | 55 | 26 | - |
| | 선거정보에 대한 제한 | | 46 | 35 | - |
| 가족권 | 가족의 연락처 두절 | 3 | 37 | 44 | - |
| | 가족의 접촉 제한 | | 42 | 39 | - |
| | 가족에 대한 정보 제한 | | 57 | 24 | - |
| 경제권 및 노동권 | 개인 돈의 관리 | 3 | 60 | 21 | - |
| | 작업장에서의 작업 | | 41 | 40 | - |
| | 시설장의 작업하기 | | 23 | 59 | - |
| 치료받을 권리 | 보호자에 의한 치료 제한 | 4 | 26 | 55 | - |
| | 중증환자 위주의 치료 | | 27 | 54 | - |
| | 비용에 의한 치료 제한 | | 28 | 53 | - |
| |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의 차별 | | 54 | 27 | - |
| 의, 식, 주 생활의 권리 | 일률적인 의류착복 | 2 | 31 | 50 | - |
| | 일률적인 식판에 의해 정해진 식사시간 | | 34 | 47 | - |
|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 | 바르지 못한 의복에 대한 대외적인 꾸중 | 5 | 53 | 28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남녀 교제의 자유권 | | 40 | 41 | - |
| | 애정표현의 자유권 | | 47 | 34 | - |
| | 결혼 | | 48 | 33 | - |
| | 남, 녀의 격리 | | 55 | 26 | - |
| 종교의 자유 |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시설에서의 종교적 자유 | 1 | 49 | 35 | - |
| 사생활침해 | 봉사자의 사진 찍음 | 3 | 50 | 31 | - |
| | 후원자의 생활인의 방 방문 | | 51 | 30 | - |
| | 개인 생활 정보 촬영 | | 39 | 42 | - |

<표 IV-20> 시설 장애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입소 자기 결정권 | 보호의무자의 임의에 따른 입소 | 1 | 11 | 30 | - |
| 의사표현의 자유 | 아프다고 보호사의 주관에 의해 판단하여 병원에 보 냄 | 2 | 21 | 20 | - |
| | 원장이나 보호사의 호칭 | | 17 | 24 | - |
| 신체의 자유 | 보호사에 의한 휠체어 사용 제한 | 2 | 16 | 25 | - |
| | 생활인의 싸움 시, 격리 | | 14 | 37 | - |
| 선택권 | 다양한 활동 수렴과정의 선택권 제한 | 2 | 29 | 13 | - |
| | 단체생활로 인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권리 | | 18 | 23 | - |
| 교육권 | 시설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개발 인식부족 | 1 | 27 | 14 | - |
| 참정권 | 선거참여의 제한 | 1 | 22 | 19 | - |
| 가족권 | 가족의 연락처 두절 | 2 | 19 | 22 | - |
| | 가족에 대한 정보 제한 | | 28 | 13 | - |
| 경제권 및 노동권 | 개인 돈의 관리 | 1 | 30 | 11 | - |
| 치료받을 권리 | 보호자에 의한 치료 제한 | 3 | 12 | 29 | - |
| | 중증환자 위주의 치료 | | 13 | 28 | - |
| |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의 차별 | | 26 | 15 | - |
| 의,식,주 생활의 권리 | 일률적인 의류착복 | 1 | 15 | 26 | - |
|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 | 바르지 못한 의복에 대한 대외적인 꾸중 | 2 | 25 | 28 | - |
| | 남녀 교제의 자유권 | | 20 | 21 | - |

| 이슈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문항 |
|--------|-----------------------------|-----|------|----|-------|
| | | | 전 | 후 | |
| 종교의 자유 |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시설에서의 종교적 자유 | 1 | 23 | 18 | - |
| 사생활침해 | 후원자의 생활인의 방 방문 | 1 | 24 | 17 | - |

<표 IV-21> 시설 장애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 (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7) 경찰 분야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

경찰 분야는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모두 7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다. 완성형 검사의 경우, 각 이슈별 비중에 따라 적게는 3개의 문항, 많게는 10개의 문항으로 제시하였고, 간편형 검사는 각 이슈별로 2-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찰 분야의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는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2> 경찰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문항 |
|--------------|-----------------------|-----|------|----|-------|
| | | | 전 | 후 | |
| 신체 훼손 및 언어폭력 | 시위자 무력진압 | 6 | 21 | 60 | - |
| | 심문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 | 28 | 53 | - |
| | 유치장에서 소란피우는 자 포박 | | 35 | 46 | - |
| | 미제사건에 대한 자백 요구 | | 42 | 40 | - |
| | 체포과정에서 작은 상처가 생기는 경우 | | 47 | 35 | - |
| | 상급자의 욕설, 구타 | | 52 | 31 | - |
| 제한사항 | 변호인 접견제한 | 5 | 22 | 59 | - |
| | 과거 행실상 검사실 출입 제한 | | 29 | 52 | - |
| | 구속부적부심사 요구에 대한 응답 늦춰짐 | | 36 | 45 | - |
| | 변호사 도착 전에 조사 시작 | | 43 | 39 | - |
| | 미성년자 보호자 없이 조사 | | 48 | 30 | - |
| 형평성 | 사적인 질문에 대답 요구 | 8 | 23 | 58 | - |
| | 고소인을 무고죄로 긴급체포 | | 30 | 51 | - |
| | 대질심문 동안 피해자의 합의 | | 37 | 38 | - |
| | 부부간 폭력사건 | | 44 | 34 | - |
| | 경찰에게 욕하는 피의자 | | 49 | 29 | - |
| | 정신장애 피해자 보호자 동석없이 조사 | | 53 | 27 | - |
| | 합의 요구 | | 55 | 25 | - |
| | 이주노동자 차별 | | 57 | 23 | - |
| | 경찰관의 욕설 | | 59 | 22 | - |
| 검문 | 불법집회 장소로 가는 통행인 불심검문 | 3 | 24 | 57 | - |
| |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 | | 31 | 50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검문 전 신분증 제시 과정 생략 | | 38 | 44 | - |
| 동행 및 연행 | 설명없이 임의동행 | 5 | 25 | 56 | - |
| | 임의동행 거부자 강제연행 | | 32 | 49 | - |
| | 아이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 | | 39 | 43 | - |
| | 사무실에 머물며 장시간 임의동행 종용 | | 45 | 37 | - |
| | 영장 없이 압수수색 | | 50 | 33 | - |
| 개인정보보호 및 수색 |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혐의가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 | 10 | 26 | 55 | - |
| | 피해자 동의 없이 신체검사 | | 33 | 48 | - |
| | 수색연장으로 채혈 | | 40 | 42 | - |
| | 혐의가 관련인들에게 알려지는 경우 | | 46 | 36 | - |
| | 성폭행 진술조서를 기자에게 공개 | | 51 | 32 | - |
| | 동의없이 영상녹화 | | 54 | 28 | - |
| | 법원 허가없이 통화녹음 | | 56 | 26 | - |
| | 알몸수색 | | 58 | 24 | - |
| | 지명수배 | | 60 | 21 | - |
| 진료 | 유치장 내 자해한 피해자에게 신경 못 씬 | 3 | 27 | 54 | - |
| | 심각한 병자라도 범죄예방을 위해 치료 늦음 | | 34 | 47 | - |
| | 응급환자라도 가해자라면 조사를 마친 후 진료 | | 41 | 41 | - |

<표 IV-23> 경찰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신체훼손 및 언어폭력 | 시위자 무력진압 | 3 | 11 | 30 | - |
| | 심문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 | 18 | 23 | - |
| | 유치장에서 소란피우는 자 포박 | | 25 | 16 | - |
| 제한사항 | 번호인 접견제한 | 3 | 12 | 29 | - |
| | 과거 행실상 검사실 출입 제한 | | 19 | 22 | - |
| | 구속부적부심사 요구에 대한 응답 늦춰짐 | | 26 | 15 | - |
| 형평성 | 사적인 질문에 대답 요구 | 3 | 13 | 28 | - |
| | 고소인을 무고죄로 긴급체포 | | 20 | 21 | - |
| | 대질심문 동안 피해자의 합의 | | 27 | 14 | - |
| 검문 | 불법집회 장소로 가는 통행인 불심검문 | 3 | 14 | 27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 | | 21 | 20 | - |
| | 검문 전 신분증 제시 과정 생략 | | 28 | 13 | - |
| 동행 및 연행 | 설명 없이 임의동행 | 3 | 15 | 26 | - |
| | 임의동행 거부자 강제연행 | | 22 | 19 | - |
| | 아이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 | | 29 | 12 | - |
| 개인정보 및 수색 |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혐의가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 | 3 | 16 | 25 | - |
| | 피해자 동의 없이 신체검사 | | 23 | 18 | - |
| | 수색연장으로 채혈 | | 30 | 11 | - |
| 진료 | 유치장 내 자해한 피해자에게 신경 못 씀 | 2 | 17 | 24 | - |
| | 심각한 병자라도 범죄예방을 위해 치료 늦음 | | 24 | 17 | - |

<표 IV-24> 경찰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 (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표 IV-25> 교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문항 |
|------------|-----------------------|---------|----------|----|-----------|
| | | | 전 | 후 | |
| 신체훼손 | 태도불량 수용자 격리수용 | 6 | 21 | 60 | - |
| | 총기사용 | | 28 | 53 | - |
| | 전체기합 | | 35 | 46 | - |
| | 작업장 물건 유출을 시도한 수용자 구타 | | 42 | 39 | - |
| | 구호외침 | | 47 | 34 | - |
| | 교도관의 몸에 손을 대는 수용자 처벌 | | 52 | 29 | - |
| 안전권 | 작업 중 상해 | 3 | 22 | 59 | - |
| | 규정상 치료 거부 | | 29 | 52 | - |
| | 잘못된 약처방으로 병 악화 | | 36 | 45 | - |
| 진료 | 정밀진단에서 큰 병으로 진단 | 5 | 23 | 58 | - |
| | 주말 동안 진료 불가능 | | 30 | 51 | - |
| | 응급환자의 수술을 미룸 | | 37 | 44 | - |
| | 자해한 수용자에게 응급조치 미시행 | | 43 | 38 | - |
| | 사정상 치료를 미룸 | | 48 | 33 | - |
| 제한 및 검열 | 휴무일에 접견제한 | 11 | 24 | 57 | - |
| | 수용자들 사이의 서신교환 제한 | | 31 | 50 | - |
| | 금치처분자의 정보공개신청 묵살 | | 38 | 43 | - |
| | 실수로 수용자 기본권 제한 | | 44 | 37 | - |
| | 공휴일 목욕 금지 | | 49 | 32 | - |
|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제한 | | 53 | 28 | - |
| | 기기 반입 불허 | | 56 | 25 | - |
| | 집필신청 불허 | | 57 | 24 | - |
| | 정보공개거부처분 | | 58 | 23 | - |
| | 변호사접견 제한 | | 59 | 22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신문기사 삭제 후 제공 | | 60 | 21 | - |
| 환경 | 비위생적 환경과 예산 | 3 | 25 | 56 | - |
| | 협소한 공간 | | 32 | 49 | - |
| | 예산부족과 생활용품 부족 | | 39 | 42 | - |
| | | | | | |
| 개인정보노 출 및 사생활보호 | 수용자 이름표의 개인정보 | 6 | 26 | 55 | - |
| | 전염병을 가진 수용자의 신변노출 | | 33 | 48 | - |
| | 알몸검신 | | 40 | 41 | - |
| | 칸막이 없는 장소에서 항문검사 | | 45 | 36 | - |
| | 교도소 내 CCTV | | 50 | 31 | - |
| | 흉기와 알몸검사 | | 54 | 27 | - |
| 형평성 | 수용자 차별대우 | 6 | 27 | 54 | - |
| | 최소한의 설비만 제공 | | 34 | 47 | - |
| | 부친 장례식 참석 불허 | | 41 | 40 | - |
| | 손도장 대신 날인 | | 46 | 35 | - |
| | 노역장 유치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 | | 51 | 30 | - |
| | 수행자간 폭행조사 중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뀔 | | 55 | 26 | - |

(8) 교정공무원 분야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

교정공무원 분야의 문항 구성은 완성형과 간편형 검사 모두 7개의 이슈 하에, 완성형 검사는 각 이슈마다 3개-11개, 간편형 검사는 2개-3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26> 교정공무원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신체훼손 | 태도불량 수용자 격리수용 | 3 | 11 | 30 | - |
| | 총기사용 | | 18 | 23 | - |
| | 전체기합 | | 25 | 16 | - |
| 안전권 | 작업 중 상해 | 3 | 12 | 29 | - |
| | 규정상 치료 거부 | | 19 | 22 | - |
| | 잘못된 약처방으로 병 악화 | | 26 | 15 | - |
| 진료 | 정밀진단에서 큰 병으로 진단 | 3 | 13 | 28 | - |
| | 주말 동안 진료 불가능 | | 20 | 21 | - |
| | 응급환자의 수술을 미룸 | | 27 | 14 | - |
| 제한 및 검열 | 휴무일에 접견제한 | 3 | 14 | 27 | - |
| | 수용자들 사이의 서신교환 제한 | | 21 | 20 | - |
| | 금치처분자의 정보공개신청 묵살 | | 28 | 13 | - |
| 환경 | 비위생적 환경과 예산 | 3 | 15 | 26 | - |
| | 협소한 공간 | | 22 | 19 | - |
| | 예산부족과 생활용품 부족 | | 29 | 12 | - |
| 개인정보노출 및 사생활보호 | 수용자 이름표의 개인정보 | 3 | 16 | 25 | - |
| | 전염병을 가진 수용자의 신변노출 | | 23 | 18 | - |
| | 알몸검신 | | 30 | 11 | - |
| 형평성 | 수용자 차별대우 | 2 | 17 | 24 | - |
| | 최소한의 설비만 제공 | | 24 | 17 | - |

<표 IV-27> 교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 편 형 검 사 | 사 전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사 후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는 완성형 검사와 간편형 검사 모두 7개의 이슈로 구성되어 있고, 이 또한 다른 분야의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슈 속의 각 사례들을 문항화한 것이다.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의 문항 구성표 및 채점표는 다음과 같다.

<표 IV-28>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 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사생활 | 골목길에서의 폐쇄회로 설치 | 3 | 21 | 41 | - |
| | 신속한 출입국을 위한 개인의 생체정보 활용 | | 28 | 34 | - |
| | 자녀의 동의 없는 부모의 입영 신청 | | 35 | 27 | - |
| 인사 |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 | 5 | 22 | 52 | - |
| | 업무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하직원의 타 부서 전보 발령 | | 29 | 47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본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전보 조치 | | 36 | 40 | - |
| | 동료가 싫어하거나 동료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의 타 부서 발령 | | 42 | 33 | - |
| | 업무 배치 상의 남녀 차별 | | 48 | 26 | - |
| 채용 |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 | 8 | 23 | 60 | - |
| | 채용 시 응시자의 전과 여부 고려 | | 30 | 58 | - |
| | 채용 시 특정 대학 출신 채용 | | 37 | 56 | + |
| | 공무원 채용 시, 신체 검사서에 병력 표시 | | 43 | 51 | - |
| | 채용 전형기준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신입사원으로 채용 | | 49 | 46 | - |
| | 서류전형 취업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가점 적용 여부가 해당 기관 혹은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지의 여부 | | 53 | 39 | - |
| | 공무원 채용 시 나이 제한 | | 57 | 32 | - |
| | 병력이 있을 경우 채용 여부 | | 59 | 25 | - |
| 노동 | 육아휴직 시 승진 대상 제외 | 8 | 24 | 59 | - |
|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기간이 사회봉사 이행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31 | 57 | + |
| |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행·재정적 차별 대우 | | 38 | 55 | - |
| |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신청 가능 여부 | | 44 | 50 | + |
| |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 | 50 | 45 | - |
| | 비정규직 차별 | | 54 | 38 | - |
| | 외주화된 서비스 직종에 대해 여성만을 고용 | | 58 | 31 | - |
| | 직급에 따라 다른 공무원 정년 | | 60 | 24 | - |
| 복지 | 산재보험 등급 적용 시 남녀 차별 | 6 | 25 | 54 | - |
| |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차별 | | 32 | 49 | - |
| | 교도소 수용기간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산정 여부 | | 39 | 44 | + |
| | 공무원 복지제도 차등 적용 | | 45 | 37 | - |
| | 직장협의회 설립 시, 기관장과 협의하여 설립하는 지 여부 | | 51 | 30 | - |
| | 복지 혜택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차별 | | 55 | 23 | - |
| 성차별 | 민원 업무 배치에 대한 남녀 차별 | 6 | 26 | 53 | - |
| | 근무평정 시 여성 차별 | | 33 | 48 | - |
| |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의 적용 예외 사유에 임신과 출산 비명기 | | 40 | 43 | - |
|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됨 | | 46 | 36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남성도 성폭력 범죄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 | 52 | 29 | + |
| |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대상에 '출가한 여자'를 제외시킴 | | 56 | 22 | - |
| 기타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의무 수행 | 4 | 27 | 42 | + |
| |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 | | 34 | 35 | - |
| | 공무원이 용역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 | | 41 | 28 | - |
| | 탈북자들이 여권 발급 시 제한 조건 용인 여부 | | 47 | 21 | - |

<표 IV-2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사생활 | 골목길에서의 폐쇄회로 설치 | 2 | 11 | 24 | - |
| | 신속한 출입국을 위한 개인의 생체정보 활용 | | 18 | 17 | - |
| 인사 |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 | 3 | 12 | 30 | - |
| | 본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전보 조치 | | 19 | 23 | - |
| | 업무 배치 상의 남녀 차별 | | 25 | 16 | - |
| 채용 | 채용 시 응시자의 전과 여부 고려 | 3 | 13 | 29 | - |
| | 채용 전형기준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신입사원으로 채용 | | 20 | 22 | - |
| | 서류전형 취업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가점 적용 여부가 해당 기관 혹은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지의 여부 | | 26 | 15 | - |
| 노동 | 육아휴직 시 승진 대상 제외 | 3 | 14 | 28 | - |
|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기간이 사회봉사 이행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1 | 21 | + |
| |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행·재정적 차별 대우 | | 27 | 14 | - |
| 복지 |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차별 | 3 | 15 | 27 | - |
| | 공무원 복지제도 차등 적용 | | 22 | 20 | - |
| | 복지 혜택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차별 | | 28 | 13 | - |
| 성차별 | 민원 업무 배치에 대한 남녀 차별 | 3 | 16 | 26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근무평정 시 여성 차별 | | 23 | 19 | - |
|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됨 | | 29 | 12 | - |
| 기타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의무 수행 | 3 | 17 | 25 | + |
| |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 | | 24 | 18 | - |
| | 공무원들이 용역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녹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30 | 11 | - |

<표 IV-30>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 류 | 전/후 | 문항 (정: +, 역: -) | | | | | | | | | |
|--------|-----|-----------------------|--------|----|----|----|----|----|----|----|----|
| | | 완 성 형 검 사 | 사 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후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류 | 전/후 | 문항 (정: +, 역: -) | | | | | | | | | |
|-----------|-----|-----------------|----|----|----|----|----|----|----|----|----|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간편형 검사 | 사전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사후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 타당도

1) 구인타당도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호상관을 산출하였다. 상관계수는 일반적으로 ‘.2미만’은 ‘매우 낮음’, ‘.2이상 .4미만’은 ‘낮음’, ‘.4이상 .6미만’은 ‘보통’, ‘.6이상 .8미만’은 ‘높음’, ‘.8이상’은 ‘매우 높음’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상관계수는 사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사례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유의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본 예비평가에서는 사례수가 12~28명 정도로 소수의 사례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통계적 유의도뿐만 아니라 상관계수의 일반적 해석을 토대로 한 실제적 유의도 분석을 함께 제시하였다.

구인타당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실제적 유의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 사후평가 중 어느 하나의 평가에서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간의 상관이 ‘보통’ 이상으로 나오면 구인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 사후평가 모두에서 상관이 ‘낮음’ 이하로 나오면 구인타당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전, 사후평가 중 어느 하나에서 상관이 ‘보통’ 이상으로 나오면 구인타

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둘 중 어느 한 번의 평가에서는 상관이 '보통'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항 자체가 잘못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평가자의 태도 차이나 인권교육의 내용 및 질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공공분야별 구인타당도 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 분야

노인 분야 시설종사자 18명을 대상으로 노인분야 평가도구의 전체 총점과 하위 점수간의 상호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1>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노인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전체 검사와의 상관 | | | |
|------------------|------------|-------|--------|-------|
| | 사전 | | 사후 | |
| 일반 인권 | .291 | 낮음 | -.405 | 매우 낮음 |
| 보건의료 서비스 | .510* | 보통 | .868** | 매우 높음 |
| 영양 및 급식 서비스 | .582* | 보통 | .599** | 보통 |
| 위생 및 청결 서비스 | .772** | 높음 | .377 | 낮음 |
|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 | .515* | 보통 | -.324 | 매우 낮음 |
| 사생활 보호 | .647** | 높음 | .588* | 보통 |
| 동료 노인들에게 존중받을 권리 | .482* | 보통 | .677** | 높음 |
| 신체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 | .556* | 보통 | .371 | 낮음 |
| 통신, 소통의 자유 | .385 | 낮음 | -.235 | 매우 낮음 |
| 알 권리 | .108 | 매우 낮음 | .678** | 높음 |
| 의복 서비스 | .380 | 낮음 | .329 | 낮음 |
| 노동권 및 재산권 | .494* | 보통 | .524* | 보통 |
| 정치적 자유권 | .441 | 보통 | .567* | 보통 |
| 종교적 자유권 | .501* | 보통 | .627** | 높음 |
| 문화생활권 | .541* | 보통 | .329 | 낮음 |

* p<.05 ** p<.0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 총점과 하위점수와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권 주제는 ‘보건의료 서비스’, ‘영양 및 급식 서비스’, ‘위생 및 청결 서비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 ‘사생활 보호’, ‘신체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 ‘알 권리’, ‘노동권 및 재산권’, ‘정치적 자유권’, ‘종교적 자유권’, ‘문화생활권’이었다.

실제적 유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노인 분야 평가도구에서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와의 상관성이 사전, 사후평가에서 모두 ‘낮음’ 이하로 나타난 것은 ‘일반 인권’, ‘통신, 소통의 자유’, ‘의복 서비스’였다. 이 중에서 ‘일반 인권’ 주제는 다른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양호한 타당도 결과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문항 자체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피교육자들의 태도에 기인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다음 3절에서 제시된 신뢰도 분석 결과에서 볼 때, 노인 분야의 피교육자들은 사후평가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아 사후평가에서 불성실한 반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당도는 신뢰도가 낮아지면 그에 따라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도가 낮아진 이유는 피교육자들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한 신뢰도의 하락에 있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통신, 소통의 자유’와 ‘의복 서비스’ 척도의 경우에는 구인타당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피교육자들의 태도 차이나 인권교육의 내용 및 질 등에 기인한 문제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타당도 검증 결과는 향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교육내용에 더 초점을 두어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2) 정신장애인 분야

정신장애인 분야 시설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분야 평가도구의 전체 총점과 하위 점수간의 상호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2>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정신장애인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전체 검사와의 상관 | | | |
|---------------------------|------------|-------|--------|-------|
| | 사전 | | 사후 | |
| 일반 인권 | .467* | 보통 | .522* | 보통 |
|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 .749** | 높음 | .738** | 높음 |
|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 .566** | 보통 | .695** | 높음 |
| 신체적 안전 | .617** | 높음 | .599** | 보통 |
| 적절한 식생활 보장 | .440 | 보통 | .616** | 높음 |
|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 .401 | 보통 | .737** | 높음 |
| 사생활 보호 | .509* | 보통 | .746** | 높음 |
| 통신·의사소통의 자유 | .641** | 높음 | .746** | 높음 |
| 외출의 자유 | .387 | 낮음 | .059 | 매우 낮음 |
|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 .503* | 보통 | .656** | 높음 |
| 알 권리 | .466* | 보통 | -.435 | 매우 낮음 |
| 적절한 의복 | .803** | 매우 높음 | .506* | 보통 |
| 여가 및 문화생활권 | .469* | 보통 | .503* | 보통 |
| 정치의 자유 | .310 | 낮음 | .627** | 높음 |
| 종교의 자유 | .455* | 보통 | .618** | 높음 |
| 기타 | .582** | 보통 | .466* | 보통 |

* p<.05 ** p<.0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 총점과 하위점수와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권 주제는 ‘외출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주제에서였다.

실제적 유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정신장애인 분야 평가도구는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와의 상관이 사전, 사후평가에서 모두 ‘낮음’ 이하로 나타난 것이 ‘외출의 자유’ 척도였다. 따라서 ‘외출의 자유’ 척도는 구인타당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그 이유가 피교육자들의 태도에서 기인한 문제인지 인권교육의 내용상 초점을 덜 두었기 때문인지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인권교육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시설 아동 분야

아동 분야 시설종사자 14명을 대상으로 시설 아동 분야 평가도구의 전체 총점과 하위 점수간의 상호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3>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시설 아동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전체 검사와의 상관 | | | |
|----------|------------|----|--------|-------|
| | 사전 | | 사후 | |
| 일반 인권 | .258 | 낮음 | .650* | 높음 |
| 아동의 생존권 | .332 | 낮음 | .870** | 매우 높음 |
| 보호받을 권리 | .770** | 높음 | .830** | 매우 높음 |
| 발달권 | .523 | 보통 | .599* | 보통 |
| 자유권 | .230 | 낮음 | .478 | 보통 |
| 참정권 | .562* | 보통 | .640* | 높음 |
| 사후관리 | .692** | 높음 | .519 | 보통 |
| 기타 | .553* | 보통 | .598* | 보통 |

* p<.05 ** p<.0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 총점과 하위점수와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권 주제는 ‘자유권’을 제외한 모든 주제에서였다.

실제적 유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시설 아동 분야 평가도구는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와의 상관이 사전, 사후평가에서 모두 ‘낮음’ 이하로 나타난 것이 없으므로, 구인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4) 경찰 분야

경찰 26명을 대상으로 경찰 분야 평가도구의 전체 총점과 하위 점수간의 상호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4>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경찰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전체 검사와의 상관 | | | |
|-------------|------------|-------|--------|-------|
| | 사전 | | 사후 | |
| 일반 인권 | .502** | 보통 | .547** | 보통 |
| 신체훼손 및 언어폭력 | .772** | 높음 | .852** | 매우 높음 |
| 제한사항 | .823** | 매우 높음 | .843** | 매우 높음 |
| 형평성 | .742** | 높음 | .870** | 매우 높음 |
| 검문 | .710** | 높음 | .795** | 높음 |
| 동행 및 연행 | .756** | 높음 | .899** | 매우 높음 |
| 개인정보보호 및 수색 | .779** | 높음 | .896** | 매우 높음 |
| 진료 | .398* | 낮음 | .784** | 높음 |

* p<.05 ** p<.0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 총점과 하위점수와의 상관은 모든 인권 주제에서 통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 분야 평가도구의 구인타당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5)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일반 행정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평가도구의 전체 총점과 하위 점수간의 상호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5>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전체 검사와의 상관 | | | |
|----------|------------|----|-------|----|
| | 사전 | | 사후 | |
| 일반 인권 | .445 | 보통 | .584* | 보통 |
| 사생활 | .621* | 높음 | .705* | 높음 |
| 인사 | .610* | 높음 | .434 | 보통 |
| 채용 | .418 | 보통 | .541 | 보통 |
| 노동 | .444 | 보통 | .287 | 낮음 |

| 하위 인권 주제 | 전체 검사와의 상관 | | | |
|----------|------------|-------|-------|----|
| | 사전 | | 사후 | |
| 복지 | .567 | 보통 | .645* | 높음 |
| 성차별 | .468 | 보통 | .438 | 보통 |
| 기타 | .198 | 매우 낮음 | .545 | 보통 |

* p<.05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 총점과 하위점수와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인권 주제는 ‘채용’, ‘노동’, ‘성차별’, ‘기타’ 주제에서였다. 그러나 이렇게 통계적 유의도가 낮은 이유는 사례수가 12명밖에 안 되므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적 유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평가도구도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와의 상관이 사전, 사후평가 모두에서 ‘낮음’ 이하로 나타난 것이 없으므로, 구인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6) 시설 장애인 분야

장애인 시설 종사자 28명을 대상으로 시설 장애인 분야 평가도구의 전체 총점과 하위 점수간의 상호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6> 전체 검사와 하위척도 간의 상관(시설 장애인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전체 검사와의 상관 | | | |
|----------|------------|----|-------|-------|
| | 사전 | | 사후 | |
| 일반 인권 | .54** | 보통 | .68** | 높음 |
| 입소 자기결정권 | .30 | 낮음 | .35 | 낮음 |
| 의사표현의 자유 | .74** | 높음 | .66** | 높음 |
| 신체의 자유 | .78** | 높음 | .90** | 매우 높음 |
| 선택권 | .51** | 보통 | .83** | 매우 높음 |
| 교육권 | .58** | 보통 | .82** | 매우 높음 |
| 참정권 | .46* | 보통 | .80** | 매우 높음 |

| 하위 인권 주제 | 전체 검사와의 상관 | | | |
|--------------|------------|-------|-------|-------|
| | 사전 | | 사후 | |
| 가족권 | .74** | 높음 | .73** | 높음 |
| 경제권 및 노동권 | .59** | 보통 | .84** | 매우 높음 |
| 치료받을 권리 | .62** | 높음 | .71** | 높음 |
| 의식주, 생활의 권리 | .73** | 높음 | .81** | 매우 높음 |
| 인간존엄성, 행복추구권 | .46* | 보통 | .91** | 매우 높음 |
| 종교의 자유 | .64** | 높음 | .82** | 매우 높음 |
| 사생활보호 | .81** | 매우 높음 | .83** | 매우 높음 |

* p<.05 ** p<.0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 총점과 하위점수와의 상관성이 통계적 유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낮은’ 상관을 보인 인권 주제는 ‘입소 자기결정권’이었다. 따라서 시설 장애인 분야 평가도구는 대체로 구인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입소 자기결정권’은 구인타당도가 양호하지 않으므로, 인권교육의 내용면에서 해당 주제에 더 관심을 두어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 소결

검사 전체 총점과 하위 주제 척도와의 상호상관을 통하여 인권교육 평가도구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시설 아동, 경찰,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평가도구는 모든 하위척도의 구인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 분야 평가도구는 ‘통신, 소통의 자유’와 ‘의복 서비스’ 척도, 정신장애인 분야는 ‘외출의 자유’ 척도, 시설 장애인 분야는 ‘입소 자기결정권’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하위척도에서 구인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개 분야 평가도구는 전반적으로 볼 때 구인타당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분야 평가도구에서 구인타당도가 양호하지 않은 척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과가 피교육자들의 태도 차이나 인권교육의 내용 및 질 등에 기인한 문제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

으며, 향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 주제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신뢰도

1) 내적일관성 신뢰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값이 '.2 미만'이면 '매우 낮음', '.2이상 .4미만'이면 '낮음', '.4이상 .6미만'이면 '보통', '.6이상 .8미만'이면 '높음', '.8이상'이면 '매우 높음'으로 해석한다.

신뢰도의 양호도 판단은 사전, 사후평가 중 어느 하나의 평가에서 Cronbach α 값이 '보통' 이상으로 나오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 사후평가 모두에서 Cronbach α 값이 '낮음' 이하로 나오면 신뢰도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전, 사후평가 중 어느 하나에서 Cronbach α 값이 '보통' 이상으로 나오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둘 중 어느 한 번의 평가에서는 Cronbach α 값이 '보통' 이상으로 나온다는 것은 문항 자체가 잘못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 평가자의 태도 차이 및 불성실한 응답, 적은 사례 수 문제, 교육내용과 방법상의 문제 때문일 수 있기 때문이다.

(1) 노인 분야

노인 분야 시설종사자 18명을 대상으로 노인분야 평가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7> 내적 일관성 신뢰도 (노인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문항수 | Cronbach α | | | | |
|------------------|------------------|-------------------|-------|------|--------|------|
| | | 사전 | | 사후 | | |
| 검사 전체 | 45 | .797 | | .482 | | |
| 일반 인권 | 10 | .744 | | .223 | | |
| 노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보건의료 서비스 | 4 | .536 | .814 | .480 | .711 |
| | 영양 및 급식 서비스 | 4 | -.152 | | .367 | |
| | 위생 및 청결 서비스 | 4 | .456 | | .165 | |
| |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 | 3 | .254 | | -1.122 | |
| | 사생활 보호 | 3 | .050 | | .525 | |
| | 동료 노인들에게 존중받을 권리 | 4 | .397 | | .302 | |
| | 신체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 | 3 | .204 | | -.724 | |
| | 노동권 및 재산권 | 2 | .050 | | -.986 | |
| | 정치적 자유권 | 2 | .449 | | -.122 | |
| | 문화생활권 | 2 | .510 | | -.087 | |

노인 분야 평가도구의 Cronbach α 는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 .797, 사후평가에서 .482로 신뢰도가 ‘보통’ 내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는 .744, 사후평가에서는 .223으로 신뢰도가 ‘낮음’ 내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평가에서 신뢰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피교육자들이 사후검사에서 재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불성실한 응답을 했거나, 인권교육을 받은 후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인권의식이 향상 되었으나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인권의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서는 .814, 사후평가에서는 .711로 신뢰도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신장애인 분야

정신장애인 분야 시설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분야 평가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8> 내적 일관성 신뢰도 (정신장애인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 문항수 | Cronbach α | | | |
|---|---------------------------------|-----|-------------------|------|-------|------|
| | | | 사전 | | 사후 | |
| 검사 전체 | | 45 | .858 | | .873 | |
| 일반 인권 | | 3 | .804 | | .734 | |
| 정신 장애 인 분야 에 특수 한 인권 주제 |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 3 | .565 | .819 | .436 | .861 |
| |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 3 | .309 | | .382 | |
| | 신체적 안전 | 3 | .031 | | .709 | |
| | 적절한 식생활 보장 | 2 | -.639 | | .566 | |
| |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 2 | .460 | | -.447 | |
| | 사생활 보호 | 3 | .441 | | .441 | |
| | 통신·의사소통의 자유 | 3 | .429 | | .648 | |
| | 외출의 자유 | 2 | .417 | | .361 | |
| |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 3 | .857 | | .354 | |
| | 알 권리 | 2 | -.304 | | .391 | |
| | 여가 및 문화생활권 | 3 | .390 | | -.226 | |
| | 정치의 자유 | 2 | -.036 | | -.209 | |
| | 종교의 자유 | 2 | -.059 | | -.257 | |

정신장애인 분야 평가도구의 Cronbach α 는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 .858, 사후평가에서 .873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는 .804, 사후평가에서는 .734로 신뢰도가 ‘높음’ 내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에 특수한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서는 .819, 사후평가에서는 .861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설 아동 분야

아동 분야 시설종사자 14명을 대상으로 시설 아동 분야 평가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39> 내적 일관성 신뢰도 (시설 아동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 문항수 | Cronbach α | | | |
|------------------|---------|-----|-------------------|------|-------|------|
| | | | 사전 | | 사후 | |
| 검사 전체 | | 45 | .755 | | .869 | |
| 일반 인권 | | 10 | -.061 | | .841 | |
| 아동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아동의 생존권 | 8 | -.182 | .753 | -.067 | .818 |
| | 보호받을 권리 | 7 | .610 | | .566 | |
| | 발달권 | 7 | .629 | | .648 | |
| | 자유권 | 9 | .416 | | .148 | |
| | 사후관리 | 2 | .686 | | .464 | |

시설 아동 분야 평가도구의 Cronbach α 는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 .755, 사후평가에서 .869로 신뢰도가 ‘높음’ 내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는 -.061, 사후평가에서는 .841로 신뢰도가 ‘매우 낮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 교육을 받기 전에 피교육자들이 다양한 인권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권교육을 받은 후 각종 인권 주제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시설 아동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서는 .753, 사후평가에서는 .818로 신뢰도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찰 분야

경찰 26명을 대상으로 경찰 분야 평가도구의 전체 총점과 하위 점수간의 상호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40>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경찰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 문항수 | Cronbach α | | | |
|------------------|--------------|-----|-------------------|-------------|-------------|-------------|
| | | | 사전 | | 사후 | |
| 검사 전체 | | 45 | .864 | | .926 | |
| 일반 인권 | | 10 | .506 | | .631 | |
| 경찰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신체 훼손 · 언어폭력 | 5 | .438 | .869 | .761 | .933 |
| | 제한사항 | 6 | .448 | | .547 | |
| | 형평성 | 6 | .490 | | .756 | |
| | 검문 | 3 | .142 | | .244 | |
| | 동행 및 연행 | 5 | .518 | | .490 | |
| | 개인정보 보호 · 수색 | 7 | .696 | | .780 | |
| | 진료 | 3 | .632 | | .515 | |

경찰 분야 평가도구의 Cronbach α 는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 .864, 사후평가에서 .926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는 .506, 사후평가에서는 .631로 신뢰도가 ‘보통’ 내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서는 .869, 사후평가에서는 .933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일반 행정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평가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41> 검사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문항수 | Cronbach α | | | | |
|---------------------------|-----|-------------------|-------|------|--------|------|
| | | 사전 | | 사후 | | |
| 검사 전체 | 45 | .489 | | .684 | | |
| 일반 인권 | 10 | -.427 | | .651 | | |
| 일반 행정분야 공무원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사생활 | 3 | .453 | .469 | .415 | .525 |
| | 인사 | 5 | .111 | | -.664 | |
| | 채용 | 6 | -.138 | | .552 | |
| | 노동 | 6 | .255 | | -2.076 | |
| | 복지 | 6 | .292 | | -.290 | |
| | 성차별 | 5 | -.016 | | .274 | |
| | 기타 | 4 | -.403 | | .138 | |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평가도구의 Cronbach α 는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 .489, 사후평가에서 .684로 신뢰도가 ‘보통’ 내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는 -.427, 사후평가에서는 .651로 신뢰도가 ‘매우 낮음’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교육을 받기 전에 피교육자들이 다양한 인권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권교육을 받은 후 각종 인권 주제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서는 .469, 사후평가에서는 .525로 신뢰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6) 시설 장애인 분야

시설 장애인 28명을 대상으로 시설 장애인 분야 평가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42> 내적 일관성 신뢰도 (시설 장애인 분야)

| 하위 인권 주제 | 문항수 | Cronbach α | | | | |
|------------------|--------------|-------------------|-------|------|------|------|
| | | 사전 | 사후 | | | |
| 검사 전체 | 50 | .882 | .945 | | | |
| 일반 인권 | 10 | .483 | .514 | | | |
| 노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의사표현의 자유 | 3 | .319 | .877 | .946 | .465 |
| | 신체의 자유 | 5 | .587 | | | .793 |
| | 선택권 | 6 | -.063 | | | .390 |
| | 교육권 | 2 | .106 | | | .680 |
| | 참정권 | 2 | -.245 | | | .373 |
| | 가족권 | 3 | .556 | | | .704 |
| | 경제권 및 노동권 | 3 | .083 | | | .279 |
| | 치료받을 권리 | 4 | .360 | | | .634 |
| | 의식주, 생활의 권리 | 2 | .092 | | | .529 |
| | 인간존엄성, 행복추구권 | 5 | .427 | | | .733 |
| | 사생활보호 | 3 | .692 | | | .764 |

시설 장애인 분야 평가도구의 Cronbach α 는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 .882, 사후평가에서 .945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는 .483, 사후평가에서는 .514로 신뢰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척도를 보면, 사전평가에서는 .877, 사후평가에서는 .946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소결

인권교육 평가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인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정신장애인, 경찰, 시설 장애인 분야의 평가 도구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모두에서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인, 시설 아동,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의 평가도구는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양호하기는 했으나, 일반 인권 주제 척도에서 피평가자들의 불성실한 반응이나 인권에 대한 혼재된 태도로 인하여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경우가 있었다.

노인 분야 평가도구는 사전평가의 신뢰도는 양호했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일반인권 척도의 신뢰도가 피평가자들의 불성실한 반응으로 인하여 신뢰도가 낮게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인권교육 실시 후 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 실시자가 피평가자들에게 성실한 응답을 해줄 것에 대하여 더욱 강조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시설 아동과 일반 행정공무원 평가도구는 사전, 사후평가 모두에서 대체로 신뢰도가 양호했으나, 일반 인권 주제에 대한 사전평가의 신뢰도가 낮게 산출되었다. 일반 인권 주제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공통된 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에서 신뢰도가 양호하게 산출된 것으로 보아 시설 아동 분야의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받기 이전에는 피평가자들의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태도가 일관성이 없이 매우 혼재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권 주제에 대한 사전평가 신뢰도가 낮게 나온 이유는 평가도구 자체나 제작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피평가자들의 고유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례수가 많이 축적되면 일반적인 경향성이 드러날 것이므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4. 시범적 평가(pilot test)

노인 분야 18명, 정신장애인 분야 20명, 시설 아동 분야 14명, 경찰 분야 26명, 일반 행정 분야 12명, 시설 장애인 분야 28명, 총 118명의 인권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를 실시하였다.

4단계 척도에 대한 척도치 부여는 ‘강한 반대=-2’, ‘약한 반대=-1’, ‘약한 찬성=1’, ‘강한 찬성=2’로 이루어졌으며, 사전, 사후평가 평균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사례수가 적어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유의도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제적 유의도를 판단하였다. 실제적 유의도의 판단기준은 ‘강한 침해’는 ‘평균 -1.5 이하’, ‘약한 침해’는 ‘평균 0 이하~-1.5 미만’, ‘약한 옹호’는 ‘0 이상~1.5 미만’, ‘강한 옹호’는 ‘1.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1) 노인 분야

(1) 집단 전체 분석

노인 분야에서 18명의 인권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집단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IV-43〉 노인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 평균(사례수=18)

| 구분 | 평균 | | 변화 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t 검증 |
|----------|------|-----|---------|--------------------|-------|
| | 사전 | 사후 | | | |
| 검사 전체 | .66 | .54 | -.12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1.16 |
| 일반 인권 주제 | -.03 | .32 | .35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1.52 |

| 구분 | 평균 | | 변화 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t 검증 | |
|--------------------------------------|------------------------|------|---------|-------------------|--------------------|-------|
| | 사전 | 사후 | | | | |
| 노인 분야 에 특수 한 인권 주제 | 보건의료 서비스 | .18 | -.07 | -.25 | 약한 옹호→약한 침해로 하락 | .78 |
| | 영양 및 급식 서비스 | .89 | .68 | -.21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86 |
| | 위생 및 청결 서비스 | .71 | .65 | -.06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22 |
| |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 | -.39 | -.02 | .37 | 약한 침해 내에서 상승 | -1.24 |
| | 사생활 보호 | .54 | .13 | -.41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1.24 |
| | 동료 노인들에게 존중받을 권리 | 1.43 | .96 | -.47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1.98 |
| | 신체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 | .41 | .52 | .1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64 |
| | 통신, 소통의 자유 | .39 | 1.00 | .6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16 |
| | 알 권리 | 1.17 | -.72 | -1.89 | 약한 옹호→약한 침해로 하락 | 3.28* |
| | 의복 서비스 | .83 | 1.17 | .3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19 |
| | 노동권 및 재산권 | .53 | .42 | -.11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28 |
| | 정치적 자유권 | 1.36 | 1.25 | -.11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51 |
| | 종교적 자유권 | .89 | .83 | -.06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13 |
| 문화생활권 | 1.00 | 1.03 | .03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1 | |

* p<.05

먼저,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알 권리’ 뿐이었으나,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점수가 하락되었다. 나머지 주제들에서는 실제적으로는 향상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아니라고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인 향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인권교육의 효과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인권점수가 하락되었다. 이는 신뢰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사후평가에서 피평가자들이 불성실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 인권 주제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에서는 ‘약한 침해’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약한 옹호’ 반응을 보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었다.

이슈별로 보면, ‘신체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 ‘의복 서비스’, ‘문화생활권’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침해’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준다.

‘영양 및 급식 서비스’, ‘위생 및 청결 서비스’, ‘사생활 보호’, ‘동료 노인들에게 존중받을 권리’, ‘노동권 및 재산권’, ‘정치적 자유권’, ‘종교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하락되었다. ‘보건의료 서비스’, ‘알 권리’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에서는 ‘약간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약한 침해’ 반응으로 하락되었다. 이처럼 인권교육 후 오히려 인권점수가 하락된 경우에는 향후 인권교육에서 해당 주제에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개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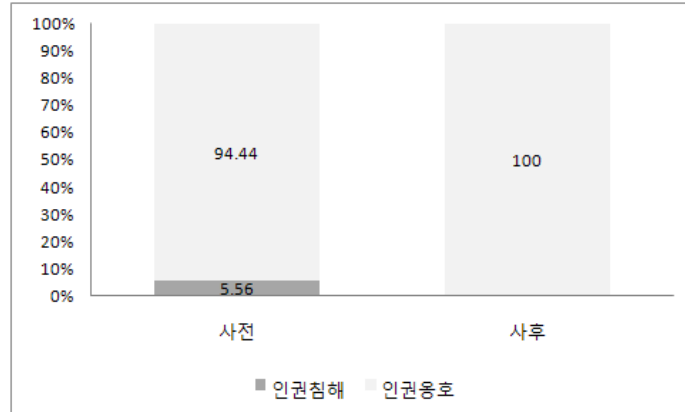
인권교육 참가자의 사전, 사후평가 검사 전체 점수를 참가자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권 주제별 피교육자들의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반응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44> 노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피교육자 | 검사 전체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
| | 사전 | 사후 | | |
| 1 | -.35 | .15 | .50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 2 | .39 | .84 | .45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피교육자 | 검사 전체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
| | 사전 | 사후 | | |
| 3 | .87 | 1.16 | .2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4 | .22 | .41 | .1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5 | 1.08 | .44 | -.64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6 | .37 | .98 | .6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7 | .61 | .16 | -.45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8 | .55 | .51 | -.04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9 | .68 | .51 | -.17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0 | 1.77 | .95 | -.82 | 강한 옹호→약한 옹호로 하락 |
| 11 | .57 | .55 | -.02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2 | .79 | .47 | -.32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3 | .43 | .08 | -.35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4 | .57 | .44 | -.13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5 | 1.04 | .64 | -.40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6 | .80 | .03 | -.77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7 | 1.01 | 1.22 | .2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8 | .49 | .23 | -.26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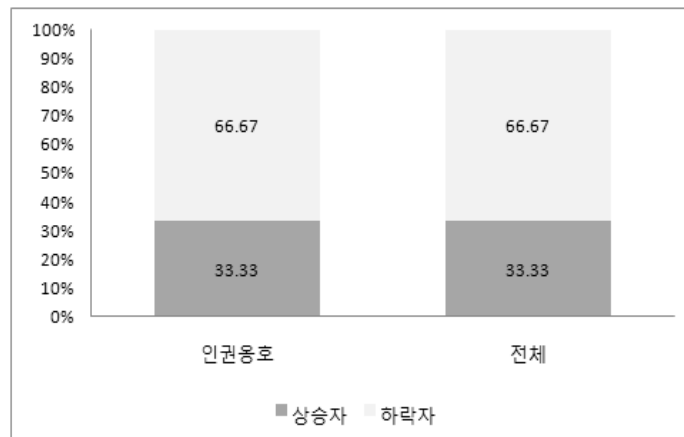
위 결과를 요약하여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인권옹호 반응과 인권침해 반응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노인 분야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사전평가에서는 인권옹호 반응을 한 사람이 94.44%, 인권침해 반응을 한 사람이 5.56%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인권옹호 반응을 한 사람이 100%로,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옹호 반응을 한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다.

인권교육 실시 후 참가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변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 주제별 변화 유형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2> 노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보다 사후평가에서 향상된 사람은 33.33%였고, 하락된 사람은 66.67%로, 하락된 사람이 많았으며, 상승자와 하락자는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다. 하락자가 상승자보다 더 많은 이유는 신뢰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사후평가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사후평가에서 피평가자들이 불성실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2) 정신장애인 분야

(1) 집단 전체 분석

정신장애인 분야에서 20명의 인권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집단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IV-45> 정신장애인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사례수=20)

| 구분 | 평균 | | 변화 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t 검증 | |
|---|--|------|---------|-------------------|--------------------|----------|
| | 사전 | 사후 | | | | |
| 검사 전체 | .78 | 1.11 | .33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4.96*** | |
| 일반 인권 주제 | .29 | .89 | .6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5.49*** | |
| 정신 장애 인 분야 에 특수 한 인권 주제 |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과정 에서의 자기결정 권 | .32 | 1.62 | 1.30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7.54*** |
| |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 .80 | 1.40 | .6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2.84* |
| | 신체적 안전 | .22 | 1.22 | 1.0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5.74*** |
| | 적절한 식생활 보장 | 1.18 | 1.55 | .37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2.07 |

| 구분 | 평균 | | 변화 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t 검증 |
|-----------------------------|------|------|---------|--------------------|----------|
| | 사전 | 사후 | | | |
|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 .93 | 1.30 | .37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45 |
| 사생활 보호 | .90 | 1.08 | .18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88 |
| 통신·의사 소통의 자유 | 1.00 | .78 | -.22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98 |
| 외출의 자유 | 1.60 | -.05 | -1.65 | 강한 옹호→약한 침해로 하락 | 8.43*** |
|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 .83 | .78 | -.05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23 |
| 알 권리 | 1.20 | .85 | -.35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90 |
| 적절한 의복 | .75 | 1.30 | .55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2.24* |
| 여가 및 문화생활 권 | .23 | 1.28 | 1.05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4.82*** |
| 정치의 자유 | 1.13 | 1.88 | .75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5.63*** |
| 종교의 자유 | .68 | .30 | -.38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2.12* |
| 기타 | .45 | 1.60 | 1.15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3.61** |

* p<.05 ** p<.01 *** p<.001

먼저, 검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인권’,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신체적 안전’, ‘외출의 자유’, ‘적절한 의복’, ‘여가 및 문화생활권’, ‘정치의 자유’, ‘종교의 자유’, ‘기타’ 인권 주제에서도 유의한 향상이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적인 향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인권교육의 효과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일반 인권 주제에 대해서도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

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이슈별로 보면,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적절한 식생활 보장’, ‘정치의 자유’, ‘기타’ 주제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에서는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강한 옹호’ 반응으로 향상되었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사생활 보호’, ‘적절한 의복’, ‘여가 및 문화생활권’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통신·의사소통의 자유’,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알 권리’,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하락되었다. ‘외출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에서는 ‘강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약한 침해’ 반응으로 하락되었다. 이처럼 인권교육 후 오히려 인권점수가 하락된 경우에는 향후 인권교육에서 해당 주제에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개인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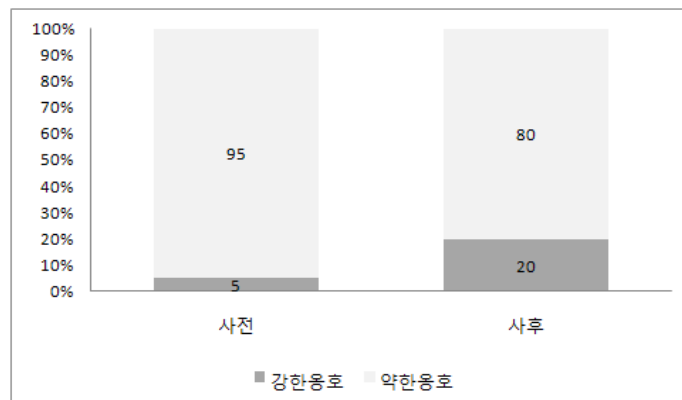
인권교육 참가자의 사전, 사후평가 검사 전체 점수를 참가자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권 주제별 피교육자들의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반응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46> 정신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피교육자 | 검사 전체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
| | 사전 | 사후 | | |
| 1 | .61 | 1.01 | .4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2 | .51 | .84 | .33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3 | 1.33 | 1.25 | -.08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피교육자 | 검사 전체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
| | 사전 | 사후 | | |
| 4 | .60 | 1.48 | .88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5 | 1.44 | 1.51 | .07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 6 | .55 | 1.10 | .55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7 | 1.17 | .98 | -.19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8 | 1.65 | 1.62 | -.03 | 강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9 | .28 | .96 | .68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0 | .94 | 1.08 | .1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1 | .64 | .98 | .3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2 | .78 | .99 | .2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3 | 1.23 | 1.09 | -.14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4 | .41 | .68 | .27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5 | .09 | .30 | .2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6 | .90 | 1.49 | .5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7 | .57 | .99 | .42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8 | .80 | 1.53 | .73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 19 | -.10 | .36 | .46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 20 | 1.21 | 1.68 | .47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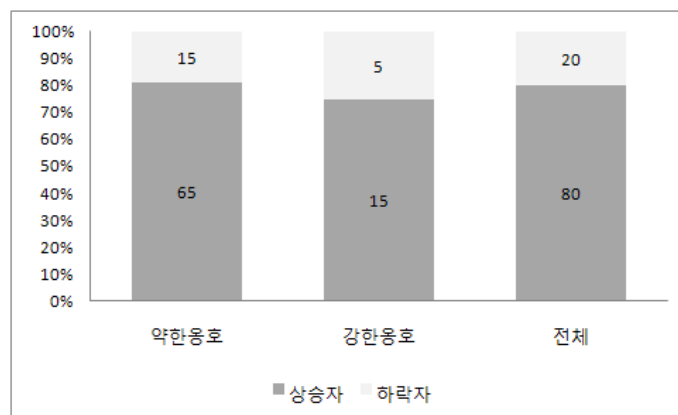
위 결과를 요약하여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인권옹호 반응과 인권침해 반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3> 정신장애인 분야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모두에서 인권옹호 반응을 한 사람의 비율은 100%였다. 사전평가에서는 ‘강한 옹호’ 반응 비율이 5%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20%로 향상되었다.

인권교육 실시 후 참가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변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 주제별 변화 유형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4> 정신장애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보다 사후평가에서 향상된 사람은 80%였고, 하락된 사람은 20%로, 상승된 사람이 4배나 많았다. 상승자와 하락자는 모두 인권옹호 반응을 나타냈다. 상승자이면서 ‘강한 옹호’ 반응을 보인 사람은 15%, ‘약한 옹호’ 반응을 보인 사람은 65%였다. 하락자이면서 ‘강한 옹호’ 반응을 보인 사람은 5%, ‘약한 옹호’ 반응을 보인 사람은 15%였다.

3) 시설 아동 분야

(1) 집단 전체 분석

시설 아동 분야에서 14명의 인권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집단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IV-47> 시설 아동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사례수=14)

| 구분 | 평균 | | 변화 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t 검증 | |
|--|----------------|------|---------|-------------------|--------------------|---------|
| | 사전 | 사후 | | | | |
| 검사 전체 | .28 | .50 | .22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43 | |
| 일반 인권 주제 | .11 | .74 | .63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2.71* | |
| 시설 아동 분야 에 특수 한 인권 주제 | 아동의 생존권 | .21 | .62 | .4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3.54** |
| | 보호받 을 권리 | -.31 | .44 | .75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3.72** |
| | 발달권 | .11 | .88 | .77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4.69*** |
| | 자유권 | .64 | .18 | -.46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3.98** |
| | 참정권 | -.50 | -.07 | .43 | 약한 침해 내에서 상승 | -.82 |
| | 사후관 리 | .43 | .36 | -.07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22 |
| | 기타 | 1.57 | .86 | -.71 | 강한 옹호→약한 옹호로 하락 | 1.38 |

* p<.05 ** p<.01 *** p<.001

먼저,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이루어진 인

권 주제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자유권’이었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향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인권교육의 효과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일반 인권 주제에 대해서도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이슈별로 보면,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에서는 ‘약한 침해’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약한 옹호’ 반응을 보여 인권점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었다.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전평가에서보다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참정권’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침해’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자유권’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인권점수가 하락되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하락되었다. 기타 주제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에서는 ‘강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약한 옹호’ 반응으로 하락되었다. 이처럼 인권교육 후 오히려 인권점수가 하락된 경우에는 향후 인권교육에서 해당 주제에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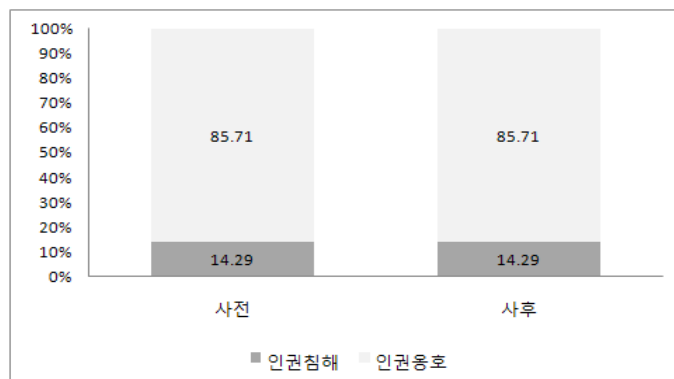
(2) 개인별 분석

인권교육 참가자의 사전, 사후평가 검사 전체 점수를 참가자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권 주제별 피교육자들의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반응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48> 시설 아동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피교육자 | 평균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
| | 사전 | 사후 | | |
| 1 | .04 | -.35 | -.39 | 약한 옹호→약한 침해로 하락 |
| 2 | -.26 | .13 | .39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 3 | .82 | .78 | -.04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4 | -.49 | .69 | 1.18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 5 | .05 | .52 | .47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6 | .74 | 1.29 | .55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7 | .15 | -.21 | -.36 | 약한 옹호→약한 침해로 하락 |
| 8 | .15 | .31 | .16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9 | .40 | 1.20 | .8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0 | .66 | .37 | -.29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1 | .32 | 1.44 | 1.12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2 | .06 | .19 | .13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3 | .94 | .34 | -.60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4 | .40 | .28 | -.12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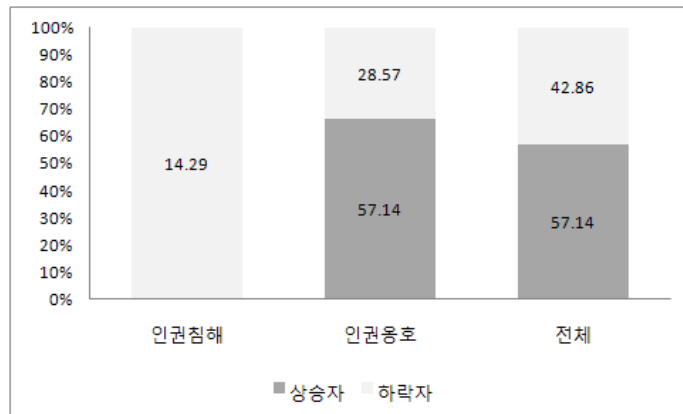
위 결과를 요약하여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인권옹호 반응과 인권침해 반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5> 시설 아동 분야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인권옹호 반응을 한 사람은 85.71%, 인권 침해 반응을 한 사람이 14.29%였다.

인권교육 실시 후 참가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변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 주제별 변화 유형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6> 시설 아동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보다 사후평가에서 향상된 사람은 57.14%였고, 하락된 사람은 42.86%로 향상된 사람이 많았다.

상승자이면서 ‘약한 옹호’ 반응을 보인 사람은 57.14%였고, 하락자이면서 ‘약한 옹호’ 반응을 보인 사람은 28.57%, ‘약한 침해’ 반응을 보인 사람은 14.29%였다.

4) 경찰 공무원 분야

(1) 집단 전체 분석

경찰 분야에서 26명의 인권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집단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IV-49〉 경찰 공무원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 평가 평균(사례 수=26)

| 구분 | 평균 | | 변화 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t 검증 | |
|--------------------------------------|------------------------|------|---------|-------------------|--------------------|----------|
| | 사전 | 사후 | | | | |
| 검사 전체 | .07 | .33 | .26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3.79** | |
| 일반 인권 주제 | -.39 | -.18 | .21 | 약한 침해 내에서 상승 | -2.57* | |
| 경찰 분야 에 특수 한 인권 주제 | 신체훼손 및 언어폭력 | -.19 | .58 | .77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5.48*** |
| | 제한사 항 | .25 | .44 | .1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46 |
| | 형평성 | .13 | .54 | .4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3.28** |
| | 검문 | -.12 | .28 | .40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1.82 |
| | 동행 및 연행 | .14 | .24 | .1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87 |
| | 개인정 보 보호 및 수색 | .12 | .57 | .45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2.93** |
| | 진료 | .59 | .15 | -.44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2.06 |

* p<.05 ** p<.01 *** p<.001

먼저, 검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인권’, ‘신체훼손 및 언어폭력’, ‘형평성’, ‘개인정보 보호 및 수색’ 주제에서도 유의한 향상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향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인권교육의 효과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일반 인권 주제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침해’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이슈별로 보면, ‘신체훼손 및 언어폭력’과 ‘검문’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에서

는 ‘약한 침해’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약한 옹호’ 반응을 보여 인권점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었다. ‘제한사항’, ‘형평성’, ‘동행 및 연행’, ‘개인정보 보호 및 수색’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진료’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하락되었다. 이처럼 인권교육 후 오히려 인권점수가 하락된 경우에는 향후 인권교육에서 해당 주제에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개인별 분석

인권교육 참가자의 사전, 사후평가 검사 전체 점수를 참가자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권 주제별 피교육자들의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반응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50> 경찰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피교육자 | 평균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
| | 사전 | 사후 | | |
| 1 | .05 | .42 | .37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2 | .94 | 1.18 | .2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3 | -.06 | -.08 | -.02 | 약한 침해 내에서 하락 |
| 4 | .69 | .56 | -.13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5 | -.45 | -.31 | .14 | 약한 침해 내에서 상승 |
| 6 | 1.11 | 1.15 | .0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7 | -.54 | -.39 | .15 | 약한 침해 내에서 상승 |
| 8 | -.03 | .40 | .43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 9 | -.28 | -.29 | -.01 | 약한 침해 내에서 하락 |
| 10 | .09 | .68 | .5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1 | 1.36 | 1.69 | .33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2 | -.20 | .18 | .38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 13 | .18 | .36 | .18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피교육 자 | 평균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
| | 사전 | 사후 | | |
| 14 | -.35 | -.49 | -.14 | 약한 침해 내에서 하락 |
| 15 | -.35 | .11 | .46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 16 | -.31 | -.68 | -.37 | 약한 침해 내에서 하락 |
| 17 | -.63 | -.15 | .48 | 약한 침해 내에서 상승 |
| 18 | .14 | .98 | .8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9 | -.37 | -.38 | -.01 | 약한 침해 내에서 하락 |
| 20 | -.10 | .94 | 1.04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 21 | .08 | .15 | .07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22 | .18 | .75 | .57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23 | .49 | 1.40 | .9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24 | .01 | -.02 | -.03 | 약한 옹호→약한 침해로 하락 |
| 25 | .31 | .84 | .53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26 | -.23 | -.42 | -.19 | 약한 침해 내에서 하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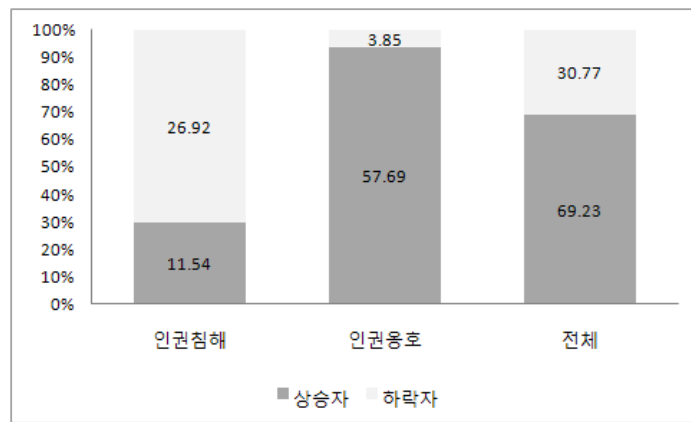
위 결과를 요약하여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인권옹호 반응과 인권침해 반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7> 경찰 분야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사전평가에서는 인권옹호 반응을 한 사람과 인권침해 반응을 한 사람의 비율이 모두 50%로 나타났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인권옹호 반응을 한 사람은 61.54%, 인권침해 반응을 한 사람은 38.46%로, 인권교육을 받은 후 인권옹호 반응을 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인권교육 실시 후 참가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변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 주제별 변화 유형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8> 경찰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보다 사후평가에서 향상된 사람은 69.23%였고, 하락된 사람은 30.77%로 향상된 사람이 2배 이상 많았다.

상승자이면서 ‘약한 옹호’ 반응을 보인 사람은 57.69%, ‘약한 침해’ 반응을 보인 사람은 11.54%였다. 하락자이면서 ‘약한 옹호’ 반응을 보인 사람은 3.85%, ‘약한 침해’ 반응을 보인 사람은 26.92%였다.

5)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1) 집단 전체 분석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 12명의 인권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집단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IV-51>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사례수=12)

| 구분 | 평균 | | 변화 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t 검증 | |
|--|---------|-----|---------|--------------------|--------------------|---------|
| | 사전 | 사후 | | | | |
| 검사 전체 | .36 | .46 | .1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92 | |
| 일반 인권 주제 | -.10 | .18 | .28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1.26 | |
| 일반 행정 분야 에 특수 한 인권 주제 | 사생 활 | .28 | .92 | .6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79 |
| | 인사 | .88 | .95 | .07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28 |
| | 채용 | .15 | .35 | .2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80 |
| | 노동 | .56 | -.19 | -.75 | 약한 옹호→약한 침해로 하락 | 5.20*** |
| | 복지 | .35 | .36 | .0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09 |
| | 성차 별 | .55 | .53 | -.02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06 |
| | 기타 | .23 | .58 | .35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65 |

*** p<.001

먼저, 검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이루어진 것은 ‘노동’ 주제였으나, 인권교육 후 점수가 오히려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향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인권교육의 효과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일반 인권 주제에 대해서

도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이슈별로 보면, ‘사생활’, ‘인사’, ‘채용’, ‘복지’, ‘기타’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노동’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에서는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약한 침해’ 반응을 보여,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하락되었다. ‘성차별’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하락되었다. 이처럼 인권교육 후 오히려 인권점수가 하락된 경우에는 향후 인권교육에서 해당 주제에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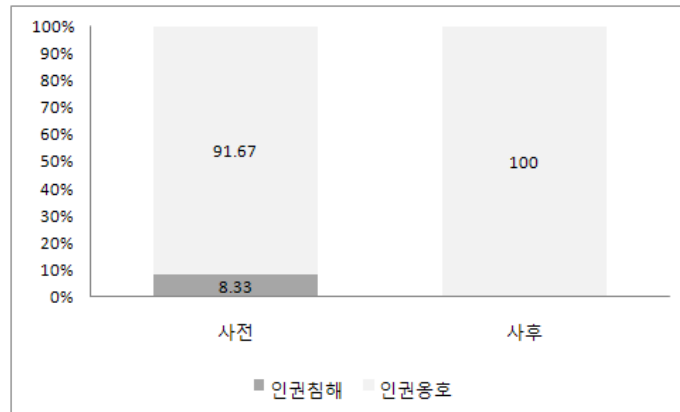
(2) 개인별 분석

인권교육 참가자의 사전, 사후평가 검사 전체 점수를 참가자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권 주제별 피교육자들의 사전, 사후평가에의 반응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위 결과를 요약하여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인권옹호 반응과 인권침해 반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52>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피교육자 | 평균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
| | 사전 | 사후 | | |
| 1 | 1.01 | .84 | -.17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2 | .61 | .17 | -.44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3 | .42 | .12 | -.30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4 | .54 | .93 | .3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5 | .07 | .76 | .6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6 | .28 | .07 | -.21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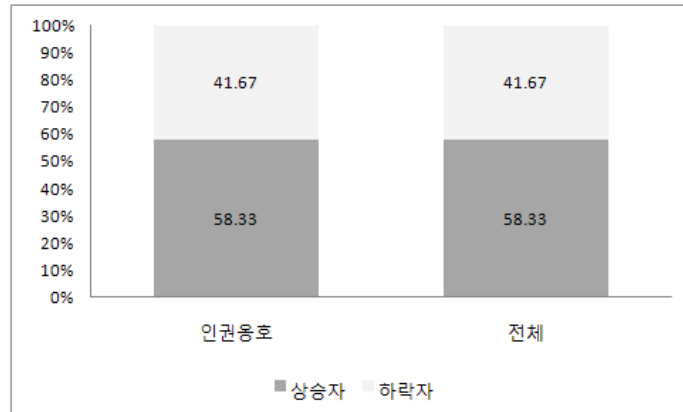
| 피교육 자 | 평균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
| | 사전 | 사후 | | |
| 7 | .32 | .66 | .3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8 | -.05 | .53 | .58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상승 |
| 9 | .25 | .05 | -.20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0 | .10 | .24 | .1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1 | .49 | .56 | .07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2 | .30 | .58 | .28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그림 IV-9>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사전평가에서는 인권옹호 반응을 한 사람의 비율이 91.67%, 인권침해 반응을 한 사람의 비율이 8.33%로 나타났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인권옹호 반응을 한 사람의 비율이 100%로 향상되었다.

인권교육 실시 후 참가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변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 주제별 변화 유형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10>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보다 사후평가에서 향상된 사람은 58.33%였고, 하락된 사람은 41.67%로 하락된 사람이 많았으며, 상승자와 하락자는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다.

6) 시설 장애인 분야

(1) 집단 전체 분석

시설 장애인 분야에서 28명의 인권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집단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표 IV-53> 시설 장애인 분야 검사 전체 및 인권 주제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사례수=12)

| 구분 | 평균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t 검증 |
|----------|------|------|------|-------------------|--------|
| | 사전 | 사후 | | | |
| 검사 전체 | .87 | 1.01 | .1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2.44* |
| 일반 인권 주제 | -.17 | 1.00 | 1.17 | 약한 침해→약한 옹호로 | |

| 구분 | 평균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t 검증 | |
|-------------------------------------|---------------------|------|------|-------------------|--------------|---------|
| | 사전 | 사후 | | | | |
| | | | | 상승 | -2.85** | |
| 시설 장애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입소 자기결정권 | .57 | 1.07 | .5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49 |
| | 의사표현의 자유 | .93 | 1.13 | .2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20 |
| | 신체의 자유 | 1.21 | .99 | -.22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2.00 |
| | 선택권 | .60 | .78 | .18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93 |
| | 교육권 | 1.07 | 1.11 | .0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9 |
| | 참정권 | .93 | 1.34 | .4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2.82** |
| | 가족권 | 1.49 | .81 | -.68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3.56** |
| | 경제권 및 노동권 | 1.18 | .85 | -.33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2.29* |
| | 치료받을 권리 | .60 | .75 | .15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05 |
| | 의식주, 생활의 권리 | .70 | 1.09 | .3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1.86 |
| | 인간존엄성 , 행복추구권 | .88 | 1.17 | .2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2.26* |
| | 종교의 자유 | 1.04 | 1.54 | .5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2.10* |
| | 사생활보호 | 1.11 | 1.40 | .2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2.24* |

* p<.05 ** p<.01

먼저, 검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이루어졌다. 하위 주제로 보면, ‘일반 인권’, ‘참정권’,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보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가족권’에서는 인권교육 후 점수가 오히려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제적인 향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인권교육의 효

과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에서 모두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향상되었다. 일반 인권 주제에서는 사전평가에서는 ‘약한 침해’ 반응을 보였으나 사후평가에서는 ‘약한 옹호’ 반응으로 향상되었다.

이슈별로 보면, ‘입소 자기결정권’, ‘의사표현의 자유’, ‘선택권’, ‘교육권’, ‘참정권’, ‘치료받을 권리’, ‘의식주, 생활의 권리’, ‘인간존엄성, 행복추구권’, ‘종교의 자유’, ‘사생활보호’에서는 사후평가에서 실제적인 점수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신체의 자유’, ‘가족권’, ‘경제권 및 노동권’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모두에서 ‘약한 옹호’ 반응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하락되었다. 이처럼 인권교육 후 오히려 인권점수가 하락된 경우에는 향후 인권교육에서 해당 주제에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개인별 분석

인권교육 참가자의 사전, 사후평가 검사 전체 점수를 참가자 개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인권 주제별 피교육자들의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반응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54〉 시설 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검사 전체)

| 피교육자 | 평균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
| | 사전 | 사후 | | |
| 1 | .92 | 1.08 | .16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2 | 1.11 | 1.05 | -.06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3 | .53 | .84 | .31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4 | 1.18 | 1.20 | .02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5 | .75 | .65 | -.10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피교육 자 | 평균 | | 변화량 | 변화의 방향 (사전→사후) |
|----------|------|------|------|-------------------|
| | 사전 | 사후 | | |
| 6 | 1.35 | 1.27 | -.08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7 | .79 | 1.34 | .55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8 | 1.45 | 1.80 | .35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 9 | 1.02 | 1.50 | .48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 10 | 1.07 | 1.31 | .24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1 | .34 | -.19 | -.53 | 약한 옹호→약한 침해로 하락 |
| 12 | 1.13 | 1.23 | .1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3 | 1.06 | 1.00 | -.06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4 | 1.14 | 1.72 | .58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 15 | .09 | -.05 | -.14 | 약한 옹호→약한 침해로 하락 |
| 16 | .54 | .11 | -.43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17 | .17 | .66 | .4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8 | 1.00 | 1.40 | .4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19 | .92 | .97 | .05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20 | -.04 | -.24 | -.20 | 약한 침해 내에서 하락 |
| 21 | 1.40 | 1.66 | .26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 22 | .18 | .21 | .03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23 | 1.09 | 1.48 | .39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24 | 1.38 | 1.65 | .27 | 약한 옹호→강한 옹호로 상승 |
| 25 | .63 | 1.43 | .80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 26 | 1.65 | 1.64 | -.01 | 강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27 | .67 | .53 | -.14 | 약한 옹호 내에서 하락 |
| 28 | .75 | 1.01 | .26 | 약한 옹호 내에서 상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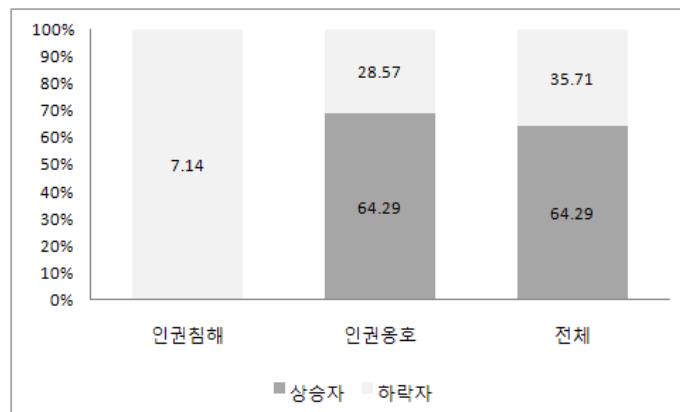
위 결과를 요약하여 사전, 사후평가에서의 인권옹호 반응과 인권침해 반응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1> 사전, 사후평가에서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 반응 비율

인권옹호 반응을 한 사람의 비율이 사전평가에서는 96.43%였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89.29%로 하락되었다.

인권교육 실시 후 참가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구체적인 변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권 주제별 변화 유형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12> 사후 평가에서 인권 침해 및 옹호비율의 상승 및 하락자

검사 전체로 볼 때, 사전평가에서보다 사후평가에서 향상된 사람은 64.29%였고, 하락된 사람은 35.71%로 향상된 사람이 많았으며, 상승자는 ‘강한 옹호’와 ‘약한 옹호’ 반응을 보였고, 하락자는 ‘약한 옹호’와 ‘약한 침해’ 반응을 보였다.

7) 소결

본 연구에서 개발한 9개 분야 인권교육 평가도구 중 6개 분야 평가도구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인권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검사 전체의 사전, 사후평가 평균과 상승자 비율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 경찰, 시설 장애인 분야에서는 인권교육 후 인권점수가 실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정신장애인의 상승자 비율은 80%, 경찰은 69.23%, 시설 장애인은 64.29%였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경찰, 시설 장애인 분야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은 실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설 아동과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는 인권교육 후 인권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향상이 이루어졌다. 시설 아동 분야의 상승자 비율은 57.14%, 일반 행정공무원은 58.33%였다. 따라서 시설 아동과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은 사례수의 부족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실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노인 분야에서는 인권교육 후 인권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락되었다. 노인 분야의 상승자 비율은 33.33%였다. 따라서 노인 분야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위 두 번째 결과와 세 번째 결과를 나타내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계적 유의도는 사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이다. 즉 사례수가 많으면 사전, 사후평가 평균값의 변화가 적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

능성이 높아지지만, 사례수가 적으면 사전, 사후평가 평균값의 변화가 크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즉, 본 시범적 적용 연구의 대상은 정신장애인(20명), 경찰(26명), 시설 장애인(28명)의 경우에는 나머지 세 분야의 대상들보다 많았으나, 일반 행정공무원(12명), 시설 아동(14명), 노인(18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례수가 적었기 때문에, 후자 세 집단의 경우에는 사전, 사후평가의 평균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가 낮게 산출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통계적 유의도 못지않게 실제적으로 향상이 되었는가의 실제적 유의도도 고려하여 인권교육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사례수가 많이 축적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후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진 이유가 응답자의 불성실한 반응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 분야의 경우에 사후평가에서 점수가 더 낮아진 이유는 신뢰도 분석 자료와 관련지어 볼 때 피평가자들이 불성실한 반응 태도 때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가 실시자가 사전에 피평가자들에게 평가의 목적이나 의의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사후평가에서 점수가 낮아진 이유가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교육의 질에서 기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슈별로 분석해 보았을 때, 사전평가에서보다 사후평가에서 인권점수가 낮아진 경우는 인권교육 시에 해당 내용을 교육내용으로서 포함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포함시켰다할지라도 교육방법 상 피평가자들에게 인권교육이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고 지루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전반적인 인권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권교육 평가도구를 인권교육에 시범적으로 적용해봤을 때, 6개 분야 중 5개 분야(정신장애인, 경찰, 장애인, 시설 아동, 일반 행정공무원)에서는 인권교육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도구를 해당 분야의 인권교육 효과성 평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노인 분야에서는 피평가자들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인권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었으므로, 향후 인권교육 평가 자료를 더 축적한 후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V. 공공분야 인권교육 평가도구의 활용방법 및 제언

본 검사 도구는 인권교육이 1박 2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완성형 버전(공통문항 20개, 각 분야별 특수문항 40개), 그리고 인권교육이 2시간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간편형 버전(공통문항 10개, 각 분야별 특수문항 20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검사 참여자 및 실시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서,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본 검사를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통한 교육 참여자들의 인권의식을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평가도구의 활용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각 분야의 인권교육 참여자들의 인권의식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특정 분야 종사자로서의 개인 차원 및 그 개인이 속한 집단차원에서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각 분야별 교육 참가자들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보다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본 검사 도구는 해당 분야의 향후 인권교육의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사 개발의 원래의 취지에 맞게 본 검사 도구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본 평가도구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선행될 때, 여러 부처의 인권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인권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전, 후에 인권의식에 있어서 교육 참여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내용 및 정도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교육 평가도구를 활용함으로써, 각 분야에 있어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그것이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된다는 것조차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러한 사례가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

는 것과 같이 인권감수성이 낮은 많은 실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인권의식에 대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일깨워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더 이상의 반인권적, 비인권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가도구 개발의 목표대로 도구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교육자료 및 교육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교육자들마다 교수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권교육 관련 표준적인 교육자료 및 교육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본 인권교육 평가도구는 세계적으로 인권교육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사례는 없고,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평가도구가 초기의 시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항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평가도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활용가치에 주목하되, 또한 향후에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후속 연구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개발된 도구의 활용가치 및 유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평가도구를 일반화(generalization)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는 관련 후속작업을 향후에도 성공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2a).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2b).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2c).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2d). 『교정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2e). 『구금시설 실태에 관한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3a).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국가인권위원회(2003b). 『정신과 관련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3c).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을 위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3d). 『일반 행정』,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4). 『2004 인권상담집』,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5a).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5b). 『2005 인권상담집』,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6a). 『군 인권교육 교안』,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6b).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공공분야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6c). 『중증 장애인 생활실태조사 : 활동보조인서비스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7a).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 워크숍』,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7b). 『2007 연간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7c).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8a).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정신장애 분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8b). 『정신장애분야 인권교육 교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8c). 『8월 진정사건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정신요양협회(2007). 『사회복지분야(정신요양시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연수교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정신요양협회.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2006a). 『군 인권 개선사례: 고충처리제도 개선, 생활과 휴식권 보장, 친인권적 문화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2006b).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2006c). 『군 지휘관 인권 리더십 과정』,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2008a). 『군대분야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2008b). 『군대분야 인권교육 강사양성 과정』,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2008). 『2008 교원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국가인권위원회·울산대학교 법학연구센터(2008). 『2008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 기본과정-인권』, 국가인권위원회·울산대학교 법학연구센터.

국가인권위원회·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2008). 『2008년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교사와 함께하는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경찰청(2008). 『수사분야 인권교육교재』, 국가인

권위원회·국방부·경찰청.

길은배·이용교·김영지(2001).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

김동호(2000)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 본 한국장애인 복지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승권 외(2003).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복지증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 보건사회연구원.

김영지·김세진(2004). 『외국의 청소년인권정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은숙 외(200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어린이보호재단.

김정래(2000). 『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그 발전적 이행을 위한 한 논의』, 아동권리 연구-4(1). 한국아동권리학회.

김혜경(2002). 『과밀수용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구현 외(2005)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 양성화된 조건부 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남재성(2007). 『출소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본 수형자 처우의 현실 : 심층면접결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Vol.13. No.2. 61-88.

문미희(2004). 『사범대 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1999). 『청소년이 알아야할 인권이야기』, 문화관광 부·한국청소년개발원.

박숙경(2005). 『미신고시설양성화 정책 후속대책에 대한 비판과 제언』

박향아(200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합의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Vol.12, No.2.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백우정(1993). 『아동권리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은령, 임성만(2006). 『거주시설 이용자 참여의 현황과 대안』, 재활복지. Vol.10, No.3.
- 백종만(1998).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인권과 정책 방향』, 국회인권포럼.
- 변용찬 외(1998).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조치: 아동권리조약에 관한 2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재관 외(2001) 『사회복지시설 평가-양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4a). 『미신고 복지 시설실태 조사 및 현장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4). 『미신고시설실태조사현황』, 보건복지부.
-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2).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설정곤(2005). 『한국의 아동정책과 전달체계. 아동권리교육과정Ⅱ』,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오선영(2005).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권리교육과정Ⅱ』. 보건복지부·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윤덕경·장경아(2002). 『가족법상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선영(2006). 『초등학교 인권교육의 평가도구 설계와 개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숙·이종원(1994). 『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윤호·이수정·공정식(2005). 『교도소 내 인권문제의 미시적 접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호. 285-420.
- 이재연(2005). 『한국의 아동권리현황과 문제분석. 아동권리교육과정Ⅱ』,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이종수(2007). 『공공행정 조직문화 측정지표 모형개발(Ⅱ)』, 지방행정, 56

- 권, 641호, 111-130.
- 이종원·황진구·이혜연(1997). 『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태수(2000). 『우리나라 아동보호의 실태 및 보호양식 개발에 관한 연구』, 아이들과 미래.
- 이태수·함철호·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제5호. 한국아동복지학회.
- 이호중(2006). 『구급시설 수용자 인권분야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과제』, 공법연구. Vol.35, No.2-2. 61-107.
- 인권운동사랑방(2003). 『조건부신고정신요양시설‘은혜사랑의집’(구은혜기도원) 조사결과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3). 『조건부신고정신요양시설‘성실정양원’조사결과보고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4). 『장애우복지개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진섭(2008). 『수형자의 권리침해와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석사학위논문.
- 전중형(2005). 『구급시설의 인권개선 방안 연구 : 외부교통권을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승래(2006). 『수형자의 법적지위와 그 보장방안』, 고시연구. Vol.33, No.12. 290-297.
- 조흥식(2000). 『아동권리지표에 따른 ‘아동최선의 이익’ 정책이행 분석』, 한국사회학 Vol.22, No.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짐아이프, 김형식·여지영 역(2001).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인간과 복지.
- 차인홍·송경옥 역(2004).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기준』, 미국아동복지시설연맹 편, 은평천사원출판부.
- 최윤진(2000). 『아동의 권리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학연구, 7(2). 한국청소년학회.
- 최현미(1998). 『아동복지시설의 전문화 방안 : 미국아동복지협회의 기준을

-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집.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1999).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1999). 『한국의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 아동권리연구 3(1). 한국아동권리학회.
- Getz, I.(1985). 『*Moral reasoning, religion, and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부록 1] 전문가 1차 자문 양식¹⁾

| 번호 | 이슈 | 인권침해 사례 |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 | 중요도 (상-중-하) | 심각도 (상-중-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부록 1], [부록 2], [부록 4], [부록 5]는 각 분야별로 민감한 이슈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양식만을 공개하고, 그 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함.

[부록 2] FGI 질문지

● 사전 준비작업

- 중요도, 심각도를 기준으로 이슈를 선별하여 이슈와 사례 재정리
예) 중요도, 심각도가 떨어지는 것은 잠정적으로 배제

● 1차: 광범위한 개방형 질문

- OO 분야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인권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OO 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2차: 연구진이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 선별한 이슈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문

※ 사전작업을 거쳐 선별한 이슈 및 사례 모두에 대한 질문을 작성해가되, 위 1차 인터뷰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이미 말씀해주신 주제들은 생략하고 지나감

● 3차: 중요도와 심각도 체크

- 작성한 이슈와 사례를 보여주고 중요도와 심각도를 판정하게 함

| 번호 | 이슈 | 사례 | 중요도 | 심각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3] FGI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참여 동의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연구는 공공분야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실용적인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진이 조사한 인권 관련 각종 내용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각 공공분야별 실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도구 개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실무자 인터뷰의 내용은 외부로 전혀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도덕심리 연구실

인터뷰 비용은 5만원(1인당)이며, 인터뷰 비용의 지급은 서울대학교 행정시스템을 거쳐서 이루어지므로, 인터뷰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인터뷰 후 2-3일 정도 후에 통장 지급이 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는 행정적인 처리만을 위해 활용되므로, 그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데이터로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연 락 처:

주 소:

인터뷰 참여자

(서명)

[부록 4] 전문가 1차 자문 및 FGI 결과 정리표

| 번호 | OO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 중요도 (상=1, 중=2, 하=3) | | | | | | 심각도 (상=1, 중=2, 하=3) | | | | | | | | | | | |
|----|------------------|------------------------|---|---|-----|-------------|---|------------------------|---------------|---|---|-----|-------------|--|--|--|--|--|--|
| | | 실무자 (5-6인) | | | 전문가 | 실무자 응답 수 | | | 실무자 (5-6인) | | | 전문가 | 실무자 응답 수 | | | | | | |
| | | 상 | 중 | 하 |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록 5] 전문가 2차 자문 양식

| 이슈 | 관련 사례 | 문항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항번호 | 문항 | 각 문항에 대한 피드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연구 검사지 완성형(간편형)

- 00 분야 -

안녕하십니까? 본 검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검사는 총 0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00분입니다.

본 검사는 개인 참여자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문항을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각 문항의 보기 중 자신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에 솔직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급 | 성별 |
|----|----|
| | |

국가인권위원회

<표> 공통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 전과자, 재소자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남자 연예인이 군 입대 나이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연예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 여자사단장이 부대를 지휘한다면, 부대를 이끌어가는 데 능숙하지 못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 직원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라면 학벌, 출신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6. 경제가 어렵더라도 근무조건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7. 직장동료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심리적인 거리가 생길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 8. 휠체어를 타고 있는 지체장애인이 들어오면, 부탁받지 않았어도 밀어드리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9. 나의 자녀가 정신 장애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걱정스러울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 10. HIV 보균자는 발병 전이라도 가능하면 일반인과 격리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부모가 자녀의 일기장을 봐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12. 고객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당사자가 원하는 것보다 보호자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시간과 돈의 제약이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민원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5.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전체 구성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6. 기관장의 지시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업무 상황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직장동료나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8.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직장에서 상급자는 업무상의 효율성을 위해 하급자에게 반말로 지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0. 재소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므로, 냉,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공통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 재소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므로, 냉,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 직장에서 상급자는 업무상의 효율성을 위해 하급자에게 반말로 지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 업무 상황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직장동료나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 기관장의 지시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6.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전체 구성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7.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민원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8. 시간과 돈의 제약이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9. 고객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당사자가 원하는 것보다 보호자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0.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부모가 자녀의 일기장을 봐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HIV 보건자는 발병 전이라도 가능하면 일반인과 격리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2. 나의 자녀가 정신장애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걱정스러울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 13. 휠체어를 타고 있는 지체장애인이 들어오면, 부탁받지 않았어도 밀어드리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직장동료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심리적인 거리가 생길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 15. 경제가 어렵더라도 근무조건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직원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라면 학벌, 출신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8. 여자사단장이 부대를 지휘한다면, 부대를 이끌어가는 데 능숙하지 못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9. 남자 연예인이 군 입대 나이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연예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0. 전과자, 재소자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공통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 전과자, 재소자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 직원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라면 학벌, 출신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 직장동료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심리적인 거리가 생길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 5. 나의 자녀가 정신 장애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걱정스러울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 6. 고객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당사자가 원하는 것보다 보호자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7. 시간과 돈의 제약이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8.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전체 구성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9.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0. 직장에서 상급자는 업무상의 효율성을 위해 하급자에게 반말로 지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공통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 직장에서 상급자는 업무상의 효율성을 위해 하급자에게 말로 지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전체 구성원의 안전을 우선 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 시간과 돈의 제약이 있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 고객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당사자가 원하는 것보다 보호자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6. 나의 자녀가 정신장애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걱정스러울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 7. 직장동료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심리적인 거리가 생길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 8.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9. 직원을 뽑을 때, 비슷한 조건이라면 학벌, 출신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0. 전과자, 재소자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교사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교칙을 제·개정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교사와 학교장의 몫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성적이 떨어졌거나 훈계를 해도 듣지 않는 학생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려서라도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3. 도난 방지, 면학 분위기 조성, 폭력 예방 등을 위해서 복도, 교사,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성적이 하위권이거나 징계 경력이 있는 학생에게도 학생회 임원 자격을 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보충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6. 학생 운동선수는 어차피 앞으로 운동 분야로 진출할 것이므로, 출전과 훈련 때문에 수업참석을 거의 못 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7.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빠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학생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허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9. 학생들에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학생에게는 반성문을 쓰도록 지도하고 각서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기숙사 입사 시 성적우수자를 우대하는 것은 학업동기 유발 차원에서 더욱 장려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2. 도난사건이나 폭력사건 발생 시, 학생들을 잘 아는 교사가 확신이 가는 학생을 조기에 지목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33. 부적절한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가방이나 사물함 등을 가끔씩 불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4.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초지종을 듣고 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5. 학교 운영에 관련된 일이라도 학생의 요구가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사건 조사나 교내 봉사도 중요한 학생 지도 사안인 만큼 수업시간 중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7. 종교과목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는 종교과목 이외에 대체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8. 학생은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공부 이외의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복을 입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9. 다른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자퇴나 전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0. 학교신문에 게재하는 학생들의 출판물은 미리 살펴보고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학교의 바쁜 일정 속에서 일처리를 신속하게 하려다보면 급식비 지원 대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2.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 중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글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가 알아서 시급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43. 학생선수에게 강인한 정신력 유지와 팀워크, 단체규율 준수가 매우 중요한 만큼 힘든 훈련과 기합을 견딜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4. 초등학생에게는 일기장 검사를 하는 것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5. 여학생에게는 두발 길이를 자유로 하되, 남학생에게는 좀 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46. 교육적 지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학생의 편지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다이어리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어볼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7.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도록 하려면 휴대전화, 만화책, 카메라 등은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8. 동아리 설립에 대한 허가권과 해산권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가질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9.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과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직업이나 재산 등도 미리 일괄 조사해둘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0.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려면 꿇어앉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입시공부가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억지로라도 보충수업이나 자습 등을 시키는 것이 학생을 위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2.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 등 전자 장비를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3. 한정된 학교 예산이라면 소수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수 일반학생들의 학업지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4. 학교가 수집하거나 기록해둔 정보를 학생들이 열람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5. 학생들의 머리 길이나 모양 등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6.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보건실에 가 있는 학생들을 막기 위하여 보건실 입실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7. 선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8.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함부로 글을 다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9.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기보다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① | ② | ③ | ④ |
| 60.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학생일지라도 학교 밖 교육활동에도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교사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학생일리자도 학교 밖 교육활동에도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2.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3.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은 함부로 글을 다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선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보건실에 가 있는 학생들을 막기 위하여 보건실 입실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학생들의 머리 길이나 모양 등을 어느 정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7. 학교가 수집하거나 기록해둔 정보를 학생들이 열람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한정된 학교 예산이라면 소수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수 일반학생들의 학습지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9.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 등 전자 장비를 설치하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입시공부가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억지로라도 보충수업이나 자습 등을 시키는 것이 학생을 위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려면 끌어앉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2.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과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직업이나 재산 등도 미리 일괄 조사해둘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3. 동아리 설립에 대한 허가권과 해산권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가질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4.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도록 하려면 휴대전화, 만화책, 카메라 등은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5. 교육적 지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학생의 편지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다이어리 등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어볼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여학생에게는 두발 길이를 자유로 하되, 남학생에게는 좀 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37. 초등학생에게는 일기장 검사를 하는 것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8. 학생선수에게 강인한 정신력 유지와 팀웍, 단체규율 준수가 매우 중요한 만큼 힘든 훈련과 기합을 견딜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9.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 중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글에 대해서는 담당 교사가 알아서 시급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40. 학교의 바쁜 일정 속에서 일처리를 신속하게 하려다보면 급식비 지원 대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학교신문에 게재하는 학생들의 출판물은 미리 살펴보고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2. 다른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자퇴나 전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3. 학생은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공부 이외의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복을 입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4. 종교과목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는 종교과목 이외에 대체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5. 사건 조사나 교내 봉사도 중요한 학생 지도 사안인 만큼 수업시간 중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6. 학교 운영에 관련된 일이라도 학생의 요구가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7.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교무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초지종을 듣고 벌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8. 부적절한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가방이나 사물함 등을 가끔씩 불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9. 도난사건이나 폭력사건 발생 시, 학생들을 잘 아는 교사가 확신이 가는 학생을 조기에 지목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50. 기숙사 입사 시 성적우수자를 우대하는 것은 학업동기 유발 차원에서 더욱 장려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학생에게는 반성문을 쓰도록 지도하고 각서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2. 학생들에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3. 학생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허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4.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빠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5. 학생 운동선수는 어차피 앞으로 운동 분야로 진출할 것이므로, 출전과 훈련 때문에 수업참석을 거의 못 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6.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보충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7. 성적이 하위권이거나 징계 경력이 있는 학생에게도 학생회 임원 자격을 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8. 도난 방지, 면학 분위기 조성, 폭력 예방 등을 위해서 복도, 교사,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9. 성적이 떨어졌거나 훈계를 해도 듣지 않는 학생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려서라도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60. 교칙을 제·개정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교사와 학교장의 몫이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교사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교칙을 제·개정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교사와 학교장의 몫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성적이 떨어졌거나 훈계를 해도 듣지 않는 학생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려서라도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3. 도난 방지, 면학 분위기 조성, 폭력 예방 등을 위해서 복도, 교사,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보충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5. 학생 운동선수는 어차피 앞으로 운동 분야로 진출할 것이므로, 출전과 훈련 때문에 수업참석을 거의 못 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6. 학생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허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7. 학생들에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18.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학생에게는 반성문을 쓰도록 지도하고 각서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9. 도난사건이나 폭력사건 발생 시, 학생들을 잘 아는 교사가 확신이 가는 학생을 조기에 지목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0. 부적절한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가방이나 사물함 등을 가끔씩 불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학교 운영에 관련된 일이라도 학생의 요구가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종교과목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는 종교과목 이외에 대체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3. 학생은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공부 이외의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복을 입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4. 학교신문에 게재하는 학생들의 출판물은 미리 살펴보고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학교의 바쁜 일정 속에서 일처리를 신속하게 하려다보면 급식비 지원 대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여학생에게는 두발 길이를 자유로 하되, 남학생에게는 좀 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7. 동아리 설립에 대한 허가권과 해산권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가질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과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직업이나 재산 등도 미리 일괄 조사해둘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한정된 학교 예산이라면 소수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수 일반학생들의 학업지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0. 학교가 수집하거나 기록해둔 정보를 학생들이 열람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교사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학교가 수집하거나 기록해둔 정보를 학생들이 열람하거나 수정을 요구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2. 한정된 학교 예산이라면 소수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수 일반학생들의 학업지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3.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과 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직업이나 재산 등도 미리 일괄 조사해둘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4. 동아리 설립에 대한 허가권과 해산권은 일반적으로 학교가 가질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여학생에게는 두발 길이를 자유로 하되, 남학생에게는 좀 더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16. 학교의 바쁜 일정 속에서 일처리를 신속하게 하려다보면 급식비 지원 대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7. 학교신문에 게재하는 학생들의 출판물은 미리 살펴보고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8. 학생은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공부 이외의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교복을 입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종교과목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는 종교과목 이외에 대체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0. 학교 운영에 관련된 일이라도 학생의 요구가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도난사건이나 폭력사건 발생 시, 학생들을 잘 아는 교사가 확신이 가는 학생을 조기에 지목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것이 신속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2. 부적절한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가방이나 사물함 등을 가끔씩 불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3.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학생에게는 반성문을 쓰도록 지도하고 각서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4. 학생들에게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5. 학생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허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6. 학생 운동선수는 어차피 앞으로 운동 분야로 진출할 것이므로, 출전과 훈련 때문에 수업참석을 거의 못 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보충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8. 도난 방지, 면학 분위기 조성, 폭력 예방 등을 위해서 복도, 교사,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성적이 떨어졌거나 훈계를 해도 듣지 않는 학생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려서라도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0. 교칙을 제·개정할 경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교사와 학교장의 몫이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군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군대에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반말이나 욕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2. 군대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도 집단 전체에 단적으로 벌을 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3. 선임병은 전입 온 이병들에게 선임병의 이름, 군번, 서열, 전역일 등을 암기하도록 시킬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군기가 빠져 있는 병사들에게는 군화나 휴대장비 등을 감추어 기술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도록 시키는 일은, 남자들 위주의 군대 문화에서 어느 정도의 오락 내지 소일거리로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6. 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과 제약이 있어야 군기가 유지되므로 이등병의 사적 업무를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7.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군 기강을 위해서 체벌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여성군인에게서는 전방근무가 아닌 일반 후방근부 보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상관이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경우에도 신고나 거부하기보다 따르는 것이 수월한 군대생활에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30. 동성애자는 잠재적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강제전역을 시킬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남자 군인이 2,3차 폭음 후 사리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여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는 문화적 현상으로 용인해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이행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감옥에 보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33. 다른 조직체와 달리, 군대 내에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서도 병사를 연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4.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벌을 줄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5. 전쟁에 휴일이 없는데, 일과시간 이외에 작업을 시킨다고 휴식권 운운하는 것은 군기문란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초년병들에게는 사소한 지시사항을 어겼을지라도 군기강을 위해 군대내 영창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7.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것은 경험부족과 전문성 부족에서 온 군의관의 개인적 문제이지 군대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8. 어떤 조직이든 상-하 지휘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신분에 따라 일정한 차별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9. 군대에서 근무 중 절도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으로 확증이 가는 병사나 부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양심고백 자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0. 선임병이 내무실에서 후임병에게 물 떠오기, 관물정돈 등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군 보안상 유해한 내용이 담긴 우편물은 미리 차단되어야 하므로, 개인에게 우송된 소포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없이도 뜯어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2.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는 영장없이도 사무실, 숙소, 신체, 소지품 등에 대한 일정한 수색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3.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보다 우대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44. 군인들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군인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5. 군대내 영창에서는 수감자들의 동태를 감시해야 하므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6. 군대에서는 전시에 대비하여 웬만한 것은 참는 것을 배워야 하므로, 소원수리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7. 지휘관은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불상사를 일으킬지 모르므로 일반병사와는 달리 감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8. 사단장은 공관병에게 자녀 과외, 가족 빨래, 밥짓기, 대리운전 등의 집안 살림을 시킬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9. 후임병의 빠른 적응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병에게 후임병의 신상명세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0.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목격했더라도, 신고하면 부대원 전체가 피곤해지므로 차라리 신고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연애편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 위주의 군대 문화에서 재미로 하는 것이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52. 휴가기간에 입원해 있어서 휴가를 못 갔다고 퇴원 후에 휴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53. 선임병이 믿는 종교를 후임병에게 함께 믿을 것을 요구해도, 후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후임병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54. 군복무는 의무이며 군대는 돈 벌러 오는 곳이 아니므로, 군인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안 해줘도 문제될 것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5. 동성애자는 에이즈 보균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채혈 및 AIDS 검사를 실시해서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6. 군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하면 보안문제가 생기고, 가정이나 애인문제 등으로 임무에 소홀해져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군대에서는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공중전화 사용에도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7. 군인이 조금 아프다고 진료를 받는 것보다 참는 것이 군의 효율을 위해 더 나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8. 간부가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신고 받더라도 상급부대에 보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59.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불온한 사상을 담은 서적이 군대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60. 최악의 전쟁시를 대비하여 군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교육이므로, 부실한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도 감내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군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최악의 전쟁시를 대비하여 군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교육이므로, 부실한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도 감내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2.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불온한 사상을 담은 서적이 군대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3. 간부가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신고 받더라도 상급부대에 보고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24. 군인이 조금 아프다고 진료를 받는 것보다 참는 것이 군의 효율을 위해 더 나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5. 군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자유롭게 소통하면 보안문제가 생기고, 가정사나 애인문제 등으로 임무에 소홀해져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군대에서는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공중전화 사용에도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6. 동성애자는 에이즈 보균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성애자에 대한 채혈 및 AIDS 검사를 실시해서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7. 군복무는 의무이며 군대는 돈 벌러 오는 곳이 아니므로, 군인에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안 해줘도 문제될 것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선임병이 믿는 종교를 후임병에게 함께 믿을 것을 요구해도, 후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후임병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29. 휴가기간에 입원해 있어서 휴가를 못 갔다고 퇴원 후에 휴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연애편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 위주의 군대 문화에서 재미로 하는 것이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목격했을지라도, 신고 하면 부대원 전체가 피곤해지므로 차라리 신고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32. 후임병의 빠른 적응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병에게 후임병의 신상명세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3. 사단장은 공관병에게 자녀 과외, 가족 빨래, 밥짓기, 대리운전 등의 집안 살림을 시킬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4. 지휘관은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불상사를 일으킬지 모르므로 일반병사와는 달리 감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5. 군대에서는 전시에 대비하여 웬만한 것은 참는 것을 배워야 하므로, 소원수리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6. 군대내 영창에서는 수감자들의 동태를 감시해야 하므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7. 군인들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군인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8.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비사관학교 출신 장교보다 우대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39.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는 영장없이도 사무실, 숙소, 신체, 소지품 등에 대한 일정한 수색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0. 군 보안상 유해한 내용이 담긴 우편물은 미리 차단되어야 하므로, 개인에게 우송된 소포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없이도 뜯어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선임병이 내무실에서 후임병에게 물떠오기, 관물정돈 등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2. 군대에서 근무 중 절도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으로 확증이 가는 병사나 부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양심고백 자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3. 어떤 조직이든 상-하 지휘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신분에 따라 일정한 차별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44.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것은 경험부족과 전문성 부족에서 온 군의관의 개인적 문제이지 군대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5. 초년병들에게는 사소한 지시사항을 어겼을지라도 군기강을 위해 군대내 영창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6. 전쟁에 휴일이 없는데, 일과시간 이외에 작업을 시킨다고 휴식권 운운하는 것은 군기문란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7.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벌을 줄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8. 다른 조직체와 달리, 군대 내에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서도 병사를 연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① | ② | ③ | ④ |
| 49.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이행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감옥에 보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50. 남자 군인이 2,3차 폭음 후 사리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여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는 문화적 현상으로 용인해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동성애자는 잠재적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강제전역을 시킬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2. 상관이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경우에도 신고나 거부하기보다 따르는 것이 수월한 군대생활에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53. 여성군인에게는 전방근무가 아닌 일반 후방근부 보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4.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군기강을 위해서 체벌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5. 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과 제약이 있어야 군기가 유지되므로 이등병의 사적 업무를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6.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성적 농담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도록 시키는 일은, 남자들 위주의 군대 문화에서 어느 정도의 오락 내지 소일거리로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7. 군기가 빠져 있는 병사들에게는 군화나 휴대장비 등을 감추어 기술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8. 선임병은 전입 온 이병들에게 선임병의 이름, 군번, 서열, 전역일 등을 암기하도록 시킬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9. 군대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집단 전체에 단체로 벌을 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60. 군대에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반말이나 욕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군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군대에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반말이나 욕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2. 군대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했다라도 집단 전체에 단적으로 벌을 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3. 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과 제약이 있어야 군기가 유지되므로 이등병의 사적 업무를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4.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군기강을 위해서 체벌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상관이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경우에도 신고나 거부하기보다 따르는 것이 수월한 군대생활에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16. 동성애자는 잠재적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강제전역을 시킬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7. 다른 조직체와 달리, 군대 내에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서도 병사를 연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① | ② | ③ | ④ |
| 18.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벌을 줄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전쟁에 휴일이 없는데, 일과시간 이외에 작업을 시킨다고 휴식권 운운하는 것은 군기문란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0. 초년병들에게는 사소한 지시사항을 어겼을지라도 군기강을 위해 군대내 영창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것은 경험부족과 전문성 부족에서 온 군의관의 개인적 문제이지 군대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어떤 조직이든 상-하 지휘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신분 에 따라 일정한 차별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3. 군 보안상 유해한 내용이 담긴 우편물은 미리 차단되 어야 하므로, 개인에게 우송된 소포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없이도 뜯어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는 영장없이도 사무실, 숙소, 신체, 소지품 등에 대한 일정한 수색을 할 수 있 다. | ① | ② | ③ | ④ |
| 25.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목격했을지라도, 신고 하면 부대원 전체가 피곤해지므로 차라리 신고하지 않 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연애관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 는 것은 남자들 위주의 군대 문화에서 재미로 하는 것 이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27. 휴가기간에 입원해 있어서 휴가를 못 갔다고 퇴원 후 에 휴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선임병이 믿는 종교를 후임병에게 함께 믿을 것을 요 구해도, 후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후임병 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29. 군인이 조금 아프다고 진료를 받는 것보다 참는 것이 군의 효율을 위해 더 나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0.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불온한 사상을 담은 서적이 군대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군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불온한 사상을 담은 서적이 군대에 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2. 군인이 조금 아프다고 진료를 받는 것보다 참는 것이 군의 효율을 위해 더 나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선임병이 믿는 종교를 후임병에게 함께 믿을 것을 요구해도, 후임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후임병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14. 휴가기간에 입원해 있어서 휴가를 못 갔다고 퇴원 후에 휴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연애편지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 위주의 군대 문화에서 재미로 하는 것이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 16.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목격했더라도, 신고하면 부대원 전체가 피곤해지므로 차라리 신고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17.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는 영장없이도 사무실, 숙소, 신체, 소지품 등에 대한 일정한 수색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8. 군 보안상 유해한 내용이 담긴 우편물은 미리 차단되어야 하므로, 개인에게 우송된 소포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없이도 뜯어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어떤 조직이든 상-하 지휘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신분에 따라 일정한 차별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0.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한 것은 경험부족과 전문성 부족에서 온 군의관의 개인적 문제이지 군대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초년병들에게는 사소한 지시사항을 어겼을지라도 군기강을 위해 군대내 영창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전쟁에 휴일이 없는데, 일과시간 이외에 작업을 시킨다고 휴식권 운운하는 것은 군기문란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3.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벌을 줄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다른 조직체와 달리, 군대 내에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서도 병사를 연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5. 동성애자는 잠재적 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강제전역을 시킬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상관이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경우에도 신고나 거부하기보다 따르는 것이 수월한 군대생활에 도움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7. 군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군기강을 위해서 체벌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과 제약이 있어야 군기가 유지되므로 이등병의 사적 업무를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군대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집단 전체에 단체로 벌을 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0. 군대에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반말이나 욕설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노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감각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 핫 팩 치료를 하다가 어르신이 피부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2. 고도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투병 중인 어르신이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실 때에는 음식 섭취에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3. 기저귀를 교체할 때에는 대화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치매 증상,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인으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생활에 방해를 받더라도,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함께 취침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5. 목욕하러 갈 때 침대에서 옷을 갈아입어서 벗은 몸을 보이게 되더라도, 같은 방에서 지내는 어르신들끼리라면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어르신들끼리 서로 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관계를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요양보호사를 때리거나 욕을 하는 어르신은 방에 가둔다거나 물리적 수단을 통해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어르신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도 보호자들이 바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9. 보호자나 어르신이 시설 사용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지 않더라도 종사자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입소시설에서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겨울에 내복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치매 노인의 잔존기능 향상을 위해서 텃밭 가꾸기와 같은 노동에 참여하게 할 때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2.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드리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3. 의사의 진단과 처방 외에도 어르신이 원하시면 약을 더 드릴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4.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특별식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5.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배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청소를 하더라도 동료노인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방이 쾌적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7. 나쁜 내용이 아니라면 어르신의 상담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것은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38.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할 때에는 종사자들이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9. 친밀감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놀리는 말을 해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40. 노인이 시설 사무실에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맡겼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특정 종교적 배경으로 설립된 시설에서는 모든 어르신들이 의무적으로 그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42. 근무상황에 따라 종사자가 와상 노인의 체위 변경 횟수를 줄여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43. 어르신들의 입맛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가급적 식사는 저염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4. 양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두 번만 해 드려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45. 같은 방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안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6. 기저귀를 갈아줄 때 커튼을 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커튼을 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7.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의 식사속도를 재촉하거나 식판을 뺏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르신들끼리의 사소한 문제이므로 모른 척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8. 어르신들의 사소한 요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9. 어르신들이 원할 경우에는 늦게까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0. 노인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때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식사메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조금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52.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단속을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3. 신상과 연락처가 기록된 팔찌나 목걸이 착용을 거부하는 치매노인에게는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4. 종사자들은 어르신들 사이에 종사자들 몰래 서로 괴롭히고 때리는 일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5. 시설에 있는 동안 자녀들이 어르신의 재산을 몰래 쓰고 시설비용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자녀들이 하는 일이므로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6. 노인 분들이 선거에 대해 잘 모르실 때 좋은 후보를 추천해 드리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7.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이라도 자녀들이 외부에서 구해 온 약을 노인에게 드리려고 하면 허용해 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8. 단체 식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식사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9. 텔레비전을 보고 싶지 않을 때에도 같은 방에 있는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에는 같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60. 노인 분들은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굳이 다른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노인 분들을 귀찮게 할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표> 노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노인 분들은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굳이 다른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노인 분들을 귀찮게 할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2. 텔레비전을 보고 싶지 않을 때에도 같은 방에 있는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에는 같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3. 단체 식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식사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이라도 자녀들이 외부에서 구해 온 약을 노인에게 드리려고 하면 허용해 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5. 노인 분들이 선거에 대해 잘 모르실 때 좋은 후보를 추천해 드리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시설에 있는 동안 자녀들이 어르신들의 재산을 몰래 쓰고 시설비용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자녀들이 하는 일이므로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종사자들은 어르신들 사이에 종사자들 몰래 서로 괴롭히고 때리는 일이 발생하는지의 여부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신상과 연락처가 기록된 팔찌나 목걸이 착용을 거부하는 치매노인에게서는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단속을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식사메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조금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노인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때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2. 어르신들이 원할 경우에는 늦게까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3. 어르신들의 사소한 요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4. 건강한 노인이 허약한 노인의 식사속도를 재촉하거나 식판을 뺀 일이 생기더라도 어르신들끼리의 사소한 문제이므로 모른 척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5. 기저귀를 갈아줄 때 커튼을 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커튼을 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6. 같은 방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안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7. 양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두 번만 해 드려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38. 어르신들의 입맛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가급적 식사는 저염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9. 근무상황에 따라 종사자가 외상 노인의 체위 변경 횟수를 줄여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40. 특정 종교적 배경으로 설립된 시설에서는 모든 어르신들이 의무적으로 그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노인이 시설 사무실에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을 맡겼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42. 친밀감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놀리는 말을 해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43.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할 때에는 종사자들이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44. 나쁜 내용이 아니라면 어르신의 상담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것은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45. 청소를 하더라도 동료노인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방이 쾌적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6.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배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7.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특별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8. 의사의 진단과 처방 외에도 어르신이 원하시면 약을 더 드릴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9.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드리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0. 치매 노인의 잔존기능 향상을 위해서 텃밭 가꾸기와 같은 노동에 참여하게 할 때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입소시설에서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겨울에 내복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2. 보호자나 어르신이 시설 사용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지 않더라도 종사자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3. 어르신들이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더라도 보호자들이 바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4. 요양보호사를 때리거나 욕을 하는 어르신은 방에 가둔다거나 물리적 수단을 통해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5. 어르신들끼리 서로 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관계를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6. 목욕하러 갈 때 침대에서 옷을 갈아입어서 벗은 몸을 보이게 되더라도, 같은 방에서 지내는 어르신들끼리라면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57. 치매 증상,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인으로 인해 다른 동료들이 생활에 방해를 받더라도,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함께 취침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8. 기저귀를 교체할 때에는 대화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9. 고도비만, 당뇨, 고혈압으로 투병 중인 어르신이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실 때에는 음식 섭취에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60. 감각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에게 핫 팩 치료를 하다가 어르신이 피부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표> 노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의사의 진단과 처방 외에도 어르신이 원하시면 약을 더 드릴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2.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특별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배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4. 나쁜 내용이 아니라면 어르신의 상담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것은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어르신들끼리 서로 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관계를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요양보호사를 때리거나 욕을 하는 어르신은 방에 가둔다거나 물리적 수단을 통해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단속을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18. 보호자나 어르신이 시설 사용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지 않더라도 종사자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19. 근무상황에 따라 종사자가 외상 노인의 체위 변경 횟수를 줄여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0.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식사메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조금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같은 방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안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2. 기저귀를 갈아줄 때 커튼을 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커튼을 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3.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할 때에는 종사자들이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친밀감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놀리는 말을 해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입소시설에서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겨울에 내복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6. 노인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때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7. 단체 식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식사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치매 노인의 잔존기능 향상을 위해서 텃밭 가꾸기와 같은 노동에 참여하게 할 때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드리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0. 노인 분들은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굳이 다른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노인 분들을 귀찮게 할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표> 노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노인 분들은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굳이 다른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노인 분들을 귀찮게 할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드리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치매 노인의 잔존기능 향상을 위해서 텃밭 가꾸기와 같은 노동에 참여하게 할 때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4. 단체 식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식사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5. 노인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때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입소시설에서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겨울에 내복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친밀감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놀리는 말을 해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18.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할 때에는 종사자들이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19. 기저귀를 갈아줄 때 커튼을 치는 것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커튼을 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0. 같은 방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방안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식사메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조금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22. 근무상황에 따라 종사자가 외상 노인의 체위 변경 횟수를 줄여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3. 보호자나 어르신이 시설 사용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지 않더라도 종사자들이 시설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단속을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요양보호사를 때리거나 욕을 하는 어르신은 방에 가둔다거나 물리적 수단을 통해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어르신들끼리 서로 놀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관계를 존중해 드리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7. 나쁜 내용이 아니라면 어르신의 상담 내용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것은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배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9.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에게는 특별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의사의 진단과 처방 외에도 어르신이 원하시면 약을 더 드릴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정신장애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 강제 퇴원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보호의무자가 재입원을 원하면 다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정실질환이 의심되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치료에 반대하면 환자의 입원이나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3. 병원 생활이 오래되었거나 생활을 잘하는 환자가 방장이 되어 다른 환자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일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단체 식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사시간이 다소 짧아지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5. 환자들이 장난을 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필요한 것이더라도 환자들의 안전과 물품 관리를 위해 구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6. 공공기관에서 요청할 때에는 시설에서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기록된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7. 관리의 편의를 위해 건의함과 진정함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8. 환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작업 치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0. 병원 생활이 오래되었거나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이미 병원생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굳이 병원 생활에 관련된 권리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단체생활에서는 일체감 형성과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소자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2. 입소 시설인 경우 정해진 취침 시간에라도 환자들이 원하면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3. 병원이나 시설 측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대선이나 총선 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4.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설립된 시설인 경우에 환자들의 종교적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5.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호자가 사설 이송 단체를 통해서라도 정신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중증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전문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7. 환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사가 환자를 내부 규정에 따라 강박을 시킬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8. 의료 급여 수가가 높지 않아서 일반 보험 환자와 저소득층 의료 급여 환자 사이에 급식을 다르게 제공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9. 치료진들의 견해에 따라 격리를 하는 동안이라면 격리실 내부의 위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0. 환자들이 자해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에도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환자가 시설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족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2.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동반 외출을 권장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3. 환자들이 작업을 하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임금 개념이라기보다 간식비 정도를 지급하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44. 정신질환을 가진 입원환자에게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5. 좋은 문화 프로그램이라면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6. 환자들이 선거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는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7. 환자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주다보면 시설 내의 동료 환자들 사이에 종교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8. 입원 형식이 자의입원이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 49. 보호자가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환자가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0.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 지시가 있기 전에 불가피하게 환자를 강박시킬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같은 방에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다른 환자들이 취침을 편하게 할 수 없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2. 남녀 환자 간에 호감이 생기고 이성에 대한 감정이 발전하는 경우에 보호자들이 반대하면 교제를 허용하지 않고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3. 환자들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 안에 굳이 공중전화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4. 환자들의 정기적인 수입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설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5. 공간이 넉넉지 않으면 환자들이 산책과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6. 보호자가 환자의 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보호의무자를 대신하여 입원동의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7. 시설 생활에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물리적 폭력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8. 환자들이 수시로 장난전화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9. 시군구에서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60.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응급실에서는 정신과 전공의의 진단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정신장애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정신과 전문의가 없는 응급실에서는 정신과 전공의의 진단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시군구에서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23. 환자들이 수시로 장난전화를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시설 생활에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물리적 폭력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5. 보호자가 환자의 입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보호의무자를 대신하여 입원동의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공간이 넉넉지 않으면 환자들이 산책과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7. 환자들의 정기적인 수입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설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환자들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 안에 굳이 공중전화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9. 남녀 환자 간에 호감이 생기고 이성에 대한 감정이 발전하는 경우에 보호자들이 반대하면 교제를 허용하지 않고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0. 같은 방에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다른 환자들이 취침을 편하게 할 수 없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 지시가 있기 전에 불가피하게 환자를 강박시킬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2. 보호자가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환자가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3. 입원 형식이 자의입원이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 34. 환자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주다보면 시설 내의 동료 환자들 사이에 종교적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5. 환자들이 선거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는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좋은 문화 프로그램이라면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7. 정신질환을 가진 입원환자에게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8. 환자들이 작업을 하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임금 개념이라기보다 간식비 정도를 지급하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39.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동반 외출을 권장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0. 환자가 시설 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족들과의 접촉을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환자들이 자해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에도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2. 치료진들의 견해에 따라 격리를 하는 동안이라면 격리실 내부의 위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3. 의료 급여 수가가 높지 않아서 일반 보험 환자와 저소득층 의료 급여 환자 사이에 급식을 다르게 제공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4. 환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사가 환자를 내부 규정에 따라 강박을 시킬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5.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중증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전문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6.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호자가 사설 이송 단체를 통해서라도 정신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7.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설립된 시설인 경우에 환자들의 종교적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8. 병원이나 시설 측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대선이나 총선 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9. 입소 시설인 경우 정해진 취침 시간이라도 환자들이 원하면 텔레비전 시청을 허용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0. 단체생활에서는 일체감 형성과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입소자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병원 생활이 오래되었거나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이미 병원생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굳이 병원 생활에 관련된 권리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2.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작업 치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3. 환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4. 관리의 편의를 위해 건의함과 진정함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5. 공공기관에서 요청할 때에는 시설에서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기록된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6. 환자들이 장난을 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필요한 것이더라도 환자들의 안전과 물품 관리를 위해 구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7. 단체 식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사시간이 다소 짧아지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8. 병원 생활이 오래되었거나 생활을 잘하는 환자가 방장이 되어 다른 환자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일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9. 정실질환이 의심되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치료에 반대하면 환자의 입원이나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60.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 강제 퇴원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보호의무자가 재입원을 원하면 다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정신장애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 강제 퇴원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보호의무자가 재입원을 원하면 다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정실질환이 의심되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치료에 반대하면 환자의 입원이나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3. 환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사가 환자를 내부 규정에 따라 강박을 시킬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4. 단체 식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사시간이 다소 짧아지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시군구에서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16. 공공기관에서 요청할 때에는 시설에서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기록된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7. 환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8. 관리의 편의를 위해 건의함과 진정함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작업 치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0. 병원 생활이 오래되었거나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이미 병원생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굳이 병원 생활에 관련된 권리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호자가 사설 이송 단체를 통해서라도 정신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중증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전문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3.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 지시가 있기 전에 불가피하게 환자를 강박시킬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의료 급여 수가가 높지 않아서 일반 보험 환자와 저소득층 의료 급여 환자 사이에 급식을 다르게 제공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환자들이 자해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에도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동반 외출을 권장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7. 같은 방에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다른 환자들이 취침을 편하게 할 수 없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입원 형식이 자의입원이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 29. 보호자가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환자가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0. 공간이 넉넉지 않으면 환자들이 산책과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정신장애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공간이 넉넉지 않으면 환자들이 산책과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2. 보호자가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환자가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입원 형식이 자의입원이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든 중요하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 14. 같은 방에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다른 환자들이 취침을 편하게 할 수 없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동반 외출을 권장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6. 환자들이 자해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에도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의료 급여 수가가 높지 않아서 일반 보험 환자와 저소득층 의료 급여 환자 사이에 급식을 다르게 제공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8.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적 지시가 있기 전에 불가피하게 환자를 강박시킬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중증 정신질환자 중심으로 전문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0. 정신질환이 의심되면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호자가 사설 이송 단체를 통해서라도 정신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병원 생활이 오래되었거나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이미 병원생활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굳이 병원 생활에 관련된 권리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작업 치료를 실시할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3. 관리의 편의를 위해 건의함과 진정함을 분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4. 환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5. 공공기관에서 요청할 때에는 시설에서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기록된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시군구에서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인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27. 단체 식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식사시간이 다소 짧아지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8. 환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사가 환자를 내부 규정에 따라 강박을 시킬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정실질환이 의심되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치료에 반대하면 환자의 입원이나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0. 계속입원치료심사 결과 강제 퇴원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보호의무자가 재입원을 원하면 다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시설 아동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단체 생활이므로 세 끼의 식단은 영양사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2. 간식은 아이들이 요구하더라도 아이들의 건강과 치아를 위해서 주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3.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단체생활에서는 아동들이 잠자는 시간을 지킬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아동이 싸울 경우 일정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시설의 재정이 부족하여 간호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시설의 아동이 급하게 아플 때는 시설 내에 있는 약으로 응급처치해야 아동의 고통을 멈출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아동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이나 약물오염에 대한 교육은 때때로 하는 것보다 꼭 외부 교육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이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28. 방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반장 같은 아동이 있어야 하고 생활지도사는 그 아동을 믿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9. 한 그룹의 아이들이 몰래 힘없는 아동을 소외시키더라도 바쁜 업무 속에서 이를 알아내기는 어려우므로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아동이 시설에 들어오는 시각은 꼭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아직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영유아의 욕구는 그 아동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사의 경험으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2. 상급학교의 진학은 아동의 의지보다는 성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생활보호사는 아동의 성적에 따라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3. 담당하는 그룹의 아동 수가 많으면 시간이나 노력의 제한이 따르므로 개별지도계획을 세우기보다 집단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서로 배울 것도 많고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4. 학습장애 아동이나 행동장애 아동은 생활지도사가 파악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조언을 해주면서 지도하면 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5. 아동의 학교 내의 동아리활동이나 특별활동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아이는 그냥 놔두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외부의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시설내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7. 한 방에 같이 생활하는 아동들은 서로 형제처럼 지내도록 다양한 연령들이 섞여 있어서 큰 형이 동생들의 생활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8. 많은 아동이 함께 생활하다보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밖에 나가서 문화생활을 하도록 하기보다 시설 내에서 영화를 보여 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9. 어린 아동들은 한 달에 주는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생활지도사가 관리해 주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40. 시설 내에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동들이 한꺼번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고 고장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시설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종교관련 행사나 집회는 시설을 세운 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2. 시설 내의 규칙은 아동의 생각보다 시설의 생활보호사와 부원장, 원장님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 정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3. 시설 내의 전화는 시설의 소유물이고 아동이 많아 모두가 사용하도록 하기가 어려우므로 받는 데만 사용하도록 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44. 특별한 보고와 지도가 필요한 아동의 선별과 처리를 위해 아동의 편지와 이메일은 생활보호사가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5. 아동은 후원자들이 와서 놀아주는 것을 좋아하므로 후원자가 오면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6. 후원회 사람들이 주는 용돈은 아동의 것이므로 용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아동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7. 아동은 개인 물품을 아직 스스로 살 수 없으므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생활지도원이 아동에게 어울리는 것을 의논해서 구입해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8. 생활지도사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신중히 상의한 뒤 숙소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9. 아동의 개인별 책상이 들어갈 장소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학교나 시설 내에 독서실을 마련해서 공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0.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아동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격리하고 생활보호사와 원장이 처리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성문제가 발생할 때는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조용히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2. 부모가 있는 아동이 시설에 들어올 경우 부모를 계속 찾도록 하면 정서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시설의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3.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을 주어 아동이 스스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4. 아동들은 자신의 사진이 포스터나 홈페이지에 실리는 것을 좋아하므로 최대한 많은 아동이 골고루 실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5. 봉사자나 후원인들이 아동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생활지도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56. 아동이 성적인 고민을 하는 것은 사춘기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생활지도사가 심각하게 다루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친밀감있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7. 생활지도사가 경험이 쌓이면,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입소할 때부터 얼굴을 보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8. 아동은 자기가 입소할 때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교육상 더 바람직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9. 시설의 운영이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아동의 판단이 아직 미숙하므로 원장과 생활지도사들의 토의로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60. 가끔 시설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동의 나쁜 습관을 고치주기 위해서는 문제를 덮지 말고 소지품검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시설 아동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가끔 시설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동의 나쁜 습관을 고치주기 위해서는 문제를 덮지 말고 소지품검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시설의 운영이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아동의 판단이 아직 미숙하므로 원장과 생활지도사들의 토의로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23. 아동은 자기가 입소할 때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교육상 더 바람직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생활지도사가 경험이 쌓이면,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입소할 때부터 얼굴을 보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아동이 성적인 고민을 하는 것은 사춘기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생활지도사가 심각하게 다루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친밀감있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6. 봉사자나 후원인들이 아동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생활지도사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아동들은 자신의 사진이 포스터나 홈페이지에 실리는 것을 좋아하므로 최대한 많은 아동이 골고루 실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8.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을 주어 아동이 스스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9. 부모가 있는 아동이 시설에 들어올 경우 부모를 계속 찾도록 하면 정서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시설의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성문제가 발생할 때는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조용히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아동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격리하고 생활보호사와 원장이 처리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2. 아동의 개인별 책상이 들어갈 장소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학교나 시설 내에 독서실을 마련해서 공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3. 생활지도사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신중히 상의한 뒤 숙소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4. 아동은 개인 물품을 아직 스스로 살 수 없으므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생활지도원이 아동에게 어울리는 것을 의논해서 구입해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5. 후원회 사람들이 주는 용돈은 아동의 것이므로 용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아동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아동은 후원자들이 와서 놀아주는 것을 좋아하므로 후원자가 오면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7. 특별한 보고와 지도가 필요한 아동의 선별과 처리를 위해 아동의 편지와 이메일은 생활보호사가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8. 시설 내의 전화는 시설의 소유물이고 아동이 많아 모두가 사용하도록 하기가 어려우므로 받는 데만 사용하도록 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39. 시설 내의 규칙은 아동의 생각보다 시설의 생활보호사와 부원장, 원장님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 정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0. 시설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종교관련 행사나 집회는 시설을 세운 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시설 내에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동들이 한꺼번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고 고장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2. 어린 아동들은 한 달에 주는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생활지도사가 관리해 주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43. 많은 아동이 함께 생활하다보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므로 밖에 나가서 문화생활을 하도록 하기보다 시설 내에서 영화를 보여 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4. 한 방에 같이 생활하는 아동들은 서로 형제처럼 지내도록 다양한 연령들이 섞여 있어서 큰 형이 동생들의 생활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5. 시설에 있는 아동에게 외부의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시설내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6. 아동의 학교 내의 동아리활동이나 특별활동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아이는 그냥 놔두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47. 학습장애 아동이나 행동장애 아동은 생활지도사가 파악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조언을 해주면서 지도하면 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8. 담당하는 그룹의 아동 수가 많으면 시간이나 노력의 제한이 따르므로 개별지도계획을 세우기보다 집단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서로 배울 것도 많고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9. 상급학교의 진학은 아동의 의지보다는 성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생활보호사는 아동의 성적에 따라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0. 아직 의사결정이 없는 영유아의 욕구는 그 아동을 담당하는 생활지도사의 경험으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아동이 시설에 들어오는 시각은 꼭 정해 놓을 필요가 있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52. 한 그룹의 아이들이 몰래 힘없는 아동을 소외시키더라도 바쁜 업무 속에서 이를 알아내기는 어려우므로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3. 방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반장 같은 아동이 있어야 하고 생활지도사는 그 아동을 믿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54. 아동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이나 약물오염에 대한 교육은 때때로 하는 것보다 꼭 외부 교육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이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55. 시설의 아동이 급하게 아플 때는 시설 내에 있는 약으로 응급처치해야 아동의 고통을 멈출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6. 시설의 재정이 부족하여 간호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7. 아동이 싸울 경우 일정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8.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자야하는 것은 단체생활이므로 아동들은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9. 간식은 아이들이 요구하더라도 아이들의 건강과 치아를 위해서 주지 않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60. 단체 생활이므로 세 끼의 식단은 영양사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시설 아동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단체 생활이므로 세 끼의 식단은 영양사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단체생활에서는 아동들이 잠자는 시간을 지킬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아동이 싸울 경우 일정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시설의 아동이 급하게 아플 때는 시설 내에 있는 약으로 응급처치해야 아동의 고통을 멈출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상급학교의 진학은 아동의 의지보다는 성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생활보호사는 아동의 성적에 따라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6. 학습장애 아동이나 행동장애 아동은 생활지도사가 파악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조언을 해주면서 지도하면 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시설 내의 전화는 시설의 소유물이고 아동이 많아 모두가 사용하도록 하기가 어려우므로 받는 데만 사용하도록 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18. 많은 아동이 함께 생활하므로 가끔 영화를 구경하거나, 밖에 나가서 구경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시설 내에서 영화를 보여 준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시설 내에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동들이 한꺼번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고 고장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0. 시설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종교관련 행사나 집회는 시설을 세운 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후원회 사람들이 주는 용돈은 아동의 것이므로 용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아동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아동은 개인 물품을 아직 스스로 살 수 없으므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생활지도원이 아동에게 어울리는 것을 의논해서 구입해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3. 생활지도사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신중히 상의한 뒤 숙소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아동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격리하고 생활보호사와 원장이 처리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성문제가 발생할 때는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조용히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6.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을 주어 아동이 스스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아동들은 자신의 사진이 포스터나 홈페이지에 실리는 것을 좋아하므로 최대한 많은 아동이 골고루 실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아동은 자기가 입소할 때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교육상 더 바람직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9. 가끔 시설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동의 나쁜 습관을 고치주기 위해서는 문제를 덮지 말고 소지품검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시설 내의 규칙은 아동의 생각보다 시설의 생활보호사와 부원장, 원장님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 정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시설 아동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시설 내의 규칙은 아동의 생각보다 시설의 생활보호사와 부원장, 원장님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 정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2. 가끔 시설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할 경우 아동의 나쁜 습관을 고치주기 위해서는 문제를 덮지 말고 소지품검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아동은 자기가 입소할 때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교육상 더 바람직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아동들은 자신의 사진이 포스터나 홈페이지에 실리는 것을 좋아하므로 최대한 많은 아동이 골고루 실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15.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정착금을 주어 아동이 스스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성문제가 발생할 때는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조용히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아동이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아동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격리하고 생활보호사와 원장이 처리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8. 생활지도사는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신중히 상의한 뒤 숙소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아동은 개인 물품을 아직 스스로 살 수 없으므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생활지도원이 아동에게 어울리는 것을 의논해서 구입해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0. 후원회 사람들이 주는 용돈은 아동의 것이므로 용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아동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시설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종교관련 행사나 집회는 시설을 세운 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시설 내에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동들이 한꺼번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고 고장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3. 많은 아동이 함께 생활하므로 가끔 영화를 구경하거나, 밖에 나가서 구경하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시설 내에서 영화를 보여 준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시설 내의 전화는 시설의 소유물이고 아동이 많아 모두가 사용하도록 하기가 어려우므로 받는 데만 사용하도록 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5. 학습장애 아동이나 행동장애 아동은 생활지도사가 파악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조언을 해주면서 지도하면 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상급학교의 진학은 아동의 의지보다는 성적에 따라 결정되므로 생활보호사는 아동의 성적에 따라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시설의 아동이 급하게 아플 때는 시설 내에 있는 약으로 응급처치해야 아동의 고통을 멈출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아동이 싸울 경우 일정한 체벌을 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단체생활에서는 아동들이 잠자는 시간을 지킬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0. 단체 생활이므로 세 끼의 식단은 영양사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규칙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흔히 보호의무자가 장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재활 프로그램에 지루하게 여기거나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해도 시설의 하루 일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3. 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고, 후원물품의 창고를 나르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이므로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시설에서의 삶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집단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상, 취침, 일괄 소등은 불가피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응급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전문의진단 없이도 긴급하게 폐쇄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신체장애와 더불어 정신장애가 의심되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치료에 반대하면 환자의 입원이나 치료는 이루어질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인력이 부족하다면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8. 보호자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환자가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시설생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 종사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활동하도록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장애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호사가 그 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강박해야 할 때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시설에 오는 후원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장애인들에게 꼭 입히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2.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조용히 지내는 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 33.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이동해야하므로 번거롭기도 하고, 나가기도 싫어하므로 대체로 방에서 같이 놀아주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34. 장애인들의 식사는 시설의 장애인들이 많으므로 식당에 받아서 식당에서 시간에 맞추어 먹어야 시간 절약도 되고 혼동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5. 시설 장애인에게 친밀함의 표시로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6. 같은 방에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취침을 편하게 할 수 없더라도 단체생활이므로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7.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장애인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설에서는 그 가족의 거주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8. 생활인이 배우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어서 장애인들의 요구를 더 조사할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9. 일부의 장애인들은 자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0. 남자 장애인이 성장하면 자신의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보호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적당한 여자 장애인을 소개시켜 주어 교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장애인들의 일부는 작업장에서 일하기를 좋아해서 일을 하지만, 돈의 관리는 담당보호사가 하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42. 장애인이 시설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기 위해 가족과의 접촉을 제한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3. 장애인의 언어활동이 능숙하지 못할 때는 표정으로 아픈지를 봐야하는데, 보호사가 못 볼 수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4. 보호사는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표정이나 행동으로 생활인이 아프면 시설에 있는 즉시 약을 주어 낫도록 도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5. 선거참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46. 선거를 할 때 듣거나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따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7. 장애인이 봉사자들에게 안기고 싶어 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기에 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8. 장애인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개인적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9. 특정 종교재단에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장애인이 예배 등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0. 시설에 봉사자가 왔을 경우 봉사자가 원할 경우 매번 생활인과 사진 촬영을 함께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시설에 후원자들이 방문하면 생활인들의 방을 방문하는 것은 일종의 ‘라운딩’은 방문 시 늘 이루어지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2.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하면 위험하므로 직원이 현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53. 신체장애인은 의복상태가 바르지 않는 경우 보호사가 의복상태 등이 바르지 않을 경우 체벌 등을 통해 버릇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4. 부모가 있는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인의 재활이나 활동에 요구를 할 때, 시군구에서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의 장애인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5. 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들에게 일어나는 남성장애인의 성적폭행으로 남성과 여성은 격리해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56.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맞추어주는 것이 어려워 지금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충분하며 더 만들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7. 때로 장애인들이 가족을 보고 싶어 하지만, 시설에서는 만나게 할 길이 없으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8. 장애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다보면 시설 내의 다른 생활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9.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한 점검보다 주어진 재활 프로그램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60.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돈은 보호사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돈은 보호사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한 점검보다 주어진 재활 프로그램 규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3. 장애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다보면 시설 내의 다른 장애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4. 때로 장애인들이 가족을 보고 싶어 하지만, 시설에서는 만나게 할 길이 없으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맞추어주는 것이 어려워 지금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충분하며 더 만들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들에게 일어나는 남성장애인의 성적폭행으로 남성과 여성은 격리해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27. 부모가 있는 장애인의 부모가 생활인의 재활이나 활동에 요구를 할 때, 시군구에서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의 장애인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신체장애인은 의복상태가 바르지 않는 경우, 보호사가 의복상태 등이 바르지 않을 경우 체벌 등을 통해 버릇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하면 위험하므로 직원이 현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시설에 후원자들이 방문하면 장애인들의 방을 방문하는 일종의 '라운딩'은 방문 시 늘 이루어지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시설에 봉사자가 왔을 경우 봉사자가 원할 경우 매번 생활인과 함께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2. 특정 종교재단에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장애인이 예배 등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3. 장애인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개인적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4. 장애인이 봉사자들에게 안기고 싶어 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기에 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5. 선거를 할 때 듣거나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따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선거참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37. 보호사는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표정이나 행동으로 생활인이 아프면 시설에 있는 약을 즉시 주어 낫도록 도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8. 장애인의 언어활동이 능숙하지 못할 때는 표정으로 아픈지를 봐야하는데, 너무 많은 장애인을 담당하므로 때로 보호사가 못 볼 수도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9. 장애인이 시설생활에 익숙해질 수 있기 위해 가족과의 접촉을 제한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0. 장애인들의 일부는 작업장에서 일하기를 좋아해서 일을 하지만, 돈의 관리는 담당보호사가 하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남자 장애인이 성장하면 자신의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보호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적당한 여자 장애인을 소개시켜 주어 교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2. 일부의 장애인들은 자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3. 생활인이 배우고 싶은 것은 우리 시설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어서 장애인들의 요구를 더 조사할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4.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생활인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설에서는 그 가족의 거주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5. 같은 방에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취침을 편하게 할 수 없더라도 단체생활이므로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6. 시설장애인에게 친밀함의 표시로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7. 장애인들의 식사는 시설의 장애인들이 많으므로 식판에 받아서 식당에서 시간에 맞추어 먹어야 시간 절약도 되고 혼동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8.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이동해야하므로 번거롭게 기도하고, 나가기도 싫어하므로 대체로 방에서 같이 놀아주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49.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조용히 지내는 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 50. 시설에 오는 후원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장애인들에게 꼭 입히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장애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호사가 그 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강박시킬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2. 시설생활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 종사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활동하도록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3. 보호자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환자가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4. 인력이 부족하다면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5. 신체장애와 더불어 정신장애가 의심되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치료에 반대하면 환자의 입원이나 치료는 이루어질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6. 응급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전문의진단 없이도 긴급하게 폐쇄병동에 입원시킬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7. 시설에서의 삶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사는 집단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상, 취침, 일괄 소등은 불가피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8. 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 않고, 후원물품의 창고를 나르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은 서로 돕는 것으로 괜찮다. | ① | ② | ③ | ④ |
| 59. 장애인이 하루 일과를 지루하게 여기거나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해도 시설의 하루 일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60. 흔히 보호의무자가 장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흔히 보호의무자가 장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신체장애와 더불어 정신장애가 의심되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치료에 반대하면 환자의 입원이나 치료는 이루어질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인력이 부족하다면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장애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호사가 그 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강박해야할 때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시설에 오는 후원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장애인들에게 꼭 입히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이동해야하므로 번거롭기도 하고, 나가기도 싫어하므로 대체로 방에서 같이 놀아주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시설장애인에게 친밀함의 표시로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8. 같은 방에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취침을 편하게 할 수 없더라도 단체생활이므로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장애인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설에서는 그 가족의 거주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0. 남자 장애인이 성장하면 자신의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보호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적당한 여자 장애인을 소개시켜 주어 교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보호사는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표정이나 행동으로 생활인이 아프면 시설에 있는 약을 주어 낫도록 도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선거참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23. 특정 종교재단에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장애인이 예배 등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시설에 후원자들이 방문하면 생활인들의 방을 방문하는 것은 일종의 ‘라운딩’은 방문 시 늘 이루어지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신체장애인은 의복상태가 바르지 않는 경우 보호사가 의복상태 등이 바르지 않을 경우 체벌 등을 통해 버릇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부모가 있는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인의 재활이나 활동에 요구를 할 때, 시군구에서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의 장애인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맞추어주는 것이 어려워 지금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충분하며 더 만들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8. 때로 장애인들이 가족을 보고 싶어 하지만, 시설에서는 만나게 할 길이 없으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장애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다보면 시설 내의 다른 생활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돈은 보호사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장애인들의 개인적인 돈은 보호사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장애인들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다보면 시설 내의 다른 생활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13. 때로 장애인들이 가족을 보고 싶어 하지만, 시설에서는 만나게 할 길이 없으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 맞추어주는 것이 어려워 지금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충분하며 더 많은 필요는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5. 부모가 있는 장애인의 부모가 장애인의 재활이나 활동에 요구를 할 때, 시군구에서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의 장애인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신체장애인은 의복상태가 바르지 않는 경우 보호사가 의복상태 등이 바르지 않을 경우 체벌 등을 통해 버릇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시설에 후원자들이 방문하면 생활인들의 방을 방문하는 것은 일종의 ‘라운딩’은 방문 시 늘 이루어지는 일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8. 특정 종교재단에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장애인이 예배 등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선거참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20. 보호사는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표정이나 행동으로 생활인이 아프면 시설에 있는 약을 주어 낫도록 도와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남자 장애인이 성장하면 자신의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보호사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므로 적당한 여자 장애인을 소개시켜 주어 교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애인들의 가족들이 장애인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설에서는 그 가족의 거주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3. 같은 방에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취침을 편하게 할 수 없더라도 단체생활이므로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시설장애인에게 친밀함의 표시로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장애인들은 휠체어로 이동해야하므로 번거롭기도 하고, 나가기도 싫어하므로 대체로 방에서 같이 놀아주는 것이 더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시설에 오는 후원 기업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장애인들에게 꼭 입히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장애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호사가 그 장애인에게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강박해야할 때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인력이 부족하다면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신체장애와 더불어 정신장애가 의심되더라도 보호자인 가족이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치료에 반대하면 환자의 입원이나 치료는 이루어질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0. 흔히 보호의무자가 장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경찰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며칠 동안의 대치상황에서 무기가 없는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경찰관들의 심경이 이해가 간다. | ① | ② | ③ | ④ |
| 22.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3. 폭력사건 피의자에게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심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불법 집회 참석과 이로 인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집회 장소 방향으로 가는 모든 통행인들을 불심검문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아무런 설명없이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했지만 차후에 임의동행 확인서를 받고 귀가조치를 취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직장에 알려지더라도 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찾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유치장 내의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해를 한 피의자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혐의가 다분한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문 과정에서 욕설이나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추가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담당검사실을 찾아 온 사람의 과거 행실로 보아 소란을 피울 것으로 보이면 질서유지를 위해 강제로 출입을 제지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아직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2.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범죄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연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3. 범죄현장에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즉시 피해자의 동의를 없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것은 수사의 정확성을 위해 용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4. 심각한 병을 앓는 피의자라도 범죄사실을 조속히 밝혀내 2차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당분간 치료 행위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5. 유치장에서 큰 소란을 피워 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경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연행자들이라면 수갑과 포승으로 잠시 묶어둘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6. 많은 업무와 많은 대기자들 때문에 유치장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원하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시일을 놓쳐 구치소로 옮겨가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7. 사건의 경위가 충분히 파악되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질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8. 검문하기 전에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과정은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9. 조사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이를 동행한 채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용인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0. 긴급한 사안이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압수수색영장만으로 피의자 동의가 없이도 채혈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1. 긴급한 경우 응급환자라도 가해자로 연행이 되었다면 짧게나마 수사를 마무리 지은 후 의료조치를 하는 것이 사건의 확실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2. 긴급체포된 사건혐의자가 미제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오래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제사건에 대한 자백을 재차 요구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3.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으나, 사안이 심각하며 처리가 긴급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4. 부부간 폭력 사건은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 화해의 여지가 충분하므로 별도의 입건절차 없이 가급적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5. 수사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직장인인 참고인의 사무실에 장시간 머물며 임의동행을 종용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6. 탐문 중에 피의자의 행적과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피의자의 주변인들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7. 체포 시 피의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작은 상처가 생기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8. 수사 과정 상 미성년자라도 보호자 없이 수사를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9.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욕을 하는 경찰보다는 경찰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잘못이 더 크다. | ① | ② | ③ | ④ |
| 50. 긴급한 상황일 때는 압수수색 영장없이도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성폭행을 한 피의자의 진술조서가 유출되어 기사화된다고 해도 피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2. 상급자가 욕이 섞인 말을 하고, 신체적 벌을 가하는 일이 있지만 경찰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3.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도 수사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 보호자의 동석없이도 대질심문 등 수사에 협조받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4. 피의자의 자백을 얻거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 동의없이 심문 중에 피의자와의 대화를 영상녹화하는 것은 사건해결에 있어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5. 중요한 사안이 아닐 경우 폭행혐의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건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수사의 진행을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6. 재할 프로그램에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수사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7. 타국에서 고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연행 되었을 때에는 언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 한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8. 분실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의 진술에서 거짓이 보이면 보다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알몸수색을 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9. 경찰관도 인간이므로 죄질이 나쁜 살인사건 혐의자에게 욕설을 할 수 있으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용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60. 소재가 불분명한 피내사자의 죄질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죄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지명수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경찰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소재가 불분명한 피내사자의 죄질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죄를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지명수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2. 경찰관도 인간이므로 죄질이 나쁜 살인사건 혐의자에게 욕설을 할 수 있으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용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3. 분실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의 진술에서 거짓이 보이면 보다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알몸수색을 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타국에서 고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연행 되었을 때에는 언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 한 국민과 같은 대우를 해주지 못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법원의 허가없이 한 사람의 동의만으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수사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중요한 사안이 아닐 경우 폭행혐의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건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수사의 진행을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7. 피의자의 자백을 얻거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 동의없이 심문 중에 피의자와의 대화를 영상녹화하는 것은 사건해결에 있어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도 수사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 보호자의 동석없이도 대질심문 등 수사에 협조받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9. 상급자가 욕이 섞인 말을 하고, 신체적 벌을 가하는 일이 있지만 경찰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성폭행을 한 피의자의 진술조서가 유출되어 기사화된다고 해도 피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1. 긴급한 상황일 때는 압수수색 영장없이도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2.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욕을 하는 경찰보다는 경찰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잘못이 더 크다. | ① | ② | ③ | ④ |
| 33. 수사 과정 상 미성년자라도 보호자 없이 수사를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4. 체포 시 피의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작은 상처가 생기는 상황은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35. 탐문 중에 피의자의 행적과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피의자의 주변인들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수사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직장인인 참고인의 사무실에 장시간 머물며 임의동행을 중용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7. 부부간 폭력 사건은 감정적인 측면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 화해의 여지가 충분하므로 별도의 입건절차 없이 가급적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8.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으나, 사안이 심각하며 처리가 긴급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9. 긴급체포된 사건혐의자가 미제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오래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제사건에 대한 자백을 재차 요구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0. 긴급한 경우 응급환자라도 가해자로 연행이 되었다면 짧게나마 수사를 마무리 지은 후 의료조치를 하는 것이 사건의 확실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1. 긴급한 사안이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압수수색영장만으로 피의자 동의가 없이도 체혈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2. 조사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이를 동행한 채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용인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3. 검문하기 전에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과정은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4. 사건의 경위가 충분히 파악되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질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45. 많은 업무와 많은 대기자들 때문에 유치장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원하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시일을 놓쳐 구치소로 옮겨가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6. 유치장에서 큰 소란을 피워 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경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연행자들이라면 수갑과 포승으로 잠시 묶어둘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7. 심각한 병을 앓는 피의자라도 범죄사실을 조속히 밝혀내 2차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당분간 치료 행위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8. 범죄현장에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즉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것은 수사의 정확성을 위해 용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9.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범죄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연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0.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아직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1.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2. 추가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담당검사실을 찾아 온 사람의 과거 행실로 보아 소란을 피울 것으로 보이면 질서유지를 위해 강제로 출입을 제지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3. 혐의가 다분한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문 과정에서 욕설이나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4. 유치장 내의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해를 한 피의자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5.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직장에 알려지더라도 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찾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56. 아무런 설명없이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했지만 차후에 임의동행 확인서를 받고 귀가조치를 취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7. 불법 집회 참석과 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집회 장소 방향으로 가는 모든 통행인들을 불심검문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8. 폭력사건 피의자에게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심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9.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60. 며칠 동안의 대치상황에서 무기가 없는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경찰관들의 심경이 이해가 간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경찰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며칠 동안의 대치상황에서 무기가 없는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경찰관들의 심경이 이해가 간다. | ① | ② | ③ | ④ |
| 12.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3. 폭력사건 피의자에게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심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4. 불법 집회 참석과 이로 인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집회 장소 방향으로 가는 모든 통행인들을 불심검문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아무런 설명없이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했지만 차후에 임의동행 확인서를 받고 귀가조치를 취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직장에 알려지더라도 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찾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유치장 내의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해를 한 피의자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8. 혐의가 다분한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문 과정에서 욕설이나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추가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담당검사실을 찾아온 사람의 과거 행실로 보아 소란을 피울 것으로 보이면 질서유지를 위해 강제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0.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1.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아직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2.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범죄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연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3. 범죄현장에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즉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것은 수사의 정확성을 위해 용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4. 심각한 병을 앓는 피의자라도 범죄사실을 조속히 밝혀내 2차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당분간 치료 행위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유치장에서 큰 소란을 피워 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경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연행자들이라면 수갑과 포승으로 잠시 묶어둘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많은 업무와 많은 대기자들 때문에 유치장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원하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시일을 놓쳐 구치소로 옮겨가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사건의 경위가 충분히 파악되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질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8. 검문하기 전에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과정은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조사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이를 동행한 채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용인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0. 긴급한 사안이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압수수색영장만으로 피의자 동의가 없이도 채혈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경찰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긴급한 사안이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압수수색영장만으로 피의자 동의가 없이도 채혈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조사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이를 동행한 채 피의자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용인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3. 검문하기 전에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과정은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사건의 경위가 충분히 파악되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피해자와의 대질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합의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5. 많은 업무와 많은 대기자들 때문에 유치장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원하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시일을 놓쳐 구치소로 옮겨가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유치장에서 큰 소란을 피워 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경찰과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연행자들이라면 수갑과 포승으로 잠시 묶어둘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심각한 병을 앓는 피의자라도 범죄사실을 조속히 밝혀내 2차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당분간 치료 행위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8. 범죄현장에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한 즉시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것은 수사의 정확성을 위해 용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9.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범죄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연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0.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아직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1.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추가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담당검사실을 찾아온 사람의 과거 행실로 보아 소란을 피울 것으로 보이면 질서유지를 위해 강제로 출입을 제지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3. 혐의가 다분한 피의자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문 과정에서 욕설이나 약간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유치장 내의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해를 한 피의자에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직장에 알려지더라도 보다 확실하게 증거를 찾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아무런 설명없이 거동수상자를 임의동행 했지만 차후에 임의동행 확인서를 받고 귀가조치를 취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7. 불법 집회 참석과 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집회 장소 방향으로 가는 모든 통행인들을 불심검문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폭력사건 피의자에게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심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0. 며칠 동안의 대치상황에서 무기가 없는 시위자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경찰관들의 심경이 이해가 간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교정공무원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다른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게 위협적이고 태도가 좋지 않은 수용자는 포승을 하여 독거실에 잠깐 동안 격리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2. 많은 수용자들을 관리하기에는 교정공무원의 수가 부족하므로 작업 중 수용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 대해 교정공무원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3. 몸 상태가 좋지 못한 수용자에게 약처방을 하고 피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후에 정밀진단에서 큰 병으로 진단이 나온 경우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4. 교정공무원도 휴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이나 접견을 위해 휴무일에도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5.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해 수용자들이 병이 걸리는 것은 교정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교도소의 다른 많은 문제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수용자 이름표에 표기된 개인정보를 수용자끼리 서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본다고 해도 교도소 안에서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7. 행실이 좋지 못한 수용자가 말을 잘 듣는 수용자와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8. 평소에 다른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했던 수용자가 무기를 손에 쥐고 몇 명의 인력으로는 상대하기 힘들만큼 지나친 난동을 피운다면 총기사용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9. 철저히하게 규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규정상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게 된 수용자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주말 동안은 수용자가 몸이 아파도 교도소 내의 여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별다른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31. 서로 관련이 없는 수용자들이라도 서신교환은 잠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허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2.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들이 입실하면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지은 대가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3.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전염병을 가진 수용자의 신변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교도소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4.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로 들어온 수용자에게 쾌적한 시설보다는 최소한의 설비만 갖춰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35. 일석점호 시 한 명의 수용자의 잘못으로 감방 전체 인원에게 간단한 기합을 주는 것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업무상의 실수로 잘못된 약을 처방하여 수용자의 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용자 수 대비 관리자의 수를 증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7.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 수용자라도 교도소의 여러 가지 사정과 진료를 기다리는 수용자들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8.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구제제도 및 정보공개신청은 구치소의 여러 가지 사정상 들어주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9. 교도소 내에 빗자루, 쓰레받기, 휴지통, 바늘, 실, 거울 등의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부족하더라도 죄를 짓고 들어온 수용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0. 검신할 때 흉기를 숨기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 위험해 보이는 수용자는 그 자리에서 알몸검신을 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옳은 판단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1. 부친상을 당한 수용자를 장례식에 참석시키는 것은 인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석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2. 작업을 마친 수용자가 작업장에 있던 작은 물건이라도 들고 나간다면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교정공무원이나 다른 수용자를 위해서도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3.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는 뜻으로 자해를 한 수용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여기저기서 자해소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편이 질서유지를 위해 더 좋을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4.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실수로 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용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5.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칸막이가 없는 곳에서 수용자의 항문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경우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6. 영치금품을 돌려줄 때는 확인차원에서 수령자의 날인을 받을 때 아무래도 서명보다는 손도장이 더 확실한 날인방법이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47. 수용자에게 “갱생”, “성실”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것은 교도소 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절차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8.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치료를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9. 공휴일에 목욕을 못하게 하는 것과 목욕 일에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수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0. 교도소에서는 제한된 인원으로 수용자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수용자들의 돌발 행동과 위험 행동 예방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1. 노역장 유치자는 죄질이 낮고 위험성도 낮지만 시설 내에 머무는 한 전화사용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2. 수용자가 교정관의 몸에 살짝이라도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손을 못 대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3. ‘가족만남의 집’ 이용은 평소 태도가 좋지 않은 수용자 보다는 태도가 좋은 수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4. 입소 시에 흥기를 숨기고 들어올 수 있으므로 알몸검사를 할 때의 수형자의 수치심보다는 시설 내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5. 수용자간의 폭행조사는 증인확보와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후속조치만 제대로 된다면 용인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6. 외국어 공부를 하기 원하는 수용자를 위해 기기 반입을 허용하면 그것으로 다른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하는 것도 교도소 내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7.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수용자가 집필신청을 했을 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8. 수용자 가족들이 수용자 개인의 정보를 보고자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9. 변호사와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60. 교정 시설 내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검열을 하거나 신문기사 일부분을 삭제하여 수용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교정공무원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교정 시설 내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검열을 하거나 신문기사 일부분을 삭제하여 수용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2. 변호사와의 접견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3. 수용자 가족들이 수용자 개인의 정보를 보고자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수용자가 집필신청을 했을 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외국어 공부를 하기 원하는 수용자를 위해 기기 반입을 허용하면 그것으로 다른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하는 것도 교도소 내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수용자간의 폭행조사는 증인 확보와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후속조치만 제대로 된다면 용인될 수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입소 시에 흥기를 숨기고 들어올 수 있으므로 알몸검사를 할 때의 수형자의 수치심보다는 시설 내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8. ‘가족만남의 집’ 이용은 평소 태도가 좋지 않은 수용자 보다는 태도가 좋은 수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수용자가 교정관의 몸에 살짝이라도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손을 못 대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0. 노역장 유치자는 죄질이 낮고 위험성도 낮지만 시설 내에 머무는 한 전화사용 등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1. 교도소에서는 제한된 인원으로 수용자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수용자들의 돌발 행동과 위험 행동 예방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 32. 공휴일에 목욕을 못하게 하는 것과 목욕 일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수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3.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치료를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4. 수용자에게 “갱생”, “성실”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는 것은 교도소 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절차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5. 영치금품을 돌려줄 때는 확인차원에서 수령자의 날인을 받을 때 아무래도 서명보다는 손도장이 더 확실한 날인방법이 낫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칸막이가 없는 곳에서 수용자의 항문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경우도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7. 많은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실수로 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등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용인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8.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는 뜻으로 자해를 한 수용자의 요구를 들어주면 여기저기서 자해소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도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편이 질서유지를 위해 더 좋을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9. 작업을 마친 수용자가 작업장에 있던 작은 물건이라도 들고 나간다면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교정공무원이나 다른 수용자를 위해서도 좋다. | ① | ② | ③ | ④ |
| 40. 부친상을 당한 수용자를 장례식에 참석시키는 것은 인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석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1. 검신할 때 흥기를 숨기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 위험해 보이는 수용자는 그 자리에서 알몸검신을 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옳은 판단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2. 교도소 내에 빗자루, 쓰레받기, 휴지통, 마늘, 실, 거울 등의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부족하더라도 죄를 짓고 들어온 수용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3.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구제시도 및 정보공개신청은 구치소의 여러 가지 사정상 들어주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4.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 수용자라도 교도소의 여러 가지 사정과 진료를 기다리는 수용자들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5. 업무상의 실수로 잘못된 약을 처방하여 수용자의 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용자 수 대비 관리자의 수를 증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6. 일석점호 시 한 명의 수용자의 잘못으로 감방 전체 인원에게 간단한 기합을 주는 것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7.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로 들어온 수용자에게 쾌적한 시설보다는 최소한의 설비만 갖춰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8.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전염병을 가진 수용자의 신변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교도소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9.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들이 입실하면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지은 대가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0. 서로 관련이 없는 수용자들이라도 서신교환은 잠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허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1. 주말 동안은 수용자가 몸이 아파도 교도소 내의 여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별다른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52. 철저히 규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규정상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게 된 수용자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3. 평소에 다른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했던 수용자가 무기를 손에 쥐고 몇 명의 인력으로는 상대하기 힘들만큼 지나친 난동을 피운다면 총기사용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4. 행실이 좋지 못한 수용자가 말을 잘 듣는 수용자와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5. 수용자 이름표에 표기된 개인정보를 수용자끼리 서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본다고 해도 교도소 안에서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6.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해 수용자들이 병이 걸리는 것은 교정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교도소의 다른 많은 문제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7. 교정공무원도 휴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이나 접견을 위해 휴무일에도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8. 몸 상태가 좋지 못한 수용자에게 약처방을 하고 피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후에 정밀진단에서 큰 병으로 진단이 나온 경우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9. 많은 수용자들을 관리하기에는 교정공무원의 수가 부족하므로 작업 중 수용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 대해 교정공무원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60. 다른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게 위협적이고 태도가 좋지 않은 수용자는 포승을 하여 독거실에 잠깐 동안 격리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교정공무원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다른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게 위협적이고 태도가 좋지 않은 수용자는 포승을 하여 독거실에 잠깐 동안 격리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2. 많은 수용자들을 관리하기에는 교정공무원의 수가 부족하므로 작업 중 수용자가 상해를 입은 사태에 대해 교정공무원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3. 몸 상태가 좋지 못한 수용자에게 약처방을 하고 피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후에 정밀진단에서 큰 병으로 진단이 나온 경우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4. 교정공무원도 휴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이나 접견을 위해 휴무일에도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5.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해 수용자들이 병이 걸리는 것은 교정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교도소의 다른 많은 문제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수용자 이름표에 표기된 개인정보를 수용자끼리 서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본다고 해도 교도소 안에서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7. 행실이 좋지 못한 수용자가 말을 잘 듣는 수용자와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8. 평소에 다른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했던 수용자가 무기를 손에 쥐고 몇 명의 인력으로는 상대하기 힘들만큼 지나친 난동을 피운다면 총기사용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철저히 규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규정상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게 된 수용자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0. 주말 동안은 수용자가 몸이 아파도 교도소 내의 여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별다른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1. 서로 관련이 없는 수용자들이라도 서신교환은 잠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허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들이 입실하면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지은 대가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3.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전염병을 가진 수용자의 신변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교도소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로 들어온 수용자에게 쾌적한 시설보다는 최소한의 설비만 갖춰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5. 일석점호 시 한 명의 수용자의 잘못으로 감방 전체 인원에게 간단한 기합을 주는 것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업무상의 실수로 잘못된 약을 처방하여 수용자의 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용자 수 대비 관리자의 수를 증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 수용자라도 교도소의 여러 가지 사정과 진료를 기다리는 수용자들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구제시도 및 정보공개신청은 구치소의 여러 가지 사정상 들어주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교도소 내에 빗자루, 쓰레받기, 휴지통, 바늘, 실, 거울 등의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부족하더라도 죄를 짓고 들어온 수용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0. 검신할 때 흉기를 숨기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 위험해 보이는 수용자는 그 자리에서 알몸검신을 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옳은 판단이다. | ① | ② | ③ | ④ |

<표> 교정공무원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검신할 때 흥기를 숨기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 위험해 보이는 수용자는 그 자리에서 알몸검신을 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옳은 판단이다. | ① | ② | ③ | ④ |
| 12. 교도소 내에 빗자루, 쓰레받기, 휴지통, 바늘, 실, 거울 등의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부족하더라도 죄를 짓고 들어온 수용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3.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구제시도 및 정보 공개신청은 구치소의 여러 가지 사정상 들어주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 수용자라도 교도소의 여러 가지 사정과 진료를 기다리는 수용자들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업무상의 실수로 잘못된 약을 처방하여 수용자의 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용자 수 대비 관리자의 수를 증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일석점호 시 한 명의 수용자의 잘못으로 감방 전체 인원에게 간단한 기합을 주는 것은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로 들어온 수용자에게 쾌적한 시설보다는 최소한의 설비만 갖춰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8.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전염병을 가진 수용자의 신변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교도소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들이 입실하면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지은 대가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0. 서로 관련이 없는 수용자들이라도 서신교환은 잠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허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1. 주말 동안은 수용자가 몸이 아파도 교도소 내의 여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별다른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2. 철저히 규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규정상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게 된 수용자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3. 평소에 다른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했던 수용자가 무기를 손에 쥐고 몇 명의 인력으로는 상대하기 힘들만큼 지나친 난동을 피운다면 총기사용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4. 행실이 좋지 못한 수용자가 말을 잘 듣는 수용자와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5. 수용자 이름표에 표기된 개인정보를 수용자끼리 서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본다고 해도 교도소 안에서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6.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해 수용자들이 병이 걸리는 것은 교정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교도소의 다른 많은 문제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7. 교정공무원도 휴식이 필요한 사람인데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이나 접견을 위해 휴무일에도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8. 몸 상태가 좋지 못한 수용자에게 약처방을 하고 피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후에 정밀진단에서 큰 병으로 진단이 나온 경우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이다. | ① | ② | ③ | ④ |
| 29. 많은 수용자들을 관리하기에는 교정공무원의 수가 부족하므로 작업 중 수용자가 상해를 입은 사태에 대해 교정공무원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0. 다른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에게 위협적이고 태도가 좋지 않은 수용자는 포승을 하여 독거실에 잠깐 동안 격리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문항(완성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약간의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범죄예방을 위해 골목길에 폐쇄회로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2.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에게 전보 발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3. 경찰의 업무 성격을 생각해 보면, 경찰 채용 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육아휴직 시에는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여성은 남성보다 외모가 주는 영향이 크므로, 산재보험 등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위등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업무의 성격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벌이 아니라 대체복무 등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신속한 출입국을 위해 자동출입시스템에서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상사는 업무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하직원을 타부서로 전보 발령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채용 응시자의 전과여부는 채용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을 당했을 때,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기간은 사회봉사 이행 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32. 장애인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므로 보험가입에 제약을 둘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3.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평정 시, 여성을 어느 정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4.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5.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 본인의 동의없이 입영신청을 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36.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7. 특정대학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대학 출신이 대다수 채용되는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8.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행, 재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합리적인 처우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9. 교도소 수용기간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산정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0.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의 적용 예외 사유에 임신과 출산을 명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용역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녹음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2. 동료가 싫어하거나 동료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을 현 부서에서 타 부서로 발령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3. 공무원 채용 시, 신체 검사서에 ‘간염검사’ 및 ‘간염 예방접종 필요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4.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급여 등의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장변경신청을 요구할 경우, 사업장 변경신청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45. 혼인여부(이혼, 사별포함)에 따라 공무원복지 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6.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47. 탈북자들이 여권을 발급받는데 일반 국민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은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탈북자들의 신분 특성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8. 일이 많고, 어려운 주무 부서에 여성보다는 남성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49. 게재된 공고내용과 달리, 신입사원 채용 전형 기준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그 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0.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소의 부당 대우를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2. 남성도 성폭력 범죄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3. 서류전형에서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취업보호 대상자들에게 가점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기관 혹은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54.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급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5.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6.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대상에 ‘출가한 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7. 공무원 채용 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나이가 적거나 많은 사람을 뽑지 않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8. 외주화가 가능하고, 주된 업무가 서비스인 경우라면 여성만을 고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9.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공무원 채용 시 적격함지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60.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업무의 성격, 비중 등이 틀리므로 정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문항(완성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탈북자들이 여권을 발급받는데 일반 국민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은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탈북자들의 신분 특성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2.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대상에 ‘출가한 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3.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업무의 성격, 비중 등이 틀리므로 정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공무원 채용 시 적격판지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일이 많고, 어려운 주무 부서에 여성보다는 남성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27.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 본인의 동의없이 입영신청을 해도 된다. | ① | ② | ③ | ④ |
| 28.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용역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녹음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남성도 성폭력 범죄대상이 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0. 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31. 외주화가 가능하고, 주된 업무가 서비스인 경우라면 여성만을 고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2. 공무원 채용 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나이가 적거나 많은 사람을 뽑지 않을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3. 동료가 싫어하거나 동료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을 현 부서에서 타 부서로 발령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4. 신속한 출입국을 위해 자동출입시스템에서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5.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6.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37. 혼인여부(이혼, 사별포함)에 따라 공무원복지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8.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급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39. 서류전형에서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들에게 가점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기관 혹은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40.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41. 약간의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범죄예방을 위해 골목길에 폐쇄회로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2.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벌이 아니라 대체복무 등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3.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의 적용 예외 사유에 임신과 출산을 명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4. 교도소 수용기간도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산정될 필요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5.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소의 부당대우를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6. 게재된 공고내용과 달리, 신입사원 채용 전형기준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그 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7. 상사는 업무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하직원을 타부서로 전보 발령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48.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평정 시, 여성을 어느 정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49. 장애인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므로 보험가입에 제약을 둘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0.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중, 급여 등의 계약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장변경신청을 요구할 경우, 사업장 변경신청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51. 공무원 채용 시, 신체 검사서에 ‘간염검사’ 및 ‘간염 예방접종 필요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52.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에게 전보 발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3. 업무의 성격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4. 여성은 남성보다 외모가 주는 영향이 크므로, 산재 보험 등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상위등급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① | ② | ③ | ④ |
| 55.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행, 재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합리적인 처우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6. 특정대학을 선호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대학 출신이 대다수 채용되는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7.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을 당했을 때,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기간은 사회봉사 이행 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58. 채용 응시자의 전과여부는 채용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59. 육아휴직 시에는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60. 경찰의 업무 성격을 생각해 보면, 경찰 채용 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문항(간편형 사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약간의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범죄예방을 위해 골목길에 폐쇄회로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2.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에게 전보 발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3. 채용 응시자의 전과여부는 채용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육아휴직 시에는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장애인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므로 보험가입에 제약을 둘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업무의 성격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벌이 아니라 대체복무 등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8. 신속한 출입국을 위해 자동출입시스템에서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9.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0. 게재된 공고내용과 달리, 신입사원 채용 전형기준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그 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을 당했을 때,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기간은 사회봉사 이행 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22. 혼인여부(이혼, 사별포함)에 따라 공무원복지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3.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평정 시, 여성을 어느 정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일이 많고, 어려운 주무 부서에 여성보다는 남성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서류전형에서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들에게 가점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기관 혹은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행, 재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합리적인 처우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8.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30.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용역 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녹음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문항(간편형 사후 검사)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11.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용역 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녹음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2.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13.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4.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행, 재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합리적인 처우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15. 서류전형에서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들에게 가점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기관 혹은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16. 일이 많고, 어려운 주무 부서에 여성보다는 남성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17. 신속한 출입국을 위해 자동출입시스템에서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8.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19.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평정 시, 여성을 어느 정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0. 혼인여부(이혼, 사별포함)에 따라 공무원복지제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문항 | ① 강한 반대 | ② 약한 반대 | ③ 약한 찬성 | ④ 강한 찬성 |
|--|---------------|---------------|---------------|---------------|
| 21.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을 당했을 때,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기간은 사회봉사 이행 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22. 게재된 공고내용과 달리, 신입사원 채용 전형기준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그 기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3.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4. 약간의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범죄예방을 위해 골목길에 폐쇄회로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5.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벌이 아니라 대체복무 등 다른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6. 업무의 성격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27. 장애인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비장애인보다 높으므로 보험가입에 제약을 둘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 28. 육아휴직 시에는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 29. 채용 응시자의 전과여부는 채용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 30.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에게 전보 발령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부록 7] 각 분야별(6개) 피교육자 사전, 사후 평가 평균, 변화 유형

<표> 노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1

| 피교육자 | 일반 인권 주제 | | 노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 | | | | | | |
|------|----------|-------|------------------|-------|-------------|-------|-------------|-------|------------------|-------|--------|-------|------------------|------|------------------|-------|
| | | | 보건의료 서비스 | | 영양 및 급식 서비스 | | 위생 및 청결 서비스 | |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 | | 사생활 보호 | | 동료 노인들에게 존중받을 권리 | | 신체적, 언어적, 재정적 확대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1 | -0.60 | 0.50 | -0.50 | -0.75 | 0.00 | 0.50 | -0.75 | 1.00 | -0.33 | 0.33 | -0.33 | 0.33 | 0.00 | 0.00 | 0.33 | 0.33 |
| 2 | 0.30 | -0.60 | -1.25 | 0.50 | 0.75 | 1.00 | 0.75 | 1.00 | 0.00 | -0.33 | -0.33 | 1.33 | 0.75 | 1.25 | 0.33 | 0.00 |
| 3 | 0.40 | -0.20 | -0.75 | 1.25 | 0.50 | 1.25 | 1.25 | 0.00 | 0.67 | -0.33 | 0.67 | 2.00 | 1.25 | 2.00 | 1.00 | 1.00 |
| 4 | -1.30 | 0.20 | 0.75 | -0.75 | 0.00 | 0.00 | 0.75 | 0.75 | -1.00 | 0.67 | -0.67 | 0.67 | 1.25 | 0.00 | 1.00 | 0.67 |
| 5 | 0.90 | 1.20 | 1.25 | 0.75 | 1.25 | -1.00 | 2.00 | -0.75 | 0.67 | -0.67 | 2.00 | 2.00 | 2.00 | 1.00 | 1.67 | 2.00 |
| 6 | 1.70 | 0.10 | -1.50 | 1.00 | 0.00 | 1.00 | -0.50 | 1.25 | 0.33 | -0.33 | 0.33 | 0.67 | 0.75 | 2.00 | -1.00 | 1.00 |
| 7 | -0.60 | -0.10 | 0.75 | -1.25 | 0.75 | 0.75 | 0.75 | 0.50 | -0.67 | 0.00 | -0.33 | -1.33 | 2.00 | 1.00 | -1.00 | -0.67 |
| 8 | -0.50 | 0.10 | 0.75 | -0.25 | 0.50 | 1.25 | 1.00 | 1.00 | -0.33 | 0.33 | 1.00 | -1.33 | 2.00 | 0.50 | 0.33 | 0.00 |
| 9 | 0.30 | -0.30 | -1.00 | -0.75 | 0.75 | 1.75 | 1.50 | 1.00 | -0.33 | -1.00 | 0.33 | 0.33 | 0.75 | 1.75 | 0.33 | 1.33 |
| 10 | 0.20 | 0.70 | 2.00 | 1.00 | 1.50 | 1.50 | 2.00 | 1.25 | 1.33 | 0.67 | 2.00 | -0.33 | 2.00 | 1.00 | 2.00 | 1.00 |
| 11 | -0.40 | 0.60 | 0.25 | -0.50 | 1.25 | 0.75 | 0.25 | 0.25 | -1.33 | 0.33 | 0.67 | -0.67 | 2.00 | 1.75 | 0.33 | 0.67 |
| 12 | -0.50 | 0.20 | 0.75 | -0.25 | 1.75 | 1.00 | 1.00 | 1.25 | -1.33 | 0.33 | 1.67 | 0.00 | 1.75 | 0.25 | 0.33 | 0.33 |
| 13 | -1.10 | 0.30 | 0.50 | 0.00 | 0.50 | 0.00 | 0.50 | -0.75 | -1.33 | -0.33 | 0.67 | -0.67 | 1.75 | 0.25 | 0.00 | -0.67 |
| 14 | 0.30 | 1.50 | 0.50 | -0.50 | 1.50 | 0.25 | 0.25 | 0.75 | -1.67 | 0.67 | -0.33 | -0.67 | 2.00 | 1.00 | 0.00 | 0.67 |
| 15 | -0.70 | 0.50 | 1.25 | 0.25 | 1.25 | 0.00 | 1.00 | 1.00 | -0.33 | 1.00 | 1.67 | 0.67 | 1.25 | 0.50 | 1.67 | 0.67 |
| 16 | -0.20 | 0.90 | -0.50 | -1.50 | 1.25 | -0.75 | 0.50 | 0.00 | -0.33 | 0.33 | 1.33 | -1.33 | 1.25 | 1.00 | -0.33 | 0.33 |
| 17 | 1.20 | -0.30 | -0.25 | 1.75 | 0.75 | 2.00 | 0.75 | 1.25 | 0.67 | -1.67 | -0.67 | 1.00 | 1.00 | 2.00 | 0.67 | 0.33 |
| 18 | 0.10 | 0.50 | 0.25 | -1.25 | 1.75 | 1.00 | -0.25 | 1.00 | -1.67 | -0.33 | 0.00 | -0.33 | 2.00 | 0.00 | -0.33 | 0.33 |
| 전체 | -0.03 | 0.32 | 0.18 | -0.07 | 0.89 | 0.68 | 0.71 | 0.65 | -0.39 | -0.02 | 0.54 | 0.13 | 1.43 | 0.96 | 0.41 | 0.52 |

<표> 노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2

| 피교육자 | 노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 | | | | | | | 검사 전체 | |
|------|------------------|-------|-------|-------|--------|-------|-----------|-------|---------|------|---------|-------|-------|-------|-------|------|
| | 통신, 소통의 자유 | | 알 권리 | | 의복 서비스 | | 노동권 및 재산권 | | 정치적 자유권 | | 종교적 자유권 | | 문화생활권 | |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0.00 | 0.00 | 0.00 | -1.00 | 1.00 | 0.00 | 0.00 | -.35 | .15 |
| 2 | 2.00 | 1.00 | -1.00 | 1.00 | 2.00 | 1.00 | 0.00 | 1.00 | 1.50 | 1.50 | -1.00 | 2.00 | 1.00 | 1.00 | .39 | .84 |
| 3 | 2.00 | 1.00 | -2.00 | 2.00 | 2.00 | 2.00 | 0.00 | 0.00 | 2.00 | 2.00 | 2.00 | 2.00 | 2.00 | 1.50 | .87 | 1.16 |
| 4 | -1.00 | 1.00 | 2.00 | -2.00 | 1.00 | 1.00 | 1.00 | 0.50 | 0.50 | 1.50 | -1.00 | 2.00 | 0.00 | 0.00 | .22 | .41 |
| 5 | -2.00 | 2.00 | 2.00 | -2.00 | -1.00 | -2.00 | 1.50 | 0.00 | 1.50 | 0.00 | 1.00 | 2.00 | 1.50 | 2.00 | 1.08 | .44 |
| 6 | 1.00 | -1.00 | 1.00 | 1.00 | 1.00 | 2.00 | -2.00 | 2.00 | 2.00 | 1.50 | 2.00 | 2.00 | 0.50 | 0.50 | .37 | .98 |
| 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0.50 | 0.50 | 1.50 | 1.50 | 1.00 | -1.00 | 1.50 | 1.50 | .61 | .16 |
| 8 | -1.00 | 1.00 | 1.00 | -2.00 | 1.00 | 2.00 | -1.50 | 0.50 | 2.00 | 2.00 | 2.00 | 1.00 | 0.00 | 1.50 | .55 | .51 |
| 9 | 2.00 | -2.00 | 1.00 | 2.00 | 2.00 | 1.00 | 0.00 | 1.50 | 1.50 | 0.50 | -1.00 | 1.00 | 2.00 | -0.50 | .68 | .51 |
| 1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0.00 | 2.00 | 2.00 | 2.00 | 2.00 | 1.50 | 1.50 | 1.77 | .95 |
| 11 | -1.00 | 2.00 | 2.00 | -1.00 | 1.00 | 2.00 | 1.50 | 0.00 | 1.50 | 1.50 | -1.00 | -1.00 | 1.50 | 1.50 | .57 | .55 |
| 12 | 1.00 | -1.00 | 2.00 | -1.00 | 1.00 | 1.00 | 0.50 | 0.00 | 0.00 | 2.00 | 1.00 | 1.00 | 1.00 | 2.00 | .79 | .47 |
| 13 | -1.00 | 2.00 | 2.00 | -2.00 | 1.00 | 1.00 | 1.50 | 0.00 | 1.50 | 0.00 | 1.00 | 1.00 | -1.00 | 1.00 | .43 | .08 |
| 14 | -2.00 | 2.00 | 2.00 | -2.00 | -1.00 | 2.00 | 1.50 | 0.00 | 1.50 | 1.50 | 2.00 | -1.00 | 2.00 | 0.50 | .57 | .44 |
| 15 | 1.00 | 1.00 | 1.00 | -1.00 | 1.00 | 2.00 | 1.50 | 0.00 | 2.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4 | .64 |
| 16 | 1.00 | 2.00 | 2.00 | -2.00 | 1.00 | 1.00 | 1.50 | 0.00 | 0.00 | 1.50 | 2.00 | -1.00 | 1.50 | 0.00 | .80 | .03 |
| 17 | 2.00 | 1.00 | 1.00 | 2.00 | 2.00 | 1.00 | 0.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1.01 | 1.22 |
| 18 | 1.00 | 2.00 | 1.00 | -2.00 | -1.00 | 2.00 | 1.00 | -0.50 | 1.50 | 0.50 | 2.00 | -1.00 | 0.00 | 1.50 | .49 | .23 |
| 전체 | 0.39 | 1.00 | 1.17 | -0.72 | 0.83 | 1.17 | 0.53 | 0.42 | 1.36 | 1.25 | 0.89 | 0.83 | 1.00 | 1.03 | 0.66 | 0.54 |

**<표> 노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인권 주제별) -1**

| 구분 | | 인권교육 후 변화자 유형 | | | | 전체 |
|--------------------------------|------|---------------|-----------|------------|-----------|------------|
| | | 강한 침해 | 약한 침해 | 약한 옹호 | 강한 옹호 | |
| 일반 인권 주제 | 상승자 | | 1 (5.56) | 11 (42.31) | 1 (5.56) | 13 (72.22) |
| | 무변화자 | | | | | |
| | 하락자 | | 5 (19.23) | | | 5 (19.23) |
| | 전체 | | 6 (23.08) | 11 (42.31) | 1 (5.56) | 18 (100) |
| 보건 의 료 서비스 | 상승자 | | 1 (5.56) | 3 (33.33) | 1 (5.56) | 5 (19.23) |
| | 무변화자 | | | | | |
| | 하락자 | 1 (5.56) | 8 (44.44) | 4 (22.22) | | 13(72.22) |
| | 전체 | 1 (5.56) | 9 (50.00) | 7 (38.89) | 1 (5.56) | 18 (100) |
| 영양 및 급식 서비스 | 상승자 | | | 5 (19.23) | 3 (33.33) | 8 (44.44) |
| | 무변화자 | | | 2 (11.11) | | 2 (11.11) |
| | 하락자 | | 2 (11.11) | 6 (23.08) | | 8 (44.44) |
| | 전체 | | 2 (11.11) | 13 (72.22) | 3 (33.33) | 18 (100) |
| 위생 및 청결 서비스 | 상승자 | | | 7 (38.89) | | 7 (38.89) |
| | 무변화자 | | | 4 (22.22) | | 4 (22.22) |
| | 하락자 | | 2 (11.11) | 5 (19.23) | | 7 (38.89) |
| | 전체 | | 2 (11.11) | 16 | | 18 (100) |
| 안전하 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 | 상승자 | | | 9 (50.00) | | 9 (50.00) |
| | 무변화자 | | | | | |
| | 하락자 | 1 (5.56) | 7 (38.89) | 1 (5.56) | | 9 (50.00) |
| | 전체 | 1 (5.56) | 7 (38.89) | 10 (55.56) | | 18 (100) |
| 사생활 보호 | 상승자 | | | 5 (19.23) | 1 (5.56) | 6 (23.08) |
| | 무변화자 | | | 1 (5.56) | 1 (5.56) | 2 (11.11) |
| | 하락자 | | 8 (44.44) | 2 (11.11) | | 10 (55.56) |
| | 전체 | | 8 (44.44) | 8 (44.44) | 2 (11.11) | 18 (100) |
| 동료 노인들 에게 존중받 을 권리 | 상승자 | | | 1 (5.56) | 4 (22.22) | 5 (19.23) |
| | 무변화자 | | | 1 (5.56) | | 1 (5.56) |
| | 하락자 | | | 11 (42.31) | 1 (5.56) | 12 (66.67) |
| | 전체 | | | 13 (72.22) | 5 (19.23) | 18 (100) |
| 신체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 | 상승자 | | | 6 (23.08) | 1 (5.56) | 7 (38.89) |
| | 무변화자 | | | 3 (33.33) | | 3 (33.33) |
| | 하락자 | | 2 (11.11) | 6 (23.08) | | 8 (44.44) |
| | 전체 | | 2 (11.11) | 15 (83.33) | 1 (5.56) | 18 (100) |

<표> 시설 아동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 피교육자 | 일반 인권 주제 | | 시설 아동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 | 시설아동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검사 전체 | |
|------|----------|-------|---------------------|-------|---------|-------|-------|-------|-------|-------|--------------------|-------|-------|-------|-------|-------|-------|------|
| | | | 아동의 생존권 | | 보호받을 권리 | | 발달권 | | 자유권 | | 참정권 | | 사후관리 | | 기타 | |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1 | -0.40 | -0.90 | -0.75 | 0.13 | -1.00 | -1.00 | -0.43 | -0.57 | -0.11 | -0.44 | 1.00 | 1.00 | 0.00 | 0.00 | 2.00 | -1.00 | .04 | -.35 |
| 2 | 0.00 | 1.00 | 0.25 | 0.25 | -1.14 | 0.29 | -0.71 | 0.71 | 1.00 | -0.22 | -2.00 | -1.00 | -1.50 | -1.00 | 2.00 | 1.00 | -.26 | .13 |
| 3 | 0.80 | 1.10 | 0.25 | 0.75 | 0.43 | 0.57 | 0.71 | 0.86 | 1.33 | 0.44 | 1.00 | -1.00 | 0.00 | 1.50 | 2.00 | 2.00 | .82 | .78 |
| 4 | 0.30 | 1.60 | 0.25 | 0.50 | -0.43 | 0.57 | 0.14 | 0.71 | 0.78 | -0.33 | -2.00 | -1.00 | -1.00 | 1.50 | -2.00 | 2.00 | -.49 | .69 |
| 5 | 0.20 | 1.10 | 0.38 | 0.50 | -1.00 | 0.14 | -0.43 | 1.29 | 0.78 | 0.11 | -2.00 | -1.00 | 0.50 | 0.00 | 2.00 | 2.00 | .05 | .52 |
| 6 | 0.60 | 1.30 | 0.63 | 0.75 | 0.57 | 1.57 | 0.71 | 1.57 | 0.89 | 0.67 | -1.00 | 2.00 | 1.50 | 1.50 | 2.00 | 1.00 | .74 | 1.29 |
| 7 | 0.30 | -0.80 | -0.13 | 0.50 | -1.29 | -0.57 | -0.29 | 0.43 | 0.11 | -0.22 | -1.00 | -1.00 | 1.50 | -1.00 | 2.00 | 1.00 | .15 | -.21 |
| 8 | -0.80 | 1.80 | 0.00 | 1.13 | -0.57 | 0.14 | -0.14 | 1.14 | 0.22 | -0.22 | 1.00 | -2.00 | -0.50 | -1.50 | 2.00 | 2.00 | .15 | .31 |
| 9 | 0.60 | 1.90 | 1.00 | 1.00 | -0.43 | 1.29 | 1.00 | 1.71 | 1.00 | 0.67 | -1.00 | 1.00 | 0.00 | 0.00 | 1.00 | 2.00 | .40 | 1.20 |
| 10 | -0.10 | 0.60 | 0.38 | 0.50 | 0.43 | 0.00 | -0.57 | 0.29 | -0.33 | 0.11 | 2.00 | 1.00 | 1.50 | 1.50 | 2.00 | -1.00 | .66 | .37 |
| 11 | -0.30 | 0.30 | 0.13 | 1.38 | -0.71 | 1.29 | 0.29 | 2.00 | 0.67 | 0.56 | -1.00 | 2.00 | 1.50 | 2.00 | 2.00 | 2.00 | .32 | 1.44 |
| 12 | -0.10 | 0.40 | -0.25 | -0.25 | -0.14 | 1.00 | 0.43 | 0.29 | 0.56 | 0.11 | -1.00 | -1.00 | 0.00 | 0.00 | 1.00 | 1.00 | .06 | .19 |
| 13 | -0.10 | 0.40 | 0.25 | 0.75 | 0.86 | 0.43 | 0.71 | 1.43 | 1.33 | 1.22 | 1.00 | -1.00 | 1.50 | 0.50 | 2.00 | -1.00 | .94 | .34 |
| 14 | 0.50 | 0.50 | 0.63 | 0.75 | 0.14 | 0.43 | 0.14 | 0.43 | 0.78 | 0.11 | -2.00 | 1.00 | 1.00 | 0.00 | 2.00 | -1.00 | .40 | .28 |
| 전체 | .11 | .74 | .21 | .62 | -.31 | .44 | .11 | .88 | .64 | .18 | -.50 | -.07 | .43 | .36 | 1.57 | .86 | .28 | .50 |

**<표> 시설 아동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인권 주제별)**

| 구분 | | 인권교육 후 변화자 유형 | | | | 전체 |
|----------------|------|---------------|-----------|------------|-----------|------------|
| | | 강한 침해 | 약한 침해 | 약한 옹호 | 강한 옹호 | |
| 일반 인권 주제 | 상승자 | | | 8 (57.14) | 3 (21.43) | 11 (78.57) |
| | 무변화자 | | | 1 (7.14) | | 1 (7.14) |
| | 하락자 | | 2 (14.29) | | | 2 (14.29) |
| | 전체 | | 2 (14.29) | 9 (64.29) | 3 (21.43) | 14 (100) |
| 아동의 생존권 | 상승자 | | | 11 (78.57) | | 11 (78.57) |
| | 무변화자 | | 1 (7.14) | 2 (14.29) | | 3 (21.43) |
| | 하락자 | | | | | |
| | 전체 | | 1 (7.14) | 13 (92.86) | | 14 (100) |
| 보호받 을 권리 | 상승자 | | | 9(64.29) | 1 (7.14) | 10 (71.43) |
| | 무변화자 | | 1 (7.14) | | | 1 (7.14) |
| | 하락자 | | 1 (7.14) | 2 (14.29) | | 3 (21.43) |
| | 전체 | | 2 (14.29) | 11 (78.57) | 1 (7.14) | 14 (100) |
| 발달권 | 상승자 | | | 9 (64.29) | 3 (21.43) | 12 (85.71) |
| | 무변화자 | | | | | |
| | 하락자 | | 1 (7.14) | 1 (7.14) | | 2 (14.29) |
| | 전체 | | 1 | 10 (71.43) | 3 (21.43) | 14 (100) |
| 자유권 | 상승자 | | | 1 (7.14) | | 1 (7.14) |
| | 무변화자 | | | | | |
| | 하락자 | | 5 (35.71) | 8 (57.14) | | 13 (92.86) |
| | 전체 | | 5 (35.71) | 9 (64.29) | | 14 (100) |
| 참정권 | 상승자 | | 3 (21.43) | 2 (14.29) | 2 (14.29) | 7 (50.00) |
| | 무변화자 | | 2 (14.29) | 1 (7.14) | | 3 (21.43) |
| | 하락자 | | 3 (21.43) | 1 (7.14) | | 4 (28.57) |
| | 전체 | | 8 (57.14) | 4 (28.57) | 2 (14.29) | 14 (100) |
| 사후관 리 | 상승자 | | | | 3 (21.43) | 3 (21.43) |
| | 무변화자 | | | 3 (21.43) | 2 (14.29) | 5 (35.71) |
| | 하락자 | | 3 (21.43) | 3 (21.43) | | 6 (42.86) |
| | 전체 | | 3 (21.43) | 6 (42.86) | 5 (35.71) | 14 (100) |
| 기타 | 상승자 | | | | 2 (14.29) | 2 (14.29) |
| | 무변화자 | | | 1 (7.14) | 4 (28.57) | 5 (35.71) |
| | 하락자 | | 4 (28.57) | 3 (21.43) | | 7 (50.00) |
| | 전체 | | 4 (28.57) | 4 (28.57) | 6 (42.86) | 14 (100) |
| 전체 | 상승자 | | | 8 (57.14) | | 8 (57.14) |
| | 무변화자 | | 2 (14.29) | 4 (28.57) | | 6 (42.86) |
| | 하락자 | | | | | |
| | 전체 | | 2 (14.29) | 12 (46.15) | | 14 (100) |

〈표〉 정신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
(인권 주제별) -1

| 피교육자 | 일반 인권 주제 | | 정신장애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 | 정신장애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사생활 보호 | | 통신·의사소통의 자유 | |
|------|----------|-------|---------------------------|------|---------------|-------|--------|-------|------------|------|---------------------|-------|--------|-------|-------------|-------|
| | | |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 |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 | 신체적 안전 | | 적절한 식생활 보장 | |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 | | |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1 | -0.70 | 0.00 | 0.67 | 2.00 | 1.33 | 1.00 | -0.67 | 1.00 | 1.00 | 2.00 | 0.00 | 0.50 | 1.33 | 1.00 | 0.67 | 0.33 |
| 2 | 0.70 | 1.50 | 0.67 | 0.67 | 0.67 | 1.67 | 0.00 | 1.00 | 1.00 | 1.50 | 1.50 | 0.00 | 0.33 | 0.33 | 0.33 | 0.00 |
| 3 | 1.30 | 1.30 | 0.67 | 2.00 | 1.67 | 2.00 | -0.33 | 1.67 | 0.00 | 2.00 | 0.00 | 2.00 | 2.00 | 2.00 | 2.00 | -0.67 |
| 4 | -0.10 | 0.70 | -0.67 | 2.00 | 1.00 | 2.00 | 1.67 | 1.67 | 0.50 | 2.00 | 0.00 | 2.00 | 0.67 | 1.67 | 1.67 | 2.00 |
| 5 | 0.30 | 0.70 | 1.33 | 2.00 | 1.33 | 2.00 | 1.33 | 2.00 | 2.00 | 2.00 | 1.50 | 1.00 | 1.33 | 2.00 | 2.00 | 2.00 |
| 6 | 1.40 | 1.70 | -0.33 | 2.00 | 1.00 | 1.67 | 0.00 | 1.67 | 2.00 | 2.00 | -0.50 | 1.50 | 0.67 | 0.00 | 0.67 | 1.67 |
| 7 | -0.50 | 0.50 | 0.33 | 0.67 | 1.33 | 1.33 | -0.33 | 0.67 | 2.00 | 1.50 | 1.00 | 2.00 | 0.00 | 1.67 | 0.67 | -0.33 |
| 8 | 1.60 | 1.70 | 1.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1.67 |
| 9 | -0.30 | 0.30 | -0.33 | 2.00 | -0.33 | 2.00 | 0.33 | 1.67 | 0.00 | 1.00 | 1.50 | 0.50 | 1.00 | 0.67 | 1.33 | 0.33 |
| 10 | 1.30 | 1.90 | -0.33 | 2.00 | 0.33 | 1.33 | 0.67 | 2.00 | 1.50 | 2.00 | 2.00 | 2.00 | 1.00 | 2.00 | 2.00 | 0.67 |
| 11 | 0.50 | 1.00 | 0.67 | 2.00 | 1.33 | 2.00 | 0.00 | 1.67 | 1.00 | 0.50 | 0.00 | 2.00 | 0.67 | 1.67 | 1.33 | 0.00 |
| 12 | 1.00 | 1.30 | 0.33 | 1.67 | 0.00 | 1.00 | -1.00 | 1.00 | 0.00 | 1.00 | 1.00 | 1.00 | 1.67 | 0.33 | 1.33 | 0.33 |
| 13 | -0.30 | -0.50 | 1.00 | 2.00 | 1.00 | -0.33 | 1.00 | 0.67 | 2.00 | 0.50 | 2.00 | 2.00 | 0.67 | 1.67 | 0.00 | 1.00 |
| 14 | -0.70 | 0.10 | 0.33 | 1.33 | 0.00 | 1.67 | 0.67 | 1.33 | 1.50 | 1.50 | 1.00 | 1.00 | 0.33 | 0.33 | 0.33 | -0.33 |
| 15 | -0.10 | -0.30 | -1.00 | 0.67 | 1.00 | -0.33 | -1.33 | -0.33 | 0.00 | 1.00 | 1.50 | 0.00 | 0.33 | -1.00 | -0.67 | 0.33 |
| 16 | -0.60 | 1.10 | 0.33 | 2.00 | 1.00 | 2.00 | 0.00 | 0.67 | 1.50 | 2.00 | 1.00 | 2.00 | 1.33 | 2.00 | 1.33 | 2.00 |
| 17 | 0.60 | 1.20 | 0.33 | 1.00 | 1.33 | 1.33 | -1.00 | 0.33 | 0.50 | 1.50 | 0.00 | 1.50 | -0.33 | 1.33 | 0.33 | 1.00 |
| 18 | 0.20 | 1.50 | 1.00 | 2.00 | 0.67 | 2.00 | 1.00 | 1.00 | 1.50 | 2.00 | 1.00 | 2.00 | 1.33 | 2.00 | 1.00 | 2.00 |
| 19 | -0.90 | 0.40 | -1.67 | 0.33 | -0.67 | -0.33 | -1.67 | 0.67 | 1.50 | 1.00 | 0.00 | -1.00 | 0.67 | -0.67 | 0.00 | -0.33 |
| 20 | 1.00 | 1.70 | 2.00 | 2.00 | 0.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1.00 | 0.67 | 1.67 | 2.00 |
| 전체 | .29 | .89 | .32 | 1.62 | .80 | 1.40 | .22 | 1.22 | 1.18 | 1.55 | .93 | 1.30 | .90 | 1.08 | 1.00 | .78 |

<표> 정신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2

| 피교육자 | 정신장애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 | | | | | | | | | 검사 전체 | |
|------|---------------------|-------|----------------|-------|------|------|--------|-------|------------|-------|--------|------|--------|-------|-------|------|-------|------|
| | 외출의 자유 | |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 | 알 권리 | | 적절한 의복 | | 여가 및 문화생활권 | | 정치적 자유 | | 종교의 자유 | | 기타 | |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1 | 2.00 | 0.50 | -1.33 | 0.67 | 1.50 | 0.50 | 1.00 | 1.00 | 0.00 | 1.67 | 1.50 | 2.00 | 0.50 | 0.00 | 1.00 | 2.00 | .61 | 1.01 |
| 2 | 1.00 | -0.50 | 1.00 | 0.67 | 0.00 | 1.50 | -1.00 | 2.00 | 1.00 | -0.33 | 0.00 | 1.50 | 0.00 | 0.00 | 1.00 | 2.00 | .51 | .84 |
| 3 | 2.00 | -1.50 | 1.67 | 0.67 | 2.00 | 0.00 | 2.00 | 1.00 | 1.33 | 2.00 | 1.50 | 2.00 | 1.50 | 1.50 | 2.00 | 2.00 | 1.33 | 1.25 |
| 4 | 1.00 | 0.00 | 0.33 | 0.67 | 0.00 | 1.50 | 1.00 | 2.00 | -1.00 | 1.00 | 1.00 | 2.00 | 0.50 | 0.50 | 2.00 | 2.00 | .60 | 1.48 |
| 5 | 2.00 | 0.50 | 1.67 | 1.67 | 2.00 | 0.50 | 2.00 | 2.00 | 0.67 | 1.33 | 1.50 | 2.00 | 0.00 | 0.50 | 2.00 | 2.00 | 1.44 | 1.51 |
| 6 | 2.00 | 0.00 | 1.00 | 0.33 | 2.00 | 0.00 | -1.00 | 1.00 | 0.33 | 1.00 | 0.50 | 2.00 | 0.00 | 0.00 | -1.00 | 1.00 | .55 | 1.10 |
| 7 | 2.00 | 0.50 | 1.67 | 1.00 | 1.50 | 0.50 | 2.00 | 1.00 | 1.00 | 1.67 | 2.00 | 2.00 | 2.00 | 0.00 | 2.00 | 1.00 | 1.17 | .98 |
| 8 | 2.00 | 0.00 | 1.67 | 2.00 | 2.00 | 0.00 | 2.00 | 2.00 | 0.67 | 2.00 | 1.50 | 2.00 | 0.00 | 0.50 | 2.00 | 2.00 | 1.65 | 1.62 |
| 9 | 1.00 | 0.00 | 0.33 | 0.33 | 0.00 | 0.50 | 1.00 | 2.00 | 0.00 | 1.00 | 0.00 | 1.50 | 0.00 | 0.50 | -1.00 | 1.00 | .28 | .96 |
| 10 | 0.00 | 0.00 | 0.33 | -1.67 | 1.50 | 0.50 | 2.00 | 1.00 | 0.67 | 0.00 | 0.00 | 2.00 | 0.00 | 0.50 | 2.00 | 1.00 | .94 | 1.08 |
| 11 | 1.00 | 0.50 | 0.67 | 0.67 | 1.50 | 0.00 | -1.00 | -1.00 | 0.00 | 1.67 | 1.00 | 2.00 | 0.50 | 0.00 | 1.00 | 1.00 | .64 | .98 |
| 12 | 2.00 | 0.00 | 1.00 | 1.00 | 1.50 | 0.50 | 2.00 | 2.00 | 0.67 | 1.67 | 1.50 | 2.00 | 0.50 | 0.00 | -1.00 | 1.00 | .78 | .99 |
| 13 | 2.00 | 0.00 | 1.00 | 1.00 | 1.50 | 1.50 | 2.00 | 2.00 | 0.33 | 2.00 | 1.50 | 2.00 | 2.00 | 0.00 | 2.00 | 2.00 | 1.23 | 1.09 |
| 14 | 1.00 | -0.50 | 1.33 | -0.33 | 0.00 | 0.50 | -1.00 | 1.00 | 0.33 | 0.33 | 2.00 | 2.00 | 0.50 | 0.00 | -1.00 | 1.00 | .41 | .68 |
| 15 | 1.50 | -1.50 | 1.00 | 0.33 | 1.00 | 1.50 | -1.00 | 1.00 | -0.33 | 1.00 | 1.50 | 1.50 | 0.00 | 0.00 | -2.00 | 1.00 | .09 | .30 |
| 16 | 2.00 | 0.00 | 0.33 | 2.00 | 1.50 | 0.00 | 1.00 | 2.00 | -0.33 | 2.00 | 1.00 | 2.00 | 2.00 | 0.00 | 1.00 | 2.00 | .90 | 1.49 |
| 17 | 2.00 | -0.50 | 1.00 | 1.00 | 0.00 | 0.00 | 1.00 | 2.00 | 0.33 | 0.67 | 1.50 | 1.50 | 0.50 | 0.00 | 1.00 | 2.00 | .57 | .99 |
| 18 | 2.00 | 0.00 | 1.00 | 2.00 | 1.00 | 0.50 | 1.00 | 1.00 | -0.33 | 2.00 | 0.50 | 2.00 | 1.00 | 0.50 | -1.00 | 2.00 | .80 | 1.53 |
| 19 | 1.50 | 1.50 | 0.00 | -0.33 | 2.00 | 1.50 | -2.00 | -1.00 | -0.33 | 1.00 | 1.00 | 1.50 | 0.00 | -0.50 | -1.00 | 2.00 | -.10 | .36 |
| 20 | 2.00 | 0.00 | 1.00 | 2.00 | 1.50 | 0.50 | 2.00 | 2.00 | -0.33 | 2.00 | 1.50 | 2.00 | 2.00 | 2.00 | -2.00 | 2.00 | 1.21 | 1.68 |
| 전체 | 1.60 | -.05 | .83 | .78 | 1.20 | .85 | .75 | 1.30 | .23 | 1.28 | 1.13 | 1.88 | .68 | .30 | .45 | 1.60 | .78 | 1.11 |

**<표> 정신장애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인권 주제별)-1**

| 구분 | | 인권교육 후 변화자 유형 | | | | 전체 |
|---|------|---------------|-----------|------------|------------|------------|
| | | 강한 침해 | 약한 침해 | 약한 옹호 | 강한 옹호 | |
| 일반 인권 주제 | 상승자 | | | 11 (55.00) | 6 (30.00) | 17 (85.00) |
| | 무변화자 | | | 1 (5.00) | | 1 (5.00) |
| | 하락자 | | 2 (5.00) | | | 2 (5.00) |
| | 전체 | | 2 (5.00) | 12 (60.00) | 6 (30.00) | 20 (100) |
| 입퇴원, 계속입원 , 전원과정 에서의 자기결정 권 | 상승자 | | | 5 (25.00) | 13 (65.00) | 18 (90.00) |
| | 무변화자 | | | 1 (5.00) | 1 (5.00) | 2 (5.00) |
| | 하락자 | | | | | |
| | 전체 | | | 6 (30.00) | 14 (70.00) | 20 (100) |
|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 상승자 | | 1 (5.00) | 2 (5.00) | 11 (55.00) | 14 (70.00) |
| | 무변화자 | | | 2 (5.00) | 1 (5.00) | 3 (15.00) |
| | 하락자 | | 2 (5.00) | 1 (5.00) | | 3 (15.00) |
| | 전체 | | 3 (15.00) | 5 (25.00) | 12 (60.00) | 20 (100) |
| 신체적 안전 | 상승자 | | 1 (5.00) | 9 (45.00) | 6 (30.00) | 16 (80.00) |
| | 무변화자 | | | 1 (5.00) | 3 (15.00) | 4 (20.00) |
| | 하락자 | | | | | |
| | 전체 | | 1 (5.00) | 10 (50.00) | 9 (45.00) | 20 (100) |
| 적절한 식생활 보장 | 상승자 | | | 3 (15.00) | 8 (40.00) | 11 (55.00) |
| | 무변화자 | | | | 5 (25.00) | 5 (25.00) |
| | 하락자 | | | 4 (20.00) | | 4 (20.00) |
| | 전체 | | | 7 (35.00) | 13 (65.00) | 20 (100) |
|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생활 공간 | 상승자 | | | 1 (5.00) | 8 (40.00) | 9 (45.00) |
| | 무변화자 | | | 2 (5.00) | 4 (20.00) | 6 (30.00) |
| | 하락자 | | 1 (5.00) | 4 (20.00) | | 5 (25.00) |
| | 전체 | | 1 (5.00) | 7 (35.00) | 12 (60.00) | 20 (100) |
| 사생활보 호 | 상승자 | | | 1 (5.00) | 8 (40.00) | 9 (45.00) |
| | 무변화자 | | | 2 (5.00) | 2 (5.00) | 4 (20.00) |
| | 하락자 | | 2 (5.00) | 5 (25.00) | | 7 (35.00) |
| | 전체 | | 2 (5.00) | 8 (40.00) | 10 (50.00) | 20 (100) |
| 통신·의사 소통의 자유 | 상승자 | | | | 5 (25.00) | 5 (25.00) |
| | 무변화자 | | | 3 (15.00) | 1 (5.00) | 4 (20.00) |
| | 하락자 | | 4 (20.00) | 6 (30.00) | 1 (5.00) | 11 (55.00) |
| | 전체 | | 4 (20.00) | 9 (45.00) | 7 (35.00) | 20 (100) |

<표> 정신장애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인권 주제별)-2

| 구분 | | 인권교육 후 변화자 유형 | | | | 전체 |
|----------------|------|---------------|------------|------------|------------|------------|
| | | 강한 침해 | 약한 침해 | 약한 옹호 | 강한 옹호 | |
| 외출의 자유 | 상승자 | | | | | |
| | 무변화자 | | | 1 (5.00) | 1 (5.00) | 2 (5.00) |
| | 하락자 | | 5 (25.00) | 13 (65.00) | | 18 (90.00) |
| | 전체 | | 5 (25.00) | 14 (70.00) | 1 (5.00) | 20 (100) |
|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 상승자 | | | 2 (5.00) | 4 (20.00) | 6 (30.00) |
| | 무변화자 | | | 5 (25.00) | 1 (5.00) | 6 (30.00) |
| | 하락자 | | 3 (15.00) | 5 (25.00) | | 8 (40.00) |
| | 전체 | | 3 (15.00) | 12 (60.00) | 5 (25.00) | 20 (100) |
| 알 권리 | 상승자 | | | 2 (5.00) | 3 (15.00) | 5 (25.00) |
| | 무변화자 | | | 1 (5.00) | 1 (5.00) | 2 (5.00) |
| | 하락자 | | 13 (65.00) | | | 13 (65.00) |
| | 전체 | | 13 (65.00) | 3 (15.00) | 4 (20.00) | 20 (100) |
| 적절한 의복 | 상승자 | | | 3 (15.00) | 5 (25.00) | 8 (40.00) |
| | 무변화자 | | 1 (5.00) | 2 (5.00) | 5 (25.00) | 8 (40.00) |
| | 하락자 | | 1 (5.00) | 3 (15.00) | | 4 (20.00) |
| | 전체 | | 2 (5.00) | 8 (40.00) | 10 (50.00) | 20 (100) |
| 여가 및 문화생활권 | 상승자 | | | 7 (35.00) | 10 (50.00) | 17 (85.00) |
| | 무변화자 | | | 1 (5.00) | | 1 (5.00) |
| | 하락자 | | 1 (5.00) | 1 (5.00) | | 2 (5.00) |
| | 전체 | | 1 (5.00) | 9 (45.00) | 10 (50.00) | 20 (100) |
| 정치의 자유 | 상승자 | | | 16 (80.00) | 4 (20.00) | 20 (100) |
| | 무변화자 | | | | | |
| | 하락자 | | | | | |
| | 전체 | | | 16 (80.00) | 4 (20.00) | 20 (100) |
| 종교의 자유 | 상승자 | | | 4 (20.00) | | 4 (20.00) |
| | 무변화자 | | | 3 (15.00) | 2 (5.00) | 5 (25.00) |
| | 하락자 | | 1 (5.00) | 10 (50.00) | | 11 (55.00) |
| | 전체 | | 1 (5.00) | 17 (85.00) | 2 (5.00) | 20 (100) |
| 기타 | 상승자 | | | 6 (30.00) | 7 (35.00) | 13 (65.00) |
| | 무변화자 | | | 1 (5.00) | 5 (25.00) | 6 (30.00) |
| | 하락자 | | | 1 (5.00) | | 1 (5.00) |
| | 전체 | | | 8 (40.00) | 12 (60.00) | 20 (100) |
| 전체 | 상승자 | | | 13 (65.00) | 3 (15.00) | 16 (80.00) |
| | 무변화자 | | | | | |
| | 하락자 | | | 3 (15.00) | 1 (5.00) | 4 (20.00) |
| | 전체 | | | 16 (80.00) | 4 (20.00) | 20 (100) |

<표> 경찰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인권 주제별)

| 피교육자 | 일반 인권 주제 | | 경찰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 | | | | | | | 검사 전체 | |
|------|----------|-------|------------------|-------|-------|-------|-------|-------|-------|-------|---------|-------|-------------|-------|-------|-------|-------|------|
| | | | 신체 훼손 및 언어폭력 | | 제한사항 | | 형평성 | | 검문 | | 동행 및 연행 | | 개인정보보호 및 수색 | | 진료 | |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1 | 0.00 | 0.00 | -0.20 | 0.60 | 0.00 | 0.33 | -0.50 | 0.67 | 0.33 | 0.67 | -0.60 | 0.60 | 0.00 | 0.14 | 1.33 | 0.33 | .05 | .42 |
| 2 | -0.40 | -0.10 | 1.00 | 1.20 | 1.50 | 1.33 | 0.33 | 1.50 | 1.00 | 1.33 | 1.00 | 1.40 | 1.43 | 1.43 | 1.67 | 1.33 | .94 | 1.18 |
| 3 | 0.20 | 0.20 | -0.20 | 0.80 | -0.33 | -0.33 | -0.17 | 0.33 | 0.67 | -0.33 | -0.40 | -0.60 | -0.29 | 0.00 | 0.00 | -0.67 | -.06 | -.08 |
| 4 | 0.40 | 0.20 | 0.60 | 1.80 | 0.83 | 0.83 | 1.00 | 0.83 | 1.33 | -0.67 | 0.80 | 0.60 | 0.86 | 0.86 | -0.33 | 0.00 | .69 | .56 |
| 5 | -0.90 | -0.80 | -1.00 | -1.00 | -0.67 | 0.00 | -0.33 | -0.67 | 0.33 | -0.33 | -1.00 | 0.20 | -1.00 | 0.43 | 1.00 | -0.33 | -.45 | -.31 |
| 6 | -0.10 | 0.90 | 0.80 | 2.00 | 1.83 | 0.50 | 1.33 | 2.00 | 1.00 | 1.00 | 1.40 | 0.20 | 1.29 | 1.57 | 1.33 | 1.00 | 1.11 | 1.15 |
| 7 | -0.40 | -0.50 | -1.00 | -0.20 | 0.17 | 0.50 | -1.00 | -1.00 | -0.33 | -0.67 | -1.00 | -0.80 | -0.43 | -0.14 | -0.33 | -0.33 | -.54 | -.39 |
| 8 | -0.90 | -0.80 | -0.60 | 1.00 | 0.00 | 0.33 | 0.17 | 0.33 | -0.33 | 1.00 | 0.60 | 0.60 | 0.14 | 0.43 | 0.67 | 0.33 | -.03 | .40 |
| 9 | -0.70 | -0.10 | -0.20 | -0.20 | 0.00 | -0.67 | -0.33 | 0.33 | 0.33 | -1.00 | -0.60 | -0.20 | -0.43 | -0.14 | -0.33 | -0.33 | -.28 | -.29 |
| 10 | -0.50 | -0.40 | 0.20 | 1.60 | 0.00 | 0.67 | 1.00 | 1.17 | -0.33 | 0.67 | 0.20 | 0.60 | -0.86 | 1.14 | 1.00 | 0.00 | .09 | .68 |
| 11 | 1.10 | 1.90 | 0.60 | 2.00 | 1.67 | 1.50 | 1.67 | 1.83 | 1.67 | 1.00 | 1.00 | 1.80 | 1.14 | 1.86 | 2.00 | 1.67 | 1.36 | 1.69 |
| 12 | -1.10 | -0.50 | -1.20 | -0.20 | 0.00 | 0.33 | 1.00 | 0.67 | -1.00 | -0.33 | -0.20 | 0.00 | -0.43 | 1.14 | 1.33 | 0.33 | -.20 | .18 |
| 13 | 0.20 | 0.10 | 0.60 | 0.60 | 0.67 | 0.33 | -0.33 | 0.33 | -0.33 | 0.67 | 0.40 | 0.20 | -0.43 | 1.00 | 0.67 | -0.33 | .18 | .36 |
| 14 | -0.60 | -0.60 | -0.20 | -1.00 | -0.67 | -0.67 | 0.00 | 0.33 | -0.33 | -1.00 | -0.20 | -0.60 | -0.43 | -0.71 | -0.33 | 0.33 | -.35 | -.49 |
| 15 | -0.90 | -0.80 | -0.60 | -0.20 | -0.50 | 0.00 | -0.17 | 0.67 | -0.33 | 0.33 | 0.60 | -0.20 | -0.57 | 0.43 | -0.33 | 0.67 | -.35 | .11 |
| 16 | -0.30 | -0.10 | -0.80 | 0.00 | -0.33 | -0.83 | 0.33 | -0.83 | 0.00 | -1.33 | 0.20 | -0.80 | -0.57 | -0.57 | -1.00 | -1.00 | -.31 | -.68 |
| 17 | 0.00 | -0.60 | -0.60 | -0.60 | 0.00 | 0.67 | -1.00 | -0.33 | -1.33 | 0.33 | -0.40 | -0.40 | -1.00 | 0.71 | -0.67 | -1.00 | -.63 | -.15 |
| 18 | -1.00 | -0.30 | 0.20 | 1.00 | 0.17 | 1.17 | 0.50 | 1.67 | -0.67 | 1.67 | 0.80 | 1.20 | 1.43 | 1.14 | -0.33 | 0.33 | .14 | .98 |
| 19 | -0.30 | -0.30 | -0.60 | -0.80 | -0.17 | 0.00 | -0.17 | 0.00 | -1.33 | -1.00 | -0.80 | -0.20 | -1.29 | -0.71 | 1.67 | 0.00 | -.37 | -.38 |
| 20 | -1.30 | -1.00 | -0.80 | 1.20 | 0.33 | 1.67 | -0.17 | 1.50 | -1.00 | 0.67 | 0.40 | 1.00 | 0.43 | 1.86 | 1.33 | 0.67 | -.10 | .94 |
| 21 | -0.60 | -0.20 | 0.00 | 0.40 | 0.50 | 0.00 | 0.00 | -0.67 | -0.33 | 0.33 | 0.80 | 0.20 | 0.29 | 0.43 | 0.00 | 0.67 | .08 | .15 |
| 22 | -1.30 | -0.60 | 1.00 | 1.00 | 0.33 | 1.00 | 0.33 | 1.00 | -0.33 | 1.00 | 0.40 | 0.60 | 0.00 | 1.00 | 1.00 | 1.00 | .18 | .75 |
| 23 | 0.10 | 1.10 | 0.20 | 2.00 | 0.67 | 1.17 | 0.67 | 1.17 | 0.00 | 1.67 | 1.20 | 1.20 | 1.43 | 1.57 | -0.33 | 1.33 | .49 | 1.40 |
| 24 | -0.20 | -0.50 | -0.60 | 0.60 | 0.33 | 0.33 | 0.00 | 0.00 | -0.33 | 0.33 | -0.20 | 0.20 | 0.71 | -0.14 | 0.33 | -1.00 | .01 | -.02 |
| 25 | -0.10 | -0.40 | -0.40 | 1.20 | -0.50 | 1.33 | 0.50 | 1.33 | -0.67 | 0.67 | 0.40 | 0.60 | 1.29 | 1.00 | 2.00 | 1.00 | .31 | .84 |
| 26 | -0.40 | -0.40 | -1.20 | 0.40 | 0.67 | 0.00 | -1.33 | 0.00 | -0.67 | 0.67 | -1.20 | -1.20 | 0.29 | -0.86 | 2.00 | -2.00 | -.23 | -.42 |
| 전체 | -.39 | -.18 | -.19 | .58 | .25 | .44 | .13 | .54 | -.12 | .28 | .14 | .24 | .12 | .57 | .59 | .15 | .07 | .33 |

<표> 경찰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인권 주제별)

| 구분 | | 변화 유형 | | | | 전체 |
|---------------------------|------|-------|------------|------------|-----------|------------|
| | | 강한 침해 | 약한 침해 | 약한 옹호 | 강한 옹호 | |
| 일반 인권 주제 | 상승자 | | 12 (46.15) | 3 (11.54) | 1 (3.85) | 16 (61.54) |
| | 무변화자 | | 3 (11.54) | 1 (3.85) | | 4 (15.38) |
| | 하락자 | | 4 (15.38) | 2 (7.69) | | 6 (23.08) |
| | 전체 | | 19 (73.08) | 6 (23.08) | 1 (3.85) | 26 (100) |
| 신체 훼손 및 언어 폭력 | 상승자 | | | 11 (42.31) | 4 (15.38) | 15 (57.69) |
| | 무변화자 | | 3 (11.54) | 2 (7.69) | 1 (3.85) | 6 (23.08) |
| | 하락자 | | 5 (19.23) | | | 5 (19.23) |
| | 전체 | | 8 (30.77) | 13 (50.00) | 5 (19.23) | 26 (100) |
| 제한 사항 | 상승자 | | 1 (3.85) | 13 (50.00) | 1 (3.85) | 15 (57.69) |
| | 무변화자 | | 1 (3.85) | 2 (7.69) | | 3 (11.54) |
| | 하락자 | | 2 (7.69) | 5 (19.23) | 1 (3.85) | 8 (30.77) |
| | 전체 | | 4 (15.38) | 20 (76.92) | 2 (7.69) | 26 (100) |
| 형평 성 | 상승자 | | 1 (3.85) | 13 (50.00) | 5 (19.23) | 19 (73.08) |
| | 무변화자 | | 1 (3.85) | 1 (3.85) | | 2 (7.69) |
| | 하락자 | | 3 (11.54) | 2 (7.69) | | 5 (19.23) |
| | 전체 | | 5 (19.23) | 16 (61.54) | 5 (19.23) | 26 (100) |
| 검문 | 상승자 | | 1 (3.85) | 13 (50.00) | 2 (7.69) | 16 (61.54) |
| | 무변화자 | | | 1 (3.85) | | 1 (3.85) |
| | 하락자 | | 8 (30.77) | 1 (3.85) | | 9 (34.62) |
| | 전체 | | 9 (34.62) | 15 (57.69) | | 26 (100) |
| 동행 및 연행 | 상승자 | | 3 (11.54) | 10 (38.46) | 1 (3.85) | 14 (53.85) |
| | 무변화자 | | 2 (7.69) | 2 (7.69) | | 4 (15.38) |
| | 하락자 | | 4 (15.38) | 4 (15.38) | | 8 (30.77) |
| | 전체 | | 9 (34.62) | 16 (61.54) | 1 (3.85) | 26 (100) |
| 개인 정보 보호 및 수색 | 상승자 | | 3 (11.54) | 11 (42.31) | 4 (15.38) | 18 (69.23) |
| | 무변화자 | | 1 (3.85) | 2 (7.69) | | 3 (11.54) |
| | 하락자 | | 3 (11.54) | 2 (7.69) | | 5 (19.23) |
| | 전체 | | 7 (26.92) | 15 (57.69) | 4 (15.38) | 26 (100) |
| 진료 | 상승자 | | | 6 (23.08) | 1 (3.85) | 7 (26.92) |
| | 무변화자 | | 3 (11.54) | 1 (3.85) | | 4 (15.38) |
| | 하락자 | | 6 (23.08) | 9 (34.62) | | 15 (57.69) |
| | 전체 | | 9 (34.62) | 16 (61.54) | 1 (3.85) | 26 (100) |
| 전체 | 상승자 | | 3 (11.54) | 15 (57.69) | | 18 (69.23) |
| | 무변화자 | | 7 (26.92) | 1 (3.85) | | 8 (30.77) |
| | 하락자 | | | | | |
| | 전체 | | 10 (38.46) | 16 (61.54) | | 26 (100)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
(인권 주제별)

| 피교육자 | 일반 인권 주제 | |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 | | | | | | | 검사 전체 | |
|------|----------|-------|------------------------|-------|-------|------|-------|-------|-------|-------|-------|-------|-------|-------|-------|------|-------|-----|
| | | | 사생활 | | 인사 | | 채용 | | 노동 | | 복지 | | 성차별 | | 기타 | |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1 | 0.10 | 1.10 | 1.00 | 2.00 | 2.00 | 1.20 | 0.33 | 0.50 | 1.50 | 0.17 | 1.33 | 0.67 | 1.60 | 0.80 | 0.25 | 0.25 | 1.01 | .84 |
| 2 | -0.30 | 0.30 | 0.67 | 1.00 | 1.20 | 0.40 | 0.83 | -0.50 | 1.00 | -0.50 | 0.67 | 0.00 | 0.60 | 0.40 | 0.25 | 0.25 | .61 | .17 |
| 3 | 0.00 | -0.90 | 0.33 | 0.33 | 0.60 | 0.60 | 0.67 | 0.33 | 0.67 | -0.17 | 0.00 | -0.33 | 0.60 | 0.60 | 0.50 | 0.50 | .42 | .12 |
| 4 | 0.20 | 1.40 | 2.00 | 0.67 | 0.40 | 1.80 | -0.17 | 1.33 | -0.50 | -0.67 | 1.17 | 1.33 | 0.00 | 0.60 | 1.25 | 1.00 | .54 | .93 |
| 5 | -0.10 | 0.50 | -1.33 | 2.00 | 0.60 | 1.00 | 0.17 | 1.00 | 0.50 | -0.17 | 0.67 | 0.67 | -0.20 | 0.60 | 0.25 | 0.50 | .07 | .76 |
| 6 | 0.20 | -0.70 | -0.33 | 0.00 | 0.60 | 1.40 | -0.67 | -1.00 | 0.83 | -0.17 | 0.67 | 0.00 | 0.20 | 1.00 | 0.75 | 0.00 | .28 | .07 |
| 7 | -0.60 | -0.30 | 0.67 | 1.00 | 1.00 | 1.00 | 0.17 | 0.33 | -0.17 | 0.00 | 0.17 | 0.33 | 0.80 | 1.20 | 0.50 | 1.75 | .32 | .66 |
| 8 | -0.90 | 0.10 | 0.33 | 1.33 | 1.00 | 1.00 | -0.67 | 0.50 | 0.17 | 0.00 | -0.83 | -0.33 | 1.00 | 0.60 | -0.50 | 1.00 | -.05 | .53 |
| 9 | -0.30 | 0.70 | 0.00 | -1.00 | 1.00 | 0.80 | 0.17 | 1.17 | 0.00 | -0.67 | 0.17 | 0.33 | 1.20 | -1.20 | -0.25 | 0.25 | .25 | .05 |
| 10 | 0.00 | -0.30 | -0.33 | 0.67 | -0.40 | 1.00 | 0.50 | -0.33 | 0.50 | -0.17 | 0.67 | 0.67 | -0.60 | 0.40 | 0.50 | 0.00 | .10 | .24 |
| 11 | 0.40 | 0.60 | 0.33 | 1.00 | 1.60 | 0.40 | 0.83 | 0.83 | 1.00 | 0.00 | -0.33 | 0.33 | 0.80 | 0.80 | -0.75 | 0.50 | .49 | .56 |
| 12 | 0.10 | -0.40 | 0.00 | 2.00 | 1.00 | 0.80 | -0.33 | 0.00 | 1.17 | 0.00 | -0.17 | 0.67 | 0.60 | 0.60 | 0.00 | 1.00 | .30 | .58 |
| 전체 | -.10 | .18 | .28 | .92 | .88 | .95 | .15 | .35 | .56 | -.19 | .35 | .36 | .55 | .53 | .23 | .58 | .36 | .46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인권 주제별)

| 구분 | | 인권교육 후 변화자 유형 | | | | 전체 |
|----------------|------|---------------|-----------|------------|-----------|------------|
| | | 강한 침해 | 약한 침해 | 약한 옹호 | 강한 옹호 | |
| 일반 인권 주제 | 상승자 | | | 7 (58.33) | | 7 (58.33) |
| | 무변화자 | | | | | |
| | 하락자 | | 5 (41.67) | | | 5 (41.67) |
| | 전체 | | 5 (41.67) | 7 (58.33) | | 12 (100) |
| 사생활 | 상승자 | | | 6 (50.00) | 3 (25.00) | 9 (75.00) |
| | 무변화자 | | | 1 (8.33) | | 1 (8.33) |
| | 하락자 | | 1 (8.33) | 1 (8.33) | | 2 (16.67) |
| | 전체 | | 1 (8.33) | 8 (66.67) | 3 (25.00) | 12 (100) |
| 인사 | 상승자 | | | 3 (25.00) | 1 (8.33) | 4 (33.33) |
| | 무변화자 | | | 3 (25.00) | | 3 (25.00) |
| | 하락자 | | | 5 (41.67) | | 5 (41.67) |
| | 전체 | | | 11 (91.67) | 1 (8.33) | 12 (100) |
| 채용 | 상승자 | | | 7 (58.33) | | 7 (58.33) |
| | 무변화자 | | | 1 (8.33) | | 1 (8.33) |
| | 하락자 | | 3 (25.00) | 1 (8.33) | | 4 (33.33) |
| | 전체 | | 3 (25.00) | 9 (75.00) | | 12 (100) |
| 노동 | 상승자 | | | 1 (8.33) | | 1 (8.33) |
| | 무변화자 | | | | | |
| | 하락자 | | 7 (58.33) | 4 (33.33) | | 11 (91.67) |
| | 전체 | | 7 (58.33) | 5 (41.67) | | 12 (100) |
| 복지 | 상승자 | | | 5 (41.67) | | 5 (41.67) |
| | 무변화자 | | | 2 (16.67) | | 2 (16.67) |
| | 하락자 | | 2 (16.67) | 3 (25.00) | | 5 (41.67) |
| | 전체 | | 2 (16.67) | 10 (83.33) | | 12 (100) |
| 성차별 | 상승자 | | | 5 (41.67) | | 5 (41.67) |
| | 무변화자 | | | 3 (25.00) | | 3 (25.00) |
| | 하락자 | | 1 (8.33) | 3 (25.00) | | 4 (33.33) |
| | 전체 | | 1 (8.33) | 11 (91.67) | | 12 (100) |
| 기타 | 상승자 | | | 5 (41.67) | 1 (8.33) | 6 (50.00) |
| | 무변화자 | | | 3 (25.00) | | 3 (25.00) |
| | 하락자 | | | 3 (25.00) | | 3 (25.00) |
| | 전체 | | | 11 (91.67) | 1 (8.33) | 12 (100) |
| 전체 | 상승자 | | | 7 (58.33) | | 7 (58.33) |
| | 무변화자 | | | 5 (41.67) | | 5 (41.67) |
| | 하락자 | | | | | |
| | 전체 | | | 12 (100) | | 12 (100)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
(인권 주제별) -1

| 피교육자 | 일반 인권 주제 | | 시설 장애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 | | | | | | |
|------|----------|-------|----------------------|-------|----------|-------|--------|-------|-------|-------|------|-------|-------|------|------|-------|
| | | | 입소 자기결정권 | | 의사표현의 자유 | | 신체의 자유 | | 선택권 | | 교육권 | | 참정권 | | 가족권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1 | 0.00 | -0.10 | 1.00 | 2.00 | 1.00 | 1.67 | 0.80 | 0.80 | 0.00 | 0.83 | 0.00 | 0.50 | 0.00 | 2.00 | 1.67 | 0.00 |
| 2 | 0.10 | 0.80 | 2.00 | -1.00 | 1.00 | 0.67 | 2.00 | 1.60 | 0.67 | 0.67 | 0.50 | 0.50 | 0.00 | 0.50 | 2.00 | 1.67 |
| 3 | -0.20 | -0.10 | -1.00 | 1.00 | 0.67 | 1.00 | 1.40 | 0.80 | 0.33 | 0.17 | 1.00 | 0.00 | 0.50 | 1.00 | 1.00 | 0.67 |
| 4 | 0.30 | 0.80 | 2.00 | 2.00 | 1.00 | 0.00 | 1.00 | 1.40 | 0.50 | 1.50 | 1.50 | 0.00 | 1.50 | 2.00 | 1.00 | 0.00 |
| 5 | -1.20 | -0.90 | 1.00 | 1.00 | 1.33 | -0.33 | 1.60 | 0.20 | 0.50 | 0.33 | 0.50 | 1.50 | 0.50 | 2.00 | 1.33 | -0.33 |
| 6 | 0.30 | 0.20 | -1.00 | 1.00 | 1.67 | 1.67 | 1.80 | 1.40 | 0.83 | 0.83 | 2.00 | 1.50 | 1.50 | 1.00 | 2.00 | 1.33 |
| 7 | -0.50 | 0.20 | 1.00 | -2.00 | 0.33 | 2.00 | 0.40 | 1.40 | 0.83 | 1.17 | 1.00 | 1.50 | 2.00 | 2.00 | 2.00 | 1.00 |
| 8 | -0.70 | 0.80 | 2.00 | 2.00 | 1.00 | 2.00 | 2.00 | 2.00 | 0.33 | 1.33 | 2.00 | 2.00 | 2.00 | 2.00 | 1.67 | 2.00 |
| 9 | -0.30 | 0.10 | 1.00 | 2.00 | 2.00 | 1.00 | 1.80 | 2.00 | 0.33 | 1.50 | 1.50 | 2.00 | 2.00 | 2.00 | 1.00 | 2.00 |
| 10 | 0.00 | 0.20 | -1.00 | 1.00 | 1.67 | 1.33 | 1.20 | 1.00 | 0.33 | 0.83 | 1.50 | 2.00 | 0.50 | 2.00 | 2.00 | 1.33 |
| 11 | -0.80 | -0.60 | -1.00 | 1.00 | -0.33 | 0.33 | 0.60 | -0.20 | -0.33 | 0.33 | 1.50 | 0.00 | 1.00 | 0.00 | 0.67 | -0.33 |
| 12 | 0.50 | 0.20 | 2.00 | 1.00 | 2.00 | 1.67 | 1.40 | 1.40 | 0.83 | 1.00 | 1.00 | 1.50 | 0.00 | 1.50 | 1.67 | 1.33 |
| 13 | 0.10 | -0.30 | 1.00 | 1.00 | 0.33 | 1.67 | 1.20 | 0.00 | 0.67 | 0.83 | 0.50 | 1.50 | 1.50 | 1.50 | 1.67 | 1.33 |
| 14 | -0.10 | 0.90 | 1.00 | 1.00 | 1.67 | 2.00 | 1.20 | 1.80 | 0.67 | 1.33 | 0.50 | 2.00 | 2.00 | 2.00 | 2.00 | 2.00 |
| 15 | -0.30 | -0.40 | 1.00 | -1.00 | 0.00 | 0.33 | 0.60 | -0.60 | 0.50 | 0.00 | 0.00 | -1.00 | 0.50 | 1.00 | 0.00 | 0.33 |
| 16 | 0.10 | -0.20 | -1.00 | 2.00 | -0.33 | 1.33 | 0.20 | 0.00 | 0.50 | 0.17 | 1.50 | -1.00 | 0.50 | 0.00 | 2.00 | -1.00 |
| 17 | -1.10 | -0.60 | 1.00 | 1.00 | 0.67 | -0.33 | 0.40 | 0.00 | 0.17 | 0.17 | 0.00 | 1.00 | 1.00 | 1.00 | 0.00 | 1.67 |
| 18 | -0.10 | 0.30 | -1.00 | 1.00 | 1.00 | 1.00 | 1.40 | 1.80 | 1.00 | 1.17 | 1.50 | 2.00 | 1.50 | 2.00 | 1.67 | 1.00 |
| 19 | -0.30 | 0.10 | 1.00 | 2.00 | 1.67 | 1.00 | 1.60 | 1.00 | 0.33 | 0.67 | 0.00 | 1.50 | 1.50 | 1.00 | 1.67 | 0.67 |
| 20 | 0.20 | -0.20 | 2.00 | 1.00 | -1.00 | 0.33 | -0.20 | -1.00 | 0.17 | 0.00 | 1.00 | -1.00 | -0.50 | 0.00 | 0.33 | 0.33 |
| 21 | 0.20 | 0.00 | -1.00 | 2.00 | 2.00 | 1.33 | 1.60 | 2.00 | 1.17 | 1.00 | 2.00 | 2.00 | 2.00 | 2.00 | 2.00 | 1.67 |
| 22 | -0.70 | 0.20 | -1.00 | 1.00 | 0.33 | 1.33 | 0.60 | 0.80 | 0.33 | -0.33 | 0.00 | 0.00 | 1.00 | 0.50 | 1.33 | 0.00 |

| 피교육자 | 일반 인권 주제 | | 시설 장애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 | | | | | | |
|------|----------|-------|----------------------|-------|----------|------|--------|------|------|------|------|------|-------|------|------|-------|
| | | | 입소 자기결정권 | | 의사표현의 자유 | | 신체의 자유 | | 선택권 | | 교육권 | | 참정권 | | 가족권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23 | 0.50 | 0.70 | 1.00 | 2.00 | 0.00 | 1.67 | 1.80 | 1.40 | 1.50 | 0.83 | 1.00 | 2.00 | 0.50 | 1.50 | 2.00 | 1.33 |
| 24 | 0.10 | 0.40 | 2.00 | 2.00 | 1.33 | 1.67 | 1.40 | 1.60 | 1.17 | 1.00 | 1.50 | 2.00 | 1.50 | 2.00 | 2.00 | 1.67 |
| 25 | -0.80 | 0.60 | -1.00 | 2.00 | 1.00 | 1.33 | 1.40 | 1.80 | 0.50 | 1.00 | 1.50 | 2.00 | -0.50 | 1.50 | 1.33 | 0.67 |
| 26 | 0.50 | 0.30 | 2.00 | 2.00 | 2.00 | 1.67 | 2.00 | 2.00 | 1.33 | 1.33 | 2.00 | 2.00 | 0.50 | 1.50 | 2.00 | 1.67 |
| 27 | -0.40 | -0.40 | 2.00 | -1.00 | 0.67 | 0.67 | 1.40 | 0.60 | 1.33 | 1.33 | 2.00 | 2.00 | 0.00 | 0.50 | 2.00 | -1.00 |
| 28 | -0.20 | -0.20 | -1.00 | 1.00 | 1.33 | 1.67 | 1.40 | 0.80 | 0.33 | 0.83 | 1.00 | 1.00 | 1.50 | 1.50 | 1.67 | -0.33 |
| 전체 | 2.39 | 2.58 | 2.93 | 3.21 | 3.18 | 3.29 | 3.34 | 3.21 | 2.92 | 3.04 | 3.23 | 3.32 | 3.16 | 3.45 | 3.57 | 3.11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피교육자 개인별 사전, 사후평가 평균
(인권 주제별) -2

| 피교육자 | 시설 장애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 | | | | | 검사 전체 | |
|------|----------------------|-------|---------|-------|------------|-------|-------------|-------|--------|-------|-------|-------|-------|-------|
| | 경제권 및 노동권 | | 치료받을 권리 | | 의식주 생활의 권리 | | 인간존엄성 행복추구권 | | 종교의 자유 | | 사생활침해 | |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1 | 1.00 | 1.00 | 1.00 | -0.50 | 1.50 | 1.50 | 1.20 | 1.40 | 2.00 | 2.00 | 1.67 | 2.00 | 0.92 | 1.08 |
| 2 | 0.67 | 0.67 | 0.75 | 1.50 | 1.50 | 2.00 | 0.40 | 1.20 | 2.00 | 2.00 | 2.00 | 2.00 | 1.11 | 1.05 |
| 3 | 0.67 | 1.00 | 0.50 | 0.75 | 0.00 | 1.00 | 1.20 | 1.20 | 1.00 | 2.00 | 0.33 | 1.33 | 0.53 | 0.84 |
| 4 | 1.33 | 0.67 | 1.25 | 1.00 | 0.00 | 2.00 | 1.20 | 1.40 | 2.00 | 2.00 | 2.00 | 2.00 | 1.18 | 1.20 |
| 5 | 1.33 | 1.00 | -0.50 | -0.50 | 1.50 | 1.50 | 1.00 | 0.60 | 1.00 | 1.00 | 0.67 | 2.00 | 0.75 | 0.65 |
| 6 | 1.67 | 1.33 | 1.50 | 1.25 | 2.00 | 1.50 | 1.00 | 1.40 | 2.00 | 2.00 | 1.67 | 1.33 | 1.35 | 1.27 |
| 7 | 1.67 | 2.00 | -0.25 | 1.75 | 1.50 | 2.00 | 0.80 | 1.80 | -1.00 | 2.00 | 1.33 | 2.00 | 0.79 | 1.34 |
| 8 | 2.00 | 1.00 | 1.00 | 2.00 | 2.00 | 2.00 | 1.00 | 2.00 | 2.00 | 2.00 | 2.00 | 2.00 | 1.45 | 1.80 |
| 9 | 0.67 | 1.00 | 0.75 | 1.00 | 0.00 | 1.00 | 0.80 | 1.80 | 1.00 | 2.00 | 1.67 | 1.67 | 1.02 | 1.50 |
| 10 | 1.00 | 1.00 | 1.75 | 1.50 | 1.00 | 1.00 | 1.40 | 1.80 | 2.00 | 2.00 | 1.67 | 1.33 | 1.07 | 1.31 |
| 11 | 1.00 | -0.33 | 0.50 | -0.25 | -0.50 | 0.00 | 0.80 | -0.60 | 2.00 | -1.00 | -0.33 | -1.00 | 0.34 | -0.19 |
| 12 | 0.67 | 0.67 | 0.50 | 0.75 | 1.00 | 1.00 | 0.20 | 1.60 | 2.00 | 2.00 | 2.00 | 1.67 | 1.13 | 1.23 |
| 13 | 1.33 | 0.67 | 0.75 | 0.50 | 1.00 | 0.00 | 1.40 | 1.60 | 2.00 | 2.00 | 1.33 | 1.67 | 1.06 | 1.00 |
| 14 | 0.33 | 1.67 | 1.50 | 1.75 | 0.50 | 2.00 | 2.00 | 1.60 | 1.00 | 2.00 | 1.67 | 2.00 | 1.14 | 1.72 |
| 15 | 0.00 | 0.00 | -0.25 | 0.25 | -1.00 | -0.50 | 1.20 | 0.20 | -1.00 | 1.00 | 0.00 | -0.33 | 0.09 | -0.05 |
| 16 | 1.33 | -0.67 | 0.00 | 0.50 | 1.00 | -1.00 | -0.60 | 0.40 | 2.00 | 1.00 | 0.33 | 0.00 | 0.54 | 0.11 |
| 17 | 1.00 | 1.33 | 0.25 | 0.00 | -1.00 | 1.50 | 1.00 | 0.80 | -1.00 | 1.00 | 0.00 | 0.67 | 0.17 | 0.66 |

| 피교육자 | 시설 장애인 분야에 특수한 인권 주제 | | | | | | | | | | | | 검사 전체 | |
|------|----------------------|-------|---------|-------|------------|-------|-------------|-------|--------|-------|-------|-------|-------|-------|
| | 경제권 및 노동권 | | 치료받을 권리 | | 의식주 생활의 권리 | | 인간존엄성 행복추구권 | | 종교의 자유 | | 사생활침해 | | | |
|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사전 | 사후 |
| 18 | 1.00 | 1.33 | 1.00 | 1.75 | 0.00 | 1.50 | 1.00 | 0.80 | 2.00 | 2.00 | 2.00 | 2.00 | 1.00 | 1.40 |
| 19 | 1.67 | 0.33 | 0.75 | 0.00 | 1.50 | 0.50 | 0.80 | 1.20 | -1.00 | 2.00 | 1.67 | 1.67 | 0.92 | 0.97 |
| 20 | 1.00 | -0.33 | 0.00 | 0.00 | -1.00 | -1.00 | -1.20 | -0.20 | -1.00 | -1.00 | -0.33 | -0.33 | -0.04 | -0.24 |
| 21 | 2.00 | 1.67 | 1.00 | 1.75 | 1.00 | 2.00 | 1.60 | 1.80 | 2.00 | 2.00 | 2.00 | 2.00 | 1.40 | 1.66 |
| 22 | 0.33 | -0.33 | 0.00 | 0.25 | 1.00 | -1.00 | 0.60 | 0.20 | -1.00 | -1.00 | -0.33 | 1.33 | 0.18 | 0.21 |
| 23 | 1.33 | 1.00 | 1.50 | 2.00 | 1.50 | 1.50 | 1.00 | 1.40 | 1.00 | 2.00 | 0.67 | 1.33 | 1.09 | 1.48 |
| 24 | 1.67 | 1.67 | 0.00 | 1.75 | 1.50 | 1.50 | 1.20 | 1.80 | 2.00 | 2.00 | 2.00 | 2.00 | 1.38 | 1.65 |
| 25 | 1.67 | 1.33 | 0.75 | 0.25 | 0.00 | 2.00 | 0.60 | 1.80 | 1.00 | 2.00 | 1.33 | 1.67 | 0.63 | 1.43 |
| 26 | 2.00 | 1.67 | 1.50 | 1.00 | 2.00 | 2.00 | 1.20 | 1.80 | 2.00 | 2.00 | 2.00 | 2.00 | 1.65 | 1.64 |
| 27 | 1.67 | -0.33 | 0.25 | -0.75 | 0.00 | 1.00 | 0.40 | 1.20 | -1.00 | 2.00 | -1.00 | 1.67 | 0.67 | 0.53 |
| 28 | 1.00 | 1.67 | -1.00 | -0.25 | 0.00 | 2.00 | 1.40 | 0.80 | 2.00 | 2.00 | 1.00 | 1.67 | 0.75 | 1.01 |
| 전체 | 3.30 | 3.10 | 2.92 | 3.05 | 2.96 | 3.27 | 3.11 | 3.34 | 3.29 | 3.64 | 3.30 | 3.51 | 3.11 | 3.22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인권 주제별) -1

| 구분 | | 인권교육 후 변화자 유형 | | | | 전체 |
|-----------------|------|---------------|------------|------------|------------|------------|
| | | 강한 침해 | 약한 침해 | 약한 옹호 | 강한 옹호 | |
| 일반 인권 주체 | 상승자 | | 4 (14.29) | 13 (46.43) | | 17 (60.71) |
| | 무변화자 | | 2 (7.14) | | | 2 (7.14) |
| | 하락자 | | 5 (17.86) | 4 (14.29) | | 9 (32.14) |
| | 전체 | | 11 (39.29) | 17 (60.71) | | 28 (100) |
| 입소 자기 결정권 | 상승자 | | | 7 (25.00) | 7 (25.00) | 14 (50.00) |
| | 무변화자 | | | 4 (14.29) | 4 (14.29) | 8 (28.57) |
| | 하락자 | | 4 (14.29) | 2 (7.14) | | 6 (21.43) |
| | 전체 | | 4 (14.29) | 13 (46.43) | 11 (39.29) | 28 (100) |
| 의사 표현의 자유 | 상승자 | | | 7 (25.00) | 8 (28.57) | 15 (53.57) |
| | 무변화자 | | | 2 (7.14) | 1 (3.57) | 3 (10.71) |
| | 하락자 | | 2 (7.14) | 6 (21.43) | 2 (7.14) | 10 (35.71) |
| | 전체 | | 2 (7.14) | 15 (53.57) | 11 (39.29) | 28 (100) |
| 신체의 자유 | 상승자 | | | 3 (10.71) | 6 (21.43) | 9 (32.14) |
| | 무변화자 | | | 2 (7.14) | 2 (7.14) | 4 (14.29) |
| | 하락자 | | 3 (10.71) | 11 (39.29) | 1 (3.57) | 15 (53.57) |
| | 전체 | | 3 (10.71) | 16 (57.14) | 9 (32.14) | 28 (100) |
| 선택권 | 상승자 | | | 12 (42.86) | 2 (7.14) | 14 (50.00) |
| | 무변화자 | | | 5 (17.86) | | 5 (17.86) |
| | 하락자 | | 1 (3.57) | 8 (28.57) | | 9 (32.14) |
| | 전체 | | 1 (3.57) | 25 (89.29) | 2 (7.14) | 28 (100) |
| 교육권 | 상승자 | | | 2 (7.14) | 12 (42.86) | 14 (50.00) |
| | 무변화자 | | | 3 (10.71) | 4 (14.29) | 7 (25.00) |
| | 하락자 | | 3 (10.71) | 3 (10.71) | 1 (3.57) | 7 (25.00) |
| | 전체 | | 3 (10.71) | 8 (28.57) | 17 (60.71) | 28 (100) |
| 참정권 | 상승자 | | | 5 (17.86) | 10 (35.71) | 15 (53.57) |
| | 무변화자 | | | 1 (3.57) | 7 (25.00) | 8 (28.57) |
| | 하락자 | | | 5 (17.86) | | 5 (17.86) |
| | 전체 | | | 11 (39.29) | 17 (60.71) | 28 (100) |
| 가족권 | 상승자 | | | 1 (3.57) | 3 (10.71) | 4 (14.29) |
| | 무변화자 | | | 1 (3.57) | 1 (3.57) | 2 (7.14) |
| | 하락자 | | 4 (14.29) | 14 (14.29) | 4 (14.29) | 22 (78.57) |
| | 전체 | | 4 (14.29) | 16 (57.14) | 8 (28.57) | 28 (100) |
| 경제권 및 노동권 | 상승자 | | | 4 (14.29) | 3 (10.71) | 7 (25.00) |
| | 무변화자 | | | 5 (17.86) | 1 (3.57) | 6 (21.43) |
| | 하락자 | | 5 (17.86) | 8 (28.57) | 2 (7.14) | 15 (53.57) |
| | 전체 | | 5 (17.86) | 17 (60.71) | 6 (21.43) | 28 (100)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인권교육 실시 후 피교육자들의 변화 유형
(인권 주제별) -2

| 구분 | | 인권교육 후 변화자 유형 | | | | 전체 |
|------------------------|------|---------------|-----------|------------|------------|------------|
| | | 강한 침해 | 약한 침해 | 약한 옹호 | 강한 옹호 | |
| 치료 받을 권리 | 상승자 | | 1 (3.57) | 6 (21.43) | 8 (28.57) | 15 (53.57) |
| | 무변화자 | | 1 (3.57) | 1 (3.57) | | 2 (7.14) |
| | 하락자 | 1 (3.57) | 2 (7.14) | 7 (25.00) | 1 (3.57) | 11 (39.29) |
| | 전체 | 1 (3.57) | 4 (14.29) | 14 (50.00) | 9 (32.14) | 28 (100) |
| 의식주 생활의 권리 | 상승자 | | 1 (3.57) | 4 (14.29) | 9 (32.14) | 14 (50.00) |
| | 무변화자 | | 1 (3.57) | 2 (7.14) | 6 (21.43) | 9 (32.14) |
| | 하락자 | | 2 (7.14) | 2 (7.14) | 1 (3.57) | 5 (17.86) |
| | 전체 | | 4 (14.29) | 8 (28.57) | 16 (57.14) | 28 (100) |
|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 | 상승자 | | | 8 (28.57) | 10 (35.71) | 18 (64.29) |
| | 무변화자 | | | 1 (3.57) | | 1 (3.57) |
| | 하락자 | | 2 (7.14) | 6 (21.43) | 1 (3.57) | 9 (32.14) |
| | 전체 | | 2 (7.14) | 15 (53.57) | 11 (39.29) | 28 (100) |
| 종교의 자유 | 상승자 | | 1 (3.57) | 3 (10.71) | 8 (28.57) | 12 (42.86) |
| | 무변화자 | | 1 (3.57) | | 13 (46.43) | 14 (50.00) |
| | 하락자 | | 1 (3.57) | 1 (3.57) | | 2 (7.14) |
| | 전체 | | 3 (10.71) | 4 (14.29) | 21 (75.00) | 28 (100) |
| 사생활보 호 | 상승자 | | | 4 (14.29) | 8 (28.57) | 12 (42.86) |
| | 무변화자 | | | | 9 (32.14) | 9 (32.14) |
| | 하락자 | | 3 (10.71) | 3 (10.71) | 1 (3.57) | 7 (25.00) |
| | 전체 | | 3 (10.71) | 7 (25.00) | 18 (64.29) | 28 (100) |
| 전체 | 상승자 | | | 13 (46.43) | 5 (17.86) | 18 (64.29) |
| | 무변화자 | | | | | |
| | 하락자 | | 2 (7.14) | 8 (28.57) | | 10 (35.71) |
| | 전체 | | 2 (7.14) | 21 (75.00) | 5 (17.86) | 28 (100) |

[부록 8] 검사 매뉴얼

<교사> 분야 검사 실시자를 위한 매뉴얼

1. 검사 실시의 목적 및 취지

본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검사 참여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 참여자들의 지금 현재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그와 동시에 검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및 사례들을 선정하여 문항화 하였습니다.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해 검사 참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고 체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대상

본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두 9개 공공분야, 즉 경찰, 군인, 교사,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시설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입니다.

3. 검사의 구성

본 검사는 9개 분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문항(완성형 검사 20문항, 간편형 검사 10문항)과 각 분야에 특수한 특수문항(완성형 검사 40문항, 간편형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해 검사 참여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문항번호를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공통문항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로는 법 앞의 평등, 국적선택의 권리, 성차별, 연고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권, 성적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질병에 따른 차별, 사생활 보호, 인격존중, 소수의 권리, 민원인의 권리, 순응주의, 알 권리, 인간의 존엄성, 기본생활권이 있습니다.

교사 분야의 문항 구성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교사 분야의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정당성을 잃은 학교규율 | 4 | 21 | 30 | - |
| | | | 27 | 54 | - |
| | 51 | | 60 | - | |
| | 언어폭력 | | 22 | 59 | - |
| 차별금지 | 일반적 사항에 따른 차별 | 6 | 24 | 57 | + |
| | 성적 차별 | | 31 | 50 | - |
| | 성별 차별 | | 45 | 36 | - |
| | 빈곤학생에 대한 차별 | | 41 | 40 | - |
| |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 | 53 | 21 | - |
| | | | 60 | 28 | + |
| 교육에 대한 권리 |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 5 | 25 | 42 | - |
| | | | 36 | 45 | - |
| | | | 39 | 56 | - |
| |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 | 26 | 38 | - |
| | | | 43 | 55 | - |
| 학생 자치와 참여권 |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 제한 | 2 | 28 | 53 | + |
| | 동아리 활동 규제 | | 48 | 33 | - |
| 신체의 자유 | 모욕적인 처우 | 2 | 29 | 31 | - |
| | | | 50 | 52 | - |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양심에 반하는 서약의 강요 | 2 | 30 | 51 | - |
| | 종교 강요 | | 37 | 44 | - |
| 표현의 자유 | 복장과 두발 제한 | 5 | 38 | 26 | - |
| | | | 55 | 43 | - |
| | 매체 활동에 대한 규제 | | 40 | 23 | - |
| | | | 42 | 39 | - |
| | | | 58 | 41 | - |
|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 사적기록물에 대한 침해 | 7 | 44 | 35 | - |
| | | | 46 | 37 | - |

| 이슈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보호 |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 | 33 | 34 | - |
| | | | 47 | 48 | - |
| | 개인 정보 침해 | | 49 | 29 | - |
| | 감시 장비의 설치 | | 52 | 32 | - |
| | | | 23 | 58 | - |
| 정보접근권 |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 2 | 54 | 27 | + |
| | 참여를 위한 정보 | | 35 | 46 | + |
| 건강권 | 보건실 운영 | 1 | 56 | 25 | - |
|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 정당성을 벗어난 징계 | 4 | 32 | 24 | - |
| | | | 34 | 47 | - |
| | 57 | | 49 | + | |
| |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 | | 59 | 22 | - |

<표> 교사 분야의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 정당성을 잃은 학교규율 | 2 | 11 | 30 | - |
| | 언어폭력 | | 22 | 29 | - |
| 차별금지 | 성별 차별 | 3 | 26 | 15 | - |
| | 빈곤학생에 대한 차별 | | 25 | 16 | - |
| |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 | 29 | 12 | - |
| 교육에 대한 권리 | 교육목표를 벗어난 활동 | 2 | 14 | 27 | - |
| |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 | 15 | 26 | - |
| 학생 자치와 참여권 |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 제한 | 2 | 16 | 25 | + |
| | 동아리 활동 규제 | | 27 | 14 | - |
| 신체의 자유 | 모욕적인 처우 | 1 | 17 | 24 | - |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양심에 반하는 서약의 강요 | 2 | 18 | 23 | - |
| | 종교 강요 | | 22 | 19 | - |
| 표현의 자유 | 복장과 두발 제한 | 2 | 23 | 18 | - |
| | 매체 활동에 대한 규제 | | 24 | 17 | - |
|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 소지품과 공간에 대한 침해 | 3 | 20 | 22 | - |
| | 개인 정보 침해 | | 28 | 13 | - |
| | 감시 장비의 설치 | | 13 | 28 | - |
| 정보접근권 | 자기 정보에 대한 접근 | 2 | 30 | 11 | - |
| | 참여를 위한 정보 | | 21 | 20 | + |
|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 정당성을 벗어난 징계 | 1 | 19 | 21 | - |

4. 검사 실시방법

검사실시자가 유의해야 할 검사 실시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완성형 검사는 25분, 간편형 검사는 15분 정도입니다. 본 검사는 속도검사가 아니지만, 교육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검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준비물은 검사지, 필기도구입니다.
- 검사 참여자들이 본 검사의 목적 및 취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 본 검사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각 문항을 풀면서 솔직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응답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솔직하고 성의껏 응답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 주십시오.
- 보기를 중복해서 고르거나, 답안을 빈 칸으로 남기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개개인이 인권교육 전, 후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전, 사후 검사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5. 검사의 채점 방법 및 해석

- 검사 결과를 채점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코딩한 후 SPSS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 및 집단별 평균, 빈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 4단계 척도에 대한 척도치 부여는 ‘강한 반대=-2’, ‘약한 반대=-1’, ‘약한 찬성=1’, ‘강한 찬성=2’입니다.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강한 침해’는 ‘평균 -1.5 이하’, ‘약한 침해’는 ‘평균 0이하~-1.5 미만’, ‘약한 옹호’는 ‘0이상~1.5 미만’, ‘강한 옹호’는 ‘1.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집단 분석에서는 사전, 사후 평균을 산출하고, 개인별 분석에서는 개인별 사전, 사후 평균 산출 후 인권옹호 대 인권침해 비율과 상승, 하락, 무변화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통문항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의 문항 구성표 및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는 정 문항, ‘-’는 역문항임을 의미합니다.

교사 분야의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교사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군인> 분야 검사 실시자를 위한 매뉴얼

1. 검사 실시의 목적 및 취지

본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검사 참여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 참여자들의 지금 현재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그와 동시에 검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및 사례들을 선정하여 문항화 하였습니다.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해 검사 참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고 체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대상

본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두 9개 공공분야, 즉 경찰, 군인, 교사,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시설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입니다.

3. 검사의 구성

본 검사는 9개 분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문항(완성형 검사 20문항, 간편형 검사 10문항)과 각 분야에 특수한 특수문항(완성형 검사 40문항, 간편형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해 검사 참여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문항번호를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공통문항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로는 법 앞의 평등, 국적선택의 권리, 성차

별, 연고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권, 성적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질병에 따른 차별, 사생활 보호, 인격존중, 소수의 권리, 민원인의 권리, 순응주의, 알 권리, 인간의 존엄성, 기본생활권이 있습니다.

군인 분야의 문항 구성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군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문항 |
|------------------------|--------------|-----|------|----|-------|
| | | | 전 | 후 | |
| 인격적 존엄 및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 | 구타 | 8 | 27 | 54 | - |
| | 가혹행위 | | 34 | 47 | - |
| | 언어폭력 | | 21 | 60 | - |
| | 단체기합 | | 22 | 59 | - |
| | 성희롱 | | 31 | 50 | - |
| | 압기강요 | | 23 | 58 | - |
| | 왕따 | | 24 | 57 | - |
| | 성적 농담 | | 25 | 56 | - |
| 사적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 | 사적 제재 | 3 | 26 | 33 | - |
| | | | 40 | 41 | - |
| | | | 48 | 55 | - |
|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부당 수사 | 3 | 33 | 48 | - |
| | 징계권 남용 | | 36 | 45 | - |
| | 적법절차 무시 | | 39 | 42 | - |
| 사생활의 비밀 유지 권리 | 신상명세 공개 | 6 | 49 | 32 | - |
| | 우편물 공개 | | 41 | 40 | - |
| | 영창 내 감시카메라 | | 45 | 36 | - |
| | 사생활 말하기 강요 | | 51 | 30 | - |
| | 영장 없는 압수 수색 | | 42 | 39 | - |
| | 사생활 공간 미보장 | | 44 | 37 | - |
| 통신의 자유 | 휴대폰 소지 금지 | 4 | 56 | 25 | - |
| 사상·양심의 자유 | 특정 종교 강요 | | 53 | 28 | - |
| | 양심적 병역 거부 | 32 | 49 | - | |
| | 사상의 자유 침해 | 59 | 22 | -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군인 차별 | 6 | 28 | 53 | - |
| | 동성애자 차별 | | 30 | 26 | - |
| | | | 47 | 34 | - |
| | | | 55 | 51 | - |
| | 신분·계급에 따른 차별 | | 38 | 43 | - |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문항 |
|------------------------|-------------|-----|------|----|-------|
| | | | 전 | 후 | |
| | 출신배경에 따른 차별 | | 43 | 38 | - |
| 인사소청권, 의견건의권, 고충처리권 | 의견 건의 위반 | 4 | 29 | 52 | - |
| | 소원수리제도 위반 | | 46 | 23 | - |
| | | | 50 | 31 | - |
| | | | 58 | 35 | - |
| 일과 휴식의 권리 | 휴가권 침해 | 3 | 52 | 29 | - |
| | 휴식권 침해 | | 35 | 46 | - |
| | 월급 문제 | | 54 | 27 | - |
| 의료권 | 의료접근권 침해 | 2 | 57 | 24 | - |
| | 부정확한 진료 | | 37 | 44 | - |
| 의식주 및 환경권 | 열악한 복무여건 | 1 | 60 | 21 | - |

<표> 군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주제)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문항 |
|--------------------------|--------------|-----|------|----|-------|
| | | | 전 | 후 | |
| 인격적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받을 권리 | 구타 | 4 | 14 | 27 | - |
| | 가혹행위 | | 18 | 23 | - |
| | 언어폭력 | | 11 | 30 | - |
| | 단체기합 | | 12 | 29 | - |
| 사적 제재를 받지 않을 권리 | 사적 제재 | 1 | 13 | 28 | - |
|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부당 수사 | 2 | 17 | 24 | - |
| | 징계권 남용 | | 20 | 21 | - |
| 사생활의 비밀 유지 권리 | 우편물 공개 | 3 | 23 | 18 | - |
| | 사생활 말하기 강요 | | 26 | 15 | - |
| | 영장 없는 압수 수색 | | 24 | 17 | - |
| 사상·양심의 자유 | 특정 종교 강요 | 2 | 28 | 13 | - |
| | 사상의 자유 침해 | | 30 | 11 | - |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동성애자 차별 | 2 | 16 | 25 | - |
| | 신분·계급에 따른 차별 | | 22 | 19 | - |
| 인사소청권, 의견건의권, 고충처리권 | 의견 건의 위반 | 2 | 15 | 26 | - |
| | 소원수리제도 위반 | | 25 | 16 | - |
| 일과 휴식의 권리 | 휴가권 침해 | 2 | 27 | 14 | - |
| | 휴식권 침해 | | 19 | 22 | - |
| 의료권 | 의료접근권 침해 | 2 | 29 | 12 | - |
| | 부정확한 진료 | | 21 | 20 | - |

4. 검사 실시방법

검사실시자가 유의해야 할 검사 실시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완성형 검사는 25분, 간편형 검사는 15분 정도입니다. 본 검사는 속도검사가 아니지만, 교육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검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준비물은 검사지, 필기도구입니다.
- 검사 참여자들이 본 검사의 목적 및 취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 본 검사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각 문항을 풀면서 솔직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응답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솔직하고 성의껏 응답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 주십시오.
- 보기를 중복해서 고르거나, 답안을 빈 칸으로 남기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개개인이 인권교육 전, 후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전, 사후 검사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5. 검사의 채점 방법 및 해석

- 검사 결과를 채점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코딩한 후 SPSS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 및 집단별 평균, 빈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 4단계 척도에 대한 척도치 부여는 ‘강한 반대=-2’, ‘약한 반대=-1’, ‘약한 찬성=1’, ‘강한 찬성=2’입니다.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강한 침해’는 ‘평균 -1.5 이하’, ‘약한 침해’는 ‘평균 0이하~-1.5 미만’, ‘약한 옹호’는 ‘0이상~1.5 미만’, ‘강한 옹호’는 ‘1.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집단 분석에서는 사전, 사후 평균을 산출하고, 개인별 분석에서는 개인별 사전, 사후 평균 산출 후 인권옹호 대 인권침해 비율과 상승, 하락, 무변화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통문항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의 문항 구성표 및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는 정 문항, ‘-’는 역문항임을 의미합니다.

군인 분야의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군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 분야> 검사 실시자를 위한 매뉴얼

1. 검사 실시의 목적 및 취지

본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검사 참여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 참여자들의 지금 현재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그와 동시에 검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및 사례들을 선정하여 문항화 하였습니다.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해 검사 참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고 체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대상

본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두 9개 공공분야, 즉 경찰, 군인, 교사,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시설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입니다.

3. 검사의 구성

본 검사는 9개 분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문항(완성형 검사 20문항, 간편형 검사 10문항)과 각 분야에 특수한 특수문항(완성형 검사 40문항, 간편형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 검사 참여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문항번호를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공통문항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로는 법 앞의 평등, 국적선택의 권리, 성차

별, 연고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권, 성적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질병에 따른 차별, 사생활 보호, 인격존중, 소수의 권리, 민원인의 권리, 순응주의, 알 권리, 인간의 존엄성, 기본생활권이 있습니다.

노인 분야의 문항 구성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노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사 전 | 사 후 | |
| 보건의료 서비스 | 물리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 5 | 21 | 60 | - |
| | 어르신들의 추가 약물 요구 | | 33 | 48 | - |
| | 와상 노인의 체위 변경 | | 42 | 39 | - |
| | 치료진과 보호자의 견해 차이 | | 50 | 31 | - |
| | 어르신들과 보호자의 외부 약물 복용 요구 | | 57 | 24 | - |
| 영양 및 급식 서비스 | 고도비만, 고혈압 환자에 대한 음식 섭취 제재 | 5 | 22 | 59 | + |
| |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특별식 제공 | | 34 | 47 | + |
| | 저염식 식사 | | 43 | 38 | + |
| |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 | | 51 | 30 | - |
| | 식사 시간제한 | | 58 | 23 | - |
| 위생 및 청결 서비스 | 기저귀 교체시 정서적 교감 | 4 | 23 | 58 | + |
| | 배변 활동 지원 | | 35 | 46 | - |
| | 양치 서비스 | | 44 | 37 | - |
| | 같은 방에 있는 노인들로 인한 냄새 | | 45 | 36 | - |
|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 | 동료 노인들의 중증 증세로 인한 취침 방해 | 4 | 24 | 57 | - |
| | 동료노인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쾌적하지 않음 | | 36 | 45 | - |
| | 안전을 위한 문단속 | | 52 | 29 | + |
| | 치매노인의 안전을 위한 목걸이 착용 | | 53 | 28 | - |
| 사생활 보호 | 목욕하러 가기 전과 후에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체 노출 | 4 | 25 | 56 | - |
| | 상담내용 공개 | | 37 | 44 | - |
| | 기저귀 갈 때 커튼을 치지 않음 | | 46 | 35 | - |
| | 시청을 원치 않을 때에도 텔레비전 시청을 해야 하는 경우 | | 59 | 22 | - |
| 동료 노인들에게 존중받을 | 동료 노인들끼리 서로 놀림 | 4 | 26 | 55 | - |
| |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을 괴롭힘 | | 38 | 43 | + |
| | 건강한 노인이 약한 노인을 괴롭힘 | | 47 | 34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사 전 | 사 후 | |
| 권리 | 중사자들 몰래 일어나는 괴롭힘 | | 54 | 27 | + |
| 신체적, 언어적, 재정적 학대 | 폭력적인 노인을 방에 가두어 통제 | 4 | 27 | 54 | - |
| | 반말 및 놀리는 말 | | 39 | 42 | - |
| | 사소한 요청에 대해 세심하게 반응하지 않음 | | 48 | 33 | - |
| | 자녀들이 어르신들의 재산을 사용하고 시설비용도 제공하지 않음 | | 55 | 26 | - |
| 통신, 소통의 자유 | 보호자들이 바쁘다고 방문을 피함 | 1 | 28 | 53 | - |
| 알 권리 | 시설 서비스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1 | 29 | 52 | + |
| 의복서비스 | 겨울철에 내복 제공하기 | 1 | 30 | 51 | - |
| 노동권 및 재산권 | 잔존능력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에 당사자의 동의 구하기 | 2 | 31 | 50 | + |
| | 노인의 통장 잔고 확인해 주기 | | 40 | 41 | + |
| 정치적 자유권 | 부재자 투표 | 2 | 32 | 49 | + |
| |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 | | 56 | 25 | - |
| 종교적 자유권 | 시설의 특정 종교 강요 | 1 | 41 | 40 | - |
| 문화생활권 | 텔레비전 시청 시간 | 2 | 49 | 32 | - |
|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 | 60 | 21 | - |

<표> 노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사 전 | 사 후 | |
| 보건의료 서비스 | 어르신들의 추가 약물 요구 | 3 | 11 | 30 | - |
| | 와상 노인의 체위 변경 | | 19 | 22 | - |
| | 치료진과 보호자의 견해 차이 | | 26 | 15 | - |
| 영양 및 급식 서비스 |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한 특별식 제공 | 3 | 12 | 29 | + |
| |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 | | 20 | 21 | - |
| | 식사 시간제한 | | 27 | 14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사 전 | 사 후 | |
| 위생 및 청결 서비스 | 배변 활동 지원 | 2 | 13 | 28 | - |
| | 같은 방에 있는 노인들로 인한 냄새 | | 21 | 20 | - |
| 사생활 보호 | 상담내용 공개 | 2 | 14 | 27 | - |
| | 기저귀 갈 때 커튼을 치지 않음 | | 22 | 19 | - |
| 동료 노인들에게 존중받을 권리 | 동료 노인들끼리 서로 놀림 | 2 | 15 | 26 | - |
| |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을 괴롭힘 | | 23 | 18 | + |
| 학대 | 폭력적인 노인을 방에 가두어 통제 | 2 | 16 | 25 | - |
| | 반말 및 놀리는 말 | | 24 | 17 | - |
|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 | 안전을 위한 문단속 | 1 | 17 | 24 | + |
| 알 권리 | 시설 서비스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1 | 18 | 23 | + |
| 의복 서비스 | 겨울철에 내복 제공하기 | 1 | 25 | 16 | - |
| 노동권 | 잔존능력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에 당사자의 동의 구하기 | 1 | 28 | 13 | + |
| 정치적 자유권 | 부재자 투표 | 1 | 29 | 12 | + |
| 문화생활권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 | 1 | 30 | 11 | - |

4. 검사 실시방법

검사실시자가 유의해야 할 검사 실시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완성형 검사는 25분, 간편형 검사는 15분 정도입니다. 본 검사는 속도검사가 아니지만, 교육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검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준비물은 검사지, 필기도구입니다.
- 검사 참여자들이 본 검사의 목적 및 취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 본 검사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각 문항을 풀면서 솔직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응답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솔직하고 성의껏 응답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 주십시오.

■ 보기를 중복해서 고르거나, 답안을 빈 칸으로 남기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개개인이 인권교육 전, 후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전, 사후 검사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5. 검사의 채점 방법 및 해석

- 검사 결과를 채점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코딩한 후 SPSS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 및 집단별 평균, 빈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 4단계 척도에 대한 척도치 부여는 ‘강한 반대=-2’, ‘약한 반대=-1’, ‘약한 찬성=1’, ‘강한 찬성=2’입니다.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강한 침해’는 ‘평균 -1.5 이하’, ‘약한 침해’는 ‘평균 0이하~-1.5 미만’, ‘약한 옹호’는 ‘0이상~1.5 미만’, ‘강한 옹호’는 ‘1.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집단 분석에서는 사전, 사후 평균을 산출하고, 개인별 분석에서는 개인별 사전, 사후 평균 산출 후 인권옹호 대 인권침해 비율과 상승, 하락, 무변화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통문항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의 문항 구성표 및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는 정 문항, ‘-’는 역문항임을 의미합니다.

노인 분야의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노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정신장애인 분야> 검사 실시자를 위한 매뉴얼

1. 검사 실시의 목적 및 취지

본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검사 참여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 참여자들의 지금 현재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그와 동시에 검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및 사례들을 선정하여 문항화 하였습니다.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해 검사 참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고 체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대상

본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두 9개 공공분야, 즉 경찰, 군인, 교사,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시설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입니다.

3. 검사의 구성

본 검사는 9개 분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문항(완성형 검사 20문항, 간편형 검사 10문항)과 각 분야에 특수한 특수문항(완성형 검사 40문항, 간편형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해 검사 참여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문항번호를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공통문항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로는 법 앞의 평등, 국적선택의 권리, 성차

별, 연고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권, 성적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질병에 따른 차별, 사생활 보호, 인격존중, 소수의 권리, 민원인의 권리, 순응주의, 알 권리, 인간의 존엄성, 기본생활권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분야의 문항 구성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정신장애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사 전 | 사 후 | |
|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 보호의무자의 재입원 요구에 따른 다른 병원 입원 | 5 | 21 | 60 | - |
| | 사설 이송 단체를 통한 강제 이송 | | 35 | 46 | - |
| | 자의입원 여부 | | 48 | 33 | - |
| | 시설 직원이 보호의무자로 서류 작성 | | 56 | 25 | - |
| | 응급실에서 정신과 전공의에 견해에 따라 입원시킴 | | 60 | 21 | - |
|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 사회적 편견을 의식한 보호자들의 치료 반대 | 3 | 22 | 59 | - |
|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의와의 상담 부족 | | 36 | 45 | - |
| | 보호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한 | | 49 | 32 | - |
| 신체적 안전 | 방장의 구타 | 4 | 23 | 58 | - |
| | 환자들끼리의 싸움을 통제하기 위한 강박 실시 | | 37 | 44 | - |
| |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하에서의 강박 | | 50 | 31 | - |
| | 공격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물리적 폭력 | | 57 | 24 | - |
| 적절한 식생활 보장 | 원활한 단체 식사를 위한 식사 시간제한 | 2 | 24 | 57 | - |
| | 일반 보험환자와 저소득층 의료 급여 환자 사이의 급식 차별 | | 38 | 43 | - |
|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 파손 방지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지 않음 | 3 | 25 | 56 | - |
| | 격리실 내부의 위생 상태 | | 39 | 42 | - |
| | 중증 환자로 인한 취침의 어려움 | | 51 | 30 | - |
| 사생활 보호 |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 진단서 발급 | 3 | 26 | 55 | - |
| | 화장실 및 샤워실에 CCTV 설치 | | 40 | 41 | - |
| | 보호자의 반대에 따라 이성 교체 제한함 | | 52 | 29 | - |
| 통신, 의사소통의 자유 | 건의함과 진정함을 병행하여 사용함 | 4 | 27 | 54 | - |
| | 가족들과의 접촉 제한 | | 41 | 40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사 전 | 사 후 | |
| | 공중전화 설치 및 사용 | | 53 | 28 | - |
| | 휴대폰 사용 제한 | | 58 | 23 | - |
| 외출의 자유 | 안전을 위해 외출 제한 | 2 | 28 | 53 | - |
| | 증상이 경미한 경우 외출 권장 | | 42 | 39 | + |
| 자유로운 노동권 및 경제권 | 작업 치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 3 | 29 | 52 | - |
| | 작업에 대한 낮은 임금 | | 43 | 38 | - |
| | 정기적인 수입을 스스로 관리하게 함 | | 54 | 27 | - |
| 알 권리 | 병원 생활과 권리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2 | 30 | 51 | - |
| | 병명과 치료 프로그램 계획 등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 44 | 37 | - |
| 적절한 의복 | 일률적으로 동일한 의복 착용 | 1 | 31 | 50 | |
| 여가 및 문화생활권 | 취침시간과 텔레비전 시청 요청 | 3 | 32 | 49 | |
| | 문화 프로그램 참여 강요 | | 45 | 36 | |
| | 산책과 운동을 위한 공간 확보 | | 55 | 26 | |
| 정치의 자유 | 투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참여 독려 | 2 | 33 | 48 | |
| |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권유 | | 46 | 35 | |
| 종교의 자유 |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시설에서의 종교적 자유 | 2 | 34 | 47 | |
| | 시설 내의 동료 환자들 사이의 종교적 갈등 | | 47 | 34 | |
| 기타 | 시군구의 보호의무자 역할 | 1 | 59 | 22 | |

<표> 정신장애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사 전 | 사 후 | |
| 입퇴원 및 계속입원, 전원 과정에서의 | 보호의무자의 재입원 요구에 따른 다른 병원 입원 | 3 | 11 | 30 | - |
| | 시설 이송 단체를 통한 강제 이송 | | 21 | 20 | - |
| | 자의입원 여부 | | 28 | 13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사 전 | 사 후 | |
| 자기결정권 | | | | | |
|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 사회적 편견을 의식한 보호자들의 치료 반대 | 3 | 12 | 29 | - |
|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의와의 상담 부족 | | 22 | 19 | - |
| | 보호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한 | | 29 | 12 | - |
| 신체적 안전 | 환자들끼리의 싸움을 통제하기 위한 강박 실시 | 2 | 13 | 28 | - |
| | 정신과 전문의 지시 하에서의 강박 | | 23 | 18 | - |
| 적절한 식생활 보장 | 원활한 단체 식사를 위한 식사 시간제한 | 2 | 14 | 27 | - |
| | 일반 보험환자와 저소득층 의료 급여 환자 사이의 급식 차별 | | 24 | 17 | - |
| 사생활 보호 | 환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 진단서 발급 | 2 | 16 | 25 | - |
| | 화장실 및 샤워실에 CCTV 설치 | | 25 | 16 | - |
| 외출의 자유 | 안전을 위해 외출 제한 | 2 | 17 | 24 | - |
| | 증상이 경미한 경우 외출 권장 | | 26 | 15 | + |
|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및 생활공간 | 중증 환자로 인한 취침의 어려움 | 1 | 27 | 14 | - |
| 통신, 의사소통의 자유 | 건의함과 진정함을 병행하여 사용함 | 1 | 18 | 23 | - |
| 노동권 | 작업 치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 1 | 19 | 22 | - |
| 알 권리 | 병원 생활과 권리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함 | 1 | 20 | 21 | - |
| 여가 및 문화 생활권 | 산책과 운동을 위한 공간 확보 | 1 | 30 | 11 | - |
| 기타 | 시군구의 보호의무자 역할 | 1 | 15 | 26 | - |

4. 검사 실시방법

검사실시자가 유의해야 할 검사 실시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완성형 검사는 25분, 간편형 검사는 15분 정도입니다. 본 검사는 속도검사가 아니지만, 교육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검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준비물은 검사지, 필기도구입니다.
- 검사 참여자들이 본 검사의 목적 및 취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 본 검사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각 문항을 풀면서 솔직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응답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솔직하고 성의껏 응답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 주십시오.
- 보기를 중복해서 고르거나, 답안을 빈 칸으로 남기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개개인이 인권교육 전, 후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전, 사후 검사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5. 검사의 채점 방법 및 해석

- 검사 결과를 채점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코딩한 후 SPSS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 및 집단별 평균, 빈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 4단계 척도에 대한 척도치 부여는 ‘강한 반대=-2’ ‘약한 반대=-1’, ‘약한 찬성=1’, ‘강한 찬성=2’입니다.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강한 침해’는 ‘평균 -1.5 이하’, ‘약한 침해’는 ‘평균 0이하~-1.5 미만’, ‘약한 옹호’는 ‘0이상~1.5 미만’, ‘강한 옹호’는 ‘1.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집단 분석에서는 사전, 사후 평균을 산출하고, 개인별 분석에서는 개인별 사전, 사후 평균 산출 후 인권옹호 대 인권침해 비율과 상승, 하락, 무변화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통문항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의 문항 구성표 및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는 정 문항, ‘-’는 역문항임을 의미합니다.

정신장애인 분야의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정신장애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성형 검사 | 사전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아동> 분야 검사 실시자를 위한 매뉴얼

1. 검사 실시의 목적 및 취지

본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검사 참여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 참여자들의 지금 현재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그와 동시에 검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및 사례들을 선정하여 문항화 하였습니다.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해 검사 참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고 체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대상

본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두 9개 공공분야, 즉 경찰, 군인, 교사,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시설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입니다.

3. 검사의 구성

본 검사는 9개 분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문항(완성형 검사 20문항, 간편형 검사 10문항)과 각 분야에 특수한 특수문항(완성형 검사 40문항, 간편형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해 검사 참여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문항번호를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공통문항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로는 법 앞의 평등, 국적선택의 권리, 성차별, 연고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권, 성적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질병에 따른 차별, 사생활 보호, 인격존중, 소수의 권리, 민원인의 권리, 순응주의, 알 권리, 인간의 존엄성, 기본생활권이 있습니다.

시설 아동 분야의 문항 구성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시설 아동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권리 | 이슈 | 사례 | 문항수 | 문항번호 | | 정·역문항 |
|---------------|-------------------------------|------------------------------|-----|------|----|-------|
| | | | | 사전 | 사후 | |
| 아동의 생존권 | 식생활 | 단체 식단 | 2 | 21 | 60 | - |
| | | 간식문제 | | 22 | 59 | - |
| | 주생활 | 잠자는 시간제한. | 3 | 23 | 58 | - |
| | | 연령에 따른 숙소배정 | | 37 | 44 | + |
| | | 방의 질서를 유지와 방장의 권한 | | 28 | 53 | - |
| | 의료/위생 | 시설의 재정이 부족으로 인한 의료부족 | 3 | 25 | 56 | - |
| 응급처치할 때 약의 남용 | | 26 | | 55 | - | |
| 아동의 약물에 대한 교육 | | 27 | | 54 | - | |
| 보호받을 권리 | 별 | 아동의 체벌문제 | 1 | 24 | 57 | - |
| | 특별한 아동 보호 | 소외아동에 대한 대처 | 5 | 29 | 52 | - |
| | | 학습장애아동에 대한 대처 | | 34 | 47 | - |
| | | 영유아의 욕구 | | 31 | 50 | - |
| | | 학대받은 경험이나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한 편견 | | 57 | 24 | - |
| | | 문제 아동들의 격리 생활보호사의 처리문제 | | 50 | 31 | - |
| 귀가 문제 | 아동의 귀가시간 제한 문제 | 1 | 30 | 51 | + | |
| 의사소통문제 | 아동의 시설 내 전화사용 및 가족, 직원과 대화 문제 | 1 | 43 | 38 | - | |
| 발달권 | 교육권 | 상급학교의 진학 문제 | 4 | 32 | 49 | - |
| | | 개별지도의 문제 | | 33 | 48 | - |
| | | 아동의 학교 내의 동아리활동이나 특별활동 | | 35 | 46 | - |
| | | 시설 내에 컴퓨터, 인터넷사용의 제한 | | 40 | 41 | - |
| | 친구관계 | 친구관계의 제한 | 1 | 36 | 45 | - |

| 권리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 사전 | 사후 | |
| | 문화적 권리 | 단체 활동으로서의 영화관람 | 2 | 38 | 43 | - |
| | | 개별 책상, 옷장의 소유 | | 49 | 32 | - |
| 자유권 | 사생활 침해 | 아동들의 사진이 포스터나 홈페이지에 실리는 문제 | 5 | 54 | 27 | - |
| | | 아동의 사적 행동에 대한 제약 | | 55 | 26 | - |
| | | 소지품검사 | | 60 | 21 | - |
| | | 아동의 편지 이메일 관리 문제 | | 44 | 37 | - |
| | | 후원회 사람들이 주는 용돈 문제 | | 45 | 36 | - |
| | 경제권 | 아동의 용돈의 관리문제 | 3 | 39 | 42 | - |
| | | 후원회의 용돈 관리문제 | | 46 | 35 | + |
| | | 개인물품 구입 | | 47 | 34 | + |
| | 숙소 선택권 | 한 방에 같이 생활하는 아동 선택의 문제 | 1 | 48 | 33 | + |
| 종교의 자유 | 시설의 재단에서 하는 종교관련 행사와 집회참여 | 1 | 41 | 40 | - | |
| 참정권 | 생활 수칙 | 시설내의 규칙의 참여 제한 | 2 | 42 | 39 | - |
| | 시설운영 참여 | 시설의 운영이나 재정 상태운영에의 참여 제한 | | 59 | 22 | - |
| 사후관리 | 부모와 관계형성 | 아동은 입소할 때 상황이나 자신의 부모에 대한 알권리 | 3 | 58 | 23 | - |
| | |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의 연락처에 대한 알 권리 | | 52 | 29 | - |
| | 퇴소 후 자립 | 퇴소 후 자립의 정착금 문제 | | 53 | 28 | - |
| 기타 | 성문제 | 아동의 성적 고민에 대한 문제 | 2 | 56 | 25 | - |
| | |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관한 문제 | | 51 | 30 | - |

<표> 시설 아동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권리 | 이슈 | 인권가치태도 문항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 사전 | 사후 | |
| 아동의 생존권 | 식생활 | 단체 식단 | 2 | 11 | 45 | - |
| | | 간식문제 | | 12 | 43 | - |
| | 주생활 | 잠자는 시간제한. | 3 | 13 | 43 | - |
| | | 연령에 따른 숙소배정 | | 27 | 29 | + |
| | | 방의 질서를 유지와 방장의 권한 | | 18 | 38 | - |
| | 의료/위생 | 시설의 재정이 부족으로 인한 의료부족 | 3 | 15 | 41 | - |
| | | 응급 처치할 때 약의 남용 | | 16 | 40 | - |
| 아동의 약물에 대한 교육 | | 17 | | 39 | - | |
| 보호받을 권리 | 별 | 아동의 체벌문제 | 1 | 14 | 42 | - |
| | 특별한 아동 보호 | 소외아동에 대한 대처 | 4 | 19 | 37 | - |
| | | 학습장애아동에 대한 대처 | | 24 | 32 | - |
| | | 영유아의 욕구 | | 21 | 35 | - |
| | | 문제 아동들의 격리 생활보호사의 처리문제 | | 40 | 15 | - |
| | 귀가 문제 | 아동의 귀가시간 제한 문제 | 1 | 20 | 36 | + |
| 의사소통문제 | 아동의 시설 내 전화사용 및 가족, 직원과 대화 문제 | 1 | 33 | 23 | - | |
| 발달권 | 교육권 | 상급학교의 진학 문제 | 4 | 22 | 34 | - |
| | | 개별지도의 문제 | | 23 | 33 | - |
| | | 아동의 학교 내의 동아리활동이나 특별활동 | | 25 | 31 | - |
| | | 시설 내에 컴퓨터, 인터넷사용의 제한 | | 30 | 46 | - |
| | 친구관계 | 친구관계의 제한 | 1 | 26 | 30 | - |
| | 문화적 권리 | 단체 활동으로서의 영화관람 | 2 | 28 | 28 | - |
| 개별 책상, 옷장의 소유 | | 39 | | 17 | - | |
| 자유권 | 사생활 침해 | 아동들의 사진이 포스터나 홈페이지에 실리는 문제 | 4 | 44 | 12 | - |
| | | 아동의 사적 행동에 대한 제약 | | 45 | 11 | - |
| | | 아동의 편지 이메일 관리 문제 | | 34 | 22 | - |
| | | 후원회 사람들이 주는 용돈 문제 | | 35 | 21 | - |
| | 경제권 | 아동의 용돈의 관리문제 | 3 | 29 | 27 | - |
| | | 후원회의 용돈 관리문제 | | 36 | 20 | + |

| 권리 | 이슈 | 인권가치태도 문항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 사전 | 사후 | |
| | | 개인물품 구입 | | 37 | 19 | + |
| | 숙소 선택권 | 한 방에 같이 생활하는 아동 선택의 문제 | 1 | 38 | 18 | + |
| | 종교의 자유 | 시설의 재단에서 하는 종교관련 행사와 집회참여 | 1 | 31 | 25 | - |
| 참정권 | 생활수칙 | 시설내의 규칙의 참여 제한 | 1 | 32 | 24 | - |
| 사후관리 | 부모와 관계형성 |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의 연락처에 대한 알 권리 | 2 | 42 | 14 | - |
| | 퇴소 후 자립 | 퇴소 후 자립의 정착금 문제 | | 43 | 13 | - |
| 기타 | 성문제 |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관한 문제 | 1 | 41 | 15 | - |

4. 검사 실시방법

검사실시자가 유의해야 할 검사 실시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완성형 검사는 25분, 간편형 검사는 15분 정도입니다. 본 검사는 속도검사가 아니지만, 교육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검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준비물은 검사지, 필기도구입니다.
- 검사 참여자들이 본 검사의 목적 및 취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 본 검사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각 문항을 풀면서 솔직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응답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솔직하고 성의껏 응답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

켜 주십시오.

- 보기를 중복해서 고르거나, 답안을 빈 칸으로 남기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개개인이 인권교육 전, 후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전, 사후 검사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5. 검사의 채점 방법 및 해석

- 검사 결과를 채점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코딩한 후 SPSS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 및 집단별 평균, 빈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 4단계 척도에 대한 척도치 부여는 ‘강한 반대=-2’, ‘약한 반대=-1’, ‘약한 찬성=1’, ‘강한 찬성=2’입니다.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강한 침해’는 ‘평균 -1.5 이하’, ‘약한 침해’는 ‘평균 0이하~-1.5 미만’, ‘약한 옹호’는 ‘0이상~1.5 미만’, ‘강한 옹호’는 ‘1.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집단 분석에서는 사전, 사후 평균을 산출하고, 개인별 분석에서는 개인별 사전, 사후 평균 산출 후 인권옹호 대 인권침해 비율과 상승, 하락, 무변화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통문항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의 문항 구성표 및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는 정 문항, ‘-’는 역문항임을 의미합니다.

시설 아동 분야의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시설 아동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장애인> 분야 검사 실시자를 위한 매뉴얼

1. 검사 실시의 목적 및 취지

본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검사 참여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 참여자들의 지금 현재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그와 동시에 검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및 사례들을 선정하여 문항화 하였습니다.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해 검사 참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고 체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대상

본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두 9개 공공분야, 즉 경찰, 군인, 교사,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시설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입니다.

3. 검사의 구성

본 검사는 9개 분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문항(완성형 검사 20문항, 간편형 검사 10문항)과 각 분야에 특수한 특수문항(완성형 검사 40문항, 간편형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 검사 참여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문항번호를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공통문항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로는 법 앞의 평등, 국적선택의 권리, 성차

별, 연고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권, 성적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질병에 따른 차별, 사생활 보호, 인격존중, 소수의 권리, 민원인의 권리, 순응주의, 알 권리, 인간의 존엄성, 기본생활권이 있습니다.

시설 장애인 분야의 문항 구성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시설 장애인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사전 | 사후 | |
| 입소 자기 결정권 | 보호의무자의 임의에 따른 입소 | 2 | 21 | 60 | - |
| 의사표현의 자유 | 아플 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 3 | 43 | 38 | - |
| | 아프다고 보호사의 주관에 의해 판단하여 병원에 보냄 | | 44 | 37 | - |
| | 원장이나 보호사의 호칭 | | 35 | 46 | - |
| 신체의 자유 | 보호사 임의에 의한 행동규정 | 5 | 32 | 49 | - |
| | 보호사에 의한 휠체어 사용 제한 | | 33 | 48 | - |
| | 외출에 대한 규제 | | 52 | 29 | - |
| | 생활인의 싸움시, 격리 | | 30 | 51 | - |
| | 치료시, 외부와 격리 | | 25 | 56 | - |
| 선택권 | 시간대별로 지정된 프로그램 참여 | 6 | 29 | 52 | + |
| | 일상의 일과에 대한 선택과 제한 | | 22 | 59 | - |
| | 다양한 활동 수렴과정의 선택권 제한 | | 58 | 23 | - |
| | 잠자는 시간의 선택권 제한 | | 24 | 57 | - |
| | 재활 프로그램 참여의 제한 | | 59 | 22 | - |
| | 단체생활로 인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권리 | | 36 | 35 | - |
| 교육권 | 공부하고 싶은 프로그램의 제한 | 2 | 38 | 43 | - |
| | 시설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개발 인식부족 | | 56 | 25 | - |
| 참정권 | 선거참여에 제한 | 2 | 55 | 26 | - |
| | 선거정보에 대한 제한 | | 46 | 35 | - |
| 가족권 | 가족의 연락처 두절 | 3 | 37 | 44 | - |
| | 가족의 접촉 제한 | | 42 | 39 | - |
| | 가족에 대한 정보 제한 | | 57 | 24 | - |
| 경제권 및 노동권 | 개인 돈의 관리 | 3 | 60 | 21 | - |
| | 작업장에서의 작업 | | 41 | 40 | - |
| | 시설장의 작업하기 | | 23 | 59 | - |
| 치료받을 권리 | 보호자에 의한 치료 제한 | 4 | 26 | 55 | - |
| | 중증환자 위주의 치료 | | 27 | 54 | - |

| 이슈 | 사례 | 문 항 수 | 문항번호 | | 정· 역 문 항 |
|-------------------|-----------------------------|-------------|------|----|-------------------|
| | | | 사전 | 사후 | |
| | 비용에 의한 치료 제한 | | 28 | 53 | - |
| |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의 차별 | | 54 | 27 | - |
| 의, 식, 주 생활의 권리 | 일률적인 의류착복 | 2 | 31 | 50 | - |
| | 일률적인 식판에 의해 정해진 식사시간 | | 34 | 47 | - |
|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 | 바르지 못한 의복에 대한 대외적인 꾸중 | 5 | 53 | 28 | - |
| | 남녀 교제의 자유권 | | 40 | 41 | - |
| | 애정표현의 자유권 | | 47 | 34 | - |
| | 결혼 | | 48 | 33 | - |
| | 남, 녀의 격리 | | 55 | 26 | - |
| 종교의 자유 |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시설에서의 종교적 자유 | 1 | 49 | 35 | - |
| 사생활침해 | 봉사자의 사진 찍음 | 3 | 50 | 31 | - |
| | 후원자의 생활인의 방 방문 | | 51 | 30 | - |
| | 개인 생활 정보 촬영 | | 39 | 42 | - |

<표> 시설 장애인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 항 수 | 문항번호 | | 정· 역 문 항 |
|--------------|----------------------------------|-------------|------|----|-------------------|
| | | | 사전 | 사후 | |
| 입소 자기 결정권 | 보호의무자의 임의에 따른 입소 | 1 | 11 | 30 | - |
| 의사표현의 자유 | 아프다고 보호사의 주판에 의해 판단하여 병원에 보 냄 | 2 | 21 | 20 | - |
| | 원장이나 보호사의 호칭 | | 17 | 24 | - |
| 신체의 자유 | 보호사에 의한 휠체어 사용 제한 | 2 | 16 | 25 | - |
| | 생활인의 싸움시, 격리 | | 14 | 37 | - |
| 선택권 | 다양한 활동 수렴과정의 선택권 제한 | 2 | 29 | 13 | - |
| | 단체생활로 인한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권리 | | 18 | 23 | - |
| 교육권 | 시설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개발 인식부족 | 1 | 27 | 14 | - |
| 참정권 | 선거참여의 제한 | 1 | 22 | 19 | - |
| 가족권 | 가족의 연락처 두절 | 2 | 19 | 22 | - |
| | 가족에 대한 정보 제한 | | 28 | 13 | - |
| 경제권 및 노동권 | 개인 돈의 관리 | 1 | 30 | 11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사전 | 사후 | |
| 치료받을 권리 | 보호자에 의한 치료 제한 | 3 | 12 | 29 | - |
| | 중증환자 위주의 치료 | | 13 | 28 | - |
| |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의 차별 | | 26 | 15 | - |
| 의,식,주 생활의 권리 | 일률적인 의류착복 | 1 | 15 | 26 | - |
| 인간 존엄성 행복 추구권 | 바르지 못한 의복에 대한 대외적인 꾸중 | 2 | 25 | 28 | - |
| | 남녀 교제의 자유권 | | 20 | 21 | - |
| 종교의 자유 |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시설에서의 종교적 자유 | 1 | 23 | 18 | - |
| 사생활침해 | 후원자의 생활인의 방 방문 | 1 | 24 | 17 | - |

4. 검사 실시방법

검사실시자가 유의해야 할 검사 실시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완성형 검사는 25분, 간편형 검사는 15분 정도입니다. 본 검사는 속도검사가 아니지만, 교육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검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준비물은 검사지, 필기도구입니다.
- 검사 참여자들이 본 검사의 목적 및 취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 본 검사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각 문항을 풀면서 솔직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응답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솔직하고 성의껏 응답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 주십시오.
- 보기를 중복해서 고르거나, 답안을 빈 칸으로 남기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개개인이 인권교육 전, 후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전, 사후 검사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5. 검사의 채점 방법 및 해석

- 검사 결과를 채점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코딩한 후 SPSS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 및 집단별 평균, 빈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 4단계 척도에 대한 척도치 부여는 ‘강한 반대=-2’, ‘약한 반대=-1’, ‘약한 찬성=1’, ‘강한 찬성=2’입니다.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강한 침해’는 ‘평균 -1.5 이하’, ‘약한 침해’는 ‘평균 0이하~-1.5 미만’, ‘약한 옹호’는 ‘0이상~1.5 미만’, ‘강한 옹호’는 ‘1.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집단 분석에서는 사전, 사후 평균을 산출하고, 개인별 분석에서는 개인별 사전, 사후 평균 산출 후 인권옹호 대 인권침해 비율과 상승, 하락, 무변화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통문항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의 문항 구성표 및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는 정 문항, ‘-’는 역문항임을 의미합니다.

시설 장애인 분야의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시설 장애인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경찰> 분야 검사 실시자를 위한 매뉴얼

1. 검사 실시의 목적 및 취지

본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검사 참여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 참여자들의 지금 현재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그와 동시에 검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및 사례들을 선정하여 문항화 하였습니다.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해 검사 참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고 체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대상

본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두 9개 공공분야, 즉 경찰, 군인, 교사,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시설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입니다.

3. 검사의 구성

본 검사는 9개 분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문항(완성형 검사 20문항, 간편형 검사 10문항)과 각 분야에 특수한 특수문항(완성형 검사 40문항, 간편형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해 검사 참여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문항번호를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공통문항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로는 법 앞의 평등, 국적선택의 권리, 성차

별, 연고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권, 성적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질병에 따른 차별, 사생활 보호, 인격존중, 소수의 권리, 민원인의 권리, 순응주의, 알 권리, 인간의 존엄성, 기본생활권이 있습니다.

경찰 분야의 문항 구성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경찰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신체훼손 및 언어폭력 | 시위자 무력진압 | 6 | 21 | 60 | - |
| | 심문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 | 28 | 53 | - |
| | 유치장에서 소란피우는 자 포박 | | 35 | 46 | - |
| | 미제사건에 대한 자백 요구 | | 42 | 40 | - |
| | 체포과정에서 작은 상처가 생기는 경우 | | 47 | 35 | - |
| | 상급자의 욕설, 구타 | | 52 | 31 | - |
| 제한사항 | 변호인 접견제한 | 5 | 22 | 59 | - |
| | 과거 행실상 검사실 출입 제한 | | 29 | 52 | - |
| | 구속부적부심사 요구에 대한 응답 늦춰짐 | | 36 | 45 | - |
| | 변호사 도착 전에 조사 시작 | | 43 | 39 | - |
| | 미성년자 보호자 없이 조사 | | 48 | 30 | - |
| 형평성 | 사적인 질문에 대답 요구 | 8 | 23 | 58 | - |
| | 고소인을 무고죄로 긴급체포 | | 30 | 51 | - |
| | 대질심문 동안 피해자의 합의 | | 37 | 38 | - |
| | 부부간 폭력사건 | | 44 | 34 | - |
| | 경찰에게 욕하는 피의자 | | 49 | 29 | - |
| | 정신장애 피해자 보호자 동석 없이 조사 | | 53 | 27 | - |
| | 합의 요구 | | 55 | 25 | - |
| | 이주노동자 차별 | | 57 | 23 | - |
| | 경찰관의 욕설 | | 59 | 22 | - |
| 검문 | 불법집회 장소로 가는 통행인 불심검문 | 3 | 24 | 57 | - |
| |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 | | 31 | 50 | - |
| | 검문 전 신분증 제시 과정 생략 | | 38 | 44 | - |
| 동행 및 연행 | 설명 없이 임의동행 | 5 | 25 | 56 | - |
| | 임의동행 거부자 강제연행 | | 32 | 49 | - |
| | 아이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 | | 39 | 43 | - |
| | 사무실에 머물며 장시간 임의동행 종용 | | 45 | 37 | - |
| | 영장 없이 압수수색 | | 50 | 33 | - |
| 개인정보 |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혐의가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 | 10 | 26 | 55 | - |

| 이슈 | 사례 | 문 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 항 |
|------------|--------------------------|-------------|----------|----|-------------------|
| | | | 전 | 후 | |
| 보호 및 수색 | 피해자 동의없이 신체검사 | | 33 | 48 | - |
| | 수색연장으로 채혈 | | 40 | 42 | - |
| | 혐의가 관련인들에게 알려지는 경우 | | 46 | 36 | - |
| | 성폭행 진술조서를 기자에게 공개 | | 51 | 32 | - |
| | 동의없이 영상녹화 | | 54 | 28 | - |
| | 법원 허가없이 통화녹음 | | 56 | 26 | - |
| | 알몸수색 | | 58 | 24 | - |
| 사적인 질문 | 60 | 21 | - | | |
| 진료 | 유치장 내 자해한 피해자에게 신경 못 씬 | 3 | 27 | 54 | - |
| | 심각한 병자라도 범죄예방을 위해 치료 늦음 | | 34 | 47 | - |
| | 응급환자라도 가해자라면 조사를 마친 후 진료 | | 41 | 41 | - |

<표> 경찰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 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 항 |
|-------------------|-----------------------|-------------|----------|----|-------------------|
| | | | 전 | 후 | |
| 신체훼손 및 언어폭력 | 시위자 무력진압 | 3 | 11 | 30 | - |
| | 심문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 | 18 | 23 | - |
| | 유치장에서 소란피우는 자 포박 | | 25 | 16 | - |
| 제한사항 | 변호인 접견제한 | 3 | 12 | 29 | - |
| | 과거 행실상 검사실 출입 제한 | | 19 | 22 | - |
| | 구속부적부심사 요구에 대한 응답 늦춰짐 | | 26 | 15 | - |
| 형평성 | 사적인 질문에 대답 요구 | 3 | 13 | 28 | - |
| | 고소인을 무고죄로 긴급체포 | | 20 | 21 | - |
| | 대질심문 동안 피해자의 합의 | | 27 | 14 | - |

| 이슈 | 사례 | 문 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항 |
|--------------|----------------------------|-------------|----------|----|---------------|
| | | | 전 | 후 | |
| 검문 | 불법집회 장소로 가는 통행인 불심검문 | 3 | 14 | 27 | - |
| |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 | | 21 | 20 | - |
| | 검문 전 신분증 제시 과정 생략 | | 28 | 13 | - |
| 동행 및 연행 | 설명 없이 임의동행 | 3 | 15 | 26 | - |
| | 임의동행 거부자 강제연행 | | 22 | 19 | - |
| | 아이와 함께 경찰서로 동행 | | 29 | 12 | - |
| 개인정보 및 수색 |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혐의가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 | 3 | 16 | 25 | - |
| | 피해자 동의 없이 신체검사 | | 23 | 18 | - |
| | 수색연장으로 체형 | | 30 | 11 | - |
| 진료 | 유치장 내 자해한 피해자에게 신경 못 씬 | 2 | 17 | 24 | - |
| | 심각한 병자라도 범죄예방을 위해 치료 늦음 | | 24 | 17 | - |

4. 검사 실시방법

검사실시자가 유의해야 할 검사 실시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완성형 검사는 25분, 간편형 검사는 15분 정도입니다. 본 검사는 속도검사가 아니지만, 교육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검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준비물은 검사지, 필기도구입니다.
- 검사 참여자들이 본 검사의 목적 및 취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 본 검사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각 문항을 풀면서 솔직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응답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솔직하고 성의껏 응답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 주십시오.

- 보기를 중복해서 고르거나, 답안을 빈 칸으로 남기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개개인이 인권교육 전, 후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전, 사후 검사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5. 검사의 채점 방법 및 해석

- 검사 결과를 채점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코딩한 후 SPSS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 및 집단별 평균, 빈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 4단계 척도에 대한 척도치 부여는 ‘강한 반대=-2’, ‘약한 반대=-1’, ‘약한 찬성=1’, ‘강한 찬성=2’입니다.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강한 침해’는 ‘평균 -1.5 이하’, ‘약한 침해’는 ‘평균 0이하~-1.5 미만’, ‘약한 옹호’는 ‘0이상~1.5 미만’, ‘강한 옹호’는 ‘1.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집단 분석에서는 사전, 사후 평균을 산출하고, 개인별 분석에서는 개인별 사전, 사후 평균 산출 후 인권옹호 대 인권침해 비율과 상승, 하락, 무변화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통문항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의 문항 구성표 및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는 정 문항, ‘-’는 역문항임을 의미합니다.

경찰 분야의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경찰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완성형 검사 | 사전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교정공무원> 분야 검사 실시자를 위한 매뉴얼

1. 검사 실시의 목적 및 취지

본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검사 참여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 참여자들의 지금 현재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그와 동시에 검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및 사례들을 선정하여 문항화 하였습니다.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해 검사 참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고 체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대상

본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두 9개 공공분야, 즉 경찰, 군인, 교사,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시설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입니다.

3. 검사의 구성

본 검사는 9개 분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문항(완성형 검사 20문항, 간편형 검사 10문항)과 각 분야에 특수한 특수문항(완성형 검사 40문항, 간편형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해 검사 참여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문항번호를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공통문항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로는 법 앞의 평등, 국적선택의 권리, 성차

별, 연고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권, 성적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질병에 따른 차별, 사생활 보호, 인격존중, 소수의 권리, 민원인의 권리, 순응주의, 알 권리, 인간의 존엄성, 기본생활권이 있습니다.

교정공무원 분야의 문항 구성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교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신체훼손 | 태도불량 수용자 격리수용 | 6 | 21 | 60 | - |
| | 총기사용 | | 28 | 53 | - |
| | 전체기합 | | 35 | 46 | - |
| | 작업장 물건 유출을 시도한 수용자 구타 | | 42 | 39 | - |
| | 구호외침 | | 47 | 34 | - |
| | 교도관의 몸에 손을 대는 수용자 처벌 | | 52 | 29 | - |
| 안전권 | 작업 중 상해 | 3 | 22 | 59 | - |
| | 규정상 치료 거부 | | 29 | 52 | - |
| | 잘못된 약처방으로 병 악화 | | 36 | 45 | - |
| 진료 | 정밀진단에서 큰 병으로 진단 | 5 | 23 | 58 | - |
| | 주말 동안 진료 불가능 | | 30 | 51 | - |
| | 응급환자의 수술을 미룸 | | 37 | 44 | - |
| | 자해한 수용자에게 응급조치 미시행 | | 43 | 38 | - |
| | 사정상 치료를 미룸 | | 48 | 33 | - |
| 제한 및 검열 | 휴무일에 접견제한 | 11 | 24 | 57 | - |
| | 수용자들 사이의 서신교환 제한 | | 31 | 50 | - |
| | 금치처분자의 정보공개신청 묵살 | | 38 | 43 | - |
| | 실수로 수용자 기본권 제한 | | 44 | 37 | - |
| | 공휴일 목욕 금지 | | 49 | 32 | - |
| | 가족만남의 집 이용 제한 | | 53 | 28 | - |
| | 기기 반입 불허 | | 56 | 25 | - |
| | 집필신청 불허 | | 57 | 24 | - |
| | 정보공개거부처분 | | 58 | 23 | - |
| | 변호사접견 제한 | | 59 | 22 | - |
| 환경 | 신문기사 삭제 후 제공 | 3 | 60 | 21 | - |
| | 비위생적 환경과 예산 | | 25 | 56 | - |
| | 협소한 공간 | | 32 | 49 | - |
| 개인정보노출 및 | 예산부족과 생활용품 부족 | 6 | 39 | 42 | - |
| | 수용자 이름표의 개인정보 | | 26 | 55 | - |
| | 전염병을 가진 수용자의 신변노출 | | 33 | 48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 항 |
|-------|--------------------------|---------|----------|----|-------------------|
| | | | 전 | 후 | |
| 사생활보호 | 알몸검신 | | 40 | 41 | - |
| | 칸막이 없는 장소에서 항문검사 | | 45 | 36 | - |
| | 교도소 내 CCTV | | 50 | 31 | - |
| | 흉기와 알몸검사 | | 54 | 27 | - |
| 형평성 | 수용자 차별대우 | 6 | 27 | 54 | - |
| | 최소한의 설비만 제공 | | 34 | 47 | - |
| | 부친 장례식 참석 불허 | | 41 | 40 | - |
| | 손도장 대신 날인 | | 46 | 35 | - |
| | 노역장 유치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사항 | | 51 | 30 | - |
| | 수행자간 폭행조사 중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뀜 | | 55 | 26 | - |

<표> 교정공무원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 항 |
|------|-----------------|---------|----------|----|-------------------|
| | | | 전 | 후 | |
| 신체훼손 | 태도불량 수용자 격리수용 | 3 | 11 | 30 | - |
| | 총기사용 | | 18 | 23 | - |
| | 전체기합 | | 25 | 16 | - |
| 안전권 | 작업 중 상해 | 3 | 12 | 29 | - |
| | 규정상 치료 거부 | | 19 | 22 | - |
| | 잘못된 약처방으로 병 악화 | | 26 | 15 | - |
| 진료 | 정밀진단에서 큰 병으로 진단 | 3 | 13 | 28 | - |
| | 주말 동안 진료 불가능 | | 20 | 21 | - |
| | 응급환자의 수술을 미룸 | | 27 | 14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 역 문 항 |
|-----------------------|-------------------|---------|----------|----|-------------------|
| | | | 전 | 후 | |
| 제한 및 검열 | 휴무일에 접견제한 | 3 | 14 | 27 | - |
| | 수용자들 사이의 서신교환 제한 | | 21 | 20 | - |
| | 금치처분자의 정보공개신청 목살 | | 28 | 13 | - |
| 환경 | 비위생적 환경과 예산 | 3 | 15 | 26 | - |
| | 협소한 공간 | | 22 | 19 | - |
| | 예산부족과 생활용품 부족 | | 29 | 12 | - |
| 개인정보노 출 및 사생활보호 | 수용자 이름표의 개인정보 | 3 | 16 | 25 | - |
| | 전염병을 가진 수용자의 신변노출 | | 23 | 18 | - |
| | 알몸검신 | | 30 | 11 | - |
| 형평성 | 수용자 차별대우 | 2 | 17 | 24 | - |
| | 최소한의 설비만 제공 | | 24 | 17 | - |

4. 검사 실시방법

검사실시자가 유의해야 할 검사 실시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완성형 검사는 25분, 간편형 검사는 15분 정도입니다. 본 검사는 속도검사가 아니지만, 교육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검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준비물은 검사지, 필기도구입니다.
- 검사 참여자들이 본 검사의 목적 및 취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 본 검사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각 문항을 풀면서 솔직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응답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솔직하고 성의껏 응답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 주십시오.

■ 보기를 중복해서 고르거나, 답안을 빈 칸으로 남기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개개인이 인권교육 전, 후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전, 사후 검사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5. 검사의 채점 방법 및 해석

- 검사 결과를 채점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코딩한 후 SPSS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 및 집단별 평균, 빈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 4단계 척도에 대한 척도치 부여는 ‘강한 반대=-2’, ‘약한 반대=-1’, ‘약한 찬성=1’, ‘강한 찬성=2’입니다.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강한 침해’는 ‘평균 -1.5 이하’, ‘약한 침해’는 ‘평균 0이하~-1.5 미만’, ‘약한 옹호’는 ‘0이상~1.5 미만’, ‘강한 옹호’는 ‘1.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집단 분석에서는 사전, 사후 평균을 산출하고, 개인별 분석에서는 개인별 사전, 사후 평균 산출 후 인권옹호 대 인권침해 비율과 상승, 하락, 무변화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통문항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의 문항 구성표 및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는 정 문항, ‘-’는 역문항임을 의미합니다.

교정공무원 분야의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교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검사 실시자를 위한 매뉴얼

1. 검사 실시의 목적 및 취지

본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검사 참여자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사 참여자들의 지금 현재 인권의식 수준이 어떠한지, 그와 동시에 검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및 사례들을 선정하여 문항화 하였습니다.

본 검사의 결과를 통해 검사 참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고 체계화하여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적용대상

본 검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두 9개 공공분야, 즉 경찰, 군인, 교사, 교정공무원, 일반 행정공무원, 그리고 시설 아동, 노인, 정신장애인, 시설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실무자들입니다.

3. 검사의 구성

본 검사는 9개 분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통문항(완성형 검사 20문항, 간편형 검사 10문항)과 각 분야에 특수한 특수문항(완성형 검사 40문항, 간편형 검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 사전, 사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함으로 인해 검사 참여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억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문항번호를 서로 다르게 차별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공통문항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로는 법 앞의 평등, 국적선택의 권리, 성차

별, 연고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노동권, 성적 소수자 차별, 장애인 차별, 질병에 따른 차별, 사생활 보호, 인격존중, 소수의 권리, 민원인의 권리, 순응주의, 알 권리, 인간의 존엄성, 기본생활권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의 문항 구성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사생활 | 골목길에서의 폐쇄회로 설치 | 3 | 21 | 41 | - |
| | 신속한 출입국을 위한 개인의 생체정보 활용 | | 28 | 34 | - |
| | 자녀의 동의 없는 부모의 입영 신청 | | 35 | 27 | - |
| 인사 |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에 대한 전보 발령 | 5 | 22 | 52 | - |
| | 업무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하직원의 타 부서 전보 발령 | | 29 | 47 | - |
| | 본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전보 조치 | | 36 | 40 | - |
| | 동료가 싫어하거나 동료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의 타 부서 발령 | | 42 | 33 | - |
| | 업무 배치 상의 남녀 차별 | | 48 | 26 | - |
| 채용 |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 | 8 | 23 | 60 | - |
| | 채용 시 응시자의 전과 여부 고려 | | 30 | 58 | - |
| | 채용 시 특정 대학 출신 채용 | | 37 | 56 | + |
| | 공무원 채용 시, 신체 검사서에 병력 표시 | | 43 | 51 | - |
| | 채용 전형기준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신입사원으로 채용 | | 49 | 46 | - |
| | 서류전형 취업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가점 적용 여부가 해당 기관 혹은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지의 여부 | | 53 | 39 | - |
| | 공무원 채용 시 나이 제한 | | 57 | 32 | - |
| | 병력이 있을 경우 채용 여부 | | 59 | 25 | - |
| 노동 | 육아휴직 시 승진 대상 제외 | 8 | 24 | 59 | - |
|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기간이 사회봉사 이행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31 | 57 | + |
| |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행·재정적 차별 대우 | | 38 | 55 | - |
| |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신청 가능 여부 | | 44 | 50 | + |
| |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 | | 50 | 45 | - |
| | 비정규직 차별 | | 54 | 38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외주화된 서비스 직종에 대해 여성만을 고용 | | 58 | 31 | - |
| | 직급에 따라 다른 공무원 정년 | | 60 | 24 | - |
| 복지 | 산재보험 등급 적용 시 남녀 차별 | 6 | 25 | 54 | - |
| |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차별 | | 32 | 49 | - |
| | 교도소 수용기간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산정 여부 | | 39 | 44 | + |
| | 공무원 복지제도 차등 적용 | | 45 | 37 | - |
| | 직장협의회의 설립 시, 기관장과 협의하여 설립하는 지 여부 | | 51 | 30 | - |
| | 복지 혜택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차별 | | 55 | 23 | - |
| 성차별 | 민원 업무 배치에 대한 남녀 차별 | 6 | 26 | 53 | - |
| | 근무평정 시 여성 차별 | | 33 | 48 | - |
| |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의 적용 예외 사유에 임신과 출산 비 명기 | | 40 | 43 | - |
|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됨 | | 46 | 36 | - |
| | 남성도 성폭력 범죄대상에 속하는지의 여부 | | 52 | 29 | + |
| |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대상에 '출가한 여자'를 제외시킴 | | 56 | 22 | - |
| 기타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의무 수행 | 4 | 27 | 42 | + |
| |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 | | 34 | 35 | - |
| | 공무원이 용역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녹음할 수 있는지 여부 | | 41 | 28 | - |
| | 탈북자들이 여권 발급 시 제한 조건 용인 여부 | | 47 | 21 | - |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간편형 검사 문항 구성표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사생활 | 골목길에서의 폐쇄회로 설치 | 2 | 11 | 24 | - |
| | 신속한 출입국을 위한 개인의 생체정보 활용 | | 18 | 17 | - |
| 인사 |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에 대한 진보 발령 | 3 | 12 | 30 | - |
| | 본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전보 조치 | | 19 | 23 | - |

| 이슈 | 사례 | 문항 수 | 문항 번호 | | 정·역 문항 |
|-----|--|------|-------|----|--------|
| | | | 전 | 후 | |
| | 업무 배치 상의 남녀 차별 | | 25 | 16 | - |
| 채용 | 채용 시 응시자의 전과 여부 고려 | 3 | 13 | 29 | - |
| | 채용 전형기준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신입사원으로 채용 | | 20 | 22 | - |
| | 서류전형 취업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가점 적용 여부가 해당 기관 혹은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는지의 여부 | | 26 | 15 | - |
| 노동 | 육아휴직 시 승진 대상 제외 | 3 | 14 | 28 | - |
| |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 부상으로 인한 병원치료기간이 사회봉사 이행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1 | 21 | + |
| |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행·재정적 차별 대우 | | 27 | 14 | - |
| 복지 |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차별 | 3 | 15 | 27 | - |
| | 공무원 복지제도 차등 적용 | | 22 | 20 | - |
| | 복지 혜택에 있어서의 비정규직 차별 | | 28 | 13 | - |
| 성차별 | 민원 업무 배치에 대한 남녀 차별 | 3 | 16 | 26 | - |
| | 근무평정 시 여성 차별 | | 23 | 19 | - |
|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됨 | | 29 | 12 | - |
| 기타 |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병역의무 수행 | 3 | 17 | 25 | + |
| |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 | | 24 | 18 | - |
| | 공무원들이 용역근로자들의 근무상황을 촬영, 녹음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30 | 11 | - |

4. 검사 실시방법

검사실시자가 유의해야 할 검사 실시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완성형 검사는 25분, 간편형 검사는 15분 정도입니다. 본 검사는 속도검사가 아니지만, 교육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검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준비물은 검사지, 필기도구입니다.

- 검사 참여자들이 본 검사의 목적 및 취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십시오.
- 본 검사는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각 문항을 풀면서 솔직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에 응답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솔직하고 성의껏 응답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켜 주십시오.
- 보기를 중복해서 고르거나, 답안을 빈 칸으로 남기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개개인이 인권교육 전, 후에 어떠한 변화의 추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전, 사후 검사지가 뒤섞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5. 검사의 채점 방법 및 해석

- 검사 결과를 채점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코딩한 후 SPSS 등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 및 집단별 평균, 빈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 4단계 척도에 대한 척도치 부여는 ‘강한 반대=-2’, ‘약한 반대=-1’, ‘약한 찬성=1’, ‘강한 찬성=2’입니다. 인권옹호 및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은 ‘강한 침해’는 ‘평균 -1.5 이하’, ‘약한 침해’는 ‘평균 0이하~-1.5 미만’, ‘약한 옹호’는 ‘0이상~1.5 미만’, ‘강한 옹호’는 ‘1.5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집단 분석에서는 사전, 사후 평균을 산출하고, 개인별 분석에서는 개인별 사전, 사후 평균 산출 후 인권옹호 대 인권침해 비율과 상승, 하락, 무변화자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 공통문항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의 문항 구성표 및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는 정 문항, ‘-’는 역문항임을 의미합니다.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의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표> 일반 행정공무원 분야 완성형 및 간편형 검사 채점표

| 종류 | 전/후 | 문항(정: +, 역: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완성형 검사 | 사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51 |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편형 검사 | 사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 + | - | - | - | + | - | - | - | - | - |